OPEN
출처표시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베트남 국제사법에 관한 연구

- 최종보고서 -

2015. 7.

책임연구원 손 경 한
공동연구원 이 규 호
공동연구원 박 진 아
공동연구원 장 준 혁
공동연구원 이 재 열
공동연구원 한 종 규
연구보조원 이 홍 기

베트남 국제사법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목 차]

제1장 서론 ····· 1
Ⅰ. 본 연구의 필요성 ····· 1
1. 베트남의 대외관계와 한국과의 교류 ····· 1
2. 국제사법적 쟁점의 대두와 분쟁해결의 필요성 ····· 1
Ⅱ. 본 연구의 목적과 개요 ····· 2
Ⅲ. 본연구의 한계 ····· 2

제2장 베트남 국제사법 개관 ····· 4
Ⅰ. 국제사법 관련 법원(法源) ····· 4
1. 베트남 헌법 ····· 4
2. 민법 ····· 4
가. 민법상 국제사법 규정 ····· 4
나. 베트남 국제사법의 입법방식 ····· 5
3. 민사소송법 ····· 5
4. 혼인가족법 ····· 6
5. 기타 국제사법 관련 법률 및 판례 ····· 7
가. 상법(Luật Thương mại) ····· 7
나. 노동법전(Bộ luật Lao động) ····· 7
다. 2005년 투자법 ····· 7
라. 중재법 ····· 7
마. 판례의 법원성 ····· 8
6. 국제규범 ····· 8
가. 국제조약 ····· 8
나. 국제관습 ····· 9
Ⅱ. 베트남 국제사법의 연혁 ····· 9
1. 1995년 민법 제정 이전의 국제사법 ····· 9
2. 1995년 민법상의 국제사법 규정 ····· 10
3. 2005년 개정 민법상의 국제사법 규정 ····· 11
4. 2015년 민법 개정안 ····· 11
Ⅲ. 국제사법 총론 ····· 12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Quan hệ dân sự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의 개념 12

가. 1995년 민법 소정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의 개념 ·····12
나. 2005년 민법 소정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의 개념 ·····12
2. 연결점 ·····13
가. 연결점의 종류 ·····13
나. 국적(Lex nationalis) ·····14
다. 거주지(Lex domicilii) ·····15
4. 기타 국제사법 총론적 문제 ·····15
가. 법률관계의 성질결정(định danh) ·····15
(1) 법률관계 성질결정 일반 ·····15
(2) 제소시효(thời hiệu khởi kiện)의 준거법 ·····15
나. 반정 ·····16
다. 불통일국법의 지정 ·····16
5. 외국법의 적용 ·····16
Ⅳ. 자연인과 법인의 준거법 ·····17
1. 자연인의 준거법 ·····17
가. 권리능력 ·····18
나. 행위능력 ·····18
2. 법인의 준거법 ·····18

제3장 베트남법 상 외국적 요소가 있는 재산관계의 준거법 ·····19
I. 개설 ·····19
II. 물권의 준거법 ·····19
1. 재산소재지법 원칙(Lex reisitae) ·····19
2. 예외- 운송중인 동산의 준거법 ·····20
3. 운송수단(민간항공기 및 선박)의 소유권 귀속 ·····20
4. 지식재산권의 준거법 ·····20
가. 개설 ·····20
나. 저작권의 준거법 ·····21
다. 산업재산권 및 품종보호권의 준거법 ·····22
III. 채권의 준거법 ·····22
1. 개설 ·····22
2. 계약 등 거래의 준거법 ·····23
가. 계약준거법 합의의 자유(당사자 자치)와 제한 ·····23
(1) 법령상의 관련 규정 ·····24
(2) 일반원칙 ·····25
(3) 예외 ·····25
(가) 베트남법에 위배되었을 경우 ·····25

(나) 베트남법상 기본원칙에 위배되었을 경우 ·····26
(다) 베트남 소재 부동산관련 계약의 경우 ·····28
(라) 계약방식의 경우 ·····29
나. 계약 내용의 준거법 - 계약이행지법 원칙 ·····29
(1) 일반원칙 ·····29
(2) 예외 ·····29
(가)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29
(나) 일방적 민사거래의 특칙 ·····29
(다) 부동산의 경우 ·····30
(라) 민간항공법의 특칙 ·····30
(마) 해사법전의 특칙 ·····30
다. 계약 방식의 준거법 - 계약행위지법(lex contractus) 원칙 ·····31
(1) 일반원칙 ·····31
(2) 예외 ·····31
(가) 격지자간 계약의 경우의 특칙 ·····31
(나) 부동산관련계약 방식의 준거법 ·····32
라. 기술이전계약의 준거법 ·····32
3. 비계약적 채무의 준거법 ·····33
가. 계약외 손해배상의 준거법 ·····33
(1) 원칙 ·····33
(2) 예외 ·····33
나. 부당이득 및 사무관리의 준거법 ·····33
IV. 상사관계의 준거법 ·····34
1. 개설 ·····34
2. 회사관계의 준거법 ·····34
3. 유통증권의 준거법 ·····35
4. 해사관계의 준거법 ·····36
가. 물권의 준거법 ·····36
나. 채권의 준거법 ·····37
(1) 여객 및 수하물 등의 계약 ·····37
(2) 화물운송계약 ·····37
다. 비계약적 채무 ·····37
(1) 선내 사고 등의 경우 ·····37
(2) 공동해손 등의 경우 ·····37
(3) 선박충돌 등의 경우 ·····37
5. 항공관계의 준거법 ·····38
가. 항공기 등록국법의 원칙 ·····38

나. 계약방식의 준거법 ·····38
다. 비계약적 채무의 준거법 ·····39
V. 소결론 ·····39

제4장 베트남 국제사법 상 신분관계의 준거법 ·····41
I. 신분관계 준거법 결정의 총론적 문제 ·····41
1. 법원 ·····41
2. 국제사법의 사항적 타당범위 또는 각칙의 독립적 저촉규정들의 사항적 적용범위 ·····41
3. 외국적 요소가 있지만 각칙규정이 없는 경우 ·····42
4. 本國法의 확정 ·····43
5. 反定(反致) ·····45
6. 公序 ·····45
III. 자연인의 능력과 보호의 준거법 ·····47
1. 권리능력 ·····47
가. 권리능력 일반 ·····47
나. 사망의 확정 ·····47
다. 실종선고 ·····47
2. 행위능력의 제한과 박탈: 미성년자보호와 성년자보호 ·····48
IV. 혼인관계의 준거법 ·····48
1. 혼인의 성립 ·····48
가. 저촉법 ·····48
나. 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베트남의 실체사법 ·····50
다. 혼인신고 수리의 비송관할 ·····51
2. 혼인의 효력 ·····52
3. 이혼 ·····52
4. 사실혼 ·····53
V. 친자관계의 준거법 ·····53
VI. 부양의 준거법 ·····54
VII. 기타의 친족관계의 준거법 ·····55
VIII. 상속과 유언의 준거법 ·····55
1. 법정상속 ·····55
2. 유언상속 ·····56

제5장 베트남의 국제재판관할 법제 ·····58
I. 서론 ·····58
II. 베트남 법원체계의 개관 ·····59

1. 법원의 종류 ·····59
2. 심급제도 ·····59
가. 이심제 ·····59
나. 심급관할 ·····59
3. 심리주체 ·····60
III. 국제재판관할법제의 체계 ·····60
IV. 국제재판관할법제의 연혁 ·····60
1. 2004년 민사소송법 ·····60
2. 2011년 개정 민사소송법의 내용 ·····61
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소송 및 비송사건의 추가 ·····61
나. 현급 인민법원의 관할 확대 ·····61
다. 기타 ·····61
V. 국제재판관할법제의 특징: 민사소송법의 효력 및 민사소송법과 국제조약의 상관관계 ·····62
VI. 국제재판관할규정의 기본원칙 ·····62
1. 열거주의 ·····62
2. 준용방식 ·····63
3. 국제재판관할 인정 사례 ·····65
VII. 국제재판관할법제의 구체적 내용 ·····66
1. 일반관할 및 특별관할 ·····66
가. 피고가 베트남에 본점을 둔 외국의 조직 또는 기관이거나 피고가 베트남에 경영대리점, 지점 또는 대표사무국을 둔 경우 ·····66
나. 피고가 베트남에 항구적으로 거주, 취업 또는 생활하거나 베트남 영토에 재산을 가지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인 경우 ·····67
다. 부양 또는 친자의 인지를 청구하는 민사사건 또는 비송사건에 대해서는 원고가 베트남에 항구적으로 거주, 취업 또는 생활하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인 경우 68
라. 베트남 법에서 정하는 근거에 기초하여 창설, 변경 또는 종료 또는 베트남 영토에서 발생하였지만 당사자의 적어도 1인이 외국의 개인, 기관 또는 조직인 민사관계에 관련된 민사사건 또는 비송사건 ·····68
마. 외국법에서 정하는 근거에 기초하여 성립, 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발생하였지만 관계자 전원이 베트남인, 베트남의 기관 또는 조직이고 원고 또는 피고의 일방이 베트남에 거주하는 민사관계에 관련된 민사사건 또는 비송사건 ···69
바. 이행의 일부 또는 전부가 베트남 영토에서 이루어진 계약으로부터 분쟁이 발생한 경우 ·····69
사. 원고 또는 피고가 베트남인인 이혼사건 ·····69
2. 베트남 법원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권 ·····70
가. 의의 ·····70

나.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권 ·····70
다. 민사비송사건에 대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권 ·····71
라. 외국 법원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권과 외국재판의 승인 내지 집행여부 ·····71
3. 합의관할 ·····72
4. 베트남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72
5.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와 국제소송경합 ·····73
6. 사법공조조약 ·····74

제6장 베트남 상사중재법제 ·····76
I. 서론 ·····76
Ⅱ. 베트남 중재제도 개관 ·····77
1. 관련법령 ·····77
가. 중재법 제정 과정 ·····77
나. 뉴욕협약 ·····78
다. 민사소송법 ·····78
라. 대법관회의 결의 01/2014 ·····78
2. 중재에 대한 법원의 관여 ·····79
3. 중재와 소송간의 선택 ·····79
가. 국내 중재와 국내소송간의 선택 ·····79
나. 국내법원과 외국법원간의 선택 ·····80
4. 국내중재와 외국중재간의 선택 ·····80
Ⅲ. 베트남 중재에 있어서의 중재합의와 중재적격성 ·····80
1. 중재합의의 개념 ·····80
2. 중재합의의 요건 ·····80
3. 중재적격성 ·····81
가. 중재적격성의 개념 ·····81
나. 상사분쟁의 중재적격성 ·····81
다. 민사분쟁의 중재적격성 ·····82
라. 기타 법상 중재가 허용된 경우 ·····82
4. 중재합의의 준거법 ·····83
5. 중재합의의 효력 ·····83
6. 선택적 중재합의 효력 ·····84
7. 중재합의의 무효 또는 실현불가능성, 중재판정부의 관할의 고려 ·····85
Ⅳ. 중재의 준거법 ·····86
1. 개설 ·····86
2. 실체준거법 ·····87
가. 준거법의 지정 ·····87

나. 베트남법의 기본원칙 ····88
(1)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의 개념 ····88
(2) 베트남 대법관 결의 01/2014에 의한 개념 한정 ····88
(3) 기본원칙과 공서와의 관계 ····88
V. 중재절차 ····89
1. 개설 ····89
가. 중재절차의 종류: 수시중재와 기관중재 ····89
나. 중재인의 선임 ····89
다.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 ····90
(1)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권한 ····90
(2) 중재판정부의 사실확인권 ····91
(3) 중재판정부의 증거수집권한 ····91
(4) 중재판정부의 증인소환을 할 권리 ····92
(5) 서류의 보관의무 ····92
라. 중재지(venues) ····92
마. 언어 ····92
바. 중재절차의 진행 ····93
(1) 중재절차 개시의 시기 ····93
(2) 신청서의 통지 ····93
(3)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소기한 ····93
(4) 답변서 ····93
(5) 피신청인의 반대신청 ····94
(6) 신청 또는 반대신청의 철회; 신청의 수정 및 보완; 반대신청 또는 답변서 ·94
(7) 분쟁해결심리준비 ····94
(8) 분쟁해결심리의 구성과 절차 ····94
사. 중재비용 ····95
2. 수시중재절차 ····95
가. 수시중재의 개시 ····95
(1) 신청서와 첨부문서 ····95
(2) 중재절차 개시시기 ····95
나. 수시중재인의 선임 ····96
다. 수시중재인이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96
라. 수시중재인의 변경 ····97
마. 피신청인의 답변과 반대신청 ····97
바. 수시중재절차 ····98
사. 중재비용 ····98
아. 중재판정의 등록 ····98

3. 기관중재절차 ····· 99
가. 중재센터 ····· 99
(1) 개설 ····· 99
(2) 중재센터의 개설과 폐지 ····· 100
(3) 중재센터의 구성 ····· 101
(4) 중재센터의 권한과 의무 ····· 102
(5) 중재센터의 명칭과 로고 ····· 102
(6) 베트남 국제중재센터의 현황 ····· 103
(7) 베트남내 외국중재센터와 운영 ····· 103
나. 중재인 선임절차 ····· 106
(1) 중재판정부의 구성 ····· 106
(2) 중재인 기피 ····· 107
(3) 중재인 궐위시의 조치 ····· 107
다. VIAC에서의 중재절차 ····· 107
(1) 중재절차의 개시 ····· 108
(2) 피신청인에 대한 통지 ····· 108
(3) 피신청인의 답변서 ····· 108
(4) 반대청구의 신청 ····· 109
(5) 중재판정부의 구성 ····· 109
(6) 심리 ····· 109
(7) 중재의 판정방법 ····· 110
4. 증거조사절차 ····· 110
5. 중재절차에 대한 법원의 관여 ····· 110
6. 임시긴급처분 ····· 111
가. 임시긴급처분의 신청권 ····· 111
나. 중재판정부의 임시긴급처분을 적용하는 절차 ····· 111
다. 임시긴급처분의 변경, 보완, 또는 취소 ····· 112
Ⅵ. 중재판정과 그 취소 ····· 113
1. 개설-중재판정 ····· 113
2. 중재판정 취소사유 ····· 113
가. 중재판정취소사유 개설 ····· 113
(1) 중재법의 규정 ····· 114
(2) 중재판정취소신청 포기/취소사유배제 합의 가부 ····· 114
(3) 취소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 114
(4) 중재판정의 취소신청 ····· 114
나. 중재합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 115
(1) 중재법의 규정 ····· 115

(2)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115
(3) 무권한자에 의한 중재합의로 인정한 사례 ····115
(4) 베트남 대법원 결의 01/2014 ····116
다.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에의 하자 ····117
(1) 중재법의 규정 ····117
(2)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 ····117
(3) 중재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117
라. 분쟁의 중재판정부 권한 유월 ····117
(1) 중재법의 규정 ····117
(2) 중재적격성(arbitrability) 부존재 ····118
(3) 중재인의 권한 범위 유월 ····118
마. 증거의 위조와 중재인의 독직 ····118
(1) 중재법의 규정 ····118
(2) 증거의 위조 ····118
(3) 중재인의 독직 ····118
바. 판정의 베트남법의 기본원칙 위반 ····118
사. 내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중재판정취소신청을 기각한 사례 : SK E & C v. Vinalines 중재판정취소사건 ····119
(1) 사실의 개요 ····119
(2) 중재판정취소신청 ····119
(3) 하노이인민법원의 결정 ····119
3. 중재판정 취소절차 ····120
가. 개설 ····120
나. 중재판정취소 신청 ····120
다. 법원의 통지 및 중재인의 자진 시정 ····120
(1) 신청사실 통지 ····120
(2) 중재인의 자진 시정 ····120
4. 판정취소여부에 관한 결정의 효력 ····122
Ⅶ.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22
1. 개설 ····122
2. 국내판정의 집행 ····122
3. 외국판정의 승인요건 ····123
나. 판정승인거부사유의 입증책임 ····126
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사례 ····126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허용한 사례 ····126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부인한 사례 ····126
4.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절차 ····127

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신청 ·····127
나. 법무부의 관할법원에의 송부 ·····127
다.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신청에 대한 심리 ·····128
라. 절차상의 이유로 집행이 거부된 사례 ·····130
마. 승인집행결정에 대한 불복 ·····130
바. 집행절차 ·····131
Ⅷ. 결론 ·····132

제7장 결론- 본 연구의 활용방안 ·····133
1. 연구성과의 공간 ·····134
2. 추가 연구의 수행 ·····134
3. 베트남 법제 개선 지원 ·····135
4. 국제조약에의 가입 ·····135
5. 양자조약의 체결 ·····135

부 록 ·····137
1. 베트남 2006년 민법 제7편 [국제사법편] 국역문 ·····138
2. 베트남 2006년 민법 시행령 [국제사법편] 국역문 ·····143
3. 베트남 2015년 혼인 및 가족법[국제사법관련] 국역문 ·····148
4. 베트남 2011년 민사소송법[국제민사소송법관련] 국역문 ·····151
5. 베트남 2011년 중재법 영역본 ·····174
6. 베트남 2014년 상사중재법 가이드라인 영역본 ·····211
7. 참고문헌목록 ·····227
8. 베트남 국제사법 관련 법률용어 한·베트남 대역집 ·····231

[본문]

베트남 국제사법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Ⅰ. 본 연구의 필요성

1. 베트남의 대외관계와 한국과의 교류

베트남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86년부터 시작된 도이머이(刷新)정책의 도입 이 후로 평가된다. 시장경제제도의 도입과 외국인 투자유치로 대표되는 개혁·개방정책, 특히 ASEAN 가입 등으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관한 사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에 대한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1)]

현재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내 투자와 한국인과 베트남인간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등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2013년 한국과 베트남 교역액은 282억6천3백만달러 규모로서 베트남은 우리의 9위 교역 대상국이다.[2)] 또한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의 對 베트남 누적투자는 8,437건에 17,728,843,000달러 규모이다.[3)] 특히 베트남은 한국의 15번째 자유무역협정(FTA) 대상국으로 앞으로 경제분야에서의 획기적인 관계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인 여성 사이의 국제결혼 건수는 61,884건에 이르고 있다.[4)]

2. 국제사법적 쟁점의 대두와 분쟁해결의 필요성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이후 우리나라와 베트남간 재산관계 및 신분관계에 있어서 섭외적 법률관계가 증가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법정지가 재판관할을 가질지 또한 어느 나라의 법에 따라 해결할 지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이 대두될 것이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라 할

---

1) 도이머이 이후의 베트남 법제발전에 대해서는 권오승·김대인·이상현,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48면 이하 참조.
2) 우리나라 수출의 6위, 수입의 16위 국가이다(한국무역협회 통계)
3)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통계.
4)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30 (2015. 4. 30. 방문)

지라도 베트남법정지에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국제사법적 고려 없이 베트남법원의 재판관할을 인정하고 베트남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제발전과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베트남은 2000년대 이후 법개정을 통해 근대화된 국제사법의 규정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섭외사건에 대하여 기계적인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것을 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베트남간의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재산상·신분상 분쟁이 증가할 것이므로 전방위적인 베트남 국제사법 연구가 필요하다.

Ⅱ. 본 연구의 목적과 개요

베트남의 국제사법을 연구함으로써 한·베트남간 국제교류의 증가와 그에 따른 양국간의 분쟁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민간분야에서는 우리 국민이 베트남 국민과의 섭외사건에서 베트남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도 본 연구를 통하여 베트남과의 입법 및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기 위함이다.

각 장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 목적 등을 제시하는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총론으로서 베트남 국제사법을 개관한다. 각론으로서 제3장에서는 베트남 국제사법상 재산관계의 준거법을, 제4장에서는 신분관계의 준거법을 다룬다. 재산관계의 준거법에서는 물권, 채권과 상사관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신분관계는 총론적 문제와 혼인, 친자, 상속의 문제를 구별하여 살펴본다. 준거법 확정에 국제사법적 이슈 이외에도 제5장에서 절차법적 문제인 베트남 법원제도의 개관, 국제재판관할제도의 특징, 기본원칙과 구체적 내용 등 국제재판관할 법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상사관계에 있어서 최근 분쟁해결절차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베트남 상사중재법제에 대하여 검토한다.

Ⅲ. 본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먼저 베트남어를 이해하는 법전문가의 희소성이다. 참여연구원중 이재열교수만 베트남어를 이해할 수 있어 나머지 참여연구원들은 베트남법률문서와 논문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나머지 연구자들은 영어, 한국어 또는 일본어로 번역된 베트남 법률문서를 참고하여 본 연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오역이나 오해로 인한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자인한다.

둘째, 베트남 국제사법에 관한 베트남어 및 비베트남어 문헌의 희소성이다. 베트남어로 쓰여진 베트남 국제사법에 관한 문헌이 적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

는 영어 또는 일본어로 된 베트남 국제사법에 관한 문헌은 더욱 희소하여 국제사법에 관한 베트남 법령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전거할 문헌이 많지 않았다.

셋째, 베트남 판례에의 접근의 어려움이다. 베트남 사법부는 원칙적으로 판결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회주의 전통에서 비롯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구체적으로 법을 선언하는 것은 판결이므로 판결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논문에 인용된 몇 개의 판결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를 법문의 해석에 할애할 수 밖에 없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베트남정부는 2015년 최초로 3권의 판결집을 간행하였다고 하니[5] 향후의 연구에는 베트남 판례를 참고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자위의 소재로 삼고자 한다.

넷째, 법의 흠결이다. 베트남은 아직 국제사법을 독립된 단행법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며 가족관계에 관한 국제사법은 혼인과 가족법에 규정하고, 경제계약, 상사계약, 해사계약 및 노동계약의 국제사법적 문제는 각각 관련된 특별법에 규정하는 등 통일된 법제를 가지지 못할 뿐아니라 국제사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단편적인 경우가 많아 국제사법을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으며 상호 충돌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이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난점이 많았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1)http://vietnamlawmagazine.vn/news/court-judgments-to-be-publicized/832bee18-dd0a-4f4f-ad8c-05d67bc07383.html

제2장 베트남 국제사법 개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관한 법원으로는 민사법, 국제조약, 외국법 및 국제관습이 있다.[6] 본장에서는 국제사법에 관련하여 베트남이 가입 또는 체결한 국제조약, 베트남 민법, 혼인 및 가족법, 민사소송법, 중재법 기타 관련 법령을 개관한다.

Ⅰ. 국제사법 관련 법원(法源)

1. 베트남 헌법

먼저, 국내법에서 최고의 규범을 갖는 것은 헌법이다.[7] 헌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규율을 위한 법률을 다수 제정하였다. 이들 베트남 민법 및 기타 법률 소정의 국제사법 규정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2. 민법

가. 민법상 국제사법 규정

민법의 규정은 민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적용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대한 베트남 민사법의 적용은 민법의 적용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2005년 민법 제75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본법[8]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란 민법이 국제조약・외국법 또는 국제관습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다.[9]

민법전은 "제7편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제758조-제777조)에서 자연인(제761조-제764조), 상속과 유언(제767조, 제777조)에 관한 국제사법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법 총론(제758조-제760조)도 같은 편에 규정되어 있다. 2015년 중에 민법전을

---

6) 2005년 베트남 민법 제759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민사법, 국제조약, 외국법과 국제관습의 적용
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민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적용된다. 단,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에 본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본법,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기타 법률문서 또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약국인 국제조약에서 외국법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적용 또는 적용의 효과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외국법이 적용된다. 만약 그 국가의 법률이 다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을 적용한다.
당사자 쌍방이 계약에서 외국법의 적용을 합의하고, 그 합의가 본법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기타 법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이 적용된다.
④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가 본법,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기타 법률문서 또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약국인 국제조약 또는 당사자간 민사계약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적용 또는 적용의 효과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국제관습을 적용한다.

7) 현행 헌법은 2013년 11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1개 장, 120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8) 2005년 민법을 의미한다.

9) Hoàng Thế Liên, *Ibid*, tr. 540-541.

전면개정할 계획이며 그 초안이 발표되어 있다. 민법전 제7편의 규정은 그 하위법령인 '2006년 11월 15일자 138/2006/NĐ-CP호 議定(정부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관한 민법전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이하 '2006년 의정'으로 약칭)에 의하여 보완되고 있다.[10)]

민법과 베트남이 체약국인 국제조약의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우선하여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11)]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법률문서에는 법(luật)과 법령(pháp lệnh), 법 이하의 문서들도 포함되며, 이 역시 국제사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나. 베트남 국제사법의 입법방식

베트남 민법은 국제사법의 입법방식에 있어 편면적 저촉규정과 양면적 저촉규정의 입법방식을 변용하고 있다. 즉 베트남 국제사법에서는 네 가지 형태의 저촉규정이 발견된다.

첫째, 양면적 저촉규정이 있다. 이것이 민법전 제7편의 원칙적인 규정형식이다.[12)] 예컨대 제767조 제1항은 "법정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국적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또 동조 제2항은 "부동산에 관한 상속권은 그 부동산 소재지국의 법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둘째,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만을 정하는 형태의 '편면적 저촉규정'이 있다. 이것은 특이한 것이다. 예컨대 민법전 제761조 제1항은 "외국인인 개인의 민사권리능력은 그 자의 국적국의 법에 따라 확정된다"고 규정한다. 내국인인 개인의 권리능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그 자에게 국적 외의 면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일정한 형태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규정하면서 내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함께 규정하는 '불완전(경우가 한정된) 양면적 저촉규정'이 있다. 이것도 조금은 특이한 것이다. 민법전 제776조가 그 예이다.

넷째, 일정한 형태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규정하면서 내국법이 적용되는 경우만을 규정하는 형태, 즉 고전적인 형태의 '불완전(경우가 한정된) 편면적 저촉규정'이 있다. 이것은 특이한 것은 아니다. 내국법의 섭외적 적용범위를 일정한 경우(일정한 내국적 접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대시키는 경우에 흔히 이러한 규정형태를 취하게 된다. 베트남도 다르지 않다. 예컨대 민법전 제762조 제2항은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민사거래를 성립 및 이행한 경우 외국인의 민사행위능력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법에 따라 확정된다"고 규정한다.

3. 민사소송법

---

10) 2006년 의정 내에는 2005년 민법전의 규정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아래에서는 편의상 2005년 민법전의 규정만을 적시하였다.

11) 2005년 베트남 민법 제759조 제2항 참조.

12) 후술하는 혼인가족법의 원칙적인 규정형식도 마찬가지이다.

베트남 민사소송법(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은 2004년 제정되어 2011년 개정되었다. 현행 베트남 민사소송법은 제6편에서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과 외국중재결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절차를, 제9편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의 해결절차와 민사소송에서의 사법공조를 각 규정하고 있다. 먼저, 민사소송법 제405조 제2항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을 '당사자 중 최소 일방이 외국인, 외국에 정주한 베트남인이거나 또는 베트남 국민・기관・단체가 당사자인 민사관계이지만 그 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의 근거가 외국법을 따르거나, 외국에서 발생 또는 그 관계에 관련된 재산이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민사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410조 내지 제412조에서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민사소송법상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은 외국법원의 민사, 혼인과 가족, 경영, 상거래, 노동에 관한 판결・결정, 외국법원의 형사 및 행정 판결・결정 내의 재산에 관한 결정과 베트남법에 따라 민사판결・결정으로 간주되는 외국법원의 기타 판결・결정을 말하고,[13] 외국중재판정이란 경영, 상거래, 노동법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선택된 외국중재인에 의해 베트남 영토 내외에서 선고된 판정을 말한다.[14] 아울러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원칙[15],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청구하는 권리[16], 베트남 법원의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 및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의 효력[17],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의 베트남 내 승인 및 집행 신청의 심사절차 및 베트남에서의 승인 및 집행이 불가한 외국법원의 민사 판결・결정[18]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14조 내지 제416조는 국제민사사법공조・사법촉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4. 혼인가족법

베트남 법제상 우리 민법의 친족편에 해당하는 내용은 별개의 독립된 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국가 민법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19] 2014년 개정 혼인가족법[20]에는 외국적 요소에 관한 정의규정을 따로 두면서(제3조 제25항), "제8

13)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42조 제1항.
14)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
15)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43조 참조.
16)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44조.
17)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46조.
18)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56조.
19) 모든 사회주의국가는 민법과 가족법을 분리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이론과 혁명은 여성 및 모성의 남성으로부터의 해방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혁명을, 사유재산의 부인을 그 근간으로 하는 재산혁명에 못지않은 차원의 이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최달곤, 북한민법의 연구, 1998, 세창출판사, 17면 참조).
20) 법률 제52/2014/QH13호. 2014. 6. 19. 제정, 2015. 1. 1. 발효. 이는 2000년 혼인가족법(법률 제22/2000/QH10호, 2000. 6. 9. 제정)을 전면개정한 법률이다. 2014년 혼인가족법에 의한 국제혼인관계법에 관한 규율을 개관한 문헌으로는 Nguyen Tien Vinh, "International marriage under the Vietnam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동아시아 국제

장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과 가족관계"(제121조-제130조)에서 혼인관계, 친자관계, 부양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들은 하위법령인 '2014년 12월 31일자 126/2014/NĐ-CP호 議定'(이하 '2014년 의정'으로 약칭)의 제3장(제19조-제63조)의 규정들에 의하여 보완되고 있다.[21]

5. 기타 국제사법 관련 법률 및 판례

가. 상법(Luật Thương mại)

상법[22]은 1997년 제정되어 2005년 개정되었다. 국제사법과 관련하여 베트남 영토 내의 일반적인 상거래활동(상법 제1조・제2조)・베트남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상인의 활동에 관한 규정(상법 제17조 내지 제20조)・외국투자자본기업의 권리와 의무(상거래법 제21조)・외국상인의 베트남 내 활동허가권(상법 제22조)・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외국상인의 권리와 의무(상법 제131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나. 노동법전(Bộ luật Lao động)

베트남 노동법전은 1994년 제정된 이래 3번의 개정을 거쳐 2012년 전문 개정되었다. 2012년 노동법은 베트남에서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노동관계(2012년 노동법 제2조)・해외취업 베트남 노동자, 베트남 내의 외국단체 또는 외국인에게 고용된 베트남 노동자(2012년 노동법 제168조)・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조건(2012년 노동법 제169조)・베트남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조건(2012년 노동법 제170조) 등의 노동과 관련된 국제사법 규정을 담고 있다.

다. 2005년 투자법

베트남 투자법은 1987년 제정된 이래 2001년 개정(51-2001-QH10)을 거쳐 2005년 투자법(59-2005-QH11)은 개정되었다.[23] 베트남 투자법 제5조에서 국제조약 및 외국법과 국제관습의 적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라. 중재법

베트남 중재법은 2010년에 상사중재법을 제정하여 2011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시행령은 2011년 7월에 공포되었다. 상사중재법은 상사중재의 범위, 중재의 방식, 중재기관과 중재인, 중재의 순서와 절차, 중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의무, 중재에 대한 법원의 관여, 베트남 내 외국 중재 기구와 활동 및 중재판정의 집행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교류의 증가와 국제사법의 역할: 베트남 국제사법연구(한국국제사법학회 2015년 춘계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2015. 5. 15.).

21) Nguyen Tien Vinh, 상게논문, 1면.

22) 엄격하게는 상거래법이 정확한 번역이다.

23) 2005년 투자법은 2015년 7월 1일부로 개정·시행된다.
<http://www.allenovery.com/publications/en-gb/Pages/Investment-Law-amendment-in-Vietnam.aspx>

마. 판례의 법원성

과거 베트남 공화국에서는 판례도 민법의 법원으로 간주되었지만 베트남에서는 판례를 법원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현재 판례는 상급법원의 심판의 지침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려는 것이 최근의 동향이며[24] 최고인민법원이 심판감독결정선집(tuyển tập quyết định giám đốc thẩm)을 출판하고 베트남공산당 정치부가 판례발전을 주장하는 현재에는 멀지 않은 장래에 판례가 법으로 공인되어 정식 법원의 하나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25]

6. 국제규범

가. 국제조약

국제조약의 개념은 2005년 국제조약의 체결・가입과 이행법(Luật ký kết, gia nhập và thực hiện điều ước quốc tế)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즉,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가의 이름으로 또는 정부의 이름으로 일국 또는 다수국가, 국제단체 또는 국제법의 기타 주체와 체결 또는 가입한, 서면에 의한 합의로서 명칭에 좌우되지 않는다. 국제사법의 법원인 국제조약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경제・상거래・노동・혼인과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참가국 사이에 체결된 양자 또는 다자 조약을 말한다.[26]

조약이 민사법적 규율을 담고 있는 경우 그것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민법전 제759조 제2항, 혼인가족법 제122조 제1항 제3문). 대개의 경우에는 이미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후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조약이 국내법에 대하여 특별법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 경우에는 일반원칙에만 따른다면 국내법이 後法으로서 조약에 우선하게 될 경우도 있어, 적용법조의 확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민법전 제759조 제2항과 혼인가족법 제122조 제1항 제3문은 이러한 난점을 제거하는 의미를 가진다.

양자조약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2000년 7월 13일 서명된 베트남과 미국의 통상협정(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Việt Nam - Hoa Kỳ)이다. 7개 장과 부록으로 구성된 베트남-미국 통상협정은 최혜국원칙(MFN)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교역, 지식소유권, 서비스교역, 투자관계, 양국 국민과 법인의 경영활동을 유리하게 만드는 내용 등 통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1993년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증진 및 보호에 관한 양자협정을 체결하였고,[27] 1994년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에

24) Pham Diem,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Vietnam, State and Law Institute of Vietnam, 2013,
25) Nguyễn Bá Diến, *Ibid*, tr. 67.
26) Nguyễn Bá Diến, Giáo trình Tư pháp Quốc tế, NXB ĐHQG Hà Nội, 2013, tr. 63.
27)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는 한·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국제사법의 영역에서 베트남이 가입한 중요한 다자조약으로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협약(2013년 베트남 가입)과 헤이그입양협약(2012년 베트남 가입)[28]이 있으며, 헤이그아동탈취조약[29]에는 미가입 상태이다. 그 외 관련 조약으로는 1883년 공업소유권에 관한 파리협약(1981년 베트남 가입),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1981년 베트남 가입), 특허협력조약(PCT, 1993년 베트남 가입), 국제투자보증기구설립협약(MIGA, 1994년 베트남 가입),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1958년 뉴욕협약(1995년 베트남 가입) 등이 있다.

나. 국제관습

국제관습은 국내법이 그 적용을 규정하거나 국제조약에서 관련국에 의해 그 적용이 규정되거나 국제사법관계에 참여하는 주체에 의해 그 적용이 합의된 경우에, 그 국제관습의 적용 또는 적용의 효과가 각 당사자의 법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국제사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30] 대표적인 국제관습으로는 INCOTERMS나 신용장통일규칙 등이 있다.

베트남최고인민법원도 국제관습의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즉 베트남최고인민법원은 인도 해역에서 침몰한 선박의 화물에 관련된 보험분쟁에서 국제통례(thông lệ quốc tế)를 적용하였다. 판결문에서 "전부 손실된 밀가루 화물에 대한 Bảo Minh 보험의 책임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손실이 발생한 시점에서 누가 보험의 목적에 권리와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 후, 누가 수익자인지에 관하여 "국제통례에 따르면 화물을 결정하는 증서의 보유자"라고 판시하였다.[31]

II. 베트남 국제사법의 연혁

1. 1995년 민법 제정 이전의 국제사법

1995년 베트남 민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다양한 법과 법령을 통해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를 규율해 왔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luật)과 법령(pháp lệnh)으로는,[32] 1986년 혼인과 가족법(Luật hôn nhân và

28) 국제입양에 있어서의 자녀보호와 협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협약(Hague Convention of 29 May 199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한국은 동협약에 2011년 서명하였으나 아직 미가입상태이다.

29)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1980년 10월 25일 헤이그협약(Hague Convention of 25 October 1980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한국은 2013년 동 협약에 가입하였다.

30) Nguyễn Bá Diến, *Ibid*, tr. 66.

31) 2002년 12월 26일자 01/2002/HĐTP-KT호 결정(quyết định số 01/2002/HĐTP-KT ngày 26/12/2002, Bành Quốc Tuấn, Tư pháp Quốc tế, NXB Lao động-Xã hội, 2013, 79면에서 재인용).

32) 법(luật)은 국회가 제정하고, 법령(pháp lệnh)은 국회 상무위원회가 국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제정한다. 베트남의 법규범체계에 대해서는 이재열, 베트남 법규규범문서 법제에 관한 소고, 2012년도 통합법제연구보고서, 법제처, 2012. 73면 이하 참조.

gia đình), 1993년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과 가족에 관한 법령, 1992년 베트남에서의 외국인의 출입국・거주・왕래에 관한 법령, 1991년 민사계약법령, 1994년 베트남 내 토지 임대 외국단체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령, 1990년 항해법, 1991년 베트남 민용항공법, 1994년 저작권 보호법령, 1989년 공업소유권 보호법령, 1988년 외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의 기술이전법령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법규범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관한 명확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2. 1995년 민법상의 국제사법 규정

1995년 베트남 민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대립되었다고 한다.[33]

첫 번째 견해는 민법전 안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관한 독립된 편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이다. 이 의견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는 모두 국제사법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뿐만 아니라 경영・상거래・민사소송・仲裁(trọng tài) 등도 포함하는 별개의 단일법(가칭 '베트남국제사법에 관한 법률' : Luật về tư pháp quốc tế Việt Nam)으로 규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의견은 민법은 순수한 민사관계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며, 경영이나 노동 등의 관계는 민법이 규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두 번째 견해는 민법으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를 규율할 필요는 있으나 민법 내에 독립된 편을 둘 필요는 없고, 민법의 각 편의 매 장에 해당 규정들을 삽입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견해는 민법으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를 규율할 필요가 있고, 민법 내에 독립된 편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견해들 가운데, 당시의 베트남 입법실정에 가장 부합했던 세 번째 견해에 따라 1995년 민법 내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독립된 편을 두게 되었다. 즉, 제7편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라는 표제의 독립된 편을 두고, 제826조 내지 제838조, 13개 조문이 규정되었는데, 그 중 4개 조는 총칙에 속하고, 9개 조는 각칙에 속하였다.[34] 특히 제7편의 규정들 가운데에는 상속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가족관계(혼인과 가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혼인과 가족관계를 민법이 아닌 '혼인과 가족법'이라는 독립된 법으로 규율하는 베트남 법제상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5년 민법 제7편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관한 개념 규정을 두고 있다. 즉, 1995년 민법 제826조는 "이 법에서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33) 입법과정에 대해서는 Hoàng Thế Liên, Bình luận Khoa học Bộ Luật Dân sự năm 2005(tập Ⅲ), NXB Chính trị Quốc gia, 2013, tr. 530-531 참조.

34) 1995년 베트남 민법의 구조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재열, 베트남 민법의 성립과 구조, 아시아법제연구, 2005. 3, 162면 이하 참조.

민사관계란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참가하거나 그 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을 위한 근거가 외국에서 발생 또는 그 관계에 관련된 재산이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민사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2005년 개정 민법상의 국제사법 규정

2005년 개정 민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의 규율체제에 관하여 1995년 민법과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라는 표제하에 독립된 편(제7편)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제758조 내지 제777조, 총 20개 조를 규정하여 규정의 수도 증가했고, 기존 규정의 내용도 개정되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있어서 2005년 민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의 개념(제758조), 외국인인 개인의 민사권리능력(제761조), 재산소유권(제766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정상속 및 유언상속(제767조・제768조), 민사계약(770조) 등이다.

2005년 민법전과 함께 국제사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다수의 법률이 공표・시행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법은 민사소송법(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năm 2004, 2011),[35] 혼인과 가족법(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năm 2000, 2010, 2014), 상거래법(Luật thương mại năm 2005), 국적법(Luật quốc tịch năm 2008, 2014), 지식소유권법(Luật sở hữu trí tuệ năm 2005, 2009), 기술이전법(Luật chuyển giao công nghệ năm 2006), 토지법(Luật đất đai năm 2003, 2008, 2009, 2010, 2013)이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민법 제7편의 시행을 위하여 의정(Nghị định, Decree)[36]을 제정・시행하고 있다.[37]

4. 2015년 민법 개정안

베트남은 현재 2005년 민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1월 17일 개정 민법의 초안이 발표되었는데, 이 초안은 6개편, 26개장, 7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민법과 비교하면 298개조가 변경되었고, 176개조가 신설되었으며, 147개조가 삭제되었다.

종래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편은 개정안에서도 독립된 편으로 존치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그 편명을, 1995년 민법과 2005년 민법의 편명과는 달리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대한 준거법’으로 변경하였다.[38] 또한 개정안은 편 아

35) 민사소송법은 2004년 제정되어, 2011년 일부 개정되었다.

36) 정부는 법률, 국회의 의결, 국회상무위원회의 법령과 의결, 국가주석의 령과 결정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으로서 의정을 발할 수 있다(이재열, 베트남 법규규범문서 법제에 관한 소고, 2012년도 통합 법제연구보고서, 법제처, 2012. 81면 이하 참조).

37) 2006년 11월 15일자 138/2006/NĐ-CP호 의정(정부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

38) 1995년 민법과 2005년 민법은 각각 제7편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를 규정하였으나 2015년 민법

래 3개의 장을 두고 있다. 즉 일반규정(제24장),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준거법(제25장), 재산 및 人身關係에 대한 준거법(제26장)을 두고 있다.[39]

개정안은 국제사법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을 명시하고, 당사자자치원칙을 확대하고 있다. 거주지라는 표현 대신에 상주지(nơi thường trú)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무관리(thực hiện công việc không có ủy quyền) 및 부당이득(hưởng lợi không có căn cứ pháp luật)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현행 2005년 민법이 적용되는 사안이 존재하고, 개정안이 입법절차 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2005년 민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국제사법 총론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Quan hệ dân sự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의 개념

가. 1995년 민법 소정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의 개념

1995년 민법 제826조는 처음으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의 개념에 대해서 규정하였다. 1995년 민법 소정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란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참가하거나 그 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을 위한 근거가 외국에서 발생 또는 그 관계에 관련된 재산이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민사관계"를 말한다.

나. 2005년 민법 소정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의 개념

2005년 민법 제758조는 큰 틀에서 1995년 민법 제826조를 계승하고 있다. 즉 민사관계 당사자 중 최소 일방이 외국기관・외국단체・외국개인이거나 국외에 정주(định cư)하고 있는 베트남인인 민사관계이거나 또는 각 당사자가 베트남 국민(công dân) 및 단체일지라도 그 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을 위한 근거가 외국법이거나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그 관계에 관련된 재산이 외국에 소재하는 민사관계를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로 규정하고 있다.[40] 그리고 이에 관한 의정(Nghị định)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① 각 참여 당사자 중 최소 일방이 외국의 기관・단체・개인, 외국에 정주한 베트남인인 각 민사관계・혼인과 가족관계・경영관계・상거래관계와 노동관계, ② 각 참여 당사자가 베트남 국민・단체일지라도 그 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의 근거가 외국법에 따르거나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그 관계에 관련된 재산이 외국에 소재하는 각 민사관계・혼인과 가족

개정안은 제5편에서 규정하고 있다.

39) 1995년 민법과 2005년 민법의 제7편 내에는 독립된 장이 없다.

40) 2005년 민법 제758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란 민사관계 당사자 중 최소 일방이 외국기관・외국단체・외국개인이거나 국외에 정주(định cư)하고 있는 베트남인인 민사관계이거나 또는 각 당사자가 베트남 국민(công dân) 및 단체일지라도 그 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을 위한 근거가 외국법이거나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그 관계에 관련된 재산이 외국에 소재하는 민사관계를 말한다.

관계・경영관계・상거래관계와 노동관계로 규정하고 있다.[41]

2005년 민법상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의 개념에 관한 주요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다. 먼저, 주체의 측면에서 민사관계 당사자 중 최소 일방을 외국기관・외국단체[42]・외국개인[43]이거나 국외에 정주(định cư)하고 있는 베트남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1995년 민법이 그 관계의 주체를 외국인 및 외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에 비하여 주체의 범위가 명확해 지고, 특히 외국에 정주하는 베트남인이 포함되었다.[44]

다음으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를 발생시키는 법적 근거에 관하여 베트남 국민 또는 베트남 단체가 당사자인 민사관계이지만 그 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근거가 외국법에 따르거나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그 관계에 관련된 재산이 외국에 소재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45]

한편, 현행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이하 '혼가법')은[46]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해서 2005년 민법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과 가족관계'(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란 참가 당사자의 최소 일방이 외국인 및 외국에 정주한 베트남인인 '혼인과 가족관계'이거나 참가 당사자가 베트남 국민일지라도 그 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근거가 외국법이거나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그 관계에 관련된 재산이 외국에 소재하는 '혼인과 가족관계'를 말한다.[47]

2. 연결점

가. 연결점의 종류

2005년 민법상 법률관계와 준거법을 연결시켜 주는 연결점으로는 국적[48]・거주지[49]・목적물의 소재지(Lex rei sitae)[50]・행위지(Lex loci actus)[51]・주된 활동지[52]

---

41) 2006년 11월 15일자 138/2006/NĐ-CP호 의정(정부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 제3조 제1항 참조. 이 의정에서는 혼인과 가족관계를 민사관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42) 외국기관 및 단체란 베트남 기관 및 단체가 아닌 기관 및 단체로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며, 국제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관 및 국제단체를 포함한다(2006년 11월 15일자 138/2006/NĐ-CP호 의정(정부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 제3조 제4항 참조).

43) 외국인(Người nước ngoài)은 베트남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로, 외국국적자와 무국적자를 포함한다(2006년 11월 15일자 138/2006/NĐ-CP호 의정(정부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 제3조 제2항 참조).

44) 외국정주 베트남인(Người Việt Nam định cư ở nước ngoài)이란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며, 생활하는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계 사람을 말한다(2006년 11월 15일자 138/2006/NĐ-CP호 의정(정부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 제3조 제3항 참조).

45) Hoàng Thế Liên, *Ibid*, tr. 532.

46) 현행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52/2014/QH)은 2014년 6월 19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종래의 2000년 '혼인과 가족법'(22/2000/QH10)은 폐지되었다.

47) 혼가법 제3조 제25항.

48) 2005년 민법 제761조 제1항 참조.

49) 2005년 민법 제760조 제1항 참조.

50) 2005년 민법 제766조 제3항 참조.

등이 있다.

나. 국적(Lex nationalis)

국적은 그 사람이 어떤 국가의 국민(công dân)이거나 또는 어떤 국가의 국민에 속하지 않음을 확정하는 근거로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베트남 국적법(Luật quốc tịch Việt Nam)이 제정・시행되고 있다.[53] 외국인(Người nước ngoài)은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와 무국적자로 구성된다.[54] 즉 1개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 복수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자, 무국적자로 구분된다. 따라서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채 일정한 국가의 영토에 거주하는 개인은 누구나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외국 기관(cơ quan)・단체(tổ chức)란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베트남 기관 및 단체가 아닌 것으로, 국제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관 및 국제단체를 포함한다.[55]

한편, 외국정주 베트남인(Người Việt Nam định cư ở nước ngoài)이란 베트남국민과 외국에 오랜 기간 거주하며 생활하는 베트남계 사람을 말한다. 외국에 정주한 베트남계 사람이란 이미 베트남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출생시 혈통의 원칙에 따라 확정된 국적이 베트남인 사람과 그 자의 子, 孫으로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6]

민법을 포함한 베트남법이 외국인의 국적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무국적자에 대한 적용법은 그 자의 거주지국(nước nơi cư trú)법이다. 만약 무국적자에게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법을 적용한다.[57]

민법을 포함한 베트남법이 외국인의 국적국법을 준거법으로 규정하는 경우, 복수의 외국국적 보유자에 대한 준거법은 그 자가 민사관계발생시점에 국적과 거주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법이다. 만약 그 자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어느 일국에 거주하지 않으면 국적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한다.[58]

불통일국가의 법적용을 선택 또는 원용한 경우 당사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체계의 적용요구권을 갖는다.[59]

---

51) 2005년 민법 제770조 제1항 참조.
52) 2005년 민법 제772조 참조.
53) 베트남 국적법은 1998년 제정되었으며, 2008년 개정되었다. 2008년 개정 베트남 국적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54)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관한 민법의 각 규정의 시행을 위한 정부의 세부규정에 관한 2006년 11월 15일자 138/2006/NĐ-CP호 의정(Nghị định) 제3조 제2항
55)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관한 민법의 각 규정의 시행을 위한 정부의 세부규정에 관한 2006년 11월 15일자 138/2006/NĐ-CP호 의정(Nghị định) 제3조 제4항
56)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관한 민법의 각 규정의 시행을 위한 정부의 세부규정에 관한 2006년 11월 15일자 138/2006/NĐ-CP호 의정(Nghị định) 제3조 제3항
57) 2005년 민법 제760조 제1항 참조.
58) 2005년 민법 제760조 제2항 참조.
59) 2006년 11월 15일자 138/2006/NĐ-CP호 의정(정부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 제4조 제3항 참조.

한편, 무국적자, 복수의 외국국적 보유자에 대한 법적용의 경우 또는 불통일국가의 법적용의 경우, 당사자는 적용이 요구되는 법체계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자신의 밀접한 관계를 베트남의 관할 기관에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당사자가 해당 법체계와 자신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밀접한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베트남법이 적용된다.[60]

다. 거주지(Lex domicilii)

2005년 민법은 거주지를 연결점으로 규정하고 있다.[61] 개인의 居住地(nơi cư trú)는 그 자가 상시(thường xuyên) 생활하는 장소이다.[62] 한편 2006년 거주법(Luật cư trú)은 '개인의 거주지는 그 자가 상시 생활하는 합법적인 장소'로서 常住地(nơi thường trú) 또는 暫住地(nơi tạm trú)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3] 만약 상시 생활하는 장소가 확정될 수 없는 경우 거주지는 그 자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4. 기타 국제사법 총론적 문제

가. 법률관계의 성질결정(định danh)

(1) 법률관계 성질결정 일반

베트남 국제사법 문헌상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에 관한 학설로는 법정지법설(Lex fori), 준거법설(Lex causae), 독립된 개념에 따른 성질결정설[64]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이 가운데 법정지법설이 가장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베트남 법원도 법정지법(Luật tòa án)설에 입각하여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에 베트남법 규정을 적용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65] 예를 들어 夫婦인 甲(한국 국적)과 乙(베트남 국적) 사이의 금전대차관련 계약의 분쟁에서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베트남법을 적용하였다.[66]

(2) 제소시효(thời hiệu khởi kiện)의 준거법

민법전 제777조 제소시효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대한 제소시효는 당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국가의 법에 따라 확정된다.

---

60) 2006년 11월 15일자 138/2006/NĐ-CP호 의정(정부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 제5조 참조.

61) 예를 들어 2005년 민법 제760조 제1항.

62) 2005년 민법 제52조 참조.

63) 상주지란 국민이 상주등기를 하고, 상시·안정적이며 일정한 장소에서 기한없이 생활하는 곳을 말하며, 잠주지란 국민이 잠주등기를 하고, 상주등기지 이외의 장소에서 생활하는 곳을 말한다(2006년 거주법 제12조 제1항 참조).

64) 우리 문헌상의 국제사법 자체설로 이해된다.

65) Bùi thị Thu, Giáo trình Tư pháp Quốc tế, NXB Giáo dục Việt Nam, 2012, tr. 160.

66) 2007년 3월 28일, 503/2007/DS-ST호 판결(Bản án số 503/2007/DS-ST ngày 28/3/2007 của Tòa án nhân dân Thành phố Hồ Chí Minh : Bùi thị Thu, *Ibid,* 160면에서 재인용).

이 조항은 법률 주체의 권익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소시효에 대한 법적용원칙을 2005년 민법에서 신설된 것이다. 제소시효[67]란 법률규정에 의한 시한의 만료시 주체가 민사소송제소권(quyền khởi kiện vụ án dân sự) 및 민사처리요구권(quyền yêu cầu giải quyết việc dân sự)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를 말한다.[68] 제777조를 가장 간단하게 풀이하는 방법은 이 조문이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조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으로 제소기한도 실체관계의 일부임을 확인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전 제777조는 제소기한이 당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국가의 법 즉 실체관계의 준거법에 의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반정

베트남 국제사법 문헌은 직접반정(dẫn chiếu ngược) 또는 전정((dẫn chiếu đến pháp luật của nước thứ ba)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69] 민법과 혼인 및 가족법은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이 다시 베트남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베트남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직접반정을 규정하고 있으나,[70] 전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71] 한편 학설은 국제조약에서의 충돌규범과 계약영역에서는 반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72]

다. 불통일국법의 지정

서로 다른 복수의 법률체계가 존재하는 국가의 법적용을 선택 또는 원용한 경우 당사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체계의 적용요구권을 갖는다.[73] 즉 당사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자신과 적용을 요구받은 국가의 법률체계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베트남의 관할기관에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당사자가 자신의 국민의 권리・의무와 요구된 법체계와의 가장 밀접한 관계에 대하여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베트남법이 적용된다.

5. 외국법의 적용

---

67) 민법전 제777조를 재확인하고 있는 2006년 의정 제21조도 마찬가지이다.
68) Hoàng Thế Liên, *Ibid*, tr. 630.
69) 예를 들어 Nguyễn Bá Diến, *Ibid*, 113면 이하; Bành Quốc Tuấn, Tư pháp Quốc tế, NXB Lao động-Xã hội, 2013, 255면 이하; Bùi thị Thu, *Ibid*, 166면 이하 참조.
70) 2005년 민법 제759조 제3항 제2문 및 혼가법 제122조 제2항 제2문 참조.
71) 학설 중에는 전정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Nguyen, Quan Hien, Cross-Border Transactions in Vietnam and the Vietnam-US Bilateral Trade Agreement, 8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Review 159, 2003.
72) Nguyễn Bá Diến, *Ibid*, tr. 114.
73) 2006년 11월 15일자 138/2006/NĐ-CP호 의정(정부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 제4조 제3항 참조.

당사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의 보호와 동시에 국제민사교류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법의 적용을 승인하고 있다. 외국법은 충돌규범이 원용하거나 계약에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때에 적용될 수 있다. 즉, 민법을 포함한 베트남법 또는 베트남이 체약국인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거나 계약의 각 당사자가 외국법의 적용을 합의한 때에는 관련된 문제를 규율하는 외국법체계 전체, 즉 실질법과 충돌규범 모두가 적용되는 것이다.[74]

한편, 관할 사법기관은 충실하게 외국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사건해결을 위하여 외국법은 그 법을 공포한 국가에서와 동일하게 내용이 해석・확정・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법기관은 외국법 내용을 탐지(tìm hiểu)할 책임을 진다. 소송과정에서 각 당사자(bên đương sự)는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에 외국법에 관한 증거의 제출권(quyền đưa ra)을 갖는다. 그러나 적용되는 외국법의 내용확정은 여전히 사법심사기관의 업무이다.[75]

그런데 외국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외국법의 적용 또는 적용의 효과가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76] 외국법 적용제한의 기준으로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법에서 公共秩序留保(bảo lưu trật tự công cộng)는, 판결에 의하여 해당 국가의 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이 국가의 정치・사법・경제・사회에 관한 근본 규범에 위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가의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국내의 충돌규범에 의해 원용되고 있는 외국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외국 법원의 판결의 효력을 승인하지 않을 때에 적용된다. 대부분 국가의 국제사법에 외국법 적용에서 공공질서유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최근 베트남의 법률문서체계에서도 공공질서의 문제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법의 기본원칙(các nguyên tắc cơ bản của pháp luật Việt Nam, fundamental principles of Vietnamese law)'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77] 공공질서유보가 적용되면 외국법은 적용되지 않고 베트남법이 적용된다.[78] 민법 이외에 다른 법에서도 공공질서유보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외국투자활동에 대하여 베트남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과 국제투자관습의 적용이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계약 내에서 외국법과 국제투자관습의 적용을 합의할 수 있다(2005년 투자법 제5조).

Ⅳ. 자연인과 법인의 준거법

1. 자연인의 준거법

74) Nguyễn Bá Diến, *Ibid*, tr. 110.
75) Hoàng Thế Liên, *Ibid*, tr. 546-548.
76) 2005년 민법 제759조 제3항 제1문 참조.
77) Nguyễn Bá Diến, *Ibid*, tr. 111-112.
78) Đỗ Văn Đại・Mai Hồng Quỳ, Tư pháp Quốc tế Việt Nam, NXB Chính trị Quốc gia, 2010, tr. 248.

가. 권리능력

개인의 민사권리능력(năng lực pháp luật dân sự)[79]의 준거법은 그 자의 국적국법이다. 외국인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에서 베트남 국민과 동등한 민사권리능력을 향유한다(민법 제761조).

나. 행위능력

외국인인 개인(cá nhân)의 민사행위능력(năng lực hành vi dân sự)의 준거법은 그 자의 본국법이다. 단, 베트남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민사거래(giao dịch dân sự)[80]를 성립・이행한 경우에 외국인의 민사행위능력은 베트남법에 따라 확정된다(민법 제762조).

한편, 민사행위무능력자・민사행위능력상실자 또는 제한민사행위능력자의 확정은 그 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외국인이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의 민사행위무능력, 민사행위능력 상실, 민사행위능력 제한의 확정은 베트남법에 따른다(민법 제763조).

2. 법인의 준거법

베트남에서 외국법인 국적의 확정은 법인의 주소지나 주된 경영활동지가 아닌, 그 법인의 설립지에 근거한다. 즉, 민법 제765조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민사권리능력에 대한 준거법은 그 법인의 설립지국법이 된다. 그러나 외국법인이 베트남에서 민사거래를 성립・이행하는 경우에 외국법인의 민사권리능력은 베트남법에 따라 확정된다.

79) 원문을 직역하면 민사법률능력으로 번역되는바, 민사법률능력은 우리의 권리능력에 해당한다.
80) 베트남민법상 '민사거래'는 우리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민사계약과 일방적 민사거래(단독행위에 해당함)가 있다.

제3장 베트남법 상 외국적 요소가 있는 재산관계의 준거법

I. 개설

본장에서는 베트남 민법과 관련법 등에 의거하여 물권, 채권 및 상사관계의 준거법결정기준을 연구한다. 민사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베트남 국제사법으로는 2005년 민법에서의 제766조(재산소유권), 제769조(민사계약), 제770조(민사계약의 형식), 제771조(격지자간의 민사계약의 체결), 제772조(일방적 민사거래), 제773조(계약외 손해배상), 제774조(외국적 요소가 있는 저작권), 제775조(외국적 요소가 있는 산업재산권 및 품종보호권), 제776조(외국적 요소가 있는 기술이전) 등의 규정이 있으며, 민법 시행령으로는 제4조(베트남 민사법, 조약, 외국법과 국제관행의 적용), 제18조(저작권과 관련권), 제19조(산업재산권과 품종보호권의 보호)등의 규정이 있다.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베트남 상법 제5조(조약, 외국법, 국제상사관행의 적용), 해사법전 제3조(법의 충돌의 경우에 법적용의 원칙)·제4조(계약 합의의 권리), 민간항공법 제4조(사법적 충돌에서 법적용의 원칙)·제13조(항공기 국적의 등록), 기업법 제3조(기업법, 외국조약과 관련법의 적용), 유통증권법 제6조(외국적 요소가 있는 유통증권 관련 국제조약과 국제상사관행의 적용)등이 민사관계의 준거법을 결정하는데 관련되는 규정이다.

II. 물권의 준거법

1. 재산소재지법 원칙(Lex reisitae)

베트남 민법은 재산소유권 등의 준거법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66조[81]). 동산·부동산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재산이 있는 장소에 따라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서의 재산소유권의 확정을 규정하고 있다. 재산소유권의 성립·이행·변경·소멸 및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내용은 **그 재산의 소재지국의 법**[82]에 따라 확정된다.

---

81) Article 766.- Property ownership rights
1. The establishment, implementation, alteration and termination of property ownership rights and the contents of such rights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such property is located, except for the cases specified in Clauses 2 and 4 of this Article.
2. The ownership rights to movable property on the way of transportation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law of the country of destination,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3. The differentiation between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such property is located.
4. The determination of the ownership rights to civil aircraft and sea-going vessels in Vietnam must comply with the law on civil aviation and the maritime law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이하 베트남 2005년 민법 영문본은 베트남 정부 법률 사이트:
<http://moj.gov.vn/vbpq/en/Lists/Vn%20bn%20php%20lut/View_Detail.aspx?ItemID=6595>에서 인용함.

재산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의 구별에 대한 준거법도 재산 소재지국법이 된다 할 것이다.[83]

2. 예외- 운송중인 동산의 준거법

운송중인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다른 합의가 없는 한, 동산의 이동하는 **목적지국법**이 준거법이다.[84] 대부분 국가의 국제사법은 물권에 관한 한 당사자자치를 제한하나 배트남 국제사법은 운송중인 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준거법에 관하여 당사자가 준거법합의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자치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해사법전에서는 항행중인 선박에 적재된 재산의 소유권은 선적국법에 의한다는 특칙이 있다.[85]

3. 운송수단(민간항공기 및 선박)의 소유권 귀속

민간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소유권의 확정은 베트남 민간항공법과 해사법전상의 국제사법규정에 따라야 한다.[86]

4. 지식재산권의 준거법

가. 개설

민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저작권(제774조)・외국적 요소가 있는 산업재산권과 품종보호권(제775조)・외국적 요소가 있는 기술이전(제776조)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

82) 베트남 문헌은 재산소재지법 원칙의 적용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재산소재지국의 이익존중・공공질서 보호와 자국 영토상의 사람과 재산에 대한 주권 실시, ② 재산에 대한 권리실현에 있어서 재산 소유권자의 이익 보호, ③ 재산에 대한 소유권 관련 분쟁에 있어서 소유권자의 소유권 보호에 유리한 조건 조성과 분쟁대상 확정에 있어서의 분쟁해결기관의 용이성, ④ 법적 근거는 없으나 선의・무과실의 재산점유자의 이익보호. 재산소재지법주의는 다음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소유관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 1) 지식소유권의 대상에 대한 소유관계, 2) 외국법인의 해산시 그 법인의 재산관계, 3) 외국의 국가재산에 관련된 재산관계, 4) 국유화에 관한 법의 대상에 관련된 재산관계 등. Nguyễn Bá Diến, Giáo trình Tư pháp Quốc tế, NXB ĐHQG Hà Nội, 2013, tr. 167-168.

83) 베트남 문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국제사법학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원칙의 하나는 동산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어떤 국가의 법에 기초하여 발생되었으나 그 재산이 다른 나라로 이전된 경우 소유권자의 소유권은 여전히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와 내용은 다수의 각국 법 규정에 따라 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어떤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수중에 넣었으나 그 자가 재산을 합법적으로 베트남에 가지고 온 경우 그 개인의 소유권은 여전히 베트남법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나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와 내용은 재산소재지법인 베트남법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Nguyễn Bá Diến, Giáo trình Tư pháp Quốc tế, NXB ĐHQG Hà Nội, 2013, tr. 171.

84) 한국 국제사법 제22조에서는 이동중의 물건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목적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85)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상사관계의 준거법에서 설명함.
86) 이점에 관하여는 본 보고서 상사관계의 준거법에서 설명함.

다. 그러나 2015년 민법 개정안에서는 이들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는 현행 민법 제6편(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전체가 민법 개정안에서 삭제된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저작권의 준거법

가장 먼저 베트남에서 공표되었거나 또는 베트남에서 일정한 형식하에 창작 및 표현된 작품에 대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저작권은 베트남법과 베트남이 체약국인 조약의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87][88] 베트남은 1976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하였고 2004년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89]과 2006년 통신위성 송신 프로그램 신호 배분에 관한 브뤼셀협약[90]에 가입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구속을 받으며, 베트남 관련 법규로는 지식재산권법[91]과 지식재산권법 수정 및 보충법[92]과 2005년 민법

87) 2005년 민법 제774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저작권
Article 775.-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the rights to plant varieties, which involve foreign elements
Industrial property rights or the rights to plant varieties of foreign individuals or legal persons to the objects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or objects of the rights to plant varieties that have been granted protection titles or recognized by the Vietnamese State shall be protect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law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nd treaties to which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s a contracting party.

88) Decree NO: 138/2006/ND-CP(이하 '2006년 민법 시행령') 제18조
민법 시행령에서는 실질법적인 논의로서 외국인과 외국조직의 저작권은 민법 제736조~제743조 규정, 지식재산권에 관한 관련 규정, 베트남 관련 법률문서 및 베트남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보호되며, 외국인과 외국조직의 저작권 관련 권리는 민법 제774조~제749조의 규정, 지식재산권에 관한 관련 법규정과 다른 베트남 법률 규정 및 베트남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보호된다.
원문은 <file:///C:/Users/Jong%20Kyu/Downloads/138_2006_ND-CP_80552%20(2).pdf>에서 인용함.
Article 18.-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1. The copyright of foreign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is protected in Vietnam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736 thru Article 743 of the Civil Code, relevant provisions of the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relevant legal documents of Vietnam and treaties to which Vietnam is a contracting party.
2. Copyright-related rights of foreign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are protected in Vietnam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744 thru Article 749 of the Civil Code, relevant provisions of the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Vietnam and treaties to which Vietnam is a contracting party

89)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886년 9월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협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6년에 가입하였다.
Berne Convention: Article 5.
(1) Authors shall enjoy, in respect of works for which they are protected under this Convention, in countries of the Union other than the country of origin, the rights which their respective laws do now or may hereafter grant to their nationals, as well as the rights specially granted by this Convention.
(2) The enjoyment and the exercise of these rights shall not be subject to any formality; such enjoyment and such exercise shall be independent of the existence of protection in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work. Consequently, apart from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extent of protection, as well as the means of redress afforded to the author to protect his rights, shall be governed exclusively by the laws of the country where protection is claimed.

90) Brussels 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91) Law No. 50/2005/QH11 of November 29, 2005, on Intellectual Property (promulgated by the Order No. 28/2005/L-CTN of December 12, 2005, of the Presid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92) Law No. 36/2009/QH12 of June 19, 2009, 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제744조~제749조가 있다.

다. 산업재산권[93] 및 품종보호권[94]의 준거법

베트남으로부터 보호 또는 공인증서를 발급받은, 공업소유권의 대상 및 품종에 관한 권리의 대상에 대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산업소유권 및 품종보호권은 베트남법과 베트남이 체약국인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95] 베트남에서 외국인과 외국 법인의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는 민법[96], 지식재산권에 관한 관련 법 규정, 다른 베트남의 관련 법률문서, 베트남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97] 베트남은 1949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규율하는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협정인 마드리드 협정(1939년)과 마드리드 의정서(2006년), 2006년 국제신품종보호동맹(UPOV)[98]에 가입하였으므로 본 국제조약의 규정에 구속될 것이다.

베트남 민법이나 지식재산권법이 지식재산권의 준거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은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99]에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등록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준거법은 베트남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III. 채권의 준거법

1. 개설

베트남 민법상 채권의 준거법으로는 계약 등 거래의 준거법과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는 비계약적 채무의 준거법으로 나눌 수 있다. 계약 등 거래의 준거법은 민법 제769조(민사계약), 제770조(민사계약의 방식), 제771조(비대면 민사계약의 체결), 제772조(일방적 민사거래)의 규정이 있으며, 비계약적 채무의 준거법은 제773조(계약외 손해배상)에서 규정하고 있다.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promulgated by the Order No. 12/2009/L-CTN of June 29, 2009 of the Presid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93) 베트남 법전 원문에서는 공업소유권(quyền sở hữu công nghiệp)이라고 한다.

94) 베트남 법전 원문에서는 종묘(種苗)에 관한 권리(quyền đối với giống cây trồng)이라고 한다.

95) 2005년 민법 제775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산업재산권과 품종보호권

Article 775.-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the rights to plant varieties, which involve foreign elements Industrial property rights or the rights to plant varieties of foreign individuals or legal persons to the objects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or objects of the rights to plant varieties that have been granted protection titles or recognized by the Vietnamese State shall be protect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law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nd treaties to which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s a contracting party.

96) 2005년 민법 제750조~제753조 규정,

97) 2006년 민법시행령 제19조

98)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99) 속지주의라 함은 그 나라(영역)안의 모든 사람의 권리관계는 그 사람의 국적에 관계없이 그 나라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을 말한다.

1995년 민법 제정시 베트남에서의 계약의 유형은 민사계약, 경제계약, 상사계약으로 나뉘어 있었다.[100] 민사계약은 당사자의 일반 생활 및 소비에 관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으로 베트남 민법전(Civil Code)에 의해 규율되었다. 민사 계약은 서면계약, 구두 계약, 특정한 행위의 수행으로 입증된 계약이어야 공식적으로 유효하였으나, 특정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되어야 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심지어 등록까지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101] 두 번째는 경제계약인데 경제계약에 관한 법령[102]에 의해 규율되었다. 경제 계약은 상업적인 목적, 물품과 용역의 교환의 목적, 연구 목적, 과학기술지식의 적용 목적, 기타 상업적 행위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경제계약은 민사계약보다 유효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준을 요구되었다. 계약은 반드시 서면 또는 문서의 교환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그 문서는 양당사자의 법률대리인에 의해서 또는 일방의 법률대리인과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한 개인사이에서 행하여져야 하였다. 세 번째는 상사계약은 상법(Commercial Law)에 의하여 규율되는 물품구매계약, 위임절차계약(process agent contracts), 중개인 계약, 구매대행계약, 운송계약, 물품광고계약, 물품전시계약 등을 상사계약의 예로 들 수 있으며, 상인간 계약서에 서명하였을 경우 공식적으로 유효하였다.[103] 1995년 제정된 베트남 민법은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하나에 불과하였으며, 다른 특별법과 병렬적 지위에 있어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이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뿐이었다.[104]

2005년 민법은 민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할 뿐 아니라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사거래관계 그리고 노동관계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2005년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사계약과 경제계약의 구별이 없어졌다.[105] 상법으로부터 경제계약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고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전의 계약에 관한 규정은 민사계약뿐만 아니라 상사계약, 근로계약 및 기타 계약에도 적용되게 되었다.[106]

아래에서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 중 계약에 대한 준거법과 비계약적 채무의 준거법에 대하여 민법 및 관련규정을 통해 검토한다.

2. 계약 등 거래의 준거법

가. 계약준거법 합의의 자유(당사자 자치)와 제한

100) Nguyen, Quan Hien, "Cross-Border Transactions in Vietnam and the Vietnam-US Bilateral Trade Agreement",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59, 2003, <http://www.austlii.edu.au/au/journals/IntTBLawRw/2003/6.html>에서 인용함.
1995년 베트남 민법에 대한 개관은 이재열, "베트남 민법상 계약에 관한 소고,-매개계약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에서 참고함.

101) *Ibid,* 1995년 구민법 제400조 제2항

102) Ordinance on Economic Contract by State Council, 1989년 9월 25일

103) Nguyen, *op. cit. p.5.*

104) 2005년 민법개정과 관련하여 이준현, "2005년 베트남 민법 개정과 그 의의", 「비교법연구」, 법조, 2009. 263~264면 참고함.

105) Vietnam – amended Civil Code, Freshfield Bruckhaus Deringer, Feb. 2006. p.1

106) 2005년 민법 제1조.

(1) 법령상의 관련 규정

민법 제759조 제3항 제3문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에서 외국법의 적용을 합의하고, 그 합의가 이 법과 기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법에 위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107] 나아가 민법 시행령 제4조 (베트남 민사법, 조약, 외국법과 국제 관행의 적용)은 "1. 베트남 민법, 조약, 외국법과 국제 관행의 적용은 민법 제759조에 따른다. 2. 민법 제7편과 같은 주제에 관한 특별법에 차이가 있을 경우 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한다.[108]

한편 상법 제5조 (조약 외국법 국제 상사 관행의 적용)은 "1. 베트남이 계약당사자인 조약에서 외국법 또는 국제 상사관행이 적용된다고 하는 경우 또는 본 법과 다른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상사계약의 당사자는 만일 외국법이나 국제 상사관행이 베트남법의 기본 원칙과 위배되지 않는다면 외국법 또는 국제상사관행을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09]

그리고 해사법전 제4조 (계약 합의의 권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해사에 관한 계약 당사자는 본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적어도 외국 조직 또는 외국인이 일방인 경우에 해사에 관한 계약 당사자는 계약관계에 외국법이나 국제해사관습의 적용을 합의할 수 있다.
3. 본 법에서 규정되거나 계약에서 당사자에 합의되면 외국법은 베트남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지 않으면 선박에 관한 계약관계에 베트남에서 적용될 수 있다.[110]

---

107) 원문은 아래와 같다.
Foreign laws shall also apply in cases where the parties have so agreed upon in contracts, if such agreement is not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this Code and other legal documents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108) 원문은 아래와 같다.
Article 4.- Application of the civil law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treaties, foreign laws and international practice
1. The application of the civil law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treaties, foreign laws and international practice shall comply with Article 759 of the Civil Code.
2. In case of disparities between the provisions of Part VII of the Civil Code and those of a specialized law regarding the same contents, the provisions of that specialized law shall be applied.

109) Article 5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treaties, foreign law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
1. Where an international treaty of which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s a member contains provisions for the application of foreign law,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 or other provisions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Law, the provisions of such international treaty shall apply.
2. Parties to a commercial transaction with a foreign element may agree to apply foreign law or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 if such foreign law or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 is not contrary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law of Vietnam.
이하 베트남 상법은 아래 인터넷 주소에서 인용함
<http://vipatco.vn/uploads/file/Luat%20tieng%20anh/9_%20Commercial%20Law%202005.pdf>

110) 원문은 다음과 같다.

(2) 일반원칙

위 베트남 민법 제759조 제3항 제3문, 상법 제5조 및 해사법전 제4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트남법상 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외국법과 국제 관행 내지 관습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가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할 수 없는 많은 예외가 존재하므로 베트남과 섭외적 거래를 하는 외국법인으로서는 준거법에 관하여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2015년 민법 개정안은 계약에 관한 규정에서 각 당사자는 계약에 대한 준거법 선택을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강조하였다.[111] 공공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선택한 관습은 외국적 민사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당사자가 관습을 준거규정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112][113]

(3) 예외

(가) 베트남법에 위배되었을 경우

베트남 민법상 계약당사자가 외국법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합의하였을 경우 그 합의가 **베트남 민법과 다른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당해 외국법이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그 합의가 베트남 민법과 다른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란 어떤 것인지 불명확하다. 외국기업의 입장으로선 그 합의가 베트남 법과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법을 찾아보아야 하는 수고가 생길 것이며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도 법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입법이라 할 것이다. 2015년 민법 개정안에서는 외국법 적용이 배척되는 경우를 별개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계약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좀 더 명

Article 4. – Right to reach agreement in contracts

1. Parties to contracts relating to maritime shipping may reach separate agreements, which are not restricted by this Code.
2. Parties to contracts relating to maritime shipping at least one of which is a foreign organization or individual may agree to apply foreign laws or international maritime customs to their contractual relations and the choice of an arbitration or a court in either of their countries or in a third country for settlement of their disputes.
3. If its is provided for in this Code or agreed upon by the parties in their contracts, foreign laws may be applied in Vietnam to contractual relations relating to maritime shipping, provided that such laws do not contravene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Vietnamese law.

이하 베트남 해사법은 아래 인터넷 주소에서 인용함

<http://www.moj.gov.vn/vbpq/en/Lists/Vn%20bn%20php%20lut/View_Detail.aspx?ItemID=5496>

111) 민법 개정안 제706조 제1항

계약관계이서 각 당사자는 계약에 대한 준거법 선택을 합의할 수 있다. 단 제4항(부동산소재지국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한다.

112) 민법 개정안 제69조

각 당사자에 의해 선택된 관습은 그 관습의 적용효과가 공공질서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 각 당사자에 의해 선택된 관습의 적용효과가 공공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베트남법이 적용된다.

113) 현행 상법 제12조에서는 당사자간 과거에 확립된 상행위 관습 적용의 원칙을 베트남법의 근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114]

(나) 베트남법상 기본원칙에 위배되었을 경우

민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법적용상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이 아닌 상법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베트남 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외국적요소를 가진 상사계약의 당사자는 외국법이나 국제관습이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외국법 또는 국제관습을 준거법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베트남 민법과 상법에서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거래에 관한 계약에서 기본원칙에 관하여 두 법의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시행령상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하여 상법상의 기본원칙이 우선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민법과 상법상 규정된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을 살펴본다.

1) 베트남 민법상 일반원칙[115]

---

114) 특히 외국법 적용의 효과가 공공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베트남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외국법 적용의 거부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 내용의 본질에 근거해야 하고 관련있는 국가의 법률·정치·경제체제가 베트남의 법률·정치·경제체제와 다르다는 점에만 근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베트남법원이 합의된 준거법을 무효화시킬 우려는 줄어들 것이다.

민법개정안 제691조 외국법 적용이 배척되는 경우

외국법이 지정되었으나 다음 경우중 1에 속한다면 베트남법이 적용된다.

(1) 외국법 적용의 효과가 공공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외국법 적용의 거부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 내용의 본질에 근거해야 하고 관련있는 국가의 법률·정치·경제체제가 베트남의 법률·정치·경제체제와 다르다는 점에만 근거해서는 안된다.

(2) 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수단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의 내용에 확정될 수 없는 경우

(3) 외국법이 그 민사관계를 규율하지 않는 경우

115) Basic Principles

Article 4 Principle of free and voluntary undertaking and agreement

The law guarantees the freedom to undertake and agree on the establishment of civil rights and obligations if such undertakings and agreements do not breach matters prohibited by law and are not contrary to social ethics.

In civil relations, parties shall be entirely voluntary and no party may force, prohibit, coerce, intimidate or hinder any other party.

All lawful undertakings and agreements shall bind the parties and must be respected by individuals, legal entities and other subjects.

Article 5 Principle of equality

All parties are equal in civil relations and differences in ethnicity, gender, social status, economic position, belief, religion, education and occupation may not be used as reasons for unequal treatment.

Article 6 Principle of goodwill and honesty

In civil relations, parties must act with goodwill and honesty i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ivil rights and obligations and no party may deceive another party.

Article 7 Principle of bearing civil liability

Parties must perform strictly their civil obligations and shall be liable for the failure to perform or the incorrect performance of any such obligations. If a party does not perform its civil obligations voluntarily, it may be compelled to do so by law.

Article 8 Principle of respect for good morals and traditions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ivil rights and obligations must ensure preservation of ethnic identity and shall respect and promote the good customs, practices and traditions, solidarity, mutual

민법 제2장(Chapter II) 제4조에서 제13조까지에서 민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계약 체결・내용결정의 자유(제4조), 평등(불평등 취급금지)의 원칙(제5조), 선의와 정직의 원칙(제6조), 민사책임의 원칙(제7조), 도덕 및 전통존중의 원칙(제8조), 민사권리의 존중과 보호의 원칙(제9조), 국가이익・공공이익・타인의 법적인 권리와 이익의 존중의무(제10조), 법준수의 원칙(제11조), 조정・화해 존중의 원칙(제12조), 민사상 권리와 의무의 확립 기초(제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베트남 상법상 일반원칙[116]

---

support, [the tradition of] each person for the community and the community for each person, and the high moral values of the various ethnic groups living in Vietnam.

Ethnic minorities shall enjoy favourable conditions in their civil relations in order to improve steadily their physical and spiritual life.

Assistance to elderly persons, young children and disabled persons in the implementation of civil rights and obligations shall be encouraged.

Article 9 Principle of respect for and protection of civil rights

1. All civil rights of individuals, legal entities and other subjects shall be respected and shall be protected by law.
2. When the civil rights of a subject are violated, the subject shall have the right to take self-protective measures pursuant to this Code or may request the competent body or organization to:

(a) Recognize the civil rights of the subject;
(b) Order the compulsory termination of the violating act;
(c) Order a public apology or correction;
(d) Order the performance of civil obligations;
(dd) Order compensation for damage.

Article 10 Principle of respect for interests of State, interests of public, and legal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 persons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ivil rights and obligations must not infringe the interests of the State, the interests of the public, or the legal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 persons.

Article 11 Principle of compliance with law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ivil rights and obligations must comply with this Code and other provisions of the law.

Article 12 Principle of conciliation

Conciliation between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law is encouraged in civil relations.

No one may use or threaten to use force when participating in civil relations or in the resolution of civil disputes.

Article 13 Bases for establishing civil rights and obligations

Civil rights and obligations may be established on the following bases:

1. Legal civil transactions.
2. Decisions of a court or other competent State body.
3. Legal events as provided by law.
4. Creation of moral values which are the subject of intellectual property ownership rights.
5. Lawful possession of property.
6. Causing damage through acts contrary to law.
7. Unauthorized performance of acts.
8. Unlawful possession or use of, or deriving benefits from, property.
9. Other bases as provided by law.

116) 베트남 상법 Section 2.
FUNDAMENTAL PRINCIPLES IN COMMERCIAL ACTIVITIES

Article 10.- Principle of traders' equality before law in commercial activities

Traders of all economic sectors are equal before law in commercial activities.

상법에서는 상행위에 있어서 기본 원칙으로서 총칙편 제2장(Section 2.)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상행위법에서 상인들의 평등의 원칙(제10조), 상행위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제11조), 당사자간 과거에 확립된 상행위 관습 적용의 원칙(제12조), 상행위시 일반 상관행 적용의 원칙(제13조), 소비자의 합법적 이익보호의 원칙(제14조), 상행위시 전자정보자료(data message)의 법적유효성 인식의 원칙(제15조)이 규정되어 있다.

(다) 베트남 소재 부동산관련 계약의 경우

베트남 소재 부동산에 관련된 계약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도 **베트남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민법 제769조[117] 제1항에서처럼 계약의 내

Article 11.- Principle of freedom and freewill to agreement in commercial activities

1. Parties have the rights of freedom to reach agreements not in contravention of the provisions of law, fine traditions and customs and social ethics in order to establish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in commercial activities. The State respects and protects such rights.
2. In commercial activities, the parties shall act on their own freewill, and neither party is allowed to impose its own will on, to force, intimidate or obstruct, the other party.

Article 12.- Principle of application of customs in commercial activities pre-established between parties

Except otherwise agreed, the parties shall be regarded as automatically applying customs in commercial activities pre-established between them which they have already known or ought to know, provided that such customs are not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law.

Article 13.- Principle of application of practices in commercial activities

Where it is neither provided for by law nor agreed by the parties, and there exist no customs preestablished between them, commercial practices shall be applied provided that such practices are not contrary to the principles provided for in this Law and the Civil Code

Article 14.- Principle of protection of legitimate interests of consumers

1. Traders conducting commercial activities are obliged to provide consumers with sufficient and truthful information on goods and/or services they trade in or provide an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accuracy of such information.
2. Traders conducting commercial activities must be responsible for the quality and lawfulness of goods and/or services they trade in or provide.

Article 15.- Principle of recognition of legal validity of data messages in commercial activities

In commercial activities, data messages which satisfy all technical conditions and standards provided for by law shall be recognized legally valid as documents.

117) 2005년 민법 제769조 민사계약

1.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의 이행지국의 법에 따라 확정된다.
베트남에서 체결되고 베트남에서 전부가 이행되는 계약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에 따른다.
계약에 이행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이행지 확정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에 따른다.
2. 베트남 소재 부동산에 관련된 계약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에 따른다.

Article 769.- Civil contracts

1.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to a civil contract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contract is performed,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A civil contract entered into and performed entirely in Vietnam must comply with the law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n cases where a civil contract does not specify the place of performance, the determination of the place of performance of the contract must comply with the law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2. Civil contracts relating to immovables in Vietnam must comply with the law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용에 관한 이행지법에 대한 규정과는 달리 제2항에서는 당사자의 합의우선규정을 두지 않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법원에서 베트남 소재 부동산관련 계약은 당사자의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베트남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 계약방식의 경우

민법 제770조에서 계약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체결지법**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검토한다.

나. 계약 내용의 준거법 - 계약이행지법 원칙

(1) 일반원칙

현행 민법은 민사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준거법에 대하여 제769조에서 규정한다. 먼저,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의 이행지국법에 따라 확정된다. 그리고 계약에 이행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계약이행지의 확정은 베트남법에 의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 있어서 목적물 양도의무의 이행지에 관하여 계약당사자는 합의할 수 있으나, 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베트남 민법 제284조가 적용되는데(민법 제433조), 베트남 민법 제284조는 민사의무의 이행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84조에 따르면, 먼저 민사의무의 이행지는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될 수 있다(민법 제284조 제1항). 이 합의가 없는 경우 민사의무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소재지, 민사의무의 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 권리자가 개인일 경우 거주지 또는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이다[118]. 권리자가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거소 또는 본사의 소재지 변경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284조 제2항).

베트남에서 체결되고 베트남에서 전부가 이행되는 계약에는 베트남법이 적용된다.[119] 이 경우에는 준거법합의에 관한 당사자 자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2) 예외

(가)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 제769조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준거법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 법 또는 베트남 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나) 일방적 민사거래[120]의 특칙

일방적 거래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일방적인 거래관계를 이행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118) 지참채무의 원칙.
119) 베트남 민법 제769조 제1항 제2문.
120) 베트남민법상 '일방적 민사거래'는 우리의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의무는 **거주지국 또는 그 당사자의 주된 활동지국의 법**에 따라 확정된다.[121][122] 일방적 민사거래란 민사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발생・변경・소멸시키기 위한 일방 당사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거래로서 단독행위이다.[123] 원칙적으로 일방적 민사거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때 효력을 갖는다. 당사자가 민사 행위능력을 갖출 것, 법률행위의 목적과 내용이 법률・사회도덕에 반하지 않을 것, 법률행위 당사자가 자발적일 것, 법률행위의 형식이 법규정에 부합할 것 등이다.[124]

(다) 부동산의 경우

베트남 소재 부동산에 관련된 계약의 권리・의무의 분쟁에 관해서는 이행지 여부와 상관없이 **베트남법**에 의한다.[125]

(라) 민간항공법의 특칙

민간항공법에서는 계약의 내용에 관해서 **항공기 등록국법**이 비행중의 항공기에서 발생한 법적 관계에 적용된다.[126]

(마) 해사법전의 특칙

용선계약, 선원고용계약, 승객과 수하물의 운송계약은 **선적국법**에 의하여 해결한다.[127] 화물의 운송계약에 관한 법률문제는 화물의 **인도지국법**에 의해 해결한다.[128]

---

121) 2005년 민법 제772조.
In a unilateral transaction relati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y voluntarily exercising the unilateral transaction relation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untry of residence [of such party]** or of **the country where the main activities of such party take place.**

122) 그러나 2015년 민법개정안에서 일방적 민사거래라는 개념 대신 '일방적 법적 행위'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일방적 법적 행위를 이행하는 당사자는 그 행위에 대한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상거소법 또는 법인의 등기지국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민법 개정안 제708조)

123) 2005년 민법 제121조.
124) 2005년 민법 제122조.

125) 2005년 민법 제769조 제2항.
Civil contracts relating to immovables in Vietnam must comply with the law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126) Law on Civil Aviation(2006) Article 5 (1)
1. The laws of the State of Registry shall apply to juridical relations arising from an aircraft in flight~
127) THE VIETNAM MARITIME CODE Article 4(1)
1. Legal relations relating to ownership of property on board seagoing vessels, charterparties, crew employment contracts, contracts of carriage of passengers and luggage, the division of salvage remuneration between the owner and crew of the salving ship, the recovery of property sunk on the high seas or incidents occurring on board seagoing vessels on the high seas,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flag states.
128) 베트남 해사법전 제3조 제4항
4. Legal relations relating to contracts of carriage of cargo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cargo is delivered as contracted.

다. 계약 방식의 준거법 - 계약행위지법(lex contractus) 원칙

(1) 일반원칙

민법 제770조에 의하면 계약의 방식은 계약의 **체결지국법**에 따른다. 외국에서 체결된 계약이 그 국가의 법에 따른 계약의 방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베트남법에 따른 계약의 방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그 외국에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은 베트남에서 인정된다. 다만, 베트남 영토상의 공작물・주택과 기타 부동산 소유권의 성립 또는 이전에 관련된 계약의 방식은 민법 제766조 제1항[129]에 규정된 재산소유권의 성립에 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베트남법에 따른다.[130] 계약방식의 준거법에 대하여는 계약의 내용을 계약당사자가 정하는 당사자 자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 개정안에서는 계약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서 확정된다고 규정하며 체결지법주의를 폐지하였다.[131]

(2) 예외

(가) 격지자간 계약[132]의 경우의 특칙

계약방식의 준거법을 정할 경우 계약체결지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격지자간 민사계약에서의 계약체결지 확정은 **계약청약자인 개인의 거주지 또는 법인의 본점소재지의 법**에 따르며 또한 격지자간 민사계약의 체결시점은 계약청약자가 계약체결의 청약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경우 계약청약자의 국가의 법률에 따라 확정된다.[133] 이는 2005년 민법이 외국적 민사관계의 계약부분에서 신설한 규정이다. 격지자간 민사계약은 현재의 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거래의 증대로 인해 빈번히

---

129) 제766조 제1항 재산소유권
재산소유권의 성립・이행・변경・소멸 및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내용은 그 재산의 소재지국의 법에 따라 확정된다.
Article 766.- Property ownership rights
1. The establishment, implementation, alteration and termination of property ownership rights and the contents of such rights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such property is located, except for the cases specified in Clauses 2 and 4 of this Article.

130) 베트남 민법 제770조.
Article 770.- Forms of civil contract
1. Forms of a contract must comply with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contract is entered into. Where a contract is entered into in a foreign country, which violates the regulations on contractual forms under the law of that country but is not contrary to the contractual form provided for by the law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the form of the contract entered into in the foreign country shall still be recognized in Vietnam.
2. The forms of contract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works or transfer of ownership rights to works, houses and other immovables in the Vietnamese territory must comply with the law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131) 민법 개정안 제707조
(1) 계약의 형식은 그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확정한다.
(2) 계약의 형식이 제1항 규정의 준거법에 따른 계약의 형식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베트남 법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형식에는 부합하는 경우 그 계약의 형식은 베트남에서 공인된다.

132) 베트남 법전 원문에서는 '비대면(非對面(, vắng mặt) 민사계약이라고 한다.

133) 2005년 민법 제771조 참조.

이루어지므로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련 규정이 신설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134]

한편, 청약자가 베트남 기관・단체・개인인 경우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계약체결의 장소와 시기는 베트남의 전자거래법과 기타 관련 법률문서에 따라 확정된다.[135] 민법 개정안에서는 격지자간 계약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계약의 방식에 대하여 그 계약의 준거법으로 확정하는 단일화된 조문을 두고 있다.[136]

(나) 부동산관련계약 방식의 준거법

위 계약 내용의 준거법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영토상의 공작물・주택과 기타 부동산 소유권의 성립 또는 이전에 관련된 계약의 방식은 **베트남법**에 따른다.[137] 그러나 민법개정안에서는 이 조항도 격지자간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삭제하였다.[138]

라. 기술이전계약의 준거법

2005년 민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기술이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139] 베트남 개인 및 법인과 외국인 및 외국법인 간의 기술이전 및 외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의 기술이전과 베트남으로부터 외국으로의 기술이전은, 적용 또는 그 적용의 효과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140], 기술이전에 관한 베트남의 기타 법률문서 및 베트남이 체약국인 국제조약 또는 외국법의 규정에 따른다.[141]

---

134) Nguyễn Bá Diến, Giáo trình Tư pháp Quốc tế, NXB ĐHQG Hà Nội, 2013, tr.169-170.

135) 2006년 민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참조.

Article 14.- Places and time for entry into a contract in absentia

1. The application of the law on the place and time for entry into a contract in absentia shall comply with Article 771 of the Civil Code.
2. The place and time for entry into a contract via electronic means to which the offering party is a Vietnamese agency, organization or individual ar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n E-Transactions and relevant legal documents of Vietnam.

136) 2015년 민법개정안 제707조.

137) 2005년 민법 제770조 참조.

138) 2015년 민법개정안 제707조.

139) 2005년 민법 제776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기술이전

Article 776.- Technology transfer involving foreign elements

Technology transfer between Vietnamese individuals or legal persons and foreign individuals or legal persons, and technology transfer from any foreign country into Vietnam and from Vietnam to any foreign country, must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de and other legal documents of Vietnam on techno-logy transfer and with treaties to which Vietnam is a contracting party or the laws of the foreign countries, if the application or the consequence thereof is not contrary to the basic principles of the law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140) 2005년 민법 제754조~제757조

141) 그러나 민법 개정안에서는 이들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는 현행 민법 제6편(산업소유권과 기술이전) 전체가 민법 개정안에서 삭제된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비계약적 채무의 준거법

가. 계약외 손해배상의 준거법

(1) 원칙

베트남 민법 제773조에서 계약외 손해배상의 준거법은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지국법 또는 가해행위의 실질적 효과 발생지국법**이라고 규정한다.[142] 그러나 손해야기행위지가 확정될 수 없을 때 가해행위의 실질적 효과 발생지국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해하여야 한다.[143] 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다른 격지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원인발생지와 결과발생지의 양자를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민법 개정안에서는 계약 손해배상에 대한 준거법을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해행위의 효과 발생지국이라고 규정한다.[144]

(2) 예외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가 베트남 영토 외에서 발생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베트남 국민 또는 베트남 법인인 경우에는 **베트남법**을 적용한다.[145] 우리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상의 불법행위와 계약상의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종속적 연결에 의한 해결방식에 대한 조문은 없다.

나. 부당이득 및 사무관리의 준거법

2005년 민법에는 부당이득과 사무관리의 준거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2015년 민법 개정안은 부당이득과 사무관리의 준거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146] 공동해손의 법적 성질을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로 이해하는 견해에 따른다면 베트남

---

142) Article 773.- Compensation for damage outside contract

1. Compensation for damage outside contract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ct causing such damage takes place or where the actual consequences of such act arise.

143) Hoàng Thế Liên, Bình luận Khoa học Bộ Luật Dân sự năm 2005(tập Ⅲ), NXB Chính trị Quốc gia, 2013, tr. 596.

144) 민법 개정안 제710조

1. 각 당사자는 계약외 손해배상에 대한 준거법의 선택을 합의할 수 있다. 단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준거법은 가해행위의 효과 발생지국법이다.
효과발생지가 확정될 수 없는 경우 계약외 손해배상은 가해행위지국의 법에 따라 적용된다.
2.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국가에, 개인의 경우 상주지를, 법인의 경우 등기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준거법은 그 국가의 법이다.

145) 민법 제773조 제3항.

3. In cases where the act causing damage occurs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nd the person who causes the damage and the victim are both Vietnamese citizens or legal persons, the law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shall apply.

146) 민법 개정안 제709조 법적 근거 없는 이익의 향유와 위임없는 사무의 이행
① 법적 근거 없는 이익의 향유가 있는 국가의 법이 법적 근거 없는 이익의 향유에 적용된다.
② 위임없는 사무의 이행지국법이 위임없는 사무의 이행에 적용된다.

해사법전[147]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 공동해손에 관련한 법률관계는 공동해손이 발생한 직후 항행중인 선박이 정박한 곳의 실정법에 의해 해결한다고 규정한다.

IV. 상사관계의 준거법

1. 개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은 민사관계뿐만이 아니라 상사계약, 노동계약 등 모든 계약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민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상사관계법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상사관계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것이다.

상사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제 상사관행을 계약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다. 베트남 상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상사계약의 당사자는 외국법이나 국제 상사관행이 베트남법의 기본원칙과 위배되지 않는다면 외국법 또는 국제상사관행을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여신기관법[148] 및 유통증권법[149]에서도 국제관행에 대한 합의를 계약당사자의 준거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아래에서는 베트남 상사관련 특별법의 내용에 대하여 준거법 규정을 검토한다.

2. 회사관계의 준거법

베트남 일반기업을 규율하는 기업법은 우리 회사법과 같이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규정, 즉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조합과 단독회사의 설립과 지배구조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율한다.[150] 기업법은 모든 경제적 요소를 포함하는 기업의 설립, 조직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을 규율하는데, 본질상 기업의 설립, 조직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른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그 법이 우선하다고 규정한다.[151]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이 본 법과 차이점이 있는 경우 그 조약이 우선한다고 규정한다.[152]

---

147) 베트남 해사법전(THE VIETNAM MARITIME CODE) 제2항
공동해손에 관련한 법률관계는 공동해손이 발생한 직후 항행중인 선박이 정박한 곳의 실정법에 의해 해결한다.
2. Legal relations relating to general average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in force in the country of the place where the seagoing vessel calls at immediately after such general average occurs

148) Law on Credit Institutions(No. 47/2010/QH12)

149) LAW ON NEGOTIABLE INSTRUMENTS 49/2005/QH11, 우리나라의 어음수표법에 해당한다.

150) Enterprise law(2005) This Law sets forth provisions on the establish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operation of limited liability company, share-holding company, partnership and sole proprietorship (hereinafter referred to enterprises) belonging to all economic components; sets forth provisions on corporate group.

151) 여기서 다른 법이 외국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될 수 있으나 다른 법체계에서 외국법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외국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2) Article 3. Application of the Enterprise Law, international treaties and elated Laws
1. Establish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operation of enterprises belonging to all economic

여신기관의 설립,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여신기관법[153]에서 여신기관의 설립, 조직, 운영, 특별 지배, 재조직 및 해산과, 은행산업에 관여하는 외국 여신기관과 다른 외국기관의 해외 은행 지점 및 본사의 설립,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이 있으면 본 법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당사자인 조약이 있으면 그 조약이 우선하며, 은행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조직은 ICC의 상사관행 및 베트남 법에 반하지 않는 상사관행의 적용을 준거법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한다.[154]

3. 유통증권[155]의 준거법

2005년 베트남 유통증권법 제6조[156]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유통증권에 관한 국

---

components are governed by this law and other related laws.

2. In case where there are other laws governing establish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operation of enterprises because of their distinctive nature, those laws will prevail.
3. In case where there are discrepancies between international treaties in which vietnam is a member and this law, those international treaties will prevail.

153) Law on Credit Institutions(No. 47/2010/QH12)
제3조 여신기관의 설립, 조직, 운영, 특별 지배, 재조직 및 해산과 은행산업에 관여하는 외국 여신기관과 다른 외국기관의 해외 은행 지점 및 본사의 설립, 조직, 및 운영은 본 법에 따르도록 한다.

154) Article 3. Application of the Law on Credit Institutions, treaties,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s and relevant laws

1. The establishment, organization, operation, special control, reorganization and dissolution of credit institutions; and the establishment,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foreign bank branches and representative offices of foreign credit institutions and other foreign institutions engaged in banking operations must comply with this Law and other relevant laws.
2. When other relevant laws otherwise provide the establishment, organization, operation, special control, reorganization and dissolution of credit institutions: and the establishment,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foreign bank branches and representative offices of foreign credit institutions and other foreign institutions engaged in banking operations, this Law prevails.
3. When a treaty to which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s a contracting party otherwise provides, that treaty prevails.
4.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engaged in banking operations are entitled to reach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commercial practices, including:

a/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s provid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 Other commercial practices which arc not contrary to the Vietnamese law.

155) 원어로는 양도성증권(Công cụ chuyển nhượng)이라 한다. 여기서는 영문번역본에 의거하여 유통증권이라고 번역하였다. 양도성증권(?)(Công cụ chuyển nhượng)은 일정한 시점 내에 확정된 금액을 조건없이 지급하는 보증 또는 지급의 요구가 기재된 유가증권(giấy tờ có giá)을 말한다.

156) LAW ON NEGOTIABLE INSTRUMENTS 49/2005/QH11

Article 6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s with respect to negotiable instrument relationships involving foreign elements

1. Where an international treaty of which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s a member contains provision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provisions in this Law, the provisions of such international treaty shall prevail.
2. In the case of negotiable instrument relationships involving foreign elements, the parties to the negotiable instrument relationship may agree to apply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s Rules on uniform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and the Uniform Rules on collection,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of the Government.
3. Where a negotiable instrument is issued in Vietnam but is accepted, guaranteed, endorsed, pledged, collected, paid or subject to recourse or legal action in another country, such negotiable instrument must be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Law.
4. Where a negotiable instrument is issued in another country but is accepted, guaranteed, endorsed,

제 조약과 국제 상사관행의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베트남이 당사자인 조약에서 본 법과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 국제조약 규정이 우선한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유통증권관계에서 유통증권의 당사자들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신용장 통일규칙 및 추심통일규칙과 다른 관계되는 국제 상사관행 등 국제상공회의소(ICC)의 규정을 포함한 국제상사관행을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유통증권이 베트남에서 발행되었으나 다른 나라에서 승인, 보증, 배서, 담보설정, 추심, 지급 또는 다른 나라에서 소구 또는 소송제기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어야 한다.[157] 유통증권이 다른 나라에서 발행되었으나 베트남에서 승인, 보증, 배서, 약속, 추심, 지급 또는 다른 나라에서 소구 또는 소송제기의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승인, 보증, 배서, 담보설정, 추심, 지급, 소구 또는 소송이 제기 되어야 한다.[158]

4. 해사관계의 준거법[159]

가. 물권의 준거법

베트남 해사법전은 항행중인 선박에 선적중인 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나 선박 그 자체의 소유권이나 물권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선박의 소유권의 이전은 베트남법의 규정 또는 그 이전이 효력을 가지는 국가의 법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

pledged, collected, paid, or subject to recourse or legal action in Vietnam, the acceptance, guarantee, endorsement, pledge, collection, payment, recourse or initiation of a legal action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Law.

157) 원문번역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양도성증권이 베트남에서 발행되었으나 다른 나라에서의 승인(chấp nhận), 보증(bảo lãnh), 양도(chuyển nhượng), 담보설정(cầm cố), 추심(nhờ thu), 지급(thanh toán), 소구(truy đòi), 소송제기(khởi kiện)의 경우에 양도성증권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어야 한다.

158) 원문번역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양도성 증권이 다른 나라에서 발행되었으나 베트남에서 승인(chấp nhận), 보증(bảo lãnh), 양도(chuyển nhượng), 담보설정(cầm cố), 추심(nhờ thu), 지급(thanh toán), 소구(truy đòi), 소송제기(khởi kiện)의 경우에 승인, 보증, 양도, 담보설정, 추심, 지급, 소구, 소송제기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될 수 있다.

159) 베트남 해사법전 (THE VIETNAM MARITIME CODE) 제3조
Article 3. - Principle of application of laws in case of conflict of laws
1. Legal relations relating to ownership of property on board seagoing vessels, charterparties, crew employment contracts, contracts of carriage of passengers and luggage, the division of salvage remuneration between the owner and crew of the salving ship, the recovery of property sunk on the high seas or incidents occurring on board seagoing vessels on the high seas,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flag states.
2. Legal relations relating to general average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in force in the country of the place where the seagoing vessel calls at immediately after such general average occurs.
3. Legal relations relating to collision, salvage remuneration, or the recovery of property sunk in the internal waters or territorial sea of a country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such country.
Legal relations relating to collisions or salvage operations performed on the high seas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whose arbitration or court is the first to deal with the dispute.
Collisions occurring on the high seas or the internal waters or territorial sea of another country between seagoing vessels of the same nationality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flag state.
4. Legal relations relating to contracts of carriage of cargo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cargo is delivered as contracted.

규정한다.[160] 이 규정의 해석상 선박 소유권 이전의 준거법은 선적국법으로 이해된다.

나. 채권의 준거법

(1) 여객 및 수하물 등의 계약

용선계약, 선원고용계약, 승객과 수하물의 운송계약은 선적국법에 의하여 해결한다.

(2) 화물운송계약

화물의 운송계약에 관한 법률문제는 화물이 계약에서 운송하여야 할 국가의 법에 의해 해결한다.

다. 비계약적 채무

2005년 민법상 국제공해상에서 선박에 의해 가해진 손해의 배상은 **선적국의 법**에 따라 확정된다. 단, 베트남의 해사법전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사법전을 따른다.[161] 다음은 해사법전에서 규정내용이다.

(1) 선내 사고 등의 경우

선주와 구조선박의 선원사이의 해난구조 보상금 분할문제, 공해상에서 침몰한 재산의 회수문제 또는 공해상에서 항해중인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 문제에 관한 법률관계는 선적국법에 의하여 해결한다.

(2) 공동해손 등의 경우

공동해손에 관련한 법률관계는 공동해손이 발생한 직후 항행중인 선박이 정박한 곳의 실정법에 의해 해결한다.

(3) 선박충돌 등의 경우

한 국가내의 내수 또는 영토에서 침몰한 선박충돌, 해난구조, 재산의 회수의 법률관계는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해결한다. 공해상에서 선박충돌, 해난구조의 작업과 관련된 법적문제에 관해서는 분쟁에 관한 중재나 소송이 처음으로 다루어진 국가의 법에 의해 해결한다. 동일한 국적의 항행중인 선박들이 공해 또는 내수 또는 다른

160) Article 32(Transfer of ownership of seagoing vessels) 1.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seagoing vessels must be established in writing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Vietnamese law or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transfer is effected.

161) 민법 제773조 제2항.

2.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n aircraft flying in international airspace or by a sea-going ship sailing in international waters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untry of which such aircraft or ship bears the nationality,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by the maritime or aviation law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나라의 영토내 해역에서 선박충돌이 발생한 경우 **선적국법**에 의하여 해결한다.

5. 항공관계의 준거법

민간항공법은 민간항공에 관한 사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민간항공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 베트남이 당사자인 국제조약과 관련해서는 국제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162] 항공관계법의 준거법에 대한 민간항공법[163]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항공기 등록국법의 원칙

민간항공법에서 항공기 등록국법이 항공기에 관한 권리의 확정에 사용된다고 규정한다. 민간항공법상 베트남 항공기 등록부에 등록된 항공기는 베트남국적을 가지며, 외국인이 소유하더라도 베트남 국민이 임차한 항공기는 베트남 정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될 수 있다. 베트남에 등록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1)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외국에서의 등록이 취소되었을 것, 2) 점유권에 관한 법적 서류가 있을 것, 3) 관련 정부기관에 의해 승인된 기술적 기준에 맞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164]

나. 계약방식의 준거법

계약의 방식의 관해서는 항공기에서 권리에 관하여 계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이

---

162) 베트남은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회의에서 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인 몬트리올 협약(1999)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본 협약에 가입함.(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 삼영사, 2015, p. 577 참고)

163) Article 4 Law application principles in case of juridical conflicts

1. The laws of the State of Registry shall apply to juridical relations arising from an aircraft in flight and shall be used to identify rights in such aircraft

2. The laws of the State where a contract has been signed concerning the rights in aircraft shall be applied to determine the form of the contract.

3. The laws of State where rescue or preservation of an aircraft is carried out shall be applied in respect of remuneration for the rescue or preservation of such aircraft.

4. The laws of the State where an aircraft accident occurs as the result of the collision of aircraft or interference with each other, or caused by the aircraft in flight causing damages to the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shall be applied for the compensation of damages.

164) Civil Aviation Law Article 13 (Registration of aircraft nationality) 2. An aircraft wishing to be registered in VietNam shall satisfy the following conditions:

a) It has not been registered in any other countries or its registration in a foreign country has been canceled;

b) It has legal document of possession;

c) It meets technical standards approved or accepted by the governmental competent authority.

5. An aircraft that is owned by foreign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and that has been leased by Vietnamese nationals or organizations without flight crew shall be registered in VietNam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of VietNam.

7. An aircraft shall bear Vietnamese nationality when it has been entered into the Aircraft Register of Viet Nam. The Ministry of Transport shall issue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계약의 방식을 결정한다.

다. 비계약적 채무의 준거법

2005년 민법상 국제공역 상에서 항공기에 의해 가해진 손해의 배상은 **항공기의 국적국의 법**에 따라 확정된다. 그러나 베트남의 민간항공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65] 민간항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항공기 구조 보수와 보존에 관한 준거법은 항공기의 구조와 보존이 행하여진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166] 손해배상의 경우 항공사고가 항공기 충돌, 방해, 비행중 지상에 있는 제3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비행사고가 발생한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167]

V. 소결론

외국적 요소가 있는 재산관계의 준거법은 주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물권의 준거법으로서는 부동산・동산을 구별하지 않고 재산소재지법이 원칙적으로 준거법이 된다.

채권관계의 준거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베트남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만 당사자가 합의로서 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민법 개정안에서는 외국법이 배척되는 경우를 열거하여 놓았으므로 좀 더 진일보한 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계약내용의 준거법으로서는 이행지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 방식의 경우는 계약행위지법이 예외사항이 없으면 적용된다. 채권관계의 준거법에도 많은 예외 상황이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비계약적 준거법으로는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지법 또는 가해행위의 실질적 효과 발생지법이 원칙적으로 준거법이 되며 민간항공법 및 해사법전에서 많은 예외가 있다. 부당이득과 사무관리에 대한 준거법규정이 민법에 없으나 민법개정안에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사관계의 준거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보충적으로 규율한다. 그러나 상법, 기업법, 여신기관법 및 유통증권법 등에서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 관련 규정이 적용이 될 것이다. 국제상사관행을 당사자는 합의할 수 있으나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법체제의 전통아래 경제적 고립주의로 인하여 베트남 입법자들은 국제계약에 대하여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168] 아직도 국제계약이라는 용어가 베트남 법률가들에게 익숙치 않으며 법률용어로서 흔히 사용되지 않는다고 한다.[169]

165) 민법 제773조 제2항.
166) 민간항공법 제4조 제2항, 제3항.
167) 민간항공법 제4조 제4항.
168) Nguyen, op. cit, p.1

그러나 Doi-Moi 개혁 정책이후 베트남 법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되었고 2015년 민법개정안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 기준에 합당한 국제사법 규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70]

169) Ngo Huy Cuong, International Contract in Vietnam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동아시아 국제교류의 증가와 국제사법의 역할: 베트남국제사법 연구”, 국제사법학회, 2015. 1면.

170) 예를 들어, 민법개정안 제695조에서는 외국법의 규정은 그 국가에서의 공식적인 해석과 적용한 실제 따라 적용한다고 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베트남법에 의한 해석을 배제하고 있다.

제4장 베트남 국제사법 상 신분관계의 준거법[171]

I. 신분관계 준거법 결정의 총론적 문제

1. 법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연인(행위능력의 제한과 박탈 포함), 상속, 유언의 준거법 결정은 기본적으로 2005년 민법전에 의한다. 민법전은 "제7편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제758조-제777조)에서 자연인(제761조-제764조), 상속과 유언(제767조, 제777조)에 관한 국제사법을 규정하고 있다. 혼인관계, 친자관계, 부양의 준거법 결정은 혼인가족법에 의함은 앞서 본바와 같다.

2. 국제사법의 사항적 타당범위 또는 각칙의 독립적 저촉규정들의 사항적 적용범위

> 민법전 제758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란 민사관계 당사자 중 최소 일방이 외국기관, 외국단체, 외국개인이거나 국외에 정주하고 있는 베트남인인 민사관계이거나 또는 각 당사자가 베트남 공민 및 단체일지라도 그 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의 근거가 외국법이거나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그 관계에 관련된 재산이 외국에 소재하는 민사관계를 말한다.
>
> 2006년 의정 제3조 용어의 해석
> 이 의정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
> a) 각 참여 당사자 중 최소 일방이 외국의 기관, 단체, 개인이거나, 외국에 정주한 베트남인인 각 민사관계, 혼인과 가족관계, 경영관계, 상거래관계 및 노동관계
> b) 각 참여 당사자가 베트남 공민・단체일지라도 그 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의 근거가 외국법에 따르거나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그 관계에 관련된 재산이 외국에 소재하는 각 민사관계, 혼인과 가족관계, 경영관계, 상거래관계와 노동관계
>
> 혼인가족법 제3조 용어의 해석
> 25.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과 가족'관계란 관련 당사자의 최소 일방이 외국인

171) 여기에서의 서술은 이 부분의 책임집필자(장준혁)가 베트남어를 해독하지 못하여,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된 자료에 의존하여 작성되었다. 책임집필자가 참고한 자료는 본 보고서의 책임집필자 중 1인인 이재열 교수의 조문번역 및 책임집필부분, 법무부의 후원으로 개최된 한국국제사법학회 2015년 춘계 연차학술대회 자료집(동아시아 국제교류의 증가와 국제사법의 역할: 베트남 국제사법 연구)에 수록된 응우옌 티엔 빈(Nguyen Tien Vinh) 교수의 논문을 비롯한 약간의 영문 논문, 그리고 기존의 일본어 및 영어 번역본 등이다.

및 외국에 정주한 베트남인인 '혼인과 가족'관계와 관련 당사자가 베트남 공민일지라도 그 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의 근거가 외국법이거나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그 관계에 관련된 재산이 외국에 소재하는 '혼인과 가족'관계를 말한다.

민법전 제7편에 규정된 독립적 저촉규정들(제761조-제777조) 가운데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만 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많다. 또한 민법전 제758조는 "외국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定義하고 있다. 당사자의 국적, 정주지, 법률관계의 준거법, 법률관계의 "성립, 변경 또는 소멸"의 기초사실이 "발생"한 장소, 법률 "관계에 관련된 재산"의 "소재"지가 외국과 관련될 때 외국적 요소가 있다고 한다. 혼인가족법 제3조 제25항에서도 同旨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들은 문리해석상 한정적 열거로 풀이된다. 다만 해석에 의하여 수정(확장해석, 축소해석 또는 의미부여의 거절)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법전 제7편의 독립적 저촉규정들 가운데에는, 개별 규정만 놓고 보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적어도 문면상으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다. 유언에 관한 제768조 등이 그 예이다.[172] 그러나 제7편의 표제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로 되어 있으므로 그런 각칙규정의 사항적 적용범위를 어떻게 볼지는 문제이다.

3. 외국적 요소가 있지만 각칙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전 제759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민사법, 국제조약, 외국법과 국제관습의 적용

1.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민사법의 규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적용된다. 단,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혼인가족법 제122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법적용

1.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혼인과 가족법'의 각 규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과 가족'관계에 적용된다. 단,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적 요소가 있지만 각칙으로서의 독립적 저촉규정이 흠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각칙만 보면, 이런 경우에는 하위입법이나 해석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법전 제7편과 혼인가족법 제8장을 보면, 이런 경우에 대한 포괄적이고 보충적인 연결규칙이 일반원칙의 자리에 규정되어 있다민법전 제759조 제1항 본문과

172) 국제신분법 외의 분야에서도 이런 규정이 보인다. 물권에 관한 제766조, 계약(의 실질)에 관한 제769조, 계약의 방식에 관한 원칙규정인 제770조 제1항, 비대면계약에 관한 제771조, 일방적 민사거래에 관한 제772조 등.

혼인가족법 제122조 제1항 본문이 그것이다. 즉, 그 각항의 단서가 규정하듯이 명문의 국제사법 각칙규정이 우선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포괄적이고 보충적인 연결규칙'인 각항 본문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베트남법에 연결된다.

그런데 민법전 제759조 제1항 본문과 혼인가족법 제122조 제1항 본문은 규정체계상 총칙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축소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결국 민법전의 규율사항에 관해서도, 각칙에 명문의 법률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전 제759조 제1항 본문 내지 혼인가족법 제12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정지법에 연결할지, 아니면 제759조 제1항 본문 내지 혼인가족법 제122조 제1항 본문을 축소해석하고 그렇게 하여 만들어진 법률흠결을 본격적인 해석론에 의하여 보충할지 문제된다.

4. 本國法의 확정

민법전 제760조 무국적자 및 복수의 외국국적 보유 외국인에 대한 법률적용의 근거

1. 이 법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기타 법률문서가 외국인이 공민인 국가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무국적자에 대한 적용법률은 그 자의 거주지국의 법이다. 만약 무국적자에게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법을 적용한다.
2. 이 법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기타 법률문서가, 외국인이 공민인 국가의 법 적용을 규정하는 경우, 복수의 외국국적 보유자에 대한 적용법률은 그 자가 민사관계 발생시점에 국적과 거주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법이다. 만약 그 자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一國에 거주하지 않으면 국적과 공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한다.

2006년 의정
제3조 용어의 해석
2. 외국인은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로, 외국국적자와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제4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 국제조약, 외국법과 국제관습의 적용
3. 서로 다른 복수의 법률체계가 존재하는 국가의 법적용을 선택 또는 원용한 경우 당사자는 공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체계의 적용요구권을 가진다.

무국적자의 경우에는 국적을 대신하는 연결점이 필요하다. 그것은 거주지로 정해져 있다(제760조 제1항 제1문). 2015년 민법전 개정안(제697조 제1항)은 이 경우 "거

주지” 대신 “常住地”의 법으로써 본국법을 대신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무국적자가 어떤 나라에도 거주하지 않는다면 거주지를 대신할 보충적 연결점이 필요하다. 제760조 제1항 제2문은 이 경우에 돌연히 법정지법에 연결한다.

민법전 제760조 제1항 제2문은 입법적으로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인법적 문제를 속인법에 연결하는 대신 법정지법에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어떤 사람이 거주지를 가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연결기준이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스럽다. 더구나, 권리능력이나 행위능력과 같은 일정한 문제만 법정지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법에 의하는 모든 사항을 ‘국적도 거주지도 없는 사람’이라 하여 법정지법에 맡기는 것은 더욱 부당하여 보인다. 이 문언 대로만 한다면 가령 거주지가 없이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등의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는(예컨대 원양어선에서 일시적으로 일하면서) 무국적자가 사망하거나 사망이 추정 또는 간주되어 그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이 개시되는지에 대해서도 베트남법에 의하게 된다.

복수국적자(중국적자)의 경우에는 국제사법에서 연결점으로 쓸(의미부여할) 국적을 골라야 한다. 민법전은 외국국적간의 충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거주지인 국적국이 우선하며(제760조 제2항 제1문),[173] 그러한 것이 없으면 최밀접관련국이 우선한다(제2문). 한편, 내외국적의 충돌에 대해서는 민법전에는 규정이 없다. 이 흠결은 2006년 의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보충되고 있다. 즉, 외국인을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라고 정의함으로써, 內外國籍의 충돌시에 국제사법적으로는 내국 국적에만 의미가 부여됨을 명시하고 있다.

베트남 민법전은 “본국법”이라는 용어 대신 “국적국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것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그 사람이 국적을 가진 국가를 모두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제760조 제2항이나 내외국적의 충돌에 관한 불문의 해결기준에 따라 걸러진 것만을 가리키는 것인지 문제된다. 만약 베트남법의 “국적국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후자로 보면 될 것이고 이런 해석상 문제 자체는 없을 것이다.

한편, 다법국(법분열국)의 국민의 속인법 결정기준에 관해서는 민법전이나 2014년 혼인가족법에는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흠결은 2006년 의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보충되고 있다. 이 규정은 다법국법이 지시(지정)된 경우, 베트남 국제사법의 관점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체계”가 지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직접지정주의의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 규정의 문장은 그러한 법질서가 강행적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대신, “당사자는……당사자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체계의 적용요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마치 직접지정주의에 의하는 것이 당사자의 임의에 맡겨지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

173) 최밀접관련원칙을 구체화하는 이러한 규정은 대한민국 국제사법에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제사법 제3조 제2항 본문. 베트남 국제사법상 이러한 입법적 해결이 채택되어 있는 것은 독일 민법시행법 제5조 제1항 제1문, 일본의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 제38조 제1항 본문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5. 反定(反致)

민법전 제759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민사법, 국제조약, 외국법과 국제관습의 적용
3. 이 법,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기타 법률문서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약국인 국제조약에서 외국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이하 생략]. 그 국가의 법이 다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법을 적용한다. [제3문 생략]

혼인가족법 제122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법적용
2. 이 법 및 베트남의 기타 법률문서가 외국법의 적용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이하 생략]. 외국법이 다시 베트남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혼인과 가족에 관한 법'을 적용한다.

베트남 민법전 제759조 제3항 제2문 및 혼인가족법 제122조 제2항 제2문은 직접반정을 규정한다. 직접반정은 베트남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다.
베트남의 어떤 독립적 저촉규정이 총괄지정규정인지에 대해서는 각칙에도 총칙[174]에도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민법전 제759조 제3항에는 계약에 대한 당사자자치를 규정하는 제3문이 함께 들어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반정에 관한 언급이 반복되지 않고 있다. 제3문이 제2문의 뒤에 비로소 나오는 점, 그리고 제3문 뒤에 제2문과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계약준거법을 당사자자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은 총괄지정이 아니고 反定의 여지가 없다는 해석을 할 여지는 있는 듯하다. 다만 이에 관해서는 베트남의 하위입법과 해석례를 참조하여 그 정확한 규율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6. 公序

민법전 제759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민사법, 국제조약, 외국법과 국제관습의 적용
3. 이 법,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기타 법률문서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약국인 국제조약에서 외국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 또는 적용의 효과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 외국법이 적용된다. [제2문, 제3문 생략]

혼인가족법 제122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법적용

174) 한국 국제사법 제9조는 어떤 각칙규정이 총괄지정의 취지이고 어떤 각칙규정이 그렇지 않은지를 총칙 내의 반정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에 붙여 함께 규정한다(동조 제2항). 이는 입법기술상 독특한 것이고 입법례로서도 그 예가 드문 것이다.

2. 이 법 및 베트남의 기타 법률문서가 외국법의 적용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그 적용이 이 법 제2조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외국법이 적용된다. [제2문 생략]

공서에 의한 유보는 민법전 제759조 제3항 제1-2문과 혼인가족법 제122조 제2항 제1문에 규정되어 있다. 민법전 제759조 제3항 제1문과 혼인가족법 제122조 제2항 제1문은 준거외국법의 적용이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됨을 규정한다. 민법전 제759조 제3항 제2문은 준거외국법이 배제되는 공백을 메우는 보충적 준거법은 법정지법임을 명시한다. 혼인가족법에는 이에 대응되는 규정은 없다.

7. 外人法

민법전 제761조 외국인인 개인의 민사권리능력
2.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베트남 공민과 동등한 민사권리능력을 향유한다. 다만,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혼인가족법 제121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과 가족'관계에 있어서 각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의 보호
1.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과 가족'관계는 베트남법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약국인 국제조약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존중 및 보호된다.
2. 베트남 공민과의 '혼인 및 가족'관계에서 베트남 내 외국인은 베트남 공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단, 베트남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베트남 민법전 제761조 제2항 본문은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베트남 공민과 동등한 민사권리능력을 향유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제1항과 충돌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또, 제2항 단서는 베트남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규정하는데, 이것이 제2항 본문과의 관계에서 일관성을 결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이러한 의문은 제2항을 외인법에 관한 총칙규정으로 이해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제761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해석론에 맡겨도 충분하지 않은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베트남의 입법자는 이런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동항 본문과 같은 규정만 두고 단서와 같은 규정은 두지 않는다면 수범자를 혼란케 하는 폐단이 있었을 것이다.[175] 그러나 베트남 민법전 제761조 제2항은 단서

175) 한국에서도 베트남 민법전 제761조 제2항 본문과 같은 규정을 민법전 내에 신설하려는 안이 법무부 산하의 개정준

에서 특별법(외인법 문제에 관한 특별법)을 지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수범자를 혼란시키는 폐단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III. 자연인의 능력과 보호의 준거법

1. 권리능력

가. 권리능력 일반

제761조 외국인인 개인의 민사권리능력

1. 외국인인 개인의 민사권리능력은 그 자의 국적국의 법에 따라 확정된다.

[제2항 생략]

베트남 민법전은 권리능력은 본국법에 의한다는 입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점을 "외국인"인 경우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다(제761조 제1항).

나. 사망의 확정

제764조 실종 또는 사망의 확정

1. 실종 또는 사망의 확정은 실종 또는 사망에 관한 최후소식 시점에 그 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한다.
2. 외국인이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의 실종 또는 사망의 확정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에 따라야 한다.

사망의 확정은 원칙적으로는 본국법에 의한다(제764조 제1항). 그러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베트남법에 의한다(제2항).

다. 실종선고

제764조 실종 또는 사망의 확정

1. 실종 또는 사망의 확정은 실종 또는 사망에 관한 최후소식 시점에 그 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한다.
2. 외국인이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의 실종 또는 사망의 확정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에 따라야 한다.

실종 또는 사망의 확정에 관하여 베트남 국제사법은 원칙적으로 본국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실종 또는 사망에 관한 최후소식(tin tức cuối cùng) 時의 그 자의 본국법에 따라야 하고(민법 제764조 제1항), 외국인이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비작업 내에서 제시되었다가 학계의 반대(최흥섭 교수님 발표)로 백지화된 일이 있었다. 그 개정안은 베트남 민법전 제761조 제2항 단서와 같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범자를 더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컸다.

그 자의 실종 또는 사망의 확정은 베트남법에 따라야 한다(동조 제2항).[176] 예를 들어 일본인이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결혼하고 생활하던 중 바다여행을 하다가 폭풍을 만나 돌아오지 못하자 그 자의 처와 자녀들이 베트남 법원에 그 자의 실종 또는 사망의 확정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그 자의 실종 또는 사망의 확정을 위한 실종기간·수색방법의 적용·통보 등에 일본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법을 적용할 것이다.[177]

2. 행위능력의 제한과 박탈: 미성년자보호와 성년자보호

제763조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능력 상실자 또는 제한민사행위능력자의 확정

1.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제한민사행위능력자의 확정은 그 자의 국적국법에 따른다.
2. 외국인이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의 민사행위무능력, 민사행위능력 상실, 민사행위능력 제한의 확정은 베트남법에 따른다.

베트남 민법전은 행위능력의 제한과 박탈에 관하여 제763조에서 규정한다. 규정의 위치를 보면, 행위능력에 관한 원칙적 규정(제762조)의 바로 뒤에 위치한다. 각칙체계상 國際人法의 일부로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행위능력의 보충방법(친권자에 의한 보호, 후견, 보조, 보좌 등)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미성년자보호와 성년자보호를 따로 구별하여 규정하지 않고 함께 규정하는 점도 특징이다.

한국 국제사법은 행위능력의 제한과 박탈은 國際人法 내에 규정을 두지만 행위능력의 보충방법으로서의 後見에 대해서는 國際親族法(國際家族法) 내에 규정을 두고 있어 규정체계상 분열이 빚어져 있다. 베트남 국제사법은 규정체계상 이런 분열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 국제사법보다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친권자 외의 자에 의한 후견의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입법의 흠결이 있고 하위입법 내지 해석에 맡겨져 있다. 이에 관해서는 한국 국제사법이 명문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는 점에서 더 높게 평가된다.

IV. 혼인관계의 준거법

1. 혼인의 성립

가. 저촉법

혼인가족법 제126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결혼

176) 구체적으로는 2005년 민법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각 규정에 따라야 한다.
177) Hoàng Thế Liên, *Ibid*, tr. 568.

1. 베트남 공민과 외국인 사이의 결혼에서 각각의 당사자는 결혼의 요건에 관하여 자신의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한다. 결혼이 베트남의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외국인은 결혼의 요건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베트남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의 베트남에 상주하는 외국인들 사이의 결혼은 결혼의 요건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014년 의정 제36조(외국에서 외국의 관할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베트남인의 결혼의 승인의 형태)
1. 베트남 시민들 사이 또는 외국인과 베트남의 시민 사이에 외국의 관할기관에서 거행된 혼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승인된다.
a) 결혼이 외국의 법에 합치하고,
b) 결혼 당시 당사자들이 베트남의 혼인과 가족에 관한 법률의 혼인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혼인요건에 관한 베트남법의 위반의 경우에도, 결혼의 승인의 요청시에 그 위반의 결과가 치유되었거나 그 혼인의 승인이 여성과 자녀에 유리한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승인된다.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혼인은 본 의정 제38조가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등록부에 기재된다.

혼인가족법 제126조의 규정을 보면, 혼인의 성립요건은 본국법에 의하되(제1항 제1문), 베트남의 관청에서 혼인이 거행되는 경우에는 베트남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제2문, 제2항).

이러한 혼인가족법 제126조의 규정은 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해서는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묶어 규정한다. 그러나 제126조 제1항 제2문과 제2항은 형식적 요건만을 언급하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178]

그러므로 혼인가족법 제126조의 규정취지는, 베트남에서 혼인이 거행되는 경우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혼인의 방식은 거행지법(lex celebrationis)에 의한다.[179]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배분적으로 연결된다.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된 경우에 관해서는 혼인가족법에는 규정이 없고, 2014년 의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원칙은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즉, 베트남인 간이나 베트남인과 외국인 간의[180] 혼인이 외국의 관할관청에서 거행된 경우에, "외국법에 합치"하고(a호), "당사자들이 베트남 혼인가족법의 혼인요건을 충족"하면(b호) 그 혼

178) Pham Diem,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under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Vietnam", Official Gazette, 30/07/2013, para. 11.
179) Nguyen Tien Vinh, 전게논문, 6면.
180) 외국인간의 혼인에 관해서는 2014년 의정에도 규정이 없다.

인은 베트남에서도 승인된다.

이 규정취지는 모호하여 보인다. 문언만 놓고 보면 해석상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부딪친다. 첫째, 방식에 관한 한 거행지인 외국의 법을 지시하는 취지로 선해하려 하는 경우, b호에서 베트남법을 혼인요건 일반에 대하여 중첩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장애물에 부딪친다. 둘째, "당사자들"이 베트남 혼인가족법상의 혼인요건을 준수할 것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듯이 보이는 점도 문제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선해할 여지가 있다. 첫째, 베트남 혼인가족법의 혼인방식에 관한 규정(신고주의, 건강진단서 등)이 외국관청에 대해서도 적용되려는 입법의사로 입법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외국에서 그 외국법 소정의 방식에 따라 거행된 혼인이 b호를 위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요컨대 혼인의 방식에 관해서는 거행지인 외국의 법만이 적용된다. 즉, 거행지법주의는 여기에서도 관철된다.

둘째,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에 관해서도, 베트남법의 실체사법 규정은 베트남 국민에 대해서만 적용되려는 의도로 입법되었다. 따라서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에 관해서는,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의 법을 준수하여야 하고(a호), 베트남인 배우자는 베트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b호).

한편, 제2항에서는 외국에서 거행된 혼인의 경우에 혼인요건의 흠결이라는 하자의 치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베트남법 위반의 하자 치유를 규정한 부분은 실체사법의 일부로 이해되고, 외국법 위반의 하자 치유를 규정한 부분은 일종의 특별공서규정이라고 이해된다. 두 가지 점 모두 독특한 것이지만 비교법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 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베트남의 실체사법

국제사법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아래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내지 방식요건에 관한 베트남 실체사법의 규율내용에 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베트남의 실체사법이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보인다. 아래에서는 우선 베트남법의 체계에 따라, 실질적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관련되는 방식요건도 함께 언급하기로 한다.

혼인적령은 여성은 만 18세, 남성은 만 20세로 차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혼인가족법 제8조 제1항 a호). 2014년 혼인가족법 제정과정에서는 남녀의 혼인적령을 18세로 통일하는 방안이 다수의 위원들의 견해였으나, 이러한 입법론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81]

성년자라 할지라도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베트남법상 혼인체결능력이 없다(혼인가족법 제8조 제1항 c호). 이는 2000년 혼인가족법(제10조 제2항)의 태도가 유지된 것이다.[182]

배우자의 건강에 관한 요건은 2014년 의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 베트남의

181) Nguyen Tien Vinh, 전게논문, 3면.
182) Nguyen Tien Vinh, 전게논문, 3면.

관할권 있는 의료기관이나 신뢰할 수 있는 국제건강기관이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한 건강진단서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가 知覺이나 거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음이 입증되어야 한다.[183]

중혼금지와 이에 관련된 방식요건도 2014년 의정에 규정되어 있다. 2014년 의정 제20조 제1항 b호는 배우자가 혼인중이 아님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가 혼인신고 서류의 일부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184] 혼인관계증명서는 그 수령일(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베트남 혼인법이 요구하는 혼인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베트남인과 외국인에 대하여 동일하다.[185] 다만 외국인의 경우 그의 본국법이 혼인관계증명서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가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않음을 선서증언하여야 한다.[186] 중혼금지의 요건은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에 해당하지만, 혼인관계증명서의 제출요건은 방식요건에 해당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근친혼금지는 혼인가족법에 규정되어 있다(제5조 제2항 d호). 직계존속간, 3촌 이내의 친척간, 양친자간, 양친자관계에 있었던 者들 간,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 장모와 사위 간, 계부모와 계자녀 간의 혼인이 금지된다.[187]

同性婚에 대한 혼인가족법의 태도는 이를 금지하지 않되(제5조) 승인하지도 않는(제8조 제2항) 것이다.[188] 이것은 2000년 혼인가족법(제5조)이 동성혼을 금지한 것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189] 그러나 同性인 者 간의 婚姻은 혼인으로서 승인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혼인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이라는 관점에서는 同性婚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베트남 법의 태도라고 생각된다.

다. 혼인신고 수리의 비송관할

혼인신고를 수리하는 관청의 관할에 관해서는 2014년 의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2000년 혼인가족법(제102조)은 이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현행 혼인가족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고, 2014년 의정에 맡겨져 있다.[190] 혼인신고를 수리할 비송관할에 관한 2014년 의정의 규정은 2014년 민사신분법[191]에 의하여 대체될 예정이다.[192]

---

183) Nguyen Tien Vinh, 전게논문, 3면.
184) Nguyen Tien Vinh, 전게논문, 3면.
185) Nguyen Tien Vinh, 전게논문, 3면.
186) Nguyen Tien Vinh, 전게논문, 3-4면.
187) Nguyen Tien Vinh, 전게논문, 4면.
188) Nguyen Tien Vinh, 전게논문, 4면.
189) Nguyen Tien Vinh, 전게논문, 4면.
190) Nguyen Tien Vinh, 전게논문, 4면. 그 상세는 같은 논문, 4-5면 참조.
191) 2016. 1. 1. 발효 예정.
192) Nguyen Tien Vinh, 전게논문, 5-6면.

2. 혼인의 효력

> 혼인가족법 제130조 합의에 따른 부부재산제의 적용,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실혼의 효과 결정
> 합의에 따른 부부재산제의 적용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실혼 관계의 해결 요구가 있는 경우 베트남의 관할기관은 해결을 위하여 이 법과 베트남의 기타 관련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의 효력에 관해서는 "합의에 따른 부부재산제"에 한하여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다. 혼인가족법 제130조는 이 문제를 법정지법(베트남법)에 연결한다. 부부재산제가 공서의 문제이고 거래안전도 관련됨을 고려한 취지가 아닐까 생각된다.[193]

그 외에는 혼인의 효력에 관한 법률저촉규정은 현행 혼인가족법에는 없다. 2000년 혼인가족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일부 학설은 다음의 세 가지 점을 들어, 혼인의 효력에 대해서는 부부의 일상적 공동거소지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해석한다.[194]

첫째, 1986년 혼인가족법에는 혼인의 효력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제53조). "부부간의 인적 관계와 재산관계"는 부부의 "일상적인 공동주거"지의 법에 의한다. 분쟁이 발생한 때에 그러한 일상적인 공동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최후의 공동의 일상적 주거"지의 법에 의한다. 부부가 공동의 일상적 거소를 가진 적이 없는 경우에는 베트남법에 의한다. 위 조항은 이상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195]

둘째, 베트남이 외국과 체결한 사법공조조약에서 부부의 거소지법이나 일상적 공동거소지법의 적용을 규정한 경우가 자주 있다.[196]

셋째, 부부가 외국에 일상적인 공동거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외국법이 적용되고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베트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2000년 혼인가족법과 2014년 혼인가족법의 규정취지라고 보아야 한다.[197]

3. 이혼

---

193) 그런데 Nguyen Tien Vinh, 전게논문, 7면은 "2014년 법률이 부부로 하여금 합의에 의한 부부재산제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부부의 재산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여 준거법의 결정은 중요하다. 이 점은 2014년 법률의 단점 중 하나로 생각될 수 있다."("In the condition that the 2014 Law contains provisions allowing the couples to have an agreed matrimonial property regime, the determination of the applicable law including the agreement on the couple's property is essential. This point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shortcomings of the 2014 Law.")고 서술한다. 그러나 본 책임집필자는 그 서술취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194) Nguyen Tien Vinh, 전게논문, 7면.

195) Nguyen Tien Vinh, 전게논문, 6-7면. 다만 이것이 '1986년 혼인가족법 제53조가 後法에 의하여 폐지된 일이 없고 여전히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베트남의 입법방식은 1986년 혼인가족법이 2000년 혼인가족법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대체되고, 후자가 다시 2014년 혼인가족법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196) Nguyen Tien Vinh, 전게논문, 7면.

197) Nguyen Tien Vinh, 전게논문, 7면.

혼인가족법 제127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

1. 베트남 공민과 외국인 사이의, 베트남에 상주하는 외국인들 사이의 이혼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해결된다.
2. 베트남 공민인 당사자가 이혼 요구시점에 베트남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 이혼은 부부의 동일한 상주지국의 법에 따라 해결된다. 만약 공동의 상주지가 없다면 베트남법에 따라 해결한다.
3. 이혼시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재산의 해결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국의 법에 따른다.

이혼에 관해서는 법정지법주의가 폭넓게 채택되어 있다. 외국인간 이혼은 베트남법에 의한다(혼인가족법 제127조 제1항). 내외국인간 이혼도 베트남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같은 조문). 다만 내국인인 쌍방 배우자가 이혼청구시에 베트남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의 동일상주지국(그것은 외국이다)이 있으면 그 법에 의한다(제2항 제1문).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런 국가가 없으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베트남법에 의한다(제2항 제2문).

한편, 외국 소재 부동산에 관한 이혼의 효과는 부동산소재지법에 의한다(제3항). 실현가능성의 이익과 부동산소재지법의 공서를 고려한 취지로 생각된다.

4. 사실혼

혼인가족법 제130조 합의에 따른 부부재산제의 적용,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실혼의 효과 결정

합의에 따른 부부재산제의 적용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실혼 관계의 해결 요구가 있는 경우 베트남의 관할기관은 해결을 위하여 이 법과 베트남의 기타 관련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실혼의 효력 및 해소에 관해서는 제130조에 규정이 있다. 그런데 제130조의 표제는 사실혼의 “효과”만을 언급하고, 제130조의 문언은 “사실혼 관계의 해결 요구”만을 언급하는 불일치가 있다. 私見으로는 이는 제130조의 규정을 사실혼의 문제 전반에 확장적용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V. 친자관계의 준거법

혼인가족법 제128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부・모・자의 확정

1. 베트남 호적등기기관은 호적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공민과 외국인 사이, 최소 일방 당사자가 외국에 정주한 베트남 공민들 사이, 최소 일방 당사자가 베트남에 상주하는 외국인들 사이의 , 분쟁이 없는 부・모・자의 확정을

해결하는 관할권을 가진다.
2. 베트남의 관할 법원은 이 법 제88조 제2항, 제89조, 제90조, 제97조 제1항 및 제5항, 제98조 제3항 및 제5항과 제99조 규정의 경우 및 기타 분쟁이 있는 경우에 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부・모・자의 확정을 해결한다.

혼인가족법 제128조는 친자관계의 "확정"에 관하여 규정한다. "확정"이라는 문언이 쓰인 것을 볼 때, 아마도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한 규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친자관계의 소멸(특히 파양)과 친자관계의 효력에 관해서도 규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제128조는 친생자관계와 양친자관계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 혼인중 친생자관계와 혼인외 친생자관계를 구별하고 있지도 않고, 준정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
제128조는 국제비송관할(제1항)과 국제재판관할(제2항)에 관하여 규정할 뿐이고, 준거법 결정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 준거법 결정은 하위입법 내지 해석에 맡겨져 있다.
입양에 관해서는 하그입양협약이 적용된다. 이 협약의 규정과 국내법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가 우선한다(혼인가족법 제122조 제1항 제2문).

VI. 부양의 준거법

혼인가족법 제129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부양의무
1. 부양의무는 부양권리자의 거주지국의 법에 따른다. 부양권리자가 베트남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부양권리자가 공민인 국가의 법을 적용한다.
2.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자의 부양요구서를 해결하는 관할 기관은 부양권리자의 거주지국의 기관이다.

부양의무는 부양권리자의 거주지국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혼인가족법 제129조 제1항 제1문). 다만 부양권리자가 베트남에 거주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양권리자의 본국법에 의한다(제2문). 요컨대 부양권리자가 베트남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양권리자의 거주지국법으로서 베트남법에 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권리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규정형식상으로는 부양권리자의 "거주지국"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그의 본국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의 거주지국법에 의하는 것은 내국법 적용범위 확장을 위한 예외라고 보는 것이 매끄러워 보인다.
제1항이 규정하는 두 가지 연결규칙 간의 관계는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46조 제1항이 정하는 보정적 연결과는 다르다. 오히려 부양권리자의 거주지와 국적이라는 두 개의 연결기준을 절충한 취지로 이해된다.

VII. 기타의 친족관계의 준거법

파양, 친자관계의 효력, 혼인·친자관계 외의 친족관계의 효력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VIII. 상속과 유언의 준거법

1. 법정상속

민법전 제767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정상속
1. 법정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국적국법에 따른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권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상속인이 없는 부동산인 유산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 귀속한다.
4. 상속인이 없는 동산인 유산은 그 피상속인이 생전에 국적을 가진 국가에 귀속한다.

2006년 의정 제12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정상속
1. 법정상속에 관한 법적용은 민법전 제767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상속재산에 속하는 재산이 부동산인지 동산인지의 확정은 그 상속재산 소재지국의 법에 따라 확정된다.
3. 피상속인이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복수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정상속에 관한 적용법의 확정은 민법전 제760조, 이 의정 제5조와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상속에 관해서는 상속분할주의를 따르는 입장인지, 아니면 상속통일주의에 따르되 '부동산'에 대한 상속의 실행에 한하여 부동산소재지법주의를 따르는 입장인지 조문만으로는 불분명하다. 제2항의 문언만 보면 마치 부동산상속은 피상속인 본국법(제1항)과 부동산소재지법(제2항)에 중첩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속준거법을 누적적 연결에 의하여 정할 수는 없다. 굳이 이러한 류의 사고방식을 따르려 한다면, 상속통일주의를 따르되 상속의 실행에 한하여 피상속인 본국법 대신 부동산소재지법에, 그리고 그 법에만 연결하는 취지로 정리될 수 있을 뿐이다.

상속인이 없는 재산은 부동산이면 부동산소재지국에(제767조 제3항), 동산이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귀속한다(제767조 제4항)고 규정한다. "상속인이 없는"이라는 문언을 중시하면 이 규정들은 무주동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규정이지 상속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그러나 제767조의 표제에서 "법정상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 규정들은 상속에 관한 규정으로 보인다. 후자로 보면, 제3항과 제4항은 "상속인

이 없는……유산"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분할주의를 따른 것이 된다. 이러한 태도는 제1항과 제2항이 이미 상속분할주의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면 어색할 것은 없다. 그러나 제1항이 상속통일주의를 규정하고 제2항은 부동산상속의 실행에 관해서만 부동산소재지법에 연결하는 취지라고 해석한다면, 제3항은 일견 이상하여 보인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돌연히 부동산소재지법에 전면적으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색하지 않게 풀이하는 방법은 제3항이 '상속인 없는 재산의 귀속' 문제를, 부동산에 한하여, '무주물에 대한 국가의 물권적 취득권'의 문제로만 성질결정한다는 취지로 풀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 따라 제4항을 해석하면, 제4항은 동산에 관해서는 동일한 문제를 상속 문제로만 성질결정한다는 취지로 풀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도 있다. 왜냐하면 혈족상속인이나 배우자상속인이 없는 재산을 국가가 취득하는 권리를 '국가의 최후순위 상속권'으로서 정할지 아니면 '물권적 취득권'으로서 정할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실질사법(실체사법)이 정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령 외국법이 상속의 준거법인 경우에 그 외국의 상속실체법이 '국가의 상속권'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국제사법이 개입하여 상속준거법의 사항적 적용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그 실체법규가 상속준거법의 일부로서 적용되지 않도록 배제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2006년 제12조 제3항은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기준을 어디에서 찾을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유언상속

유언상속, 즉 유언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속의 준거법 결정에 대해서는 일견 법률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법전의 해당 규정의 표제를 보면 제767조는 법정상속, 제768조는 유언상속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198] 그리고 제767조의 문언은 제1항에서 "법정상속"만을 언급하고 있고, 제2항-제4항도 이에 이어 나오는 규정이므로 "법정상속"에 대한 규정일 뿐이라고 일응 보여진다. 그런데 정작 제768조의 문언을 보면 유언상속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제767조를 유언상속에까지 확장적용(확대적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는 한다. 다만 제767조 제1항은 문언상 "법정상속"이라고 못박고 있으므로, 제1항에 한해서는 이를 유언상속에도 유추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유언

198) 이에 대응하는 규정인 2006년 의정 제12조 및 제13조의 표제도 같다.

민법전 제768조 유언상속

1. 유언능력, 유언의 대체와 취소는 유언자가 공민인 국가의 법에 따른다.
2. 유언의 형식은 유언지국의 법에 따른다.

2006년 의정 제13조 유언상속

1. 유언능력, 유언의 개정, 보충, 대체, 취소는 유언자 국적국법에 따라 확정된다. 유언자가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복수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유언상속에 관한 적용법의 확정은 민법전 제760조와 이 의정에 따른다.
2. 유언의 형식은 유언을 한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한다. 외국에서 베트남인이 한 유언이 유언의 형식에 관한 베트남법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적합한 것으로 공인된다.

유언의 실질의 문제는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민법전 제768조 제1항). 기준시는 조문상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하위입법 내지 해석에 맡겨져 있다. 그 사항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민법전 제768조 제1항은 "유언능력, 유언의 대체와 취소"라고 규정하고, 2006년 의정 제13조 제1항 제1문은 여기에 "유언의 개정, 보충"을 덧붙여 명시하고 있다.

유언의 방식은 유언지법[199]에만 맡겨지고 있다(민법전 제768조 제2항, 2006년 의정 제13조 제2항). 선택적 준거법을 다양하게 규정하는 입법주의는 현행법상으로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

2015년 민법전 개정안(제704조 제2항)에서는 유언의 방식에 관하여 선택적 연결주의를 도입하고 있다. 그 규정은 헤이그유언방식협약[200] 제1조가 규정하는 선택지를 모두 받아들이되 이 중 유언자의 유언시나 사망시 주소지법을 제외한 것이다. 이는 "참여이론(theory of the engagement)"을 베트남 최초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201] 아뭏든 동 개정안의 이러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한국 국제사법 제50조 제3항과도 일치한다.

199) 민법전 제768조 제2항과 2006년 의정 제13조 제2항은 유언지법이라는 표현 대신 유언지"국"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유언지가 다법국 내에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200) 유언의 방식상의 법률저촉에 관한 1961년 10월 5일 헤이그협약(Hague Convention of 5 October 1961 on the Conflict of Laws Relating to the Form of Testamentary Dispositions).

201) Nguyen Tien Vinh, "The change of Vietnam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through the modification of the Civil Code 2005", 동아시아 국제교류의 증가와 국제사법의 역할: 베트남 국제사법연구(한국국제사법학회 2015년 춘계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2015. 5. 15.), 14면.

제5장 베트남의 국제재판관할 법제

I. 서론

한국은 베트남과의 FTA협상을 위해 2008.06 제1차 공동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였고, 2010.06.23.~24에는 서울에서 한·베트남 FTA 공동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로부터 약 4년 정도 지나 2014.12.10.에 한-베트남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고, 2015.3.28.(토) 서울에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양측 수석대표인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Bui Huy Son 베트남 무역진흥청장이 한-베트남 FTA에 대한 가서명을 완료했다.[202] 한-베트남 FTA에는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2000년 7월 13일 서명한 미국과 베트남간 무역관계 협정(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ON TRADE RELATIONS)[203]은 제1장 상품거래(CHAPTER I TRADE IN GOODS)와 관련하여 법원에서의 내국민대우원칙을

---

202)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1/vn/5/1/ (최종방문일: 2015년 4월 22일).

203) Article 7 Commercial Disputes

For the purposes of Chapter I of this Agreement:

1. Nationals and companies of either Party shall be accorded national treatment with respect to access to all competent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s plaintiffs, defendants or otherwise. They shall not be entitled to claim or enjoy immunity from suit or execution of judgment, proceedings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or other liabili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with respect to commercial transactions. They also shall not claim or enjoy immunities from taxation with respect to commercial transactions, except as may be provided in other bilateral agreements.

2. The Parties encourage the adoption of arbitration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ising out of commercial transactions concluded between nationals or compani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nationals or companies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Such arbitration may be provided for by agreements in contracts between such nationals and companies, or in separate written agreements between them.

3. The parties to such transactions may provide for arbitration under any internationally recognized arbitration rules, including the UNCITRAL Rules of December 15, 1976, and any modifications thereto, in which case the parties should designate an Appointing Authority under said rules in a country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4. The parties to the dispute,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m, should specify as the place of arbitration a country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that is a party to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done at New York, June 10, 1958.

5.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nd the Parties shall not prohibit, the parties from agreeing upon any other form of arbitration or on the law to be applied in such arbitration, or other form of dispute settlement which they mutually prefer and agree best suits their particular needs.
6.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n effective means exists within its territory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미국과 베트남간 무역관계 협정을 좀 더 깊이 연구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참고로 미국과 베트남간 무역관계 협정 제7조 제1항에서는 "각 당사국의 국민 및 기업은 상대방 당사국의 모든 권한있는 모든 법원 및 행정기관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원고, 피고 또는 그 밖의 자로서 내국민대우를 받는다. 각 당사국의 국민 및 기업은 소, 판결의 집행,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또는 그 밖에 상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국의 영토내에서의 책임으로부터 면책을 청구하거나 향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을 미국인이나 미국기업이 베트남에서 재판받을 때 요긴한 조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래에서는 베트남의 국제재판관할법제를 중심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II. 베트남 법원체계의 개관

1. 법원의 종류

베트남에는 최고인민법원, 성·중앙직할시의 법원(이하 '성급 법원'이라 한다), 현, 사(社), 성도(省都)의 법원(이하 '현급 법원), 피고인이 현역군인인 경우 등 정해진 형사사건만을 다루진 군사법원이 존재한다(인민법원조직법 제2조). 최고인민법원 가운데에는 심리기관으로 최고인민법원 재판관평의회, 형사법정, 민사법정, 경제법정, 노동법정, 행정법정, 항소심법정[204]이 있고(동법 제18조 제2항), 성급 법원에는 재판관위원회, 형사법정, 민사법정, 경제법정, 노동법정, 행정법정이 있다(동법 제27조 제1항), 이에 대하여 현급 법원에 대해서는 전술한 조직분화가 되어 있지 않다(동법 제32조 참조).

2. 심급제도

가. 이심제

베트남에는 이심제가 채용되고 있다(동법 제11조 제1항), 항소심의 판결•결정은 선고한 날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동법 제1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79조 제6항, 제280조 제6항, 행정소송법 제206조 제6항, 제20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3항). 법적 효력을 발생한 것에 기하여 집행할 수 있다(인민법원조직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375조, 행정소송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55조). 그리고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내지 결정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명이 불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제b호, 행정소송법 제73조 제1항 제b호).

나. 심급관할

제1심을 어느 법원에서 행할 것인지 여부는 각 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민

204) 하노이 시, 다낭 시, 호치민 시티 시 3 곳에 두고 있다.

사소송법 제25조 내지 제38조, 행정소송법 제29조 내지 제32조, 형사소송법 제170조 내지 제175조). 그래서 제1심이 현급 법원이면 그 항소심은 사건의 유형에 대응하여 성급 법원의 각 전문법정이 담당하고 제1심이 성급 법원이면 그 항소심은 최고인민법원 법정이 담당한다(인민법원조직법 제20조 제2항, 제28조 제2항 참조).

3. 심리주체

법원의 심리는 집단으로 행하고(헌법 제131조, 인민법원조직법 제6조), 원칙적으로 제1심에서는 법관 1인, 인민참심원 2인으로 구성된 합의체에 의해 심리가 행해진다(민사소송법 제52조, 형사소송법 제185조, 행정소송법 제128조), 항소심에서는 법관 3인에 의한 합의체가 심리를 행한다(민사소송법 제53조, 형사소송법 제244조, 행정소송법 제192조). 김독심 및 재심[205]에 있어서는 최고인민법원의 각 전문법정이 담당하는 경우에는 3인의 법관에 의한 합의체로 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합의체인 성급 법원의 법관위원회 내지 최고인민법원 재판관평의회가 심리한다(민사소송법 제54조, 행정소송법 제218조, 제238조, 형사소송법 제281조, 제297조). 민사비송사건에 대해서는 단독심리를 인정하는 등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민사소송법 제55조).

III. 국제재판관할법제의 체계

베트남에서 국제재판관할의 쟁점을 다루는 법률로는 베트남 민사소송법 및 상호사법공조법이 있다.[206] 그 가운데 베트남의 국제재판관할법제는 민사소송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소송사건에서 국제재판관할을 다룬 양자간 조약으로는 베트남과 타국 간 민사관계에 관한 상호공조조약(예: 쿠바 또는 폴란드)이 있다.[207]

IV. 국제재판관할법제의 연혁

1. 2004년 민사소송법

2004년 성립된 민사소송법 제9부 제39장 제410조 이하에 국제재판관할법제를 규정

205)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내지 결정에 법률위반 내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된 경우에 이것을 시정하는 절차로는 감독심 내지 재심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인민법원조직법 제1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304조, 행정소송법 제209조, 제232조,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290조). 감독심 내지 재심의 절차를 행하는 법원은 (1) 현급 법원의 판결 내지 결정에 대해서는 성급 법원의 법관위원회, (2) 성급 법원의 판결 내지 결정에 대해서는 최고인민법원의 각 전문법정, (3) 최고인민법원 항소심법정 및 각 전문법정의 판결 내지 결정에 대해서는 최고인민법원 재판관평의회가 각각 담당한다(민사소송법 제291조, 제310조, 행정소송법 제219조, 제238조, 형사소송법 제279조 및 제296조).

206) http://www.hcch.net/upload/wuhan2013vn.pdf, at Part II, 2 (최종방문일: 2015년 4월 10일).

207) Id.

하고 있다. 2011년 베트남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었으나 제410조 이하는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국제재판관할법제에 대해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다.

2. 2011년 개정 민사소송법의 내용

2004년 성립된 민사소송법을 7년에 걸쳐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베트남 민사소송법은 2011년 3월에 개정되었다. 2011년 개정 베트남 민사소송법은 기본원칙, 관할, 증명 및 증거, 제1심절차, 항소심절차, 감독심절차, 민사비송사건에 관한 62개 조항을 수정·보완하였고, 8개 조항을 삭제하였다.[208]

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소송 및 비송사건의 추가

베트남 민사소송법에 있어 관할의 규정은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 "법률의 규정을 둔 기타의 ..."이란 포괄적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유형의 사건의 관할을 인정할 여지를 남게 두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 이외에 있어 당사자에 대하여 법원에 해결을 구할

이에 대응하여 토지관할(베트남 민소 제35조 제2항)의 규정, 선택에 의한 관할(베트남 민소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정비하여 보충하였고, 공증문서의 무효선언요구에 관한 사건절차에 대한 규정도 보충하였다(베트남 제339조 a 내지 c의 보충).

나. 현급 인민법원의 관할 확대

현급 법원의 관할을 확대하려는 사법개혁의 방침에 따른 개정이다. 분쟁의 복잡성 및 곤란성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는 현급 법원이 사건 전체에 대하여 제1심법원으로서의 관할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부록 별표 참조).

또한 베트남에서는 법률을 근거로 한 사건의 관할권을 부여받은 법원만이 그 사건의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법률상 관할법원과 다른 당사자간 관할의 합의에 의해서는 심급관할의 경우는 물론이고 토지관할에 관한 합의에 대해서도 무효이다.[209] 그리고 토지관할에 관한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은 피고의 보통재판적(a호), 당사자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보통재판적(b호), 부동산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c호)를 각각 관할권을 가진 법원으로 정하고 있는 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c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a호 내지 b호의 적용이 배제되고 b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a호가 배제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210]

다. 기타

208) 多々良周作, 改正ベトナム民事訴訟法の概要, http://www.jica.go.jp/project/vietnam/021/legal/ku57pq00001j1wzj-att/legal_23.pdf (최종방문일: 2015년 4월 10일).
209) 앞의 논문, 3면.
210) 위의 논문, 3면.

민사소송법 제31조를 개정하여 제1항에 있어 조정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그 취지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에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으로 하고 제2항에 있어서는 노동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V. 국제재판관할법제의 특징: 민사소송법의 효력 및 민사소송법과 국제조약의 상관관계

민사소송법 제2조에서는 민사소송법의 효력이라는 표제하에 "민사소송법은 외국요소를 포함한 민사사건 및 비송사건의 해결에 적용한다. 베트남이 서명하거나 가맹한 국제조약에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 민사소송법의 효력 1. 민사소송법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영토전역의 민사절차에 적용한다. 2. 민사소송법은 재외 베트남영사관이 행한 민사절차에 적용한다. 3. 민사소송법은 외국요소를 포함한 민사사건 및 비송사건의 해결에 적용한다. 베트남이 서명하거나 가맹한 국제조약에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4. 베트남법 또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서명하거나 가맹한 국제조약에 의하여 외교특권 및 면책 또는 영사특권 및 면책을 가진 외국의 개인, 기관 및 조직에 대하여 그 개인, 기관, 조직에 관한 민사사건 또는 비송사건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VI. 국제재판관할규정의 기본원칙

1. 열거주의

2004년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5절 제410조 제2항 및 제411조는 국제민사사건에 관하여 베트남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속하는 외국적 요소를 포함하는 민사사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10조 제2항은 베트남 법원의 일반관할을 속하는 7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반면에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11조 제1항은 베트남 법원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에 속하는 3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211]

211) Banh Quoc Tuan, "The Jurisdiction about International Civil Cases of Vietnamese Court," a Paper submitted under the Title, "The Rol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Pursuant to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Exchanges in East Asia: A Study on Vietnamese Conflict of Laws," at 2015 Annual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 Private International Law held at the conference room (15th floor) of the Korean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on May 15, 2015, p. 1.

특히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10조 제2항은 “베트남 법원은 다음의 사건에 있어 외국적 요소를 포함하는 민사사건을 해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이 의미하는 바는 소송당사자의 민사소송사건을 베트남 법원이 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베트남 법원이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10조 제2항에 열거된 상황에 근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11조 제1항은 “베트남 법원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권에 속하는 외국적 요소를 포함하는 민사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문이 의미하는 바는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베트남 법원이 소송당사자가 베트남 법원에 제기한 섭외적 민사사건에 대하여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212] 하지만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10조 제2항 및 제41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베트남 법원의 일반관할을 규정한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10조 제2항에 따르면, 베트남 법원에 제소한 경우에 베트남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 소송당사자가 베트남 법원에 제소하지 않고 외국 법원에 제소하여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 확정판결이 베트남 법을 준수한다면 베트남에서 집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입법자의 의도는 베트남 법원의 일반관할로 인하여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13]

반면에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건은 베트남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베트남 법원에 제소한 경우 베트남 법원만이 그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 베트남 법원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베트남 법원에 제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베트남 법원에서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베트남 법원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하기 위하여 베트남에서 판결을 집행하고자 한다면 당사자는 베트남 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214]

또한, 열거주의는 해사, 항공, 가사 사건과 같은 특별법 분야의 섭외적 사건에 대한 베트남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규율하기 위해 적용된다. 해사사건은 2005년 해사법(Code of Maritime 2005)에, 민사항공사건은 2006년 민사항공법(Law of Civil Aviation 2006) 및 2014년 개정 민사항공법에, 가사사건은 혼인 및 가족법 (Law of Marriage and Family 2014)에 규정되어 있다.

2. 준용방식

열거주의 이외에 섭외적 민사사건에 대한 베트남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은 준용방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

212) Id. at p. 1.
213) Id, at p. 1.
214) Id. at p. 2.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10조 제1항은 “외국요소를 포함한 민사사건 및 비송사건을 해결할 베트남 법원의 관할권은 이 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다만, 본 장에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민사분쟁에 대한 베트남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은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10조 제1항, 제2항 및 그 밖의 특별법상 국제재판관할규정 뿐만 아니라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장에 의해 규율된다.[215]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10조 제1항은 외국적 요소를 포함하지 아니한 민사 분쟁에 대한 베트남 법원의 국내관할권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한 동법 제3장을 준용한다. 따라서 국내사건에 대한 베트남 법원의 관할권규정은 외국적 요소를 포함한 섭외적 민사분쟁사건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장의 규정은 동법 제35장의 규정과 상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동법 제35장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3장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216] 따라서 동법 제410조 제1항의 적용범위는 극히 협소하다.[217]

예컨대 동법 제410조 제2항에 따르면, 베트남인인 피고가 베트남에 거주하거나 본점을 두고 있는 경우의 섭외적 민사분쟁에 대한 베트남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정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동법 제35조 제1항 제a호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이 조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민사사건에 관한 법원의 토지관할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피고가 개인인 경우에는 피고가 거주 또는 취업하고 있는 장소에 있는 법원 또는 피고가 기관 또는 조직인 경우에는 피고의 본점이 소재하는 장소에 있는 법원은 제1심절차에 따라 이 법률 제25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1조가 정한 민사, 혼인가족, 영업, 거래 및 노동분쟁을 해결할 관할권을 가진다.”

베트남에서 동법 제410조 제2항과 제1항의 상관관계는 실무상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동법 제410조 제1항과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는 동법 제3장의 규정에 의존한다. 특별관할과 관련하여 동법 제3장이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법원의 관할권이 동법의 다른 장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더라도 동법 제410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동법 제35조 제2항 제m호에 따르면, “베트남상사중재인에 의한 분쟁의 해결에 관한 신청을 해결할 법원의 토지관할은 상사중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적용될 법률은 2010년 상사중재법이다. 베트남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하기 위하여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10조 제1항에 의

215) Banh Quoc Tuan, supra note, at p. 3.
216) Banh Quoc Tuan, supra note, at p. 3에서는 동법 “제35장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동법 제3장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이 논문의 전체적인 맥락상 오류가 있는 표현인 듯 싶다.
217) Banh Quoc Tuan, supra note, at p. 3.

거하여 상사중재법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10조 제1항의 적용범위가 동법 제3장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에 상사중재법을 적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장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2014년 혼인가족법 제123조[218]도 또한 외국적 요소를 포함한 혼인 및 가족 사건에 대한 베트남 법원의 특별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219]

둘째,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5장이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 1차적으로 적용되고 동법 제3장이 2차적으로 적용된다. 즉 국제민사사건과 관련하여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5장은 특별관할을 정하고 있고 동법 제3장은 일반관할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식은 베트남 법의 근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220] 왜냐 하면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5장은 외국적 요소를 포함한 민사관계를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221]

3. 국제재판관할 인정 사례

베트남 법에 따르면, 베트남의 민사 현급 지방법원 및 상사 현급 지방법원(civil and commercial provincial courts of Vietnam)은 국제거래로부터 발생한 분쟁을 심리할 관할권을 가진다.[222] 양자에 있어 법원은 보통재판적 내지 특별재판적이 성립한 경우에만 분쟁을 심리할 관할권을 가진다. 소송에서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을 주장하는 경우에 보통재판적에 기한 주장이 우선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특별재판적 소재지인인인 다낭 현 법원에서 제소하거나 보통재판적 소재지인 호치민 시 법원에 제소한 경우 다낭 현 법원은 관할권을 부정할 것이다.[223] 베트남 법원은 다음의 국제분쟁에 대한 일반관할권을 가진다.

1. 피고의 주소가 베트남이거나 피고가 법인인 경우에는 피고의 본점이 베트남에

---

218) 베트남 혼인가족법 제12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과 가족 사건(vụ việc hôn nhân và gia đình)' 해결의 관할권(thẩm quyền)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련된 호적등기(đăng ký hộ tịch)의 관할권은 호적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2. 법원에서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과 가족 사건' 해결을 위한 관할권은 민사소송법(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3. 베트남 공민의 거주지 소재 縣級 인민법원(tòa án nhân dân)은 국경지역(khu vực biên giới)에 거주하는 베트남 공민과 베트남 국경지역(khu vực biên giới)에 거주하는 최인접국(nước láng giềng cùng) 공민 사이의 법에 위반된 결혼(kết hôn)을 취소하고 이혼 및 부부·부모와 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과 부·모·子의 인지(nhận), 입양(nuôi con nuôi)과 후견(giám hộ)에 관한 분쟁을 해결한다."

219) Banh Quoc Tuan, supra note, at p. 4.
220) Id, at p. 5.
221) Id, at p. 5.
222) http://www.austlii.edu.au/au/journals/IntTBLawRw/2003/6.html (최종방문일: 2015년 5월 1일).
223) Id.

소재하는 경우 또는
2. 분쟁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부동산이 베트남에 소재하는 경우

베트남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특별관할권을 가진다.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이 베트남에서 이행된 경우 또는
2. 피고가 베트남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3. 피고 회사가 베트남에 지점을 가지고 있고 분쟁이 베트남의 지점 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피고가 베트남에 주소를 둔 경우에 일반관할권이 인정된다.[224] 민법 제48조는 사람이 다음의 장소에 주소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사람이 세대 주민으로서 지방 등록부에 등록된 장소. 그 사람이 세대 주민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는 일시 거주민으로서 등록된 곳에 주소를 가진다. 또는
(b) 사람이 세대 주민(household resident) 또는 일시적 거주민(temporary resident)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람이 근무하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곳[225]

이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거주의에 의한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10조 이하 내용을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VII. 국제재판관할법제의 구체적 내용

1. 일반관할 및 특별관할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10조 제2항은 섭외적 법률관계에 대해 베트남 법원이 일반관할권 및 특별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가. 피고가 베트남에 본점을 둔 외국의 조직 또는 기관이거나 피고가 베트남에 경영대리점, 지점 또는 대표사무국을 둔 경우

베트남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외국의 조직 내지 기관의 수가 증가하고 그 조직이나 기관을 상대로 베트남 법에 따라 실무상 분쟁이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조문이 필요하다고 한다.[226] 회사법 제4조 제20항에 따르면 회사는 베트남에 설립되어 등기하면 베트남의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외국에서 등기한 회사가 베트남에 본점이나 대리점을 가지는 경우에 필요하다면 파트너는 이 회사를 상

224) Id.
225) Id.
226) Banh Quoc Tuan, supra note, at p. 5.

대로 베트남 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원고가 베트남인인 경우에만 베트남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하지만, 외국의 조직이나 기관이 베트남에 지점 내지 대리점을 두고 있는 경우 베트남 법원이 이러한 지점이나 대리점에 관한 모든 사건을 판단할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아니면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판단할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이 조문으로부터 명백하지 않다. 베트남 법원은 피고가 베트남에 지점 및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외국 조직인 모든 경우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다. 다수의 경우에 해외에 지점을 둔 피고와는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반론이 있다.[227]

나. 피고가 베트남에 항구적으로 거주, 취업 또는 생활하거나 베트남 영토에 재산을 가지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인 경우

2002년 7월 10일 시행된 행정부령 No. 68/2002/ND-CP 제9조 제2항은 외국적 요소를 포함한 가족 및 혼인의 관계에 관한 혼인가족법의 몇몇 조문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위 행정부령 제9조 제2항에서는"베트남에 상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에 거주하고 근무하며 영구적으로 생활하는 자로서 외국 국적을 가진 자이거나 무국적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영구적으로 생활하는 외국인은 베트남에 상주하는 외국인으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에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베트남에 일시적으로 생활하는 외국인 피고에 대해서는 베트남 법원은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지 아니한다.[228] 이는 베트남이 회원국인 다수의 국제조약에는 배치되는 것이다.

1998년 체결된 베트남과 중국 간 민형사사건의 사법공조조약(HIEP DINH TUONG TRO TU PHAP) 제1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절차개시 시점에 일방 당사국의 영토내에 영구적인 거소 또는 일시적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방 당사국의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에 국제조약상 조문은 베트남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중국인인 피고가 베트남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더라도 베트남 법원은 중국인인 피고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외국인이 베트남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쟁에서 그 외국인이 피고인 경우에 그 사건은 베트남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에 속한다. 베트남 영토 내에 외국인인 피고의 재산이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피고가 베트남에 영구적인 주소를 가지고 있

227) Id, at p. 5.
228) Id, at p. 6.

지 않은 경우에는 베트남 법원은 그 재산이 부동산 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국제재판관할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조문은 국내토지관할에 관한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5조 제1항과는 상이하다. 동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그 재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재산관련 분쟁이 부동산에 관한 것이 아니면 재산의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피고가 생활하고 근무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부양 또는 친자의 인지를 청구하는 민사사건 또는 비송사건에 대해서는 원고가 베트남에 항구적으로 거주, 취업 또는 생활하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인 경우

베트남 법원은 원고인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베트남에 항구적으로 거주, 취업 또는 생활하는 경우에 부양 또는 친자의 인지를 청구하는 민사사건 또는 비송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

라. 베트남 법에서 정하는 근거에 기초하여 창설, 변경 또는 종료 또는 베트남 영토에서 발생하였지만 당사자의 적어도 1인이 외국의 개인, 기관 또는 조직인 민사관계에 관련된 민사사건 또는 비송사건

이 사건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유형은 베트남 법에 따른 관계이다. 외국인 인 당사자가 베트남에 본점, 경영대리점, 지점 또는 대표사무국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베트남에 영구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나 법률관계가 베트남 법에 따라 성립, 변경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 베트남 법원은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 조직이 본점, 지점, 대표사무국을 해외에 두고 있거나 개인이 외국에 영구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법률관계가 베트남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법원이 그 쟁점을 재판할 국제재판관할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한다.[229] 이 경우에 베트남 법원은 국제재판관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법률관계의 성립, 변경 또는 종료가 베트남 법에 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230] 따라서 그 법률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이 베트남법이라면 베트남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231]

두 번째 유형은 베트남에서 법률관계가 발생한 경우다. 첫 번째 유형과 유사하게 외국인인 당사자가 베트남에 본점, 경영대리점,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경우) 베트남에 영구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개인에 대한 경우)에 해당하나 베트남 영토 내에서 법률관계가 성립, 변경 또

229) Id, at p. 7.
230) Id, at p. 7.
231) Do Van Dai and Mai Hong Quy, Vietnam International Private Law-Civil Relations, Labor, Trade with Foreign Elements (Monographs), City National University Press; Ho Chi Minh, p. 51 (2006).

는 종료하는 경우에 베트남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예컨대 여행사 M이 베트남에서 태국인들(A, B, C, D 포함)을 위해 메콩강 관광여행을 조직하였다고 가정하여 보자. 이 사안에서 불행히도, 메콩강에서의 사고를 인하여 B가 사망하였다. B의 아들인 E는 현재 베트남에서 근무하는데, 여행사 M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베트남 법원에서 제기하였다. 사고는 베트남에서 발생하였고 최소한 원고 중 1인(E)은 외국인이다. 이 경우 베트남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두 번째 유형은 국가간 증대된 관계 및 일방 또는 양방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민사법률관계의 증가를 감안한 것이다.[232]

마. 외국법에서 정하는 근거에 기초하여 성립, 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발생하였지만 관계자 전원이 베트남인, 베트남의 기관 또는 조직이고 원고 또는 피고의 일방이 베트남에 거주하는 민사관계에 관련된 민사사건 또는 비송사건

예컨대 A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이고 T국가로 여행하였다. B는 베트남인이고 T국가에서 거주하면서 근무하고 있다. A와 B 사이의 교통사고가 T국가에서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외국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양 당사자는 베트남인이고 당사자 일방이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조문과 관련하여 '거주'란 표현은 자연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가 기관 또는 조직인 경우에 이 조문의 적용여부가 다투어진다.[233]

바. 이행의 일부 또는 전부가 베트남 영토에서 이루어진 계약으로부터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의 이행이 베트남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베트남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 이행의 일부가 베트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 원고 또는 피고가 베트남인인 이혼사건

이혼사건에 있어 피고가 베트남인인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베트남 법원을 가지

232) Banh Quoc Tuan, supra note, at p. 8.
233) Id, at p. 8-9.

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원고가 베트남인이라는 근거만으로 전 세계에 있는 배우자가 베트남 법원의 이혼관할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 할 것이다.

2. 베트남 법원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권

가. 의의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11조 제1항에서는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제2항에서는 민사비송사건에 대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나.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권

(i) 베트남 영토내의 부동산재산권을 포함하는 민사소송사건, (ii) 운송업자가 베트남에 본점 또는 지점을 가진 운송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민사소송사건, (iii) 베트남인과 외국인간 또는 베트남인과 무국적자간 이혼사건이고 배우자 쌍방이 베트남에 거주, 취업 또는 생활하는 경우의 이혼사건 분쟁외국요소를 포함하는 다음의 민사사건은 베트남 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외국법원에서 제소하였다면 외국법원의 판결은 베트남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없다.

(1) 베트남 영토내의 부동산재산권을 포함하는 민사소송사건

베트남 영토내의 부동산재산권을 포함하는 민사소송사건에 대해 베트남 법원은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

(2) 운송업자가 베트남에 본점 또는 지점을 가진 운송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민사소송사건

운송업자가 베트남에 본점 또는 지점을 가진 운송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분쟁사건(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11조 제1항 제b호)과 관련하여 이 규정은 운송계약에만 적용되고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하는 기준은 운송업자의 본점 또는 지점이 현재 베트남에 소재하는지 여부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광범위하여 운송업자가 베트남에 본점 또는 지점을 가지는 한 운송업자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 공서 및 국가안전보장은 이 조문의 입법근거가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때문에 베트남 운송업자와의 운송계약을 꺼릴 위험이 존재한다.[234]

또한 운송업자가 베트남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에 운송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이 다른 국가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에 속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베트남 법원의 판결이 그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234) Nguyen Trung Tin, Jurisdiction of the Court of Vietnam Settle Civil Cases with Foreign Elements, Journal of Law School, pp. 79 (2004); Do Van Dai and Mai Hong Quy, supra note, at 557.

지 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이 조문은 그 시행이 매우 어렵고 실무상 복잡하여 향후 폐지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235]

(3) 베트남인과 외국인간 또는 베트남인과 무국적자간 이혼사건이고 배우자 쌍방이 베트남에 거주, 취업 또는 생활하는 경우의 이혼사건

이 조문의 취지는 양 당사자가 베트남에 거소를 둔 경우에 베트남의 공서를 보호하는 것과 이혼시 베트남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혼시점의 배우자의 거소다.[236] 신분관계만을 고려하면 이 규정은 논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부의 공동재산에 관한 분쟁으로서 그 공동재산 중 일부가 해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인 경우의 분쟁사건에서는 베트남 법원에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권을 허용하는 것은 부동산 재산권에 관한 베트남 법원칙 및 일반 국제관습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베트남 법원의 판결은 부동산 소재 외국의 법원에서 승인 내지 집행되지 아니할 것이다.[237] 이 조문은 일방당사자에 의한 재판상 이혼사건에만 적용되고 합의이혼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238]

다. 민사비송사건에 대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권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11조 제2항에서는 섭외적인 민사비송사건에 대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i) 법률사실이 베트남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에 그 법률사실을 확정하는 것, (ii)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베트남에 거주, 취업 또는 생활하고 그 자의 민사행위능력의 상실 또는 민사행위능력의 제한의 선고가 그 자의 베트남에서의 권리, 의무의 확립에 관련된 경우에 그 자의 민사행위능력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하는 것, (iii)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실종 또는 사망선고의 근거로 된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그 자가 베트남에 체재하고 그 실종 또는 사망선고가 그 자의 베트남에서의 권리, 의무의 확립에 관련된 경우에 그 자의 실종 또는 사망선고를 하는 것, (iv) 베트남인의 실종 또는 사망선고가 외국의 베트남에서의 권리, 의무의 확립에 관련된 경우에 해당 외국인이 베트남의 법원에 베트남 시민의 실종 또는 사망선고를 신청하는 것, (v) 베트남 영토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기를 승인 또는 베트남 영토에 소재하는 유기부동산의 현재의 관리자의 소유권을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베트남의 법원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라. 외국 법원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권과 외국재판의 승인 내지 집행여부

235) Banh Quoc Tuan, supra note, at p. 11.
236) Id, at p. 11.
237) Id, at p. 11.
238) Id, at p. 11.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56조에서는 '승인되지 않거나 집행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원의 민사판결 또는 결정'이란 표제하에 "1. 법원이 해당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민사판결 또는 결정
2. 판결채무자 또는 그 적법한 대리인이 적법하게 소환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외국법원의 변론기일에 결석한 경우
3. 사건이 베트남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경우
4. 동일 사건에 관하여 베트남 법원이 선고한 법적 효력이 있는 민사판결 또는 결정 또는 외국법원이 선고하고 베트남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베트남 법원이 승인, 허가한 법적 효력이 있는 민사판결 또는 결정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외국법원이 사건을 수리하기 전에 베트남 법원이 수리하여 해결중인 경우
5. 판결집행 기한이 해당 민사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한 법원의 국가의 법령 또는 베트남 법에 따라 도과한 경우
6. 외국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의 승인 및 베트남에 있어 집행이 베트남 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 중 제3항에 따르면, 외국법원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베트남 법원이 승인·집행하지 아니한다.

3. 합의관할

베트남 법원이 일반관할권을 가지는 민사사건에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 법원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합의는 무효다.[239]

4. 베트남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베트남 민사소송법은 섭외적 법률관계에 대한 사건에 있어 베트남 법원의 일반관할 및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 이외에 베트남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제413조 외국법원이 민사사건 또는 비송사건을 해결한 경우의 소장 또는 신청서의 각하 또는 해당사건의 해결 중지
1. 외국법원이 외국요소를 포함한 민사사건 또는 비송사건의 해결에 관한 판결 또는 결정을 이미 내리고 해당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 및 베트남이 민사판결 또는 결정의 승인 내지 집행에 관한 국제조약에 서명하거나 가맹하고 있는 경우에는 베트남 법원은 해당 사건의 소 또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해당사건을 중지한다.
2. 외국법원이 외국요소를 포함한 민사사건 또는 비송사건을 이미 수리하고 해당 민사사

239) Id, at p. 12.

건 또는 비송사건에 관하여 외국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을 승인하여 베트남에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법원은 해당 사건의 소 또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해당사건을 중지한다.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13조는 외국 법원이 심리하거나 판결한 사건에 대해 베트남 법원이 소를 각하하거나 해당사건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베트남과 다른 국가간 국제조약이 체결된 경우에 이 조문이 적용된다. 예컨대 베트남과 프랑스 사이의 사법공조조약에 따르면 민사사건에 관하여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에 따르면 베트남과 다른 국가 사이에 민사사건에 관하여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국제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외국법원이 외국요소를 포함한 민사사건 또는 비송사건의 해결에 관한 판결 또는 결정을 이미 선고하였다면 그 외국재판의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베트남 법원은 그 외국판결에 대한 소를 각하하거나 중지하여야 한다.
둘째, 베트남과 다른 국가간 국제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이 적용된다. 즉 외국법원이 재판을 선고하고(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동일한 소송사건에 대해 베트남 법원에 제소한 경우에 그 외국재판이 베트남에 승인 및 집행된다면 베트남 법원은 베트남 법원에 제기된 해당 사건의 소 또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는 베트남과 외국 사이에 국제조약이 없더라도 상호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240]

5.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와 국제소송경합

베트남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1. 피고가 베트남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2. 피고가 베트남에 정기적인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3. 계약이행지 또는 계약위반지가 베트남인 경우
4. 계약체결지가 베트남인 경우
5. 분쟁당사자가 해당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위하여 베트남 법원을 지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6.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의 결과로서 사람에게 손해가 초래된 경우
7.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의 결과로서 재산에 손해가 초래된 경우
8. 피고가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지만 피고의 부동산이 베트남에 소재하는 경우
9. 그 밖에 베트남 제25조 내지 제36조, 제410조 내지 제412에 해당하는 경우[241]

240) Id, at p. 12.
241) http://www.hcch.net/upload/wuhan2013vn.pdf, at Part II. 4 (최종방문일: 2015년 4월 10일).

위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베트남 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할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사무국(Permanent Bureau of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측[242]의 질문에 대해 베트남 법무부는 '아니오'라고 답하였으나,[243] 이는 잘못된 답변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베트남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대로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에 따라 베트남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거부할 수 있다. 그 영역은 매우 제한적이고 일반관할권 또는 특별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면 베트남 법원은 그 국제재판관할권의 행사를 거부할 재량권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forum non conveniens)와 국제소송경합(lis alibi pendens)을 근거로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정할 수 있는 판례법 국가체계와 달리 베트남 법원은 엄격히 성문법에 따라야만 한다.[244] 절차 위반은 감독법원(Court of Directorate Review)에 의해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다.[245] 베트남 법에 따르면,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에 상응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국제소송경합은 경제절차조례(Ordinance on Economic Procedure) 제38조에 반영되어 있다.[246]

6. 사법공조조약

베트남은 2015년 5월 현재 18개국과 민사사건에 대해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2015년 5월 현재 베트남이 민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명단은 소련(1981년 12월 10일 발효), 러시아(1998년 8월 25일), 체코공화국(1982년 12월 10일 발효), 슬로바키아(1982년 12월 10일 발효), 쿠바(1984년 11월 30일), 헝가리(1985년 1월 18일), 불가리아(1986년 10월 3일 발효), 폴란드(1993년 3월 22일), 라오스(1998년 7월 6일), 중국(1998년 10월 19일), 프랑스 (1999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2000년 4월 6일), 몽골(2000년 4월 17일), 벨라루스(2000년 9월 14일), 북한(2002년 5월 4일), 알제리(2010년 4월 14일 체결, 미발효상태), 카자흐스탄(2011년 10월 31일), 캄보디아(2013년 1월 21일 체결, 미발효상태), 대만(2010년 4월 12일)이다. 그 가운데 국제사법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사법공조조약으로는 베트남과 폴란드간 사법공조조약, 베트남과 라오스간 사법공조조약, 베트남과 우크라이나간 사법공조조약, 베트남과 몽골간 사법공조조약, 베트남과 벨라루스간 사법공조조약, 베트남과 북한간 사법공조조약, 베트남과 알제리간 사법공조조약, 베트남과 카자흐스탄간 사법공조조약, 베트

242) Questionnaire Addressed to States Participating in the Asia Pacific Regional Event on International Litigation, Conference on International Litigation in the Asia Pacific, Wuhan, 23-24 September 2013.
243) http://www.hcch.net/upload/wuhan2013vn.pdf, at Part II. 5 (최종방문일: 2015년 4월 10일).
244) Nguyen, Quan Hien --- "Cross-Border Transactions in Vietnam and the Vietnam-US Bilateral Trade Agreement" [2003] IntTBLawRw 6; (2003) 8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Review 159, at http://www.austlii.edu.au/au/journals/IntTBLawRw/2003/6.html#Heading90.
245) http://www.austlii.edu.au/au/journals/IntTBLawRw/2003/6.html (최종방문일: 2015년 5월 1일).
246) Id.

남과 캄보디아간 사법공조조약이 있다.

사법공조조약이 국제재판관할에 적용되는 방식은 세 가지다.

첫째, 민사사법공조조약의 적용범위에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일반관할을 판단하는 원칙을 규정하는 방식이 있다. 예컨대 베트남과 중국간 사법공조조약 제18조에서는 양국의 법원에서 섭외적 민사사건에 대한 재판관할을 판단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연인인 피고의 경우에 피고의 거소 및 법인인 피고의 경우에 피고의 대표소재지, 재산관련 분쟁에서 재산소재지를 근거한 일반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베트남과 우크라이나간 사법공조조약 제20조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둘째, 특별한 관계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정하는 원칙을 규정하는 방식이 있다. 예컨대 베트남과 폴란드간 사법공조조약, 베트남과 라오스간 사법공조조약 등에는 재산관계, 상속, 위자료, 이혼에 관한 양 당사국의 국제재판관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재판관할과 특별한 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을 동시에 규정하는 방식이 있다. 예컨대 베트남과 우크라이나간 사법공조조약 제20조에서는 일반관할을 정하고 동조약 제22조 및 제26조에서는 특별한 관계에 관한 특별관할을 정하고 있다.

제6장 베트남 상사중재법제

I. 서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개방) 정책을 표방하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1995년 아세안(ASEAN)에 가입하고 2001년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발효시킨 이래 2002년부터 거의 매년 6~8%의 고도성장을 기록해 왔으며 2007년에 WTO에 가입하여 국제경제 질서에 온전히 편입되었다. 베트남은 계속적으로 고도성장하면서, 2011년에는 수출 969억 달러, 수입 1,067억 달러를 달성하여 교역규모가 2,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12년에는 개방 이래 처음으로 8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수출은 1231억 달러, 수입 1212억 달러로 1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국가 경제가 날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은 1992년 베트남과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그 이후 베트남과의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130억 달러, 2011년 186억달러, 2012년 217억달러, 2013년 282억달러를 각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3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기업들도 베트남에 적극 진출하여 2013년에 43억달러, 2014년에도 40억달러를 초과하는 직접투자를 하여 베트남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14년 현재 누적 투자액 340억달러가 넘고, 진출 기업수도 3,400개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확대에 힘입어 베트남에는 현재 약 10만명의 한국인 교민이 살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2007년 ASEAN과의 FTA를 통해 베트남과 특혜관세를 상호 부여하고 있으나 양국 간 깊은 수준의 FTA 체결을 위해 2008. 6. 제1차 공동작업반 회의를 개최한 이래 6년간의 협상 끝에 2015. 5. 5. FTA에 서명하였다.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면 양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 등 양국의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17개 분야에 걸쳐 향후 15년간 각각 94.7%와 92.2%의 시장을 개방하게 되어 양국 간의 경제협력은 더욱 긴밀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과 베트남간의 경제적 교류와 인적 교류는 수많은 국제사법적 쟁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양국간 국제분쟁의 중재에 의한 해결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서는 양국 간의 중재 문제에 대한 연구가 태무한 상태에 있어 양국 간의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교류를 저해하고 분쟁발생시 법에 호소하기 보다는 물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았다. 이처럼 한국과 베트남 간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또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반 분쟁의 쟁점을 연구하여야 할 필요성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베트남 법원은 반드시 외국 투자자에게 유리한 절차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재를 선택하는 외국 투자가가 많다.

이하에서는 베트남 중재제도를 개관하고, 베트남 중재관련법들을 중심으로 베트남 중재에 있어서의 중재합의, 중재의 준거법, 중재절차, 중재판정과 그 취소,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논점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베트남중재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247]

Ⅱ. 베트남 중재제도 개관

1. 관련법령

가. 중재법 제정 과정

베트남은 국제상사분쟁을 중재로 해결한다는 사회주의국가의 전통에 따라 일찍이 1963년에 무역중재위원회를, 1964년에는 해사중재위원회를 각 설치하였다.[248] 1994년에는 상사중재에 관한 제116호 의정(Decree)[249]을 공포하여 중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250] 2003년에는 입법에 이르는 과도 단계로 상사중재에 관한 법령(Ordinance)을 공포하였다.[251]

베트남 정부는 2010년에 비로소 상사중재법을 제정하여 2011. 1. 1.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252] 동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11. 7. 28. 상사중재법 시행령[253]을 공포하였다. 베트남에서는 2010년 상사중재법의 제정으로 비로소 국제수준의 중재제도를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254] 동 법은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베트남의 사회경제발전에 따라서 베트남 내 상사중재활동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55] 상사중재법은 상사중재의 범위, 중재의 방식, 중재기관과 중재인, 중재의 순서와 절차, 중재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중재에 대한 법원의 관여, 베트남 내 외국 중재 기구와 활동 및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하여 규정한다.[256] 상사중재법은 국내중재를 그 적용범위로 하며[257] 외국 중재판정의 승

---

247) 필자는 베트남어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본고에서의 논의는 주로 영문 자료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베트남 판례의 소개에 있어서는 베트남법원에서 공개한 정식판결문을 구할 수 없어서 관련 자료들에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248) Corinne Nguyen & Anh Duong Vu, Arbitration in Vietnam, 31 J. Int. Arb.5., 2014, at 676.

249) 議政이란 정부가 제정하는 법령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것이다.

250) Decree on Commercial Arbitration No.116-CP.

251) Ordinance on Commercial Arbitration No.08/2003/PL-UBTVQH, dated February 25, 2003.

252) 상사중재법 No.54/2010/QH12.

253) Decree No. 63/2011/ND-CP, dated July 28, 2011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0 LCA.

254) 상사중재법에 대한 신구법을 비교한 국내 논문으로, 신충일, 베트남 신구중재법 비교, 국제거래법연구 제22집 제1호, 2013, 343면 이하 참조.

255) 베트남중재제도를 소개한 문헌으로는 Hogan Lovells, Arbitration in Vietnam, October 2013, at 1; Bui Thi Bich Lien, Arbitration in Vietnam, Shahla F. Ali & Tom Ginsburg e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Asia, 3rd ed., JURIS, 2013, at 569; Nguyen Binh Minh, Application of conflict of laws rules in arbitration in Vietnam, 한국국제사법학회, 동아시아 국제교류의 증가와 국제사법의 역할: 베트남 국제사법 연구, 한국국제사법학회 2015년 춘계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1면 이하 참조.

256) 상사중재법 제1조 참조.

257) Bui Thi Bich Lien, supra note 255 at 570.

인 집행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분쟁당사자가 국제중재에 합의하고 베트남을 중재지로 선택한 경우에 상사중재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다.[258]

나. 뉴욕협약

베트남은 1995년 뉴욕협약에 가입하면서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법령[259]을 제정하였다. 베트남은 뉴욕협약의 가맹 시에 유보사항을 부가하여 외국중재판정은 다른 협약가맹국의 영역 내에서 행해진 중재판정일 것(상호주의유보) 및 국내법에서 상사(commercial)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일 것(상사유보)에 한하여 동 협약이 적용되는 점은 우리 중재법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나아가 비가맹국의 영역내의 중재판정에 대하여도 상호간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뉴욕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동법령상 외국중재판정이라 함은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과 베트남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라도 외국인이 내린 판정을 말한다.[260]

다. 민사소송법

2004년 베트남 민사소송법이 제정되었는 바[261][262] 동법 제6편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263] 여기서 외국중재판정은 앞서 본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법령에서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영토 외에서 내려진 중재판정과 베트남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라도 외국중재인이 내린 중재판정을 말한다.[264] 베트남 법원은 외국 중재 판정이 뉴욕협약가입국 또는 베트남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또는 그러한 국가의 중재인이 내린 판정인 경우에 승인, 집행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호의 보증이 있으면 승인집행가능하다.[265] 민사소송법은 외국 중재 판정은 베트남 법원이 승인하고 집행 허가를 한 후에만 집행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266]

라. 대법관회의 결의 01/2014

2013년 1월 베트남대법원은 상사중재법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

258) Bui Thi Bich Lien, supra note 255 at 572.

259) Ordinance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Vietnam, S.C.N.A., September 14, 1995, 1996. 1. 1. 발효. No: No number.

260) 동 법령 제1조 참조.

261) 민사소송법 No.24/2004/QH11, dated June 15, 2004.

262) 동 민사소송법은 2011년 3월 개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See Law No. 65/2011/QH12 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dated Mar. 29, 2011 which took effect on Jan. 1, 2012.

263) Bui Thi Bich Lien, supra note 255 at 572.

264) 외국중재판정이란 베트남 영토외에서 내려지거나 베트남 영토내에서 법무, 상사 또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이 선임한 외국중재인이 내린 판정이다(베트남 민소법 제342조 제2항).

265) 민사소송법 제 343조 제2항 및 제3항.

266) 민사소송법 제 343조 제4항.

대법관회의 결의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어 2014년 3월 20일 상사중재법에 관한 지침을 대법관회의 결의[267]로 채택하였다. 대법관회의 결의 01/2014는 중재법의 해석과 적용을 명확하게 하는 중요한 지침으로서 베트남중재에 관하여 관할을 가지는 베트남법원의 확인, 중재합의의 유효성, 임의중재와 중재판정 취소의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268]

2. 중재에 대한 법원의 관여

베트남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중재에 관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베트남 상사중재활동에 관한 민사비송사건으로 ⅰ)중재인의 지명 또는 변경, ⅱ)긴급보전처분의 적용, 변경 또는 취소, ⅲ)중재판정의 파기, ⅳ)베트남의 상사중재에 관한 법령이 규정하는 기타 민사비송사건이 있다.[269] 베트남 상사중재활동에 관한 민사비송사건의 해결절차는 베트남 민사중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270]

상사중재법에도 관련규정을 두고 있는데 수시중재에서 중재인의 임명 또는 변경, 중재합의의 유효성과 중재판정부의 관할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대한 항소, 증거수집, 임시적 처분의 집행, 증인소환, 중재판정의 취소 또는 수시중재판정의 등록이 이에 해당한다.[271]

3. 중재와 소송간의 선택

가. 국내 중재와 국내소송간의 선택

중재와 소송간 선택의 판단기준은 전문성과 신속성 및 비공개성이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베트남 법관이 아직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고, 국제상사분쟁에 대한 고도의 전문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 때문에 중재쪽을 선호하게 된다. 중재라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중재인을 당사자가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재 절차가 베트남 법원의 재판절차에 비해 신속할 수 있다. 실무 상 베트남 법원은 제1심 절차만으로도 12개월 이상을 필요로 하고 항소사건의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는 반면, 중재는 비공개이다. 따라서 중재의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 대해서도 기밀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재가 소송보다 선호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

---

267) Resolution Guidelines for the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Council of Judges of the People's Supreme Court, 01/2014/NQ-HDTP.
268) Hogan Lovells, supra note 255 at 1.
269) 민사소송법 제340조 제1호 내지 제4호.
270) 민사소송법 제341조
271) 상사중재법 제7조; Bui Thi Bich Lien, supra note 255 at 573.

나. 국내법원과 외국법원간의 선택

한국 법원을 포함하여 외국 법원에서의 분쟁해결도 생각할 수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외국 법원 판결의 집행이 일부 국가의 법원 판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의 판결은 승인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272]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 기업의 베트남 국내 자산에 대한 집행을 하여야 한다면 외국 법원에서 베트남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4. 국내중재와 외국중재간의 선택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국내 중재 또는 외국 중재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베트남 기업과의 분쟁에서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등 외국 중재기관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베트남 기업과의 분쟁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관점에서, 베트남 중재기관의 중재가 가지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베트남 국내중재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 즉 외국 중재 판정을 베트남에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법원에서 승인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베트남 국내 중재 판정의 쪽이 집행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Ⅲ. 베트남 중재에 있어서의 중재합의와 중재적격성

1. 중재합의의 개념

상사중재법상 중재합의란 당사자간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합의를 말한다.[273] 상사중재법은 중재합의를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 또는 이후에 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274]

2. 중재합의의 요건

상사중재법은 2006년 개정 UNCITRAL모델법을 수용하여 서면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즉 중재합의의 방식은 계약의 중재조항 또는 별도의 중재합의가 가능하며,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275][276] 텔렉스, 팩스, 이메일 또는 법에 의하여 규정

272) Corinne Nguyen & Anh Duong Vu, supra note 255, at 680.
273) 상사중재법 제3조 제2호.
274) 상사중재법 제5조 제1항.
275) 상사중재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우리나라에서의 중재합의의 방식에 관하여는 한국중재법 제8조 참조. 동조는 중재합의는 독립한 합의 또는 계약 중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되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재철차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가 당사자간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중재법 제8조 제3항 제3호). 사업자가 약관 속에 중재조항을 포함시킨 경우 그 중재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면 그 중재조항은 무효이다(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된 기타 형식, 당사자간의 서면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행해진 합의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한 변호사, 공증인 또는 유사기관에 의하여 서면으로 등록된 합의는 문서로 간주된다. 당사자간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포함하는 계약, 문서, 회사정관 또는 기타 유사문서를 언급하는 경우에도 문서로 간주된다. 신청의 교환에 의한 합의와 당사자 일방이 제안한 합의의 존재를 반영하는 (자기방어) 진술이 타방 당사자에 의해 부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문서로 간주된다.[277]

3. 중재적격성

가. 중재적격성의 개념

중재적격성이라 함은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분쟁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이다.[278] 상사중재법은 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당사자간 분쟁, 당사자 중 최소한 1인이 상업활동을 하는 자인 분쟁, 법이 중재로 해결하기로 규정하는 당사자간 기타 분쟁에 대하여 중재적격성을 인정하고 있어[279] 비교적 그 범위가 넓다. 그러나 분쟁의 쟁점에 관련한 복잡한 사회관행으로 인하여 실제에 있어서는 중재적격성이 제한되고 있다.

나. 상사분쟁의 중재적격성

원칙적으로 상사분쟁만 중재의 대상이 되고 그 외의 분쟁은 법상 규정이 없는 한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베트남 상법[280] 상 상업활동은 제품의 판매와 구입, 서비스의 제공, 투자, 상업적 활동 기타 수익창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 정의되

---

276) VIAC가 공표하고 있는 VIAC중재모델 중재조항 (영어본)은 다음과 같다.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rela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resolved by arbitration at the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VIAC) in accordance with its Rules of Arbitration." or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rela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resolved by arbitration at the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at the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VIAC) in accordance with its Rules of Arbitration."
Parties may wish to consider adding:
(a)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one or three].
(b)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city and/or country].
(c)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is/shall be] the substantive law of [ ].*
(d)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 ].**
Note: * 섭외요소를 가지는 분쟁의 경우
** 섭외요소를 가지는 분쟁의 경우 또는 당사자의 최소한 1명이 외자계기업인 분쟁의 경우

277) 이상 상사중재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278) 중재적격 판단의 준거법에 대하여는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이라는 견해와 절차지법에 의한다는 견해가 대립되나 생각건대, 중재적격성의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이므로 중재지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79) 상사중재법 제2조. 한국중재법 제1조는 중재의 대상을 사법상 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법사의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상사사건뿐 아니라 가족법상의 분쟁을 포함한 일체의 민사사건이 그 대상이 된다. 사법상의 분쟁이기만 그것이 그것이 재산권상의 청구이든 비재산권상의 청구이든 당사자가 화해를 할 수 있는 분쟁이든 아니든 불문한다. 독점규제법이나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강행법규상 청구라 하더라도 그 청구가 손해배상 청구등 재산권상의 청구인 한 중재적격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계약상의 분쟁도 원칙적으로 중재의 대상이 된다.

280) Commercial Law No. 36/2005/QH11 dated 31st December 2005.

며 따라서 특정 활동이 상업활동인지 여부는 그러한 활동의 형식보다는 목적과 성질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81] 즉 상업활동의 대상은 영업등록을 했는지 여부는 고려의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 베트남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 민사주체간의 계약 또는 비계약적 채무, 결혼, 가정, 유산, 파산, 노동, 행정 등에 관한 분쟁은 중재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282] 그 외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 등 지재권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도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이해되고 있다.[283]

다. 민사분쟁의 중재적격성

중재적격이 있는 두 번째 범주의 분쟁은 당사자 중 최소한 1인이 상업활동을 하는 자인 분쟁이다. 즉 연구기관, 학교, 신문과 미디어 조직과 같은 국영조직과 단체는 상인은 아니나 상업활동을 하는 자이므로 그들과의 분쟁은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비록 그러한 조직이 영업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상업적 특성을 가지는 거래에 참여하므로 그 분쟁에 대하여는 중재적격성을 인정한다.

라. 기타 법상 중재가 허용된 경우

상사중재법은 입법자에게 장래에 중재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분쟁의 유형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현재, 예컨대, 2005년 투자법에 의해 규제되는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284] 더욱이 외국투자자와의 분쟁은 당사자가 계약상 합의하거나 미국-베트남 양자무역협정과 같이[285]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규정이 있다면 베트남 이외의 지역에서도 중재를 할 수 있다.[286]

마. 소비자분쟁의 중재적격성

소비자 분쟁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경우에 상사중재법은 소비자에게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법원과 중재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한다.[287] 그 결과, 제품 또는 용역 표준공급계약에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

---

281) 2005년 상법 제3조 제1항

282) Do Rrong Hai & Tran Duc Son, Vietnam Arbitration,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2014, at 111.

283) 이에 관하여는 학설 대립이 있는 것 같다. Bui Thi Bich Lien, supra note 255 at 577.

284) 2005년 투자법(Law on Investment) 제12조

285) 미-베트남 양자투자협정 제7조 제4항은 아래와 같이 제3국에서의 중재를 규정하였다.
4. The parties to the dispute,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m, should specify as the place of arbitration a country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that is a party to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done at New York, June 10, 1958.

286) 베트남은 ICSID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김선정, 베트남의 상사중재법과 중재제도발전에 대한 전망, 최신외국법제정보, 법제연구원, 2014, 99면; 김선정, 상사중재법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제23권 제4호, 2013. 12. 111~4면.

287) 상사중재법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For disputes between goods or service providers and customers, though an arbitral clause has been included in general conditions on goods and service provision drafted by goods or service providers,

의 동의 없이는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

4. 중재합의의 준거법

중재합의의 준거법이 어느 나라 법인가에 관하여는 상사중재법은 침묵하고 있다.[288] 베트남에서 중재합의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정지법 즉 베트남법이 적용된다는 견해와 중재의 실제준거법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중재의 대상이 된 분쟁의 준거법에 관하여는 섭외요소가 없는 국내중재의 경우 베트남법이 분쟁해결에 적용되나[289] 섭외적 요소가 있는 국제분쟁의 경우 당사자에 의하여 선택된 법을 적용한다.[290] 만일 당사자나 중재법정이 선택한 법에 분쟁에 적용될 규정이 없으면 국제관습이 적용된다.[291]

5. 중재합의의 효력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어야 하며 법원은 사건을 각하하여야 한다.[292] 당사자의 제소시 중재합의 항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각하 처리한다는 점에서 피고가 중재항변을 하면 그때 각하처리하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그러나 중재합의가 사회윤리(social ethics)에 반하거나,[293] 무효인 경우[294] 등에는 그 효력이 부인된다. 중재합의 시 권한 없는 자가 서명한 경우 그에 대한 명시적 추인뿐 아니라 묵시적 추인도 인정하고 있다. 수개의 중재합의 시 최후의 중재합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가급적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긍정하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법원이 분쟁이 중재합의의 범위 내에 있지 않거나 중재적격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중재절차 중에 있다면 법원은 사건을 각하하여야 한다. 즉 중재절차가 계류중인 분쟁의 재판을 요청받은 경우 법원은 당해 분쟁이 중재인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중재합의의 범위 밖에 있더라도 중재합의가 무효가 아닌 한[295] 일단 재판

---

consumers may select arbitration or a court to settle these disputes. Goods or service providers may initiate lawsuits at arbitration only if so consented by consumers

288) 중재합의의 유효여부와 그 취소·해제 및 철회의 효력의 준거법은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일의적 해석을 위하여 중재지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중재지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중재적격성의 경우의 마찬가지로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89) 상사중재법 제14조 제1항.

290) 상사중재법 제14조 제2항.

291) 상사중재법 제14조 제3항. 뉴욕협약에 의하면 중재합의의 준거법은 선택이 없으면 중재지법에 의하고 중재절차의 준거법(*lex arbitri*)도 선택이 없으면 중재지법에 의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92) 상사중재법 제6조; 우리나라의 경우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항변을 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소극 각하하여야 한다(한국중재법 제9조). 다만 당해 분쟁에 중재적격성이 없거나 그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중재인은 중재의 대상에 관련한 소송절차가 계속중인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개시하거나 속행할 수 있다.

293) 상사중재법 제4조.

294) 상사중재법 제18조.

절차를 종료하고 소장을 원고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나 법원이 중재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중재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분쟁을 수리할 수 있다.[296] 따라서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로 한정된다.[297] 즉 (i) 법원이 중재판정을 취소하거나 중재판정부의 중재합의에 관한 결정을 취소한 경우, (ii)중재판정부나 중재센터가 중재합의의 무효등의 사유로 중재절차를 종료하는 결정[298]을 하거나 당사자의 사망등으로 중재절차가 종료[299]함으로서 중재절차를 종지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및 (iii) 중재합의를 하였으나 그 합의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300]에 한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중재합의와 관련하여 2004년 베트남 해사법전(Vietnam Maritime Code)과 2006년 베트남 민간항공법(Law on Civil Aviation of Vietnam 2006)에 특칙이 있다. 먼저 베트남 해사법전 상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외국기관 또는 개인인 경우 계약당사자는 분쟁을 외국중재 또는 법원에서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고[301], 해사분쟁당사자가 모두 외국기관 또는 개인이고 그들이 서면으로 분쟁을 베트남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당해 분쟁이 베트남지역 외부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베트남에서 중재를 할 수 있다.[302] 즉 2011년 상사중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해사중재에 있어서는 외국중재가 허용되고 외국인 간의 베트남국내중재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베트남민간항공법은 국제화물운송계약에 있어서 승객, 수화물, 화물 운송에 관한 항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의 중재는 베트남에서 할 것을 요구한다.[303] 이 규정은 모든 중재조항 또는 합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모순되는 조항 또는 합의는 무효이다.[304]

6. 선택적 중재합의 효력

베트남 법원은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긍정하고 먼저 접수된 절차를 우선시킨다.[305] 즉 법원과 중재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경우에 당해 분쟁에 관하여 법원제소 전에 중재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사건의 처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장을 원고에게 반송한다. 법원이 일단 사건을 접수한 뒤라면 법원

295) 중재합의가 무효로 인정되는 사유는 대법관회의결의 01/2014 제3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296) 대법관회의결의 01/2014 제2조 제2항(c).
297) 대법관회의결의 01/2014 제2조 제3항.
298) 상사중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말한다.
299) 상사중재법 제59조 제1항 (a), (b), (d), (e)에 해당하여 분쟁해결이 종료된 경우를 말한다.
300) 대법관회의결의 01/2014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01) 해사법전 제260조 제1항
302) 동조 제2항.
303) 민간항공법 제173조 제1항, 제2항.
304) 동조 제3항.
305) 대법관회의결의 01/2014 제2조 제4항.

은 법원의 관할 밖임을 이유로 하는 재판종료결정을 하고 소장과 서류를 원고에게 반송한다.[306] 당해 분쟁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판정부가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장제출 후 5일 이내에 법원은 중재절차의 계속여부를 가려 중재절차가 계류 중이면 소장을 원고에게 반송한다. 만약 중재절차가 계류 중이 아니면 일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이후에 중재신청이 선행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법원은 법원의 관할 밖임을 이유로 하는 재판종료결정을 하고 소장과 서류를 원고에게 반송한다.[307]

베트남 법원이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긍정한 것은 획기적인 것이며 나아가 그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 법원이 그에 따르도록 한 것은 중재제도의 안정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조치라 할 것이다.

7. 중재합의의 무효 또는 실현불가능성, 중재판정부의 관할의 고려

분쟁의 사실관계를 고려하기 전에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의 유효성과 그러한 합의가 실현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관할을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분쟁이 관할범위에 속한다면, 중재판정부는 상사중재법 하에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만일 분쟁이 관할을 초과하거나 중재합의가 무효 또는 실현불가능하다면 중재판정부는 분쟁해결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308] 분쟁해결 중에 중재판정부가 권한밖의 행위를 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 쟁점에 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한다.[309]

당사자가 분쟁을 특정 중재센터에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중재센터가 운영을 종료하고 운영을 승계하는 중재기관이 없다면 당사자는 다른 중재센터를 선정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는 법원에 분쟁을 가져가서 해결할 수 있다.[310] 당사자가 분쟁을 수시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분쟁발생시 중재인이 불가항력 또는 객관적 장애에 기인하여 분쟁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대체할 다른 중재인 선정에 합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는 법원에 분쟁을 가져가서 해결할 수 있다.[311]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하였으나 중재의 형식을 지시하지 않거나 특정중재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분쟁이 발생한다면 당사자는 다시 분쟁을 해결할 중재의 형식

306) 그 반송절차는 민사소송법 제192조 제1항 제1목에 따른다.
307) 그 재판 및 반송절차가 민사소송법 제192조 제1항 제1목에 따라 이루어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08) 상사중재법 제43조 제1항.
309) 동조 제2항.
310) 동조 제3항.
311) 동조 제4항.

또는 특정중재기관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분쟁이 해결될 중재의 형식 또는 중재기관은 신청인의 요청으로 선정된다.[312]

중재판정부의 중재합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실현불가능성, 중재판정부의 관할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 결정을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그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자는 중재판정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313] 신청서는 중재신청서, 중재합의 및 중재판정부의 판정 사본을 동봉하여야 한다. 외국어로 된 동본문서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하고 번역본은 공증되어야 한다.[314]

신청서를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관할법원의 장은 판사를 지정하여 신청을 판단하여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후 10영업일 이내에 지정된 판사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다.[315]

법원이 판단하는 동안 중재판정부는 분쟁해결을 계속할 수 있다.[316] 법원이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관할범위를 넘는다고 결정하거나 중재합의가 부존재 또는 중재합의가 무효 또는 실현불가능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분쟁해결을 중단하는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당사자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당사자는 법에 의하여 규정된 제소기간 내에 법원에 분쟁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법원이 분쟁을 수부하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소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317]

Ⅳ. 중재의 준거법

1. 개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분쟁이란 민법전에 규정된 바와 같이 외국적 요소를 가지는 상사관계 또는 기타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의미한다.[318] 2005년 민법 제758조는 1995년 민법 제826조를 계승하고 있는데,[319] 즉 민사관계 당사자 중 최소 일방

312) 동조 제5항.
313) 상사중재법 제44조 제1항.
314) 동조 제3항.
315) 동조 제4항.
316) 동조 제5항.
317) 동조 제6항.
318) 상사중재법 제3조 제4호.
319) 1995년 민법 제826조는 처음으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의 개념에 대해서 규정하였다. 1995년 민법 소정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란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참가하거나 그 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을 위한 근거가 외국에서 발생 또는 그 관계에 관련된 재산이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민사관계”를 말한다.

이 외국기관・외국단체・외국개인이거나 국외에 정주(định cư)하고 있는 베트남인인 민사관계이거나 또는 각 당사자가 베트남 공민(công dân) 및 단체일지라도 그 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을 위한 근거가 외국법이거나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그 관계에 관련된 재산이 외국에 소재하는 민사관계를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로 규정하고 있다.[320] 그리고 이에 관한 의정(Nghị định)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① 각 참여 당사자 중 최소 일방이 외국의 기관・단체・개인, 외국에 정주한 베트남인인 각 민사관계・혼인과 가족관계・경영관계・상거래관계와 노동관계, ② 각 참여 당사자가 베트남 공민・단체일지라도 그 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의 근거가 외국법에 따르거나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그 관계에 관련된 재산이 외국에 소재하는 각 민사관계・혼인과 가족관계・경영관계・상거래관계와 노동관계로 규정하고 있다.[321]

물론 외국적 요소가 없는 분쟁의 경우 베트남법이 적용된다.[322] 이하 외국적 요소를 가진 경우 중재의 준거법을 검토하기로 한다.

2. 실체준거법

가. 준거법의 지정

섭외적 요소가 있는 분쟁의 경우 당사자에게 준거법을 지정할 자유가 주어지는바, 당사자가 합의한 준거법이 적용된다.[323][324] 당사자나 중재법정이 선택한 법에 분쟁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국제관습에 따른다. 분쟁대상인 실체의 준

---

320) 2005년 민법 제758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란 민사관계 당사자 중 최소 일방이 외국기관・외국단체・외국개인이거나 국외에 정주(định cư)하고 있는 베트남인인 민사관계이거나 또는 각 당사자가 베트남 공민(công dân) 및 단체일지라도 그 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을 위한 근거가 외국법이거나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그 관계에 관련된 재산이 외국에 소재하는 민사관계를 말한다.

321) 2006년 11월 15일자 138/2006/NĐ-CP호 의정(정부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 제3조 제1항 참조. 이 의정에서는 혼인과 가족관계를 민사관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322) 우리나라 중재법은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중재법 제29조), 중재절차도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진행하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때에는 중재인은 중재지법을 고려하여 자신이 적용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중재법 제20조).

323) 상사중재법 제14조 제2항, VIAC규칙 제22조 제2항 본문.

324)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적용됨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다. 당사자는 특정 국가의 법 뿐만 아니라 UNCITRAL 계약법원칙이나 상인법과 같은 법체계를 준거법으로 지정할수도 있다. UNCITRAL 모델국제상사중재법 제28조 제1항. 우리나라 중재법 제29조도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선언하고 당사자들이 준거법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의 대상과 최밀접관련국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야의 당사자가 당해 계약에 따라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소재지국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한국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이 경우 양도계약이 경우 양도인의 이행을,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이용허락 당사자의 이행을, 위임·. 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의 이행을 각 말한다(동조 제2항).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그으 ㅣ상거소지법상의 보호는 원용될 수 있다(국제사법 제27조). 근로계약 등에 있어서 근로자의 상거소지법 내지 근무지법상의 보호도 마찬가지로 원용될 수 있다(국제사법 제28조).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한다(국제사법 제29조).

거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으면 베트남 민법이 규정하는 국제사법원칙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된다.[325] 그러나 VIAC중재규칙은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326] 다만 지정된 준거법 적용의 결과가 베트남법의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Vietnamese law)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327]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나. 베트남법의 기본원칙

(1)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의 개념

상사중재법에서는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베트남 민법은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민법이 열거하는 기본원칙에는 계약자유의 원칙[328], 평등의 원칙[329], 신의성실의 원칙[330], 선량한 풍속존중의 원칙[331], 기본권준중의 원칙[332], 공익존중의 원칙[333]이 있다. 또한 베트남 상법은 베트남 상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의 기본원칙이나 상법의 기본원칙이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이 되는 지는 불분명하다.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의 개념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중재판정의 취소절차와 외국중재판정이 승인집행절차에 있어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위반을 이유로 중재판정이 취소되거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외국인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

(2) 베트남 대법관 결의 01/2014에 의한 개념 한정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베트남 대법관 결의 01/2014는 중재인이 판정시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였고 그 판정이 국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권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334]

(3) 기본원칙과 공서와의 관계

종래 베트남법은 공서(public order, public policy)의 개념에 친숙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2015년 베트남 민법 개정안에서 비로소 공서 개념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동 개정안 제691조는 "외국법의 적용의 결과가 공서에 위반하는 경우 베트남법을 적용한다. 외국법의 적용의 거절은 외국적 요소를 가진 민사관계를 실질적인 특성에 의존해야 하고 단지 베트남의 법체계, 정치, 경제와 비교한 해당국가의 법체계, 정치,

325) 베트남 민법은 이행지법을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769조 참조. 다만 2015년 1월 17일 개정 민법 초안은 실체준거법에 관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원칙을 최초로 법률에 명시하였다. 동 개정안 제690조 참조.
326) VIAC규칙 제22조 제2항 단서.
327) 상사중재법 제14조 제3항, VIAC규칙 제22조 제3항.
328) 베트남민법 제4조.
329) 베트남민법 제5조.
330) 베트남민법 제6조.
331) 베트남민법 제8조.
332) 베트남민법 제9조.
333) 베트남민법 제10조.
334) 대법관결의 제14조 제2항 (dd).

경제의 차이에 의존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였다.[335] 민법 개정안은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제한 개념의 축소와 명확화를 시도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중재법에도 도입된다면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이라는 불명확 개념을 명확히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V. 중재절차

1. 개설

가. 중재절차의 종류: 수시중재와 기관중재

베트남중재법의 특징은 수시중재와 기관중재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수시중재에 대하여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이다. 수시중재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어 "수시중재란 이 법과 명령 및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된 절차 하에서의 분쟁해결의 형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36]

나. 중재인의 선임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1인 또는 그 이상으로 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중재인의 수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3인의 중재인이 중재판정부를 구성한다.[337]

중재법은 중재인의 요건으로 ① 민법상의 법적 권리 능력을 가질 것과 ② 원칙적으로 학사 및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질 것을 규정한다. 그러나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자는 ②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중재인이 될 수 있다.[338] 이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도 중재인이 될 수 있는바[339][340] 이로써 외국 기업 측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면서도 중립적인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VIAC의 중재인 목록은 2015년 현재 베트남인 132명 외에 외국인 17명이 직업, 업무 범위, 언어 정보와 함께 게재하고 있다.[341] 중재인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중재인의 직종은 변호사가 29%, 국제거래전문가 22%, 기타 법률 전문가가 15%, 기타, 건설, 보험, 해상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42]

---

335) 베트남민법 개정안 제691조 제1호; Nguyen Tien Vinh, The change of Vietnam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through the modification of the Civil Code 2005, 한국국제사법학회, 동아시아 국제교류의 증가와 국제사법의 역할: 베트남 국제사법 연구, 한국국제사법학회 2015년 춘계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6면.

336) 상사중재법 제2조 제7호.

337) 상사중재법 제39조. VIAC규칙 제10조. 우리나라 중재법 제12조(중재인의 선임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법이 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1인 또는 3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참조

338) 상사중재법 제20조.

339) 2003년 상사중재에 관한 법령에서는 베트남인으로 중재인 자격을 제한하였으나, 중재법에서는 베트남인 이외에 대해서도 중재인이 되는 것을

340) Hogan Lovells, supra note 255 at 2.

341) VIAC web page; Hogan Lovells, supra note 255 at 2.

VIAC는 당사자 스스로가 사건에 적합한 인물을 중재인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실제로 중재인 목록 이외에서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많다.[343]

다.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

(1)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권한

중재판정부에 임시적 처분권한이 부여되고 있다.[344] 분쟁당사자는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 또는 법원에 이 법과 관련 법 하에서 임시긴급처분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동조 제1항). 법원에 대한 임시긴급처분을 적용하도록 요청했다는 사실이 중재합의에 대한 거절이나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으로 분쟁에 적용되는 하나 이상의 임시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임시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345]

a) 분쟁재산의 현재상태 변경금지

b) 분쟁에 있는 일방 당사자에 의한 특정조치의 금지 또는 분쟁당사자가 중재절차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명령

c) 분쟁재산의 압류

d)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재산의 보전, 보관, 판매 또는 폐기 명령

e) 당사자간의 임시적 금전지급

f) 분쟁재산에 관한 재산권의 이전금지

중재절차동안 당사자 일방이 이미 법원에 동조 1항에 규정된 하나 이상의 임시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하고 그후 중재판정부에 그러한 임시조치를 명령하도록 요청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요청을 거절하여야 한다.[346][347]

임시조치신청 전에 중재판정부는 임시조치신청당사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348] 임시조치를 신청한 당사자는 자신의 신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

342) VIAC web page http://eng.viac.vn/statistical/arbitrators-a275.html.

343) Corinne Nguyen & Anh Duong Vu, supra note 255 at 677.

344) 상사중재법 제48조.

345) 상사중재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재인은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침해의 중지 등 임시적 처분을 할 수 있다(한국중재법 제18조).

346) 상사중재법 제49조 제3항.

347) 임시조치의 명령, 변경, 보충 및 종결 절차는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VIAC규칙 제19조 제2항). 법원에 임시조치명령을 요청한 당사자는 즉시 중재센터에 그 요청을 통지하여야 한다(VIAC규칙 제19조 제3항 제2문).

348) 상사중재법 제49조 제4항.

다. 임시조치신청자는 자신의 잘못된 신청으로 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349]

(2) 중재판정부의 사실확인권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쟁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타방 당사자의 참석하에 일방 당사자를 면접하거나 함께 토의할 권리를 가진다.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구에 의하여 당사자의 면전 또는 당사자에게 통지를 행한 후에 제3자로부터 사실확인을 할 수 있다.[350]

(3) 중재판정부의 증거수집권한

중재판정부는 증거수집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증인, 재산 조사 또는 평가, 전문가 의견, 법원조력 등을 요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당사자는 증거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35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으로 증인에게 분쟁관련 정보와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352]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구에 의하여 분쟁에 있는 자산의 조사 또는 평가를 시행할 권리를 가진다.[353]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전문가 비용은 자문 요청자에 의하여 선납되거나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할당된 비율로 지불되어야 한다.[354]

중재판정부 또는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이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 관할 법원에 기관, 조직 및 개인에게 분쟁에 관한 문서 또는 기타 대상물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서면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355] 증거수집에 관한 서면요청서를 받은 후 7일 내에 해당 법원의 장은 이 서면요청서를 고려하여 처리하도록 판사에게 할당하여야 한다. 할당된지 5일 이내에 담당 판사는 증거를 관리하고 보유하는 기관, 조직 및 개인에게 그것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서명요청서를 동급 검찰원이 법에 의한 기능과

---

349) 상사중재법 제52조.
350) 상사중재법 제45조, VIAC규칙 제16조.
351) 상사중재법 제46조 제1항, VIAC규칙 제17조 제1항.
352) 상사중재법 제46조 제2항, VIAC규칙 제17조 제2항.
353) 상사중재법 제46조 제3항, VIAC규칙 제17조 제3항.
354) 상사중재법 제46조 제4항;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가의 견을 청취할 권리를 가진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를 가진 전문가를 제공하거나 관련 문서, 제품, 자산에 접근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전문가는 중재판정부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를 받은 후 중재판정부는 보고서의 사본을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당사자의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VIAC규칙 제17조 제4항).
355) 상사중재법 제46조 제5항.

직무를 수행하도록 동급 검찰원에 송부하여야 한다.[356]

(4) 중재판정부의 증인소환을 할 권리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구가 있고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증인이 심리에 참석하도록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증인비용은 증인을 요청한 당사자가 지불하거나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할당된 비율로 당사자에 의하여 지불된다.[357] 증인이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정식 소환되었으나 합법적인 이유없이 심리에 결석하고 증인의 결석이 분쟁해결에 장애를 야기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관할 법원에 증인이 심리에 참석하도록 소환하는 결정을 발급하도록 서면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58]

중재판정부의 증인소환 서면요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의 장은 그 요청을 검토하고 담당할 판사를 지명해야 한다. 지명된 지 5일 이내에 지명된 판사는 증인소환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원은 즉시 이 소환장을 중재판정부와 증인에게 송부하고, 동급 검찰원이 법에 따른 기능과 직무를 수행하도록 동급 검찰원에도 송부하여야 한다. 증인은 법원의 결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359][360]

(5) 서류의 보관의무[361]

중재센터는 분쟁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수시중재에 의하여 해결된 분쟁서류는 당사자 또는 중재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중재서류는 중재판정문의 작성 또는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종료하는 결정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 중재지(venues)[362]

당사자가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지(venues)에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며, 만일 합의가 없다면 중재판정부가 중재지를 결정하는데,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지는 베트남 내부 또는 외부일 수 있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구성원의 의견교환, 증인의 진술청취, 전문가자문 또는 재화, 자산 또는 기타 문서를 평가하는데 적절한 중재지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마. 언어[363]

---

356) 상사중재법 제46조 제6항; VIAC규칙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중재판정부 또는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이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 관할 법원에 법에 의거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서면 요청서가 제출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VIAC규칙 제17조 제5항).

357) 상사중재법 제47조 제1항, VIAC규칙 제18조 제1항.

358) 상사중재법 제47조 제2항, VIAC규칙 제18조 제2항.

359) 상사중재법 제47조 제3항.

360) 증인이 정식소환되었으나 결석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연기하거나 확보된 문서에 기초해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VIAC규칙 제18조 제3항).

361) 상사중재법 제64조.

362) 상사중재법 제11조.

363) 상사중재법 제10조.

외국적 요소가 없는 분쟁에 대하여 중재절차에 사용되는 언어는 베트남어이다. 그러나 최소한 분쟁당사자 일방이 외국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쟁당사자가 베트남어를 사용할 수 없다면 통역인을 사용할 수 있다.
외국적 요소를 가지는 분쟁 또는 최소한 분쟁당사자 일방이 외국투자기업인 경우에는 당사자는 중재절차에 사용될 언어에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만일 당사자가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에 사용될 언어를 결정한다.

바. 중재절차의 진행

상사중재법에 따른 주요 중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중재절차 개시의 시기[364]

분쟁이 중재센터에 의하여 해결될 경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절차 개시의 시기는 중재센터가 신청인의 신청서를 받는 때이다. 분쟁이 수시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경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절차 개시의 시기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신청서를 받는 때이다.[365]

(2) 신청서의 통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중재센터의 절차규칙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는한, 신청인의 신청서, 첨부 문서 및 중재비용 수령증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중재센터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사본과 중재합의 및 관련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366]

(3)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소기한

관련 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중재절차에 따른 제소기간은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침해일로부터 2년이다.[367]

(4) 답변서[368]

답변서에는 작성일,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항변을 위한 근거와 증거, 피신청인이 중재인으로서 선정하거나 중재인으로서 지정요청을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분쟁에 중재센터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

364) 상사중재법 제31조.
365) 분쟁이 수시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ⅰ) 작성일 (ii)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증인의 성명 및 주소(가능하다면) (iii) 사실관계의 요약 (iv) 중재신청 제기를 위한 근거 및 증거(가능하다면) (ⅴ) 신청인의 신청원인과 분쟁가액 (vi) 신청인이 중재인으로 선정하는 자 또는 중재인으로 지정요청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신청서에는 중재합의와 관련 문서의 원본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상사중재법 제30조).
366) 상사중재법 제32조.
367) 상사중재법 제33조.
368) 상사중재법 제35조.

나 중재센터의 절차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신청인의 신청서와 첨부 문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피신청인은 중재센터에 답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으로 제출기한은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재센터에 의해 연장 가능하다. 피신청인이 분쟁이 중재관할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중재합의가 부존재하거나 중재합의가 무효하거나 실현불가능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답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5) 피신청인의 반대신청[369]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분쟁관련 문제에 대하여 반대신청을 할 수 있다.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중재센터에 송부되어야 한다. 분쟁이 수시중재에 의하여 해결된다면, 반대신청은 중재판정부와 신청인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반대신청은 답변서와 동시에 제출되어야 한다.

반대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은 중재센터에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분쟁이 수시중재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우 신청인은 중재판정부와 피신청인에게 답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해결하는 중재판정부는 이 법 하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해결하는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반대신청을 해결하여야 한다.

(6) 신청 또는 반대신청의 철회; 신청의 수정 및 보완; 반대신청 또는 답변서[370]

중재판정서가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는 신청과 반대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중재절차동안에, 당사자는 신청서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반대신청 또는 답변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수정 및 보완이 중재판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지체시키는데 남용되거나 분쟁에 적용되는 중재합의의 범위를 넘는 경우 이를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7) 분쟁해결심리준비[371]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중재센터의 절차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중재센터는 분쟁해결심리를 진행하기 위한 기일과 장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중재센터의 절차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기일 소환장은 심리기일 개시 전 최소한 30일 전에 당사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8) 분쟁해결심리의 구성과 절차

분쟁해결심리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비공개로 개최된다. 당사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분쟁해결심리에 참석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그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센터는 분쟁해결심리에 그밖의 자가 참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69) 상사중재법 제36조.
370) 상사중재법 제37조.
371) 상사중재법 제54조.

분쟁해결심리를 진행하기 위한 순서와 절차는 중재센터의 중재절차규칙에 특정되거나 수시중재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여야 한다.

사. 중재비용

2014년 3월 24일 이후 VIAC에 제기된 안건에서 중재인 3인인 경우의 중재비용(중재인의 보수를 포함한다)은 분쟁대상금액에 따라 달라진다.[372] 또한, 1인의 중재인의 경우에는 3명의 경우의 중재 비용의 70%가 된다.

2. 수시중재절차

가. 수시중재의 개시

(1) 신청서와 첨부문서

분쟁이 수시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ⅰ) 작성일 (ii)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증인의 성명 및 주소(가능한 경우) (iii) 사실관계의 요약 (iv) 중재신청 제기를 위한 근거 및 증거(가능한 경우) (ⅴ) 신청인의 신청원인과 분쟁가액 (vi) 신청인이 중재인으로 선정하는 자 또는 중재인으로 지정 요청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신청서에는 중재합의와 관련 문서의 원본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373]

(2) 중재절차 개시시기

분쟁이 수시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경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절차 개시의 시기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신청서를 받는 때이다.[374]

372) VIAC 웹페이지에 게시된 분쟁가액별 중재비용은 다음과 같다.

분쟁가액	중재비용
Up to 100,000,000	15,000,000
From 100,000,001 to 1,000,000,000	15,000,000 + 7.0% of the amount over 100,000,000
From 1,000,000,001 to 5,000,000,000	78,000,000 + 4.0% of the amount over 1,000,000,000
From 5,000,000,001 to 10,000,000,000	238,000,000 + 2.5% of the amount over 5,000,000,000
From 10,000,000,001 to 50,000,000,000	363,000,000 + 1.5% of the amount over 10,000,000,000
From 50,000,000,001 to 100,000,000,000	963,000,000 + 1.0% of the amount over 50,000,000,000
From 100,000,000,001 to 500,000,000,000	1,463,000,000 + 0.4% of the amount over 100,000,000,000
Over 500,000,000,000	3,063,000,000 + 0.1% of the amount over 500,000,000,000

373) 상사중재법 제30조.

374) 상사중재법 제31조 제2항.

나. 수시중재인의 선임

수시중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중재인을 선임한다.[375] 즉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시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특정된다.

신청인의 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피신청인은 중재인을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선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한이 초과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선정된 중재인의 성명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쌍방이 중재인의 지정에 관하여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은 관할 법원에 피신청인을 위한 중재인을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동조 제1호).

다수 피신청인이 관련되는 분쟁에서 다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중재신청서와 부속문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는데 합의하여야 한다. 이 기한을 초과하여 피신청인이 중재인을 선정할 수 없고 당사자가 중재인의 지정에 대하여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관할 법원에 피신청인을 위한 중재인을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동조 제2호).

당사자 쌍방에 의한 선정 또는 법원에 의한 지정 후 15일 이내에 중재인은 또 다른 중재인을 중재판정부의 의장으로서 선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의 의장이 선정될 수 없고 당사자 쌍방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은 관할 법원에 중재판정부의 의장을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동조 제3호).

당사자가 자신들의 분쟁을 단독중재인에 의하여 해결하는데 합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단독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가 중재센터에 중재인을 지정하도록 요청하는데 합의하지 않는 경우 관할법원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으로 단독중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동조 제4호).

위 제1호 내지 제4호 하의 당사자의 요청을 받은 지 7일 이내에 관할법원의 장은 판사로 하여금 중재인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동조 제5호).

대법관회의결의 01/2014에서는 관련 당사자의 요청으로 법원은 다음의 경우 수시중재인 또는 수시중재판정부의 의장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376]

1)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중재인 선정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2) 중재인들이 피신청인이 중재인을 선정한 후 15일 이내에 의장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3) 양당사자가 신청인의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분쟁해결을 위한 단독중재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수시중재인이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375) 상사중재법 제41조 참조.

376) 대법관회의결의 01/2014 제8조 제1항.

당사자가 분쟁을 수시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분쟁발생시 중재인이 불가항력 또는 객관적 장애에 기인하여 분쟁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대체할 다른 중재인 선정에 합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는 법원에 분쟁을 가져가서 해결할 수 있다.[377]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하였으나 중재의 형식을 지시하지 않거나 특정중재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분쟁이 발생한다면 당사자는 다시 분쟁을 해결할 중재의 형식 또는 특정중재기관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분쟁이 해결될 중재의 형식 또는 중재기관은 신청인의 요청으로 선정된다.[378]

라. 수시중재인의 변경

법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인은 분쟁해결을 거절하고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인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379] 중재인은 선정되거나 지정된 경우 중재판정부와 당사자에게 객관성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380]

수시중재의 경우 중재인의 변경은 중재판정부의 다른 구성원이 결정한다. 이들 구성원이 결정을 할 수 없거나 중재인 또는 단독중재인이 분쟁해결을 거절하는 경우 중재인,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관할법원의 장은 판사를 지정하여 중재인변경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381] 지정된 판사는 7일 이내에 새로운 중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382] 중재센터의 장 또는 법원의 중재법 제42조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경우의 결정은 최종적이다.[383]

중재인이 변경되거나 불가항력 또는 객관적 장애에 기인하여 계속해서 분쟁해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중재인의 선임 또는 지정은 이 법에 특정된 절차와 순서에 따른다. [384]

마. 피신청인의 답변과 반대신청

분쟁이 수시중재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신청인의 신청서와 첨부 문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중재인에게 답변서와 피신청인이 선정한 중재인의 성명과 주소를 송부하여야 한다.[385]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분쟁관련 문제에 대하여 반대신청을 할 수 있다.[386] 분쟁이 수시중재에 의하여 해결된다면, 반대신청은 중재판정부와 신청인에게 송부되어야

---

377) 동조 제4항.
378) 동조 제5항.
379) 상사중재법 제42조 제1항.
380) 상사중재법 제42조 제2항.
381) 상사중재법 제42조 제4항.
382) 대법관회의결의 01/2014 제9조 제3항.
383) 상사중재법 제42조 제5항.
384) 상사중재법 제42조 제6항; VIAC규칙 제15조 제5항.
385) 상사중재법 제35조 제3항.
386) 상사중재법 제36조 제1항.

한다. 반대신청은 답변서와 동시에 제출되어야 한다.[387]
분쟁이 수시중재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우 신청인은 반대신청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와 피신청인에게 답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388]

바. 수시중재절차

분쟁해결기일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한,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389] 수시중재의 경우 분쟁해결기일을 진행하는 순서와 절차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바에 의한다.[390]

사. 중재비용

중재비용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중재센터의 수시중재인의 지정 비용과 중재센터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의 이용 비용을 포함한다.[391]
중재비용은 중재센터에 의하여 정해진다. 수시중재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 중재비용은 중재판정부가 정한다.[392]

아. 중재판정의 등록

관할 민사판결집행부서에 판정집행을 요청하기 전에 수시중재판정문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으로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문을 내린 곳의 법원에 등록되어야 한다. 중재판정의 등록과 비등록은 판정의 내용과 법적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93]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1년 이내에 수시중재의 판정의 등록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동조 제1항에 규정된 관할법원에 등록신청서와 다음 문서의 원본 또는 진정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394]
a. 수시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판정
b. 수시중재판정부의 분쟁해결기일 조서(Minutes) (가능한 경우)
c.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증명사본
요청자는 법원에 보낸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판정등록신청서를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법원장은 신청을 검토할 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된 후 10영업일 이내에 그 판사는 신청서에 첨부된 문서의 진정성

---

387) 상사중재법 제36조 제2항.
388) 상사중재법 제36조 제3항.
389) 상사중재법 제55조 제1항.
390) 상사중재법 제55조 제4항.
391) 상사중재법 제34조 제1항 d호, e호.
392) 상사중재법 제34조 제2항.
393) 상사중재법 제62조 제1항.
394) 상사중재법 제62조 제2항.

을 조사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이 허위인 것을 발견한 경우 그 판사는 등록을 거절하고 신청서와 첨부 문서를 반환하고 즉시 요청자에게 반환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의 통지를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요청자는 등록거절에 대하여 법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받은 후 3영업일이내에 법원장은 판단하여 이의제기를 해결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원장의 분쟁해결결정은 최종적이다.[395]

수시중재의 등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62조 제4항).

a. 등록 일시와 장소
b. 등록을 행하는 법원명
c. 등록요청자의 성명과 주소
d. 등록된 판정
e. 담당자의 서명과 법원의 관인

기관중재판정의 경우와 달리 수시중재판정에 대하여는 중재판정을 관할법원에 1년 내에 등록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바, 수시중재판정의 등록에 관하여 법원은 판정일 1년 이후에 수시중재판정문의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396] 수시중재판정의 취소가 관할법원에 의하여 검토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수시중재판정의 등록신청을 받은 법원은 중재판정의 취소결정이 있을때까지 신청의 처리를 연기하여야 한다.[397]

3. 기관중재절차

가. 중재센터

(1) 개설

상사중재법에 따라 8개의 중재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398]
중재센터는 기관중재의 분쟁해결을 위해 조직하고 분쟁해결을 조정하며, 중재절차 동안 행정, 사무실 업무 및 기타 업무에 있어서 중재인에 조력하는 기능을 가진다.[399]

하노이에 3개 중재센터, 호치민에 4개 중재센터, 칸토 시티에 1개 중재센터가 있다.[400] 그중 국제중재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고 또한 인지도도 높은 중재센터

395) 상사중재법 제62조 제3항.
396) 대법관회의결의 01/2014 제13조 제1항 제1문.
397) 대법관회의결의 01/2014 제13조 제1항 제2문.
398) 상사중재법 제23조 내지 제29조에서 중재센터의 설립, 권리의무 등에 대하여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중재센터의 기능(제23조), 중재센터의 설립 요건과 절차(제24조), 중재센터운영의 등록(제25조), 중재센터의 설립공표(제26조), 중재센터의 법적 지위와 구조(제27조), 중재센터의 권리의무(제28조), 중재센터의 운영종료(제29조)에 대하여 규정한다.
399) 상사중재법 제23조.
400)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VIAC")

는 베트남 국제중재센터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VIAC")이다. 베트남 국제중재센터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중재법은 외국중재기관이 베트남에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를 설치하고 활동을 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지만,[401] 이러한 외국중재기관에 의해 내려진 중재판정은 앞서본 바와 같이 베트남 내에서의 집행에 있어서는 외국중재판정으로 취급된다. 2015년 6월 현재 베트남에 지사 또는 연락 사무소를 가진 외국중재기관은 아직 없다.[402]

(2) 중재센터의 개설과 폐지

(가) 일반

중재센터의 허가(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포함)는 첫째로 법무부가 발행하는 설립허가증과 둘째로 중재센터가 주사무소를 가지는 지방법무청이 발행하는 운영등록서를 요구하는 2단계의 절차로 구성된다. 중재센터는 운영등록서 발행일부터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나) 중재센터 설립요건과 절차

중재센터는 상사중재법 제20조에 규정된 중재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베트남 국적을 가진 최소한 5인이 설립을 요청하고 이 센터가 법무부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는 경우 설립된다.[403]

중재센터의 설립요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404]

ⅰ) 서면 요청

ⅱ) 법무부 발행 양식에 따라서 작성된 중재센터 정관(초안)

ⅲ) 발기인 목록과 상사중재법 제20조의 자격을 증거하는 첨부서류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법무부는 중재센터 설립허가를 하여야 하며 중재센터의 정관을 승인하여야 한다. 거절의 경우에 법무부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는 서면 회신을 하여야 한다.[405]

•Hanoi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HCAC")
•Vietnam Bank Financial and Commercial Center for Arbitration (“VIFIBAR”);
•Financial and Commercial Center for Arbitration (“FCCA”);
•Ho Chi Minh City Commercial Arbitration Center (“TRACENT”);
•Can Tho Commercial Arbitration Center (“CCAC”);
•Asia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enter (“ACIAC”); 및
•Pacific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PIAC”)

401) 상사중재법 제74조. 외국중재기관의 베트남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는 그 운영을 위하여 베트남법에 의거 책임을 진다(제75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외국중재기관의 베트남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의 설립, 등록, 운영, 운영의 종료는 베트남법과 베트남이 체약국인 조약에 따른다(제79조).

402) Hogan Lovells, supra note 255 at 2.

403) 상사중재법 제24조 제1항.

404) 상사중재법 제24조 제2항.

405) 상사중재법 제24조 제3항.

(다) 중재센터 운영등록[406]

설립허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센터는 주사무소를 가지는 성급 지방 법무부에 운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중재센터가 운영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설립허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다. 성급 지방법무부는 서면 등록 요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중재센터를 위하여 운영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의정63은 제출되어야 할 문서와 신청기한을 포함한 운영등록증의 신청절차의 상세를 규정한다.[407]

(라) 중재센터의 설립공표

운영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센터는 중앙일간지 또는 그 운영을 등록한 장소의 지방일간지에 아래 내용을 3일간 연속 공고하여야 한다.[408]

(ⅰ) 주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ii) 그 활동영역

(iii) 운영등록증의 발급번호, 발급자 및 발급일

(iv) 운영개시일

중재센터는 이 조 제1항에 특정된 상세사항과 중재인목록을 주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409]

(마) 중재센터의 운영종료[410]

중재센터는 (ⅰ)정관에서 특정된 경우, (ii) 설립허가 또는 운영등록증의 취소의 경우에 운영을 종료한다. 정부는 설립허가 또는 운영등록증의 취소에 따르는 경우와 중재센터의 종료 순서와 절차를 상세하게 하여야 한다.

베트남 중재센터의 설립허가와 운영등록증은 다음의 경우 취소된다.[411] (ⅰ)만일 행정벌금(administrative penalty) 부과후에 중재센터가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ii) 중재센터가 설립허가증 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 정관 또는 설립허가증에 규정한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iii)중재센터가 설립허가증의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법무청에 운영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iv)또는 중재센터가 상사중재법에 따른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정관 또는 절차규칙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

(3) 중재센터의 구성

상사중재법에 규정된 중재센터의 법적 지위와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412]

406) 상사중재법 제25조.
407) 의정63 제8조, 제10조.
408) 상사중재법 제26조 제1항.
409) 상사중재법 제26조 제2항.
410) 상사중재법 제29조.
411) 의정63 제15조 제1항 (a)내지)d).

1. 중재센터는 법인자격을 가지며 자체 직인과 은행계좌를 가진다.
2. 중재센터는 비영리목적으로 운영한다.
3. 중재센터는 국내외에 지사무소와 대표사무소를 둘 수 있다.
4. 중재센터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을 둔다. 중재센터의 구조와 기구는 그 정관에 규정되어야 한다.
중재센터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구성되며 또한 위원장이 지명한 사무장을 둔다. 위원장은 중재인이다.
5. 중재센터는 중재인목록을 비치한다.

(4) 중재센터의 권한과 의무

상사중재법이 규정하는 중재센터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413]
(ⅰ) 이 법에 따른 정관과 절차규칙의 초안
(ⅱ) 중재인의 기준, 선정과정, 중재인 목록의 작성과 목록에서의 중재인 삭제
(ⅲ) 중재인 목록과 수정목록의 공표를 위한 법무부 송부
(ⅳ) 이 법에서 특정된 경우에 중재판정부의 구성을 위한 중재인 지정
(ⅴ) 중재서비스의 제공, 화해 시도 및 법 하에서 상사분쟁해결을 위한 다른 형태의 적용
(ⅵ)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 사무소 및 기타 서비스
(ⅶ) 중재비용 및 기타 중재운영에 관한 합법적 비용의 징수
(ⅷ) 중재인에 대한 보수 및 기타 비용 지급
(ⅸ) 중재인의 분쟁해결 자격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한편 중재센터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414]
(ⅰ) 중재센터의 운영등록을 한 성급 지방법무청에 운영에 관한 연간보고
(ⅱ) 분쟁 당사자 또는 관할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른 중재판정문 사본의 제공과 서류의 보존

(5) 중재센터의 명칭과 로고

중재센터의 명칭은 베트남어로 되어야 하며 중재센터라는 단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만일 중재센터가 외국어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베트남어 번역을 병기하여야 한다. 그 명칭은 기존 중재센터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야기하여서는 안되며 베트남의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도덕적 전통과 관습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415]
중재센터는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나 로고에 국기, 정당표시, 국가의 상징, 지도자의 이미지 또는 베트남 화폐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416]

412) 상사중재법 제27조.
413) 상사중재법 제28조 제1호 내지 제9호.
414) 상사중재법 제28조 제10호, 제11호.
415) 의정63 제6조 제1항.

(6) 베트남 국제중재센터의 현황

VIAC는 1993년에 총리 결정[417]에 따라 앞서 언급한 무역중재위원회(Foreign Trade Arbitration Committee)와 해사중재위원회(Marine Arbitration Committee)가 합병하여 설립된 독립한 비정부 비영리 법인이다.[418] 설립시부터 2013년까지 VIAC의 사건처리실적은 표1과 같다. 설립 당초 1993년에는 불과 6건이었지만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99건을 기록한데 이어 2014년에 중재사건 124건으로 증가하였고 2015년 1사분기에만 44건을 접수하였다고 한다.[419]

[표1] VIAC의 처리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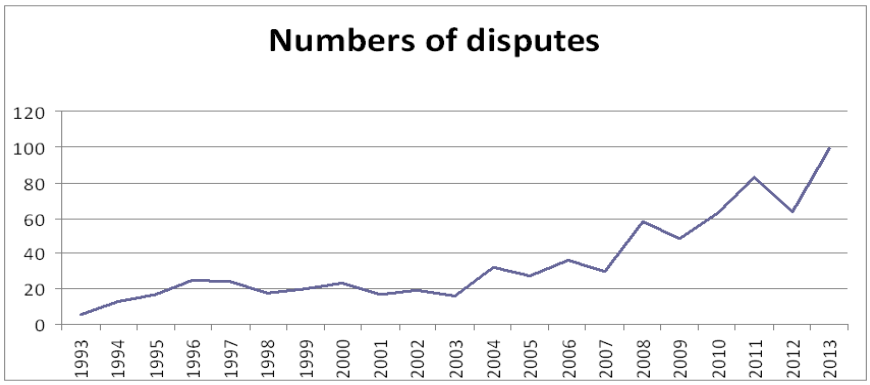

2014년 124건 중 처리사건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국제사건 62%
- 영어로 진행한 사건 수 25건
-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사건 수 4건
- 외국중재인 선임 사건 3건
  VIAC 중재인 목록: 베트남인 132명, 외국인 17명
- 매매 사건 62건
- 건설 사건 25건
- 변호사 대리사건 50% 이상
- 소요기간 81일 내지 251일

(7) 베트남내 외국중재센터와 운영

416) 의정63 제6조 제2항.
417) Decision No.24/TTg(1993년 4월 28일 공표)
418) 2015. 7.1. 현재 VIAC 하노이 사무소는 베트남 상공 회의소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의 건물에 있으며 호치민, 다낭 및 칸토에 지점이 있다.
419) Hop Dang, Commercial Arbitration in Vietnam- A realistic choice for investors in resolving infrastructure/energy disputes?, 12, May 2015(Seoul IDRC)

(가) 베트남내 외국중재센터의 허가(Licensing)

(ⅰ) 일반

외국중재센터가 자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된다면 베트남에서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허용된다. 지점은 베트남에서 중재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반면 대표사무소는 모국 중재센터의 기회를 추구하고 촉진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중재활동을 수행할 수는 없다.[420]

(ⅱ) 설립허가와 운영등록증 신청

의정63은 허가절차의 상세를 규정하고 외국중재센터가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의 설립을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설립증서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점 설립의 경우 운영등록증은 설립증서의 발행 이후 신청되어야 한다. 의정63은 신청제기(file)의 상세와 제출되어야 할 문서를 규정한다.[421]

(ⅲ) 설립허가와 운영등록증의 취소

외국중재센터의 경우 설립허가증(지점 또는 대표사무소) 또는 운영등록증(지점만)은 (ⅰ)만일 과태료(administrative penalty) 부과 후에 중재센터가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ⅱ)중재센터가 설립허가증 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 정관 또는 설립허가증에 규정한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에 취소될 수 있다.[422]

(나) 외국중재센터의 지점

(ⅰ) 지점의 법적 지위와 그 구조[423]

지점은 외국중재센터의 의존적인 단위이며 이 법에 의거 베트남에서 설립되어 중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외국중재센터와 그 지점은 지점의 운영을 위하여 베트남법 앞에서 책임을 진다. 외국중재센터와 지점의 대표로서 행위할 중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지점의 대표는 베트남내 외국중재센터의 정식 대표이다.

(ⅱ) 지점의 권리의무

외국중재센터 지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424]

(ⅰ) 지점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임대, 설비와 도구 대여와 구입
(ⅱ) 베트남법 하에서 베트남인과 외국인 피용자의 고용
(ⅲ) 베트남내 운영허가를 받은 은행에 베트남동과 외국환 계좌의 개설
(ⅳ) 베트남법하에서 해외 수입송금
(ⅴ) 베트남법하에서 지점명의의 인장 보유

---

420) 의정63 제13조 제1항.
421) 의정63 제21조.
422) 의정63 제24조 제1항 (a)(b).
423) 상사중재법 제75조.
424) 상사중재법 제76조 제1호 내지 제11호.

(vi) 외국중재기관이 허락한 중재판정부 구성을 위한 중재인의 지정
(vii) 중재서비스 제공, 화해 시도 및 이 법하에서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타 형태 적용
(viii) 외국중재센터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 사무, 기타 서비스 제공
(ix) 중재비용 및 기타 합법적 비용 징수
(x) 중재인 보수 지급
(xi) 중재인의 분쟁해결 자격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교육 과정 준비

외국중재센터 지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425]
(i) 중재결정의 서류 보관과 분쟁당사자 또는 권한있는 베트남 국가기관의 요청시에, 중재결정 사본 제공
(ii) 설립허가증 또는 운영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에서의 운영
(iii) 외국중재센터 운영에 관한 베트남법 준수
(iv) 운영을 등록한 지방의 성급 법무청에 대한 연간보고

(다) 외국중재센터 대표사무소

(i) 대표사무소의 법적 지위[426]

대표사무소는 외국중재센터의 의존적 단위이며, 이 법 하에서 베트남내에서 설립되어 중재활동의 기회를 추구하고 촉진할 수 있다. 외국중재센터는 대표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베트남법 앞에서 책임을 진다.

(ii) 대표사무소의 권리의무

외국중재센터 대표사무소의 권리의무는 다음과 같다.[427]
(i) 베트남내 중재기관의 중재활동기회의 추구와 촉진
(ii) 대표사무소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임대, 설비와 도구 대여와 구입
(iii) 베트남법 하에서 베트남인과 외국인 피용자의 고용
(iv) 베트남내 운영허가를 받은 은행에 외국환과 베트남동 계좌의 개설과 그 운영목적만을 위한 계좌 사용
(v) 베트남법하에서 대표사무소 명의의 인장 보유
(vi) 설립허가증에 기술된 목적, 범위 및 기간동안의 운영
(vii) 베트남에서의 중재활동 수행의 금지
(viii) 베트남법 하에서 중재활동촉진 및 광고활동만의 수행
(ix) 외국중재센터 운영에 관한 베트남법 준수
(x) 운영을 등록한 지방의 성급 법무청에 대한 연간보고

425) 상사중재법 제76조 제12호 내지 제15호.
426) 상사중재법 제77조.
427) 상사중재법 제78조 제1호 내지 제10호.

나. 중재인 선임절차

(1)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인선임절차는 기관중재와 수시중재에 따라 달라진다. 기관중재에 있어서의 중재인의 선임은 중재기관의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3인 중재판정부의 경우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각각 1명씩 선임하고 그 당사자로부터 선임된 2인의 중재인이 중재판정부의 의장이 되는 또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피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신청인 전원이 1인의 중재인을 선임하여야한다.[428] 당사자에 의한 중재인 선정이 어려운 경우 중재센터의 장이 개입하게 된다. 수시중재가 기관중재와 다른 점은 당사자에 의한 중재인 선정이 어려운 경우 중재센터의 장 대신 법원이 개입하게 되는 점이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중재센터의 절차규칙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센터의 구성은 다음에 의한다.[429]

중재센터가 송부한 중재신청서와 중재인선정 요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피신청인은 중재인을 선정하여 그것을 중재센터에 통지하거나 중재센터의 장에게 중재인을 지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항에 특정된 시한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중재센터의 장은 피신청인을 위한 중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동조 제1호).

다수 피신청인이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 중재센터가 발송한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피신청인은 중재인의 선정에 합의하거나 중재인의 지정요청에 합의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중재인을 선정할 수 없다면 이 조항에 특정된 시한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중재센터의 장은 피신청인을 위한 중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동조 제2호).

당사자가 선정하거나 중재센터의 의장이 지정한 후 15일 이내에, 중재인들은 다른 중재인을 중재판정부의 의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시한을 초과하여 선정이 있지 않으면 7일 이내에 중재센터의 의장이 중재판정부의 의장을 지정하여야 한다(동조 제3호).

당사자가 자신들의 분쟁을 단독중재인에 의하여 해결하는데 합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그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센터의 장이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의 요청으로 그러한 요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단독중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428) Bui Thi Bich Lien, supra note 255 at 579.

429) 상사중재법 제40조.

(2) 중재인 기피

중재인의 제척사유로는 중재인이 친척이거나 당사자의 대표자인 경우, 분쟁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중재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중재인이 당해 분쟁이 중재신청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변호사, 대표, 조정인 등으로 행위한 경우 등이다.[430]

(3) 중재인 궐위시의 조치

중재법에서는 기관중재 시, 아직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중재기관의 장은 중재인의 변경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중재판정부가 이미 구성된 경우 그 변경은 중재판정부의 다른 구성원에 의하여 행해진다. 이들 구성원이 결정할 수 없거나 중재인 또는 단독중재인이 분쟁해결을 거절하는 경우 중재기관의 장은 중재인의 변경을 결정한다.[431]

참고로 VIAC규칙에 의하면 중재판정부의 남아있는 중재인 또는 중재센터의 장이 중재인을 대체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대체 중재인의 선정과 임명은 중재판정부 구성 조항(본 규칙 제11조와 제12조)에 의거하여야 한다.[432]

다. VIAC에서의 중재절차

VIAC 규칙에 근거한 중재 절차의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절차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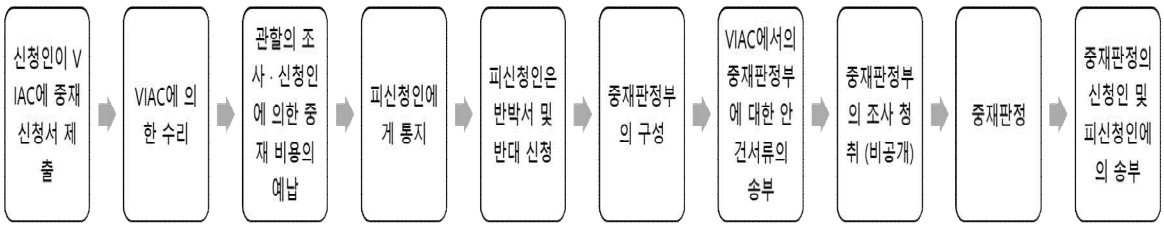

430) 상사중재법 제42조 제1항 a~d호. VIAC규칙에 의하면 이러한 제척사유외에 중재인이 당사자가 합의한 특정한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추가된다(VIAC규칙 제15조 제1항, 제14조 제3항).

431) 상사중재법 제42조 제3항.

432) VIAC규칙 제15조 제3항.

VIAC중재는 VIAC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되는바 현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 유효하며 총 35개조로 구성된다. VIAC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는 중재인의 전문성, 당사자들이 사용 언어 및 위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절차의 유연성, 절차의 신속성 때문에 주목된다.[433]
베트남법하에서 일반적인 제소기간이 중재절차에도 적용되어 분쟁발생일로부터 2년 내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한다.[434] 특별한 분쟁유형을 위한 특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예컨대 보험업에 관한 법률은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3년의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다.

(1) 중재절차의 개시
중재절차는 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중재센터에 제출하는 것에 의하여 개시된다.[435] 중재신청서는 중재합의와 기타 부속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436]

(2) 피신청인에 대한 통지
중재신청서의 수리후 10일 이내에 중재센터는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중재신청서의 부본 및 부속문서의 부본을 중재인의 목록과 함께 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437]

(3) 피신청인의 답변서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의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거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중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438]

피신청인이 중재합의의 부존재, 무효, 이행불능을 주장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답변서에 그 주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 피신청인은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중재센터에 동규칙 제11조 2항과 제12조에 따라서 중재인을 지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의 요청으로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신청은 서면으로 위의 30일 이내에 중재센터에 제출되어야 한다.[439]

---

433) 상사중재법 및 VIAC규칙은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 규칙을 적용하는 것도 인정하지만 실무 상 VIAC 이외의 기관의 중재 규칙의 적용은 VIAC이 수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베트남의 중재인이 IBA 증거지침 등의 국제 중재 규칙에 익숙하지 않고, 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할 때 베트남 법원이 VIAC 아닌 국제중재기관의 규칙의 적용이 중재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집행을 인정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434) 상사중재법 제33조는 중재신청할 수 있는 때로부터 2년으로 중재신청기한을 명시하고 있다. ; Hogan Lovells, supra note 255 at 3.
435) VIAC규칙 제5조 제1항.
436) VIAC규칙 제6조 제3항.
437) VIAC규칙 제7조.
438) VIAC규칙 제8조 제1항.

(4) 반대청구의 신청

피신청인은 중재판정부의 심리에 선행하여 반대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반대청구는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하는데 의지한 중재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440]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한, 중재센터는 반대청구의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반대청구를 통지하여야 하며[441] 신청인은 반대청구의 통지를 수취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중재센터에 반대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442]
반대청구는 당초 중재신청서를 심리하는 중재판정부에서 당초의 중재신청서와 함께 심리되어야 한다.[443]

(5) 중재판정부의 구성

VIAC규칙에서는 3인 중재인의 중재판정부의 구성[444]과 단독중재인에 의한 중재판정부의 구성[445]에 대하여 규정한다.

(6) 심리

중재판정부는 심리의 기일과 장소를 정한다. 다만 당사자는 이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446] 당사자는 심리의 기일 및 장소가 명기된 소환장을 송달하여 심리에 소환한다. 소환장은 심리기일의 30일 전까지는 송달되어야 한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의 제약은 중재정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단축 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447] 심리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비공개로 진행된다. 당사자는 증인과 자신들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자를 심리에 참석하도록 할 권리를 가지고 중재판정부에 심리일 이전에 통지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으로 재산의 조사와 평가를 수행할 조직이나 개인을 심리에 참석하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 중재판정부는 제3자를 당사자쌍방의 동의하에 심리에 참석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448] 심리에서 만일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439) VIAC규칙 제8조 제1항.
440) VIAC규칙 제9조 제1항.
441) VIAC규칙 제9조 제4항.
442) VIAC규칙 제9조 제5항.
443) VIAC규칙 제9조 제6항.
444) VIAC규칙 제11조. 2인 또는 그 이상의 수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사건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1인의 중재인의 선정에 동의하여야 한다. 그 선정이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재센터장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한다. 당사자에 의하여 선정된 중재인은 제2의 중재인이 선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동하여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책임을 지는 중재판정부의 장으로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할 제3자 중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중재인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제3중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중재센터장은 제2의 중재인이 선정된 날부터 15일 경과후 7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의 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445) VIAC규칙 제12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한, 피신청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양 당사자는 단독중재인의 선정에 합의하거나 중재센터에 단독중재인을 임명하도록 요청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중재센터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중재센터장은 위의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독중재인을 임명한다는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
446) VIAC규칙 제23조 제1항.
447) VIAC규칙 제23조 제2항.
448) VIAC규칙 제23조 제3항.

쌍방이 더 이상 관련 문서나 증거를 제출할 것이 없으면당해 심리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심리종결후에는 중재판정부는 추가적인 문서나 증거를 고려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449]

(7) 중재의 판정방법

중재판정부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중재판정은 다수결의 평결에 의하여 행한다. 다수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의 장은 단독 중재인으로서 중재판정을 한다.[450]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의 최후 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내려야 한다.[451]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즉시 중재센터에 중재판정문을 송부하고 중재센터는 즉시 당사자쌍방에게 중재판정문의 원본 또는 등본을 송부한다.[452] 중재판정은 최종적이고 당사자를 구속한다.[453]

4. 증거조사절차

중재판정부는 사실확인을 행하고[454] 증거수집을 위하여 증인 소환, 재산 조사 또는 평가, 전문가의견, 법원조력 등을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한다.[455]

5. 중재절차에 대한 법원의 관여

증거수집이나 증인소환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여하게 된다.[456] 또한 중재절차동안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보전

449) VIAC규칙 제23조 제4항.
450) VIAC규칙 제29조.
451) VIAC규칙 제30조 제3조.
452) VIAC규칙 제30조 제4조.
453) VIAC규칙 제30조 제5조.
454) VIAC규칙 제16조.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쟁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타방 당사자의 참석하에 일방 당사자를 면접하거나 함께 토의하거나, 중재판정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구에 의하여 당사자의 면전 또는 당사자에게 통지를 행한 후에 제3자로부터 사실확인을 할 수 있다.
455) 즉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당사자는 증거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VIAC규칙 제17조 제1항).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으로 증인에게 분쟁관련 정보와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VIAC규칙 제17조 제2항).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구에 의하여 분쟁에 있는 자산의 조사 또는 평가를 시행할 권리를 가진다(VIAC규칙 제17조 제3항).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가의견을 청취할 권리를 가진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를 가진 전문가를 제공하거나 관련 문서, 제품, 자산에 접근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전문가는 중재판정부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를 받은 후 중재판정부는 보고서의 사본을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당사자의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VIAC규칙 제17조 제4항).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구가 있고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증인이 심리에 참석하도록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VIAC규칙 제18조 제1항).
456) 중재판정부 또는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이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 관할 법원에 법에 의거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VIAC규칙 제17조 제5항)나 증인이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정식 소환되었으나 합법적인 이유없이 심리에 결석하고 증인의 결석이 분쟁해결에 장애를 야기한

처분을 신청한 경우도 중재절차에 법원이 관여하게 되는 경우이다.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법원의 관할과 관련하여 중재법에 규정이 있다.[457] 당사자가 특정 법원에 합의하는 경우 그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법은 쟁점에 따라 법원선택의 기본 규칙을 정하고 있다.
(ⅰ) 수시중재판정부의 중재인 지정의 경우 피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피신청인이 거주하는 장소의 법원 또는 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피신청인이 주사무소(head office)를 가지는 장소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만일 피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관할법원은 피신청인의 1인이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를 가지는 장소의 법원이다.
(ⅱ) 수시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을 대체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분쟁을 해결하는 장소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ⅲ)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실현불가능하다는 중재판정부의 결정 또는 그 중재판정부의 관할에 대한 분쟁해결을 신청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러한 결정을 내린 장소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ⅳ) 증거수집에 있어서 조력의 경우, 증거가 존재하는 장소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ⅴ) 임시처분의 경우, 임시처분을 허여할 필요가 있는 장소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ⅵ) 증인소환의 경우, 증인이 거주하는 장소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ⅶ) 중재판정취소 또는 수시중재판정문의 등록의 경우, 중재판정부가 판정문을 제출한 장소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6. 임시긴급처분

가. 임시긴급처분의 신청권

분쟁당사자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 또는 법원에 상사중재법 또는 관련법에 따른 임시긴급처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임시긴급처분을 적용하도록 하는 신청은 중재합의에 대한 거절 또는 중재에 의하여 분쟁해결할 권리의 포기로서 간주되지 아니한다.[458]

나. 중재판정부의 임시긴급처분을 적용하는 절차[459]

임시긴급처분 적용을 위한 신청은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긴급처분 서면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ⅰ)작성일 (ⅱ)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ⅲ) 임시긴급처분이 적용되어야 할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ⅳ) 분쟁 사실관계의 요약 (ⅴ) 임시긴급처분 적용의 이유 (ⅵ) 적용되어야 할 임시긴급처분과 특별한 요

경우 중재판정부는 관할 법원에 증인이 심리에 참석하도록 소환하는 결정을 발급하도록 서면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VIAC규칙 제18조 제2항)가 이에 해당한다.

457) 상사중재법 제7조; 대법관회의결의 01/2014 제5조.

458) 상사중재법 제48조.

459) 상사중재법 제50조.

건. 신청시에 신청인은 중재판정부에 임시긴급처분이 적용될 필요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임시긴급처분의 적용으로 피신청인이 입을 손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상당하는 금전, 귀금속, 보석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 담보는 중재판정부가 정한 은행의 동결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이 공탁금을 제공하면 즉시 중재판정부는 임시긴급처분의 적용을 결정한다. 기각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의 임시긴급처분 결정은 민사판결집행법에 따라 집행한다.

다. 임시긴급처분의 변경, 보완, 또는 취소[460]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중재판정부는 분쟁해결절차동안 언제든지 임시긴급처분을 변경, 보완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임시긴급처분을 변경 또는 보완하는 절차는 임시긴급처분절차에 따라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경우에 임시긴급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ⅰ) 임시긴급처분의 신청인이 그 처분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ⅱ) 임시긴급처분의 결정의 집행에 따르는 당사자가 신청인에게 자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가 신청인에게 채무담보조치를 이행한 경우

(ⅲ) 의무를 지는 당사자의 의무가 법에 의거 종료되는 경우

임시긴급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ⅰ) 신청인이 중재판정부에 그 취소신청을 한다.

(ⅱ) 중재판정부가 임시긴급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인에게 담보자산 반환을 결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임시긴급처분이 적용된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부당한 신청에 대하여 배상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재판정부는 임시긴급처분 취소결정을 즉시 분쟁당사자와 민사판결집행기관에 송부한다.

라. 임시긴급처분의 적용에 대한 신청인의 책임[461]

임시긴급처분의 적용에 대한 신청인은 자신의 신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신청인은 자신의 부당한 신청으로 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법원의 임시긴급처분의 적용,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권한, 순서와 절차[462]

460) 상사중재법 제51조.
461) 상사중재법 제52조.
462) 상사중재법 제53조.

신청서를 제출한 후, 그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의 직접적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관할법원에 임시긴급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관할법원은 판사를 지정하여 신청을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후 3영업일 이내에 지정된 판사가 임시긴급처분의 허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정된 판사는 신청자가 담보조치를 취한 후 즉시 임시긴급처분의 적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기각의 경우에 판사는 신청자에게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임시긴급처분의 변경, 보완,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신청을 판단하고 다루는 판사의 지정은 임시긴급처분 적용의 경우에 따라야 한다.

법원의 임시긴급처분의 적용, 변경, 추가 또는 취소를 위한 순서와 절차 및 동 처분의 적용동안 법준수 조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분쟁해결절차동안 일방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임시긴급처분을 적용하도록 요청한 뒤 다시 법원에 이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요청이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유월하였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처분의 집행

의정63은 중재판정부의 임시처분(임시처분의 수정, 보완, 취소 결정을 포함)이 민사판결과 법원이 내린 임시처분의 집행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강제되어야 함을 확인한다.[463]

Ⅵ. 중재판정과 그 취소

1. 개설-중재판정

베트남 내 취소결정의 실태를 살펴보면, 2003년에서 2013년까지 국내 중재판정의 34%가 취소되었다. 신중재법 시행 후인 2011년 이래 20건의 중재판정이 취소신청되어 50% 이상이 취소되었다. 베트남에서의 중재판정의 취소율이 높은 점 때문에 외국에서 베트남 중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이러한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2014년 7월 2일에 베트남 대법원 결의 01/2014가 채택되었는데, 동 결의에서는 (ⅰ) 중재합의 존중 (ii) 중재인구성/중재절차의 하자 제한, 베트남법의 기본원칙 위반 제한 등 중재판정취소사유제한 (iii) 중재 관할 법원의 명확화 (ⅳ) 임시중재인제도의 명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중재판정 취소사유

가. 중재판정취소사유 개설

463) 의정63 제26조.

(1) 중재법의 규정

중재판정취소사유는 중재법에 명시되어 있다.[464]

(a) 중재합의의 부존재/무효

(b) 중재기관의 구성/중재절차의 당사자합의/중재법 위반

(c) 분쟁의 중재인의 권한 유월

(d) 증거의 위조 및 중재인의 부패

(e) 중재판정의 베트남 법의 기본원칙 위반

(2) 중재판정취소신청 포기/취소사유배제 합의 가부

중재판정취소신청권을 미리 포기할 수 없고 일정한 취소사유를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 또한 불허된다.

(3) 취소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취소사유 중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수집을 하는 경우는 베트남법의 기본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반면 신청인이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는 베트남법의 기본원칙 위반을 제외한 취소사유이다.[465]

(4) 중재판정의 취소신청

중재판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상사중재법 제68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정을 내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경우 권한있는 법원에 중재판정의 취소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한 신청은 근거를 가지고 합법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와 증거를 첨부하여야

---

464) 상사중재법 제68조 참조. 즉 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중재판정의 취소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다(제68조 제1항 및 제2항). (a) 중재합의가 없거나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b) 중재기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중재법에 반하는 경우 (c) 해당 분쟁이 중재인의 권한을 유월한 경우 (d) 중재기관이 중재판정을 내리는 데 기초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경우 및 중재인이 분쟁당사자 일방으로부터 금전, 자산 또는 기타 실질적 이익을 취득하여 판정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e) 중재 판정이 베트남 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중재판정취소사유로는 (i)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무효인 사실, (ii)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밖의 사유로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iii)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iv)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주재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상은 주장취소사유임), (v)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한국법상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vi)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이상의 직권취소사유임)가 있다. 중재인이 중재법상 중재판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한 판정을 한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관할법원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월내에 중재판정국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한국중재법 제36조).

465) 상사중재법 제69조 제3항 법원이 중재판정의 취소 요청을 판단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한다.

a. 이 조 제2항 a 내지 d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재판정의 취소 요청자는 중재판정부가 이러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재판정을 내렸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b. 이 조 제2항 e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취소 요청에 대하여 중재판정을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자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증명하여야 한다.

한다. 신청이 불가항력에 기인하여 정해진 기한을 넘어 제출된 경우 불가항력이 존재하는 기간은 중재판정의 취소를 요청하기 위한 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466][467]

나. 중재합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1) 중재법의 규정

중재판정은 중재합의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면 중재판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취소사유가 된다.[468] 중재합의의 무효라 함은 일단 존재하는 중재합의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중재법은 다음의 경우를 중재합의가 무효로 규정한다.[469]

(ⅰ) 중재적격성이 없는 분쟁에 관하여 중재합의를 한 경우

(ii) 권한없는 자가 중재합의를 한 경우

(iii) 민사능력이 없는 자[470]가 중재합의를 한 경우

(iv) 중재합의가 서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v) 당사자 일방이 기망 또는 강박으로 중재합의를 하였고 그 무효선고를 청구한 경우

(vi) 중재합의가 실효된 경우나 이행불능된 경우[471] 등 실현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될 것

(3) 무권한자에 의한 중재합의로 인정한 사례

(가) 싱가포르 회사와 베트남회사간의 계약

싱가포르 회사의 베트남내 부대표(Deputy Chief Representative)가 계약서에 서명하였는데, 계약 준거법은 싱가포르법이었다.

VIAC 중재판정은 표현대리를 인정하고 중재합의를 유효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하

---

466) 상사중재법 제69조.

467) 상사중재법 제70조 중재판정취소의 서면신청
1. 중재판정취소의 서면신청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작성일
b.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c. 중재판정취소의 요청과 근거
2. 서면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a.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증명사본
b.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증명사본
외국어로 된 동봉된 서류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그러한 번역은 합법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468) 상사중재법 제69조 제2항(a).
An arbitral award shall be cancell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There is no arbitration agreement or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invalid;

469) 상사중재법 제18조 1호 내지6호.

470) 대법관회의 결의 01/2014에서는 민사능력이 없는 자는 미성년자, 행위무능력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동 결의 제3조).

471) 뉴욕협약 제2조 제3항 참조.

노이 법원은 베트남 국제사법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민사거래를 하는 외국법인의 민사권리능력의 준거법은 베트남법에 의거하는바, 무권한자의 중재합의임을 이유로 중재판정을 취소하였다.

Cong ty Co Khi A v. Conares Metal 사건 및 Energo Novus v. Confectimex사건에서도 계약체결 무권한을 이유로 판정승인을 거부하였다.

(4) 베트남 대법원 결의 01/2014

베트남 대법원 결의 01/2014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중재회부의무를 지우고 있다. 즉 법원이 사건을 수부한 후, 중재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법원은 사건을 각하하고 원고에게 소장과 첨부문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재합의 부존재 또는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효한 법원 또는 중재인의 판결, 판정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472] 또한 중재합의가 존재하더라도 법원이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내린 중재판정 또는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중재판정부나 중재센터가 분쟁해결하는 것을 보류하도록 하는 결정, 중재합의가 실현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73] 또한 법원이 중재판정부 보다 먼저 사건을 수부한 경우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다.[474]

선택적 중재합의에 대하여 명문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법원에 사건의 중재판정부 회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475]

또한 중재합의의 실현불능사유를 명확화하고 있다.[476] 즉, ⅰ)당사자가 분쟁해결을 하기로 합의한 중재센터가 폐쇄되었으나 다른 중재센터를 합의하지 않은 경우, ⅱ) 합의한 중재인이 불가항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없거나 중재센터나 법원이 대체 중재인을 발견할 수 없고 당사자가 대체중재인을 선정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ⅲ)당사자쌍방이 분쟁해결을 위해 특정 중재인의 선정에 합의하였으나 분쟁발생시 그 중재인이 선정을 거절하거나 중재센터가 중재인 선정을 거절하고 관련 당사자가 대체중재인을 선정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ⅳ)관련 당사자가 분쟁을 특정 중재센터에서 해결하는 합의를 했으나 합의한 중재센터의 중재규칙이 아닌 다른 중재센터의 중재규칙이 적용되고 당사자쌍방에 의해 선정된 중재 헌장은 다른 중재센터의 중재규칙의 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데 관련 당사자가 대체 중재규칙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ⅴ)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자와 소비자가 (판매자가 초안한)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비

472) 대법관회의결의 01/2014 제2조 제2항(a).
473) 대법관회의결의 01/2014 제2조 제2항(b).
474) 대법관회의결의 01/2014 제2조 제2항(c).
475) 대법관회의결의 01/2014 제2조 제4항.
476) 대법관회의결의 01/2014 제4조.

자가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무권한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아닌 자, 대리범위를 월권하여 행위하는 대리인을 의미하며 대표 또는 대리권한을 가진 자가 무권한자의 서명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477] 또한 수개의 중재합의 시 최후의 중재합의를 인정하고 있다.[478]

다.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에의 하자

(1) 중재법의 규정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의 합의나 중재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취소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479]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따르지 않거나 중재판정부가 상사중재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중재판정부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480]

(2)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3인 중재판정부에 합의하였는데 중재판정부가 단독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해당된다.[481]

(3) 중재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중재신청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합법적으로 통지받지 못한 경우 이는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권리를 침해하고 중재규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고려된다.[482]

라. 분쟁의 중재판정부 권한 유월

(1) 중재법의 규정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에 관한 판정은 취소된다.[483]

---

477) 대법관회의결의 01/2014 제3조 제2항.
478) 대법관회의결의 01/2014 제7조 제1항.
479) 상사중재법 제69조 제2항 b호; 한국중재법 제38조 제2항 제1호 라목은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480) 대법관회의결의 01/2014 제14조 제2항(b).
481) 대법관회의결의 01/2014 제14조 제2항(b) Example2.
482) 대법관회의결의 01/2014 제14조 제2항(b) Example1.
483) 상사중재법 제69조 제2항 c호. The dispute falls beyond the arbitration council's jurisdiction: when an arbitral award contains the details falling beyond the arbitration council's jurisdiction, such details shall be cancelled

(2) 중재적격성(arbitrability) 부존재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은 (i) 상행위로 인한 분쟁(상행위 여부는 2005년 상법 제3조 적용) (ii) 당사자의 일방이 상행위를 한 분쟁: 연구소, 학교, 언론기관 등의 상행위 (iii) 기타 법상 중재로 해결할 것으로 규정된 분쟁(투자분쟁, 2005년 투자법)이다.

중재적격성 없는 분쟁은 노동분쟁, 파산분쟁, 행정분쟁 기타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 등 지재권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 미상인간의 계약, 불법행위 및 신분행위로 인한 분쟁이다. 소비자분쟁은 소비자가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재적격성이 인정된다.

(3) 중재인의 권한 범위 유월

중재인의 권한범위를 초과한 경우는 (ⅰ) 중재합의에서 부여한 권한의 초과한 경우 (ⅱ)중재법상 부여된 권한을 초과한 경우로 나뉜다. 전자에는 중재합의상 중재의 대상이 아닌 분쟁에 대한 판정과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판정이 해당한다. 중재판정의 일부가 중재인의 권한을 유월한 경우에는 그 일부만 취소된다.

마. 증거의 위조와 중재인의 독직

(1) 중재법의 규정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리는데 기초함 증거가 위조된 경우와 중재인이 분쟁당사자 일반으로부터 금전, 자산 또는 기타 실질적 이익을 받아서 판정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해당한다.[484]

(2) 증거의 위조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증거가 위조된 경우는 위증, 서증의 위조가 해당한다. 증거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는 제외된다.

(3) 중재인의 독직

중재인이 분쟁당사자로부터 금전, 자산 또는 기타 실질적 이익을 취득하여 판정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이다. 중재인의 윤리준수의무와 책임이 문제된다.

바. 판정의 베트남법의 기본원칙 위반

중재법에서는 판정이 베트남법의 기본원칙(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484) 상사중재법 제69조 제2항 d호. The evidence provided by the parties on which the arbitration council bases to issue the award is counterfeit: an arbitrator receives money, assets or other material benefits from one disputing party, thus affecting the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of the award;

Vietnamese law)에 반하는 경우에는 취소된다고 규정한다.[485]

사. 내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중재판정취소신청을 기각한 사례 : SK E & C v. Vinalines 중재판정취소사건

(1) 사실의 개요

2009년 베트남 최대해운회사 베트남해운공사[Vinalines]는 Khanh Hoa성 Van Phong만에 국제 중계항 건설공사를 착공하였다. 한국 SK건설과 강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SK건설은 건설 현장에 544개의 강관을 반입하였다. Vinalines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으로 2010. 8. 공사를 중단하고 SK의 강관이 품질기준에 미달한다며 인수를 거부하였다. 이에 SK건설은 Vinalines를 상대로 VIAC에 대금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다.

2014.1. VIAC은 Vinalines에 652억 베트남동(VND65.2bl, 약 305만불) 및 9%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중재판정을 하였다.

(2) 중재판정취소신청

2014. 3. SK건설은 포항에 입항한 Vinalines 소유의 선박 Vinalines Sky호를 가압류하였다. 이에 Vinalines는 가압류해방금 310만불을 공탁하였다. 또한 SK건설이 2014. 6. 인천에 입항한 Vinalines Trader호를 가압류하자, Vinalines는 296,000불을 공탁하였다.

곧이어 Vinalines는 하노이법원에 중재인이 (i) 위조서류를 원본과 대조하지 않고 증거로 인정하였고 (ii) Vinawaco, TEDI and the Van Phong 경제지구관리위원회 등 관계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하였다.

하노이법원이 90일이 넘도록 판결을 하지 않자 Vinalines는 베트남 국회 법사위원회, 교통부, 베트남 대법원장에 심리개시를 도와줄 것을 청원하여, 교통부는 하노이법원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하였다.

(3) 하노이인민법원의 결정

2014. 10. 하노이 인민법원은 중재인은 중재법에 따른 중재절차와 베트남법에 따른 소송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이유로 판정취소신청을 기각하였다. 2014. 11. 20. Vinalines는 판정금액을 SK건설의 신한은행 베트남법인인 HCMC 계좌에 송금하고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485) 상사중재법 제69조 제2항 e호.

3. 중재판정 취소절차

가. 개설

상사중재법에 의한 중재판정 취소절차를 중재판정취소신청, 법원의 통지 및 중재인의 자진 시정, 중재판정취소사건의 심리의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중재판정취소 신청

당사자는 중재판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동법 제68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판정을 내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충분한 근거를 가진 경우 중재판정의 취소를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한 청구는 그러한 청구가 근거를 가지고 합법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와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486]

이와 같이 중재판정취소를 신청하는 시한은 중재판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이다.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법정 사항을 포함한다.[487] 첨부서류는 판정문, 중재합의, 기타 신청의 근거를 입증하는 증거이다.[488]

다. 법원의 통지 및 중재인의 자진 시정

(1) 신청사실 통지

중재판정취소 신청을 받은 후 관할 법원은 즉시 중재기관 또는 수시중재의 중재인, 분쟁당사자, 검찰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489]

(2) 중재인의 자진 시정

(가) 60일간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처리의 정지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이 있거나 자신의 판단으로 60일 내에서 신청의 심사 및 처리를 정지하여 중재 절차의 오류를 스스로 시정하여 중재판정취소의 근거를 제거할 수 있다.[490]

(나) 시정시 법원에의 통지

중재판정부가 시정을 하는 경우 이를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오류를 시정하지 못하면 판사평의회가 서면 신청을 심사한다.[491]

라. 중재판정취소사건의 심리

---

486) 상사중재법 제69조 제1항.
487) 상사중재법 제70조 제1항.
488) 상사중재법 제70조 제2항.
489) 상사중재법 제71조 제1항.
490) 상사중재법 제71조 제7항.
491) 상사중재법 제71조 제7항.

중재판정취소사건의 심리절차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ⅰ) 신청 후 7일 내 평의회 구성

서면신청을 받은 후 7일 내에 당해 법원장은 재판장 1인을 포함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판사평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492]

ⅱ) 검토 기일 개최

지정된 후 30일 이내에 판사평의회는 중재 판정의 취소에 대한 서면 요청을 검토하는 기일을 개최한다.[493]

ⅲ) 검찰에의 사건기록 전달

법원은 기일 7일 이전에 검찰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사건기록을 전달해야 한다. 이 기간의 종료하면 검찰은 법원에 사건기록을 반환하여 서면 요청에 대한 검토기일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94]

ⅳ) 당사자 및 검찰의 기일 출석

기일은 분쟁 당사자들과 대리인 변호사, 그리고 검찰의 참석 하에 진행한다. 판사평의회는 당사자 중 일방이 제대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하거나 또는 평의회의 허락없이 법정을 떠나는 경우에도 조사를 계속하여야 한다.[495]

ⅴ) 검찰의견 청취후 위원회의 결정

서면 요청을 검토 할 때 위원회는 고려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중재법 제68조 및 동봉된 문서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미 중재위원회에 의해 해결된 분쟁을 검토하지 아니한다. 서면 요청과 동봉된 문서를 조사하고 소환된 자의 의견을 들고, 검찰이 의견을 제시한 후, 평의회는 토론과 다수결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496]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거나 적절하게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 또는 평의회의 동의없이 법정을 떠나면 평의회는 신청에 대한 심사의 종료를 결정한다.[497]

ⅵ) 결정문의 송부

결정을 내린 후 5영업일 이내에, 법원은 당사자, 중재기관 또는 수시 중재인, 검찰에 동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498]

---

492) 상사중재법 제71조 제2항.
493) 상사중재법 제71조 제2항.
494) 상사중재법 제71조 제2항.
495) 상사중재법 제71조 제3항.
496) 상사중재법 제71조 제4항.
497) 상사중재법 제71조 제5항.
498) 상사중재법 제71조 제6항.

4. 판정취소여부에 관한 결정의 효력

중재판정의 취소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중재판정 취소결정 시 당사자는 새로운 중재 합의를 하거나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499] 한편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기각하면 중재판정의 집행이 가능하다.[500] 물론 판정취소절차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501]

Ⅶ.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 개설

상사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의 자발적 이행을 장려하고,[502] 중재판정채권자의 중재판정의 이행을 요청할 권리를 규정하면서[503] 민사판결집행법에 의거하여 중재판정이 집행된다고 규정한다.[504]

베트남에서의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절차는 국내중재판정인지 외국중재판정인지에 따라서 신청의 수부기관이 상이하다. 즉 국내중재판정에 대하여는 집행을 위하여 관할권이 있는 민사판결집행기관으로 판정이 송부되지만 외국중재판정의 경우에는 관할권있는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에 앞서서 베트남법무부(Ministry of Justice of Vietnam)로 송부될 것을 요한다.

2. 국내판정의 집행

국내판정은 법원에 의한 승인절차의 필요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505] 만일 중

499) 상사중재법 제71조 제8항 제1문.
500) 상사중재법 제71조 제8항 제2문.
501) 상사중재법 제71조 제9항.
502) 상사중재법 제65조 국가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자발적 이행을 하는 것을 장려한다.
503) 상사중재법 제66조 중재판정의 이행을 요청할 권리
1. 중재판정을 이행하기 위한 기한을 지나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이 법 제69조에 따라 판정의 취소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 채권자는 판정집행을 위하여 권한이 있는 민사판결집행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수시중재판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서면으로 권한이 있는 민사판결집행기관에 이 법 제62조에 의거 등록된 판정을 집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04) 상사중재법 제67조.
505) 상사중재법 제66조; 우리나라의 경우 중재판정은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한국중재법 제37조).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판정취소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한국중재법 제38조).국제중재에 있어서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중재판정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다만 당사자가 대세적 효력있는 재판의 존재를 이유로 중재인에게 중재절차의 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중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대세적 효력을 가진 재판에 반하는 판정을 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예외적으로 중재지국법원뿐 아니라 대세적 효력 있는 재판을 한 국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

재판정이 채무자에 의하여 이행기까지 임의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취소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베트남 지방법원의 민사집행기관에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있다.[506]

중재판정 또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처분신청에 관한 결정을 집행할 자격이 있는 판결집행기관은 (ⅰ) 중재판정을 집행할 자격이 있는 민사판결집행기관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을 내리는 성 또는 중앙직할도시의 민사판결집행기관이고, (ii) 중재판정부의 임시처분신청에 관한 결정을 집행할 자격이 있는 민사판결집행기관은 임시처분이 신청될 필요가 있는 성 또는 중앙직할도시의 민사판결집행기관이다.[507]

국내판정의 집행절차는 임의중재와 기관중재 간에 차이가 있다. 임의중재의 경우, 채권자는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린 관할법원에 판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은 판정문이 발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등록후 15일 이내에 법원은 등록 인정여부를 결정한다.[508] 반면 기관중재의 경우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3. 외국판정의 승인요건

외국중재판정은 베트남민사소송법 하에서 1958년 뉴욕협약의 회원국이거나 베트남에 호혜적 취급을 하는 국가에서 내려진 것에 한한다.[509] 외국중재판정이 베트남에서 승인·집행이 거부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510][511]

는 집행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한국중재법 제36조 제4항).

506) 상사중재법 제66조 제1항.

507) 상사중재법 제8조.

508) 상사중재법 제62조 제2항, 제3항.

509) 민사소송법 제343조.

510) 민사소송법 제370조.

1. 외국 중재 판정은 다음의 경우에 승인없이 베트남에서 집행하지 않는다.
   a) 중재 합의의 당사자가 각 당사자에게 적용하는 법률에 따르면 당해 계약에 서명하는 능력을 갖지 않는 경우
   b) 당사자가 신청을 위해 선택한 국가의 법령 또는 당사자가 중재 합의에 적용되는 법률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이 선언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중재합의가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
   c) 개인, 기관 또는 조직의 판결 채무자가 중재인의 선정 및 외국중재기관에 의한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 적시에 적절히 통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로 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
   d) 외국중재판정은 당사자가 해결을 요구하지 않는 분쟁에 대해 선고되거나 또는 중재 합의의 당사자의 청구를 초과하는 경우. 중재판정은 외국중재기관에 의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 과 해결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 해결이 요구되는 사항은 승인하여 베트남에서 집행을 허용 할 수 있다.
   dd) 외국 중재판정부 또는 외국중재에 의한 분쟁처리절차가 중재 합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또는 중재 합의가 해당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으면 외국 중재 판정의 선고한 국가의 법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e) 외국 중재 판정이 당사자에게 아직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경우
   g) 외국 중재 판정을 내린 국가 또는 법령을 적용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2. 베트남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는 외국 중재 판정의 베트남에서의 집행을 승인하지 않고 허용하지 않는다.
   a) 분쟁이 베트남 법에 따르면 중재로 해결할 수 없다.
   b)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과 베트남에서 집행이 베트남 법의 원칙에 어긋난다.

511)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거부되는 사유로 (ⅰ)중재합의 행위능력 결여 또는 중재합의가 무효인때, (ii)불통지 등 패소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때, (iii)중재판정이 판정가능범위를 벗어난때, (iv)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에 하자가 있는 때, (ⅴ)판정의 불발효 또는 취소, (vi)분쟁대상사항이 중재적격성

(a) 당사자에게 분쟁에 관하여 합의를 할 권한이 없는 사항의 중재
중재 합의의 당사자가 각 당사자에게 적용하는 법률에 따르면 당해 계약에 서명할 능력을 갖지 않는 경우이다.

(b) 당사자 지정 준거법 또는 중재판정국법 상 중재합의의 무효
당사자가 적용을 위해 선택한 국가의 법령 또는 당사자가 중재 합의에 적용되는 법률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령에 따르면 중재합의가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이다.

(c) 중재인의 선정 및 외국중재기관에서의 피신청인의 방어권 침해
개인, 기관 또는 조직인 판결채무자가 중재인의 선정 및 외국중재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적시에 적절히 통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로 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수 없었던 경우이다.

(d) 중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판정, 중재인의 판정권한 유월
외국중재판정이 당사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판단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요구하는 사항을 초과한 사항에 대해 판단된 경우이다. 중재판정이 외국중재기관에 의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승인하여 베트남에서 집행을 허가할 수 있다.

(e) 중재판정부 또는 외국중재절차의 중재합의 또는 중재판정국법 부준수
외국 중재판정부 또는 외국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가 중재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재합의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이 이루어지게 된 국가의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f) 외국중재판정의 법적 구속력 부존재
외국 중재 판정이 당사자에게 아직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경우이다.

(g)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의 외국중재판정의 집행 취소 또는 정지
외국 중재 판정을 내린 국가 또는 법령을 적용하는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이다.

(h) 중재판정 승인·집행의 베트남법의 기본원칙 위반

이 없는 때, (vii)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공서에 반하는때를 열거하고 있다.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제2항. 모델중재법 제36조 제1항도 동일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을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YCO v. Leighton Contractors 사건[512]에서 베트남 법원은 건설은 상행위가 아니고 TYCO가 베트남 건설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 베트남의 국익을 해치는 법령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을 거부하였다. 즉 싱가폴 회사인 TYCO Services Singapore Pte. Ltd Co., ("TYCO")는 베트남 회사인 Leighton Contractor (VN) Ltd. Co., ("Leighton")을 상대로 호주의 퀸즈랜드에서 중재를 신청하여 승소판정을 받은 다음 베트남 법무부를 경유하여 그 집행을 신청하였다.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퀸즈랜드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승인·집행하는 결정을 했다.[513] 그러나 Leighton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상급법원인 호치민 인민고등법원은 호치민시 인민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이를 파기하였다.

(i) 건설활동은 상업활동(commercial activities)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TYCO와 Leighton은 "상업적 관계(commercial relation)"를 가지지 않으므로 중재적격이 없다.

(ii) TYCO는 베트남 건설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기에 Leighton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퀸즈랜드의 중재판정을 베트남 내에서 승인·집행하는 것은 베트남법에 위배된다.

항소심은 베트남건설부의 허가의 미비를 국익을 해치는 법령 위반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허가 없이 행한 행위를 근거로 하는 중재판정의 승인을 거부하였다. 베트남 법원의 이 결정은 외국인 사회에서 수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처럼 베트남법상 규제위반은 베트남법의 기본원칙 위반이 되어 베트남에서의 국제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거부사유가 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베트남 법원은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에 위반된다는 근거로 외국중재판의 승인을 거부함에 있어서 베트남법의 근거로 민법전과 상법을 인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민법전과 상법의 해석에 있어 광범한 재량이 있다. 예컨대 Toepfer v. Sao Mai (2011) 사건은 Toepfer사가 영국중재판정부에 베트남 Sao Mai 사에 대한 약정손해배상을 묻는 중재신청을 하여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베트남 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을 신청한 사건인데, 베트남 대법원은 중재판정을 받은 채권자가 손해를 줄이지 못한 것은 민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동 법원은 영국중재판정부의 약정 손해배상에 대한 판정은 민사책임에 있어서 실제 손해배상과 과실의 고려에 관한 민법전의 규정에 반하므로 민법전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법준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동 판결은 최소한 일부 베

512) TYCO services Singapore v. Leighton Contractors Vietnam (2003). Allen&Overy, Publications: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Vietnam, 21 November, 2013, http://www.allenovery.com/publications/en-gb/Pages/Enforcement-of-foreign-arbitral-awards-in-Vietnam.aspx; 栗田哲郎, アジアにおける外国仲裁判断の承認・執行に関する調査研究(法務省・法務総合研究所国際協力部), 2012, 47~8면

513) Decision No. 82/QDD-DTT

트남법원이 베트남법의 일반규정에 따르지 않는 것이 민법전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바의 법준수원칙의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514]

나. 판정승인거부사유의 입증책임

판정승인거부사유 중 베트남법의 기본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수집을 한다. 반면 베트남법의 기본원칙 위반을 제외한 취소사유의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사례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허용한 사례

2009년에서 2011년 5월 사이에 SIAC,[515] HKIAC,[516] 쿠알라룸푸르 국제중재센터,[517] 런던 곡물거래협회(GAFTA)[518] 및 독일커피협회[519]의 중재판정이 베트남 법원에서 승인·집행된 소수의 사례가 있다.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부인한 사례

외국중재판정승인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나 견강부회한 사유를 들어 승인을 거부한 사례가 많다. 일부 판사는 특정 베트남법의 위반은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하위법령의 사소한 불일치에조차도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였다. 예컨대, Energo-Novus v. Vinatex (1998) 사건에서는 Energo-Novus가 Vinatex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러시아에서 받은 중재판정에 대하여 베트남법원에 승인을 구하였는데, 베트남법원은 러시아 중재판정부가 베트남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증서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공증문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베트남정부의 시행령(decree)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520]

라. 중재판정의 취소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간의 비교

국내 중재판정의 취소사례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부인한 사례보다 상대적

514) Allen&Overy, supra note 512.

515) SIAC(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의 International Asian TOEPFER Ltd. Co. v. Can Tho fertilizer & chemical joint stock company(2009)는 The people' court of Can Tho province에서, Maxwill (Asia) Pte Ltd. v. Northern Food Company (Fonexime)(2010)은 The people' court of Hanoi에서 승인·집행되었다.

516) HKIAC(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의 Steelco Pacific Trading Ltd. Co. v. PetroVietnam Manpower Development & Services Company-Petromanning(2009)은 The people' court of Hanoi에서 승인·집행되었다.

517) Kuala Lumpur International Arbitration(Malaysia)의 PEB Steel Indochina v. Thao Li International Company(2010)은 The people' court of Baria-Vungtau Province에서 승인·집행되었다.

518) GAFTA arbitration의 International Asian TOEPFER Ltd. Co. v. Sao Mai trading and production Ltd. Co.은 The people' court of Hanoi에서 승인·집행되었다.

519) Arbitral tribunal of German coffee association at Hamburg chamber of Commerce의 Louis Dreyfus Commodities Suisse SA Company v. Da Nang Industrial Article Joint Stock Company은 The people' court of Da Nang city에서 승인·집행되었다.

520) Allen & Overy, supra note 512.

으로 적으나 취소사유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부당하다.

4.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절차

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신청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베트남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에 소정의 내용을 기재하여 집행신청을 하여야 한다.[521] 신청서에는 베트남이 서명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문서 및 서류, 외국중재판정의 유효 등본 및 중재절차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한 분쟁의 해결에 관한 당사자 간의 중재 합의의 유효한 등본, 신청서에 첨부 문서, 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적법하게 공증 또는 인증된 베트남어본도 첨부하여야 한다.[522]

베트남법 상 일반적으로 집행신청은 중재판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면 되나[523] 민사비송사건 일반의 신청기한이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52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신청에 대하여도 신청을 할 수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는 것이 위험을 회피하는 관점에서 추천된다.

나. 법무부의 관할법원에의 송부

베트남 법무부는 신청서 및 증거 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며, 외국기관에서의 외국중재판정의 취소 또는 정지의 통지도 법원에 직접 서면으로 통지한다.[525]

---

521) 베트남 민소법 제364조(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베트남에서 집행을 요구하는 신청서)
1.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베트남에서 집행을 요구하는 신청서는 베트남 법무부에 송부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한다.
a) 판결 채권자의 성명 및 그 거주지 또는 취업지, 또는 베트남에서 적법한 대리인.
판결 채권자가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를 완전하게 기재하여야한다.
b) 판결 채무자의 성명 및 그 거주지 또는 취업지.
판결 채무자가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를 기재하여야한다. 개인인 판결 채무자가 베트남에 거주지 또는 취업지가 없는 경우 또는 기관 혹은 단체인 판결 채무자가 베트남에 본점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외국중재판정의 베트남에서의 집행에 관련하는 재산 및 각종 자산이 존재하는 소재지를 명기하여야한다.
c) 판결 채권자의 청구.
2. 외국어 신청서는 적법하게 공증 또는 인증된 베트남어본을 첨부하여야한다.

522) 제365조 신청서에 첨부하는 문서 및 서류
1. 신청서에는 베트남이 서명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문서 및 서류를 첨부한다. 해당 국제조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해당 국제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외국중재판정의 유효 등본 및 중재절차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한 분쟁의 해결에 관한 당사자 간의 중재 합의의 유효한 등본을 첨부하여야한다. 단, 관련 국가의 법령이 당해 분쟁이 그 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계약에 규정된 중재 조항 또는 분쟁이 발생한 후 쌍방이 체결한 중재에 관한 각 다른 합의는 중재합의로 될 수 있다.
2. 신청서에 첨부 문서, 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적법하게 공증 또는 인증된 베트남어본도 송부하여야한다.

523) 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524)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3항(b).

525) 민사소송법 제366조 (사건기록의 법원에의 송부)
1. 신청서, 첨부 문서 및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는 이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관할

다.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신청에 대한 심리

법무부로부터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법원은 2개월 이내에 심리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즉 관할법원은 사건 기록을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하고, 또한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하며[526]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은 사안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한다.[527]

(a) 심리 정지: 베트남 법무부에서 당해 외국중재판정을 심리중인 외국기관이 있다는 취지의 서면 통지를 수령한 경우

(b) 심리 중지: 신청인에 의한 신청의 취하, 피신청인에 의한 중재판정의 자발적인 이행, 피신청인의 해산 또는 파산에 의한 채권채무의 정리 또는 채무자의 상속인 없는 사망이 있는 경우

(c) 심리 중지: 베트남 법무부가 관할하는 외국기관이 당해 외국중재판정을 취소하거나 집행을 중지한 취지의 서면 통지를 수령한 경우

(d) 사건 기록의 베트남 법무부에의 반환: 당해 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경우, 피신청인(기관 또는 조직의 경우)이 베트남에 본점을 가지지 않는 경우 피신청인(개인의 경우)이 베트남 비거주자이거나 베트남에서 취업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관련 자산의 소재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e) 심리기일의 개시

또한 법원은 신청인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에 사건기록을 송부한다.

2. 법무부가 이미 사건기록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고 나중에 관할권을 가지는 외국기관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취소를 검토하거나 또는 이미 취소 또는 중지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경우 법무부는 법원에 그 사실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526) 민사소송법 제367조 (사건기록의 수령)

1. 법무부에서 사건 기록을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내에 관할 법원은 기록을 수리하고, 개인, 기관 또는 조직의 판결 채무자와 동급의 검찰원에 그 취지를 통지한다.
2. 법원은 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기관 또는 조직에 그 신청서의 불명료한 사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을 가진다.

527) 민사소송법 제368조 제1항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은 사건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한다.

a)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외국중재판정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서면통지를 법무부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 검토를 정지한다.

b) 개인, 기관 또는 단체인 신청인이 그 신청서를 취하, 개인, 기관 또는 단체인 피신청인이 임의로 판결을 집행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인 피신청인이 해산하거나 또는 파산하고 그 권리, 의무가 베트남법에 따라 해결된 경우 또는 개인인 피신청인이 사망하여 그 권리, 의무를 상속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 검토를 중지한다.

c)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외국중재판정을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중지했다는 취지의 서면통지를 법무부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 검토를 중지한다.

d) 신청서의 검토가 법원의 관할 하에 있지 않은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인 피신청인이 베트남에 본점을 갖지 않는 경우 개인인 피신청인이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취업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중재 판정의 베트남에서의 집행에 관련하는 자산이 존재하는 장소를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신청서 검토를 중지하고 법무부에 사건기록을 반환한다.

dd) 신청서를 검토하는 심리기일을 연다.

법원이 이 법 제3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명을 요구할 경우 신청서의 검토준비기간은 다시 2개월 연장된다.

이 경우에는 심리준비기간은 2개월 연장되게 된다.

법원은 심리를 시작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심리하기 위한 기일을 열어야 한다. 법원은 심리기일개시 10일 이전에 사건기록의 검토를 위하여 동급 검찰원에 사건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만료한 때에 검찰원은 법원이 심청서를 검토하는 심리기일을 개최하도록 법원에 사건기록을 반환하여야 한다.[528]

심리는 3인의 재판관에 의한 평의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중 한 사람이 재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의장을 맡는다.[529] 동급의 검찰원의 검찰관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어 검찰관이 결석의 경우에는 기일은 휴회로 하여야 한다.[530]

이와 같이 검찰의 참여는 아마도 베트남 민사절차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다. 검사의 불출석은 법원이 심리를 연기하는 근거가 된다. 심리에 참여하는 검사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재판기일은 집행을 받게 되는 채무자(또는 그 대리인)가 참석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제1회 기일에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기일은 연기하여야 한다.[531] 한편, 채무자(또는 그 대리인)가 불참하더라도 채무자의 요구에 의해, 또는 채무자가 두 번 출석요구를 받은 후에 결석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재판절차의 진행이 인정되고 있다.[532]

재판기일에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외국중재판정 및 신청서 첨부서면 및 베트남이 체결한 관련 국제조약에 한정되고,[533] 판사 평의회는 신청 및 첨부 서면을 심리하고 관련 당사자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하여 다수결에 의해 판단한다.[534] 동 평의회에는 외국중재판정의 베트남에서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완전한 재량이 인정되고 있다.[535]

이론적으로는 베트남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자산 보전처분 등 임시적 처분(interim measure)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이것은 임시적 처분은 일반적으로 소송절차에서만 내려지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536] 외국중재판

528) 민사소송법 제368조 제2항.
529) 민사소송법 제369조 제1항.
530) 민사소송법 제369조 제2항.
531) 민사소송법 제369조 제3항 제1문.
532) 민사소송법 제369조 제3항 제2문.
533) 민사소송법 제369조 제4항.
534) 민사소송법 제369조 제5항 제1문.
535) 민사소송법 제369조 제5항 제2문.
536) 민사소송법 제99조.

정의 승인·집행의 절차는 소송이 아니라 비송으로 이해되어 있기 때문이다.[537] 다만, 실무적으로는 베트남 법원은 승인·집행의 절차에 관하여 임시적 처분을 해 주고 있다.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나 일반적으로 채무자에 의한 항소와 검사의 이의가 없다고 가정하면, 중재판정의 집행신청에서 베트남 법원의 결정까지 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채무자의 자산의 회수에 또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538]

라. 절차상의 이유로 집행이 거부된 사례

2012년 하노이 인민법원은 국제면화협회(the International Cotton Association:ICA)가 내린 중재판정에 대하여 중재판정부가 베트남 피신청인에게 정식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집행을 거부하였다. 동법원은 통지의 흠결이 (민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 (c)에서 규정하는) 중재절차의 흠결임과 아울러 (민사소송법 제9조가 규정하는) 당사자의 자기방어권에 관한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539]

Evan Ekris사는 Vinacofexim를 상대로 받은 외국에서의 승소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였던 바 관할법원은 회사가 정보의 추완 명령에 응하지 않았던 점 및 동 회사가 전 대표자의 사임 이후 대표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을 이유로 일정 통지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소송계속을 부정하는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168조 제1항 (d) 및 제2항과 신청서에 당사자의 대표자의 기재를 요구하는 동법 제364조 제1항 (a)에 비추어 절차의 개시를 부인하였다.[540]

또한 인도네시아회사인 PT. Badega Agri Abdi는 Soon Chi Co., Ltd.를 상대로 인도네시아의 BANI중재센터에 중재신청을 하여 승소판정을 받은 다음 베트남 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법률 문서 원본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신청인 회사의 대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채권자 및 회사의 대표자를 판단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와 또한 당사자 간의 계약분쟁해결절차는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70조 (1)(a), (c) 및 (dd), 중재합의 및 인도네시아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541]

마. 승인집행결정에 대한 불복

---

537) 민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538) Nguyen Manh Dzung, Dang Vu Minh Ha, Arbitration Guide Vietnam, IBA Arbitration Committee, September 2014 at 24.

539) Allen & Overy, supra note 512.

540) 栗田哲郎, アジアにおける外国仲裁判断の承認・執行に関する調査研究(法務省・法務総合研究所国際協力部), 2012, 48면

541) 栗田哲郎, 上同.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결정에 대하여는 항소할 수 있으며,[542] 항소기간은 15일이다. 사건 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1개월 이내에 최고인민법원은 성급인민법원의 결정에한 항소 또는 이의신청을 심리하며, 설명이 필요하면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있지만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543] 최고인민법원의 항소심 법원장은 지명한 재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한다. 심리기일은 이 법 제369조에 규정된 신청 검토기일과 마찬가지로 실시한다.[544]

바. 집행절차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은 각 지방을 관할하는 집행기관이 담당한다. 성급민사판결집행기관은 법원이 외국 중재기관의 판정을 공인하고 베트남에서 집행을 허가한 판정을 집행한다.[545] 법원은 승인·집행결정을 그 효력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 집행기관에 중재 판정과 함께 송부한다.[546] 임시긴급처분결정을 내린 법원과 상사중재기관은 민사판결집행기관에 직접 당해 결정을 송부한다.[547] 집행 청구는 중재판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548]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청구하는 채권자는 관할의 집행기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집행신청서를 제출한다.[549]

ⅰ)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ⅱ) 집행기관의 명칭
ⅲ)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ⅳ) 집행을 요구하는 내용
ⅴ) 자산과 집행 조건에 대한 정보

집행기관은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550]

ⅰ) 채권자가 집행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내용이 중재 판정

542) 베트남 민소법 제372조(항소 및 이의 신청)
1. 법원이 이 법 제368조 및 제369조에 규정된 결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그 적법한 대리인은 그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을 검토하는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항소기간은 당사자가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항소는 항소 이유 및 청구를 명기하여야한다.
불가항력 또는 객관적인 장애에 의해 당사자 또는 그 적법한 대리인이 위 기간 내에 항소할 수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 또는 객관적인 장애가 존재하는 기간은 항소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동급 검찰원 또는 최고인민검찰원은 이 법 제368조 및 제369조에 규정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급 검찰원이 이의 신청을 하는 기한은 법원이 결정을 공포한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이며, 최고인민검찰원의 이의신청기한은 30일이다.
543) 베트남 민소법 제373조 제1항.
544) 민사소송법 제373조 제2항.
545)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d).
546)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547) 민사집행법 제28조 제3항.
548) 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549) 민사집행법 제31조 제2항.
550) 민사집행법 제31조 제5항.

에 관련되지 않은 경우
ii) 집행기관이 중재 판정을 집행할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iii) 신청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 후 5일 이내에 집행명령이 발부되고, 그 후 3일 이내에 공고 또는 지면을 통해 집행명령 및 기타 관련 서류가 통지된다.[551] 채무자에게는 중재판정의 내용을 임의로 이행을 위하여 1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552] 집행기관의 강제수단은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실행할 수 있다.[553]

Ⅷ. 결론

베트남에 있어서 중재는 높은 판정취소율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거부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베트남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을 거부하는 근거로서 드는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고 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원의 자유재량의 범위가 넓어, 베트남에서 중재판정을 집행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특히 문제되며 투명한 법제와 법해석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최근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 속도에 힘입어 베트남의 중재제도 역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대법원 결의 01/2014는 중재관련 투명한 법제와 법해석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SK E & C v. Vinalines 중재판정취소신청을 기각한 판례 역시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미국-베트남 양자무역협정(US-Vietnam Bilateral Trade Agreement, 2001)의 선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규정이 있다면 베트남 이외의 지역에서도 중재를 할 수 있는 바, 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하려는 외국의 당사자는 베트남 법제도가 외국투자자의 적절한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입증된다면 집행을 위하여 한-베트남간의 쌍무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위반 주장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베트남 사법공조협정에 중재판정 승인집행에 관한 구체인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551) 민사집행법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2항, 제40조 내지 제43조.
552) 판결의 임의집행기한은 판결집행채무자가 판결집행결정을 수령한 날 또는 판결집행결정에 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다.
553) 민사집행법 제45조, 제46조.

제7장 결론- 본 연구의 활용방안

이상과 같이 베트남의 국제민사소송법 및 중재법을 포함하는 국제사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베트남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글로벌화된 세계경제에 급속히 편입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장개방이후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며 최근 한·베트남간 FTA가 체결되어 양국가간 이전보다 더욱 많은 교류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경제법령과 투자법령에 대한 소개외에 베트남의 법제도에 대한 소개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제분쟁해결에 긴요한 베트남 국제사법에 대하여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베트남의 모든 법제가 그러하듯이 베트남 국제사법은 아직 발전도상에 있으며 전통적인 사회주의법체제로 인한 불투명성과 행정우위적 법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 이유로 인한 전통법의 존중이나 외국인에 대한 피해의식과 배타성 또한 법제에 반영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 국제사법 법제에는 우리 법제에는 없는 여러 가지의 장점이 발견된다. 첫째 의정(義政)이라고 하는 법률시행령에 의해 법률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제도이다. 베트남 법원의 법해석 능력에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하위법령으로 법률의 불비를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국제사법에 있어 불명확한 쟁점에 대한 명문 규정의 설치이다. 예컨대 계약의 이행지의 준거법을 계약에 명시할 수 있고 만약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지법인 베트남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이다. 또한 목적물이 부동산인지 동산인지를 구별하는 준거법을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으로 하는 것도 또 다른 예이다. 이와 같은 명문규정은 준거법결정에 있어 불명확한 부분을 제거하는데 큰 기여가 된다.

셋째 중재판정의 신속한 집행은 우리 중재법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베트남중재법은 중재판정을 법원판결과 같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점은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베트남 중재법이 우리 중재법에는 없는 수시중재(*ad hoc* arbitration)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베트남 국제사법 법제에는 많은 문제점도 동시에 발견된다.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에 위반하는 외국법의 적용은 배제되는바 무엇이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외국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알기 어렵다. 국제재판관할에 있어서도 베트남법원의 관할이 지나치게 넓고[554] 심지어는 전속관할의 범위까지 넓게 규정하여[555] 외국인이 적절한 법원에 제소하거나 응소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법령을 적용한 실무에 있어 판례가 공간되지 않아 법원의 입장을 알수 없는 문제와 외국 판결이나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중재판정의 취소가 빈번하다든지 하는 것은 제도 자체의 존재의의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글로벌화된 세계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도 외부와의 접촉이나 상호작용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개발이 불가능하다. 글로벌화는 모든 나라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외국적 요소나 국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급격히 국제화의 길을 밟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글로벌화 사회에 적합한 국제사법의 구조를 확립하고 입법화하는 것은 모든 나라의 중요한 일이다. 국제사법은 국가 법령은 일부이나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에 관련되는 문제이며 적용될 외국법, 외국에 있는 재산에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제사법에 있어서 각 국가간의 상이점, 연구방법, 법률의 전통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민사, 상사관계에 있어서 기업이나 국민이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과 국제사법의 조정,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점은 베트남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를 마무리하는 본 연구자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제언한다.

1. 연구성과의 공간

본 연구는 베트남 국제사법 전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연구서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베트남에서 투자를 하거나 거래를 할 경우 분쟁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최근 급증하는 베트남 국민과의 혼인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과의 교류가 점증하고 있는 요즈음 본 연구성과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공간하여 많은 기업인들과 사회인들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추가 연구의 수행

554) 예컨대 베트남인 원고는 피고가 어디에 있더라도 베트남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55) 예컨대 운송업자가 베트남에 본점 또는 지점을 가지는 한 운송업자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배트남법원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된다.

베트남 정부는 2013년에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에 가입하여 베트남 국제사법의 국제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2015년 국제사법 규정으로 포함하는 민법 개정안을 공표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실무에 있어서도 베트남 대법관회의의 결의의 형식으로 공표된 2014년 상사중재법 가이드라인과 새로운 판례의 등장 등 베트남 국제사법 실무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베트남 법제 개선 지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법제는 발전도상에 있으므로 그 개선에는 베트남 정부 스스로의 노력 뿐 아니라 외국의 협력 또한 필요하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을 지원하여 우리 정부는 베트남정부에 법제의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베트남 법제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협의의 국제사법과 관련하여서는 일본이 이미 장기간 베트남의 법정비작업을 지원하여 오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로서는 베트남의 국제 민사사소송법과 국제사법공조법의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베트남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길이 될 것이다.

4. 국제조약에의 가입

앞서 본바와 같이 한국은 2013년 헤이그아동탈취조약에 가입하였으나 베트남은 아직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반면 베트남은 2012년 헤이그입양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서명만 하였을 뿐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베트남 신부에 의한 아동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베트남의 헤이그아동탈취조약 가입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정부는 협의를 통하여 서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조약에 가입하는 것에 합의하여 현안을 해결하고 양국간에 국제사법 분야에서 적용가능한 통일 규범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제조약에서의 공동보조는 국제사법 분야에 있어 양국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다.

5. 양자조약의 체결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과 베트남은 장기간 사법공조협정체결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여 왔으나 몇 가지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여 사법공조협정의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 양국의 합의하지 못하는 쟁점 중에 하나는 상대국 판결의 승인·집행문제로 알려져 있다. 외국판결을 자국 내에서 승인·집행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재판권이라는 주권의 포기와 결부되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의 사

법제도가 사법권의 독립이나 공정한 재판절차를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사법제도 하에서 내려진 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승인·집행해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베트남의 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승인·집행해줄 수 있는 선행조건을 잘 검토하여 그 선행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베트남의 판결도 우리나라에서 집행해 줄 수 있다는 전략적,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556]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베트남 법원에 의하여 용이하게 승인·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양자협정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베트남의 국제사법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많고 그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베트남법제를 개선하는 것을 추진함과 아울러 베트남과의 협의를 통하여 국제사법에 관한 양자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넓은 국제재판관할, 준거법지정규칙의 명확화, 법정보 공조, 외국판결 및 중재판정 승인·집행 등의 문제를 포괄하는 양자협정을 추진하여 베트남 국내에서 우리 국익이 적절히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끝]

556) 이 문제는 중국과의 사법공조협정 개정문제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부 록

[목차]

1. 베트남 2006년 민법 제7편 [국제사법편] 국역문
2. 베트남 2006년 민법 시행령 [국제사법편] 국역문
3. 베트남 2015년 혼인 및 가족법 국역문
4. 베트남 2011년 민사소송법 [제3장, 제26장 내지 제29장, 제33장 내지 제36장] 국역문
5. 베트남 2011년 중재법 영역본
6. 베트남 2014년 상사중재법 가이드라인 영역본
7. 참고문헌목록
8. 베트남 국제사법 관련 법률용어 한·베트남 대역집

[부록본문]

1. 베트남 2006년 민법 제7편 [국제사법편] 국역문

제7편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Quan hệ dân sự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제758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Quan hệ dân sự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란 민사관계 당사자 중 최소 일방이 외국기관・외국단체・외국개인이거나 국외에 정주(định cư)하고 있는 베트남인인 민사관계이거나 또는 각 당사자가 베트남 공민(công dân) 및 단체일지라도 그 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을 위한 근거가 외국법이거나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그 관계에 관련된 재산이 외국에 소재하는 민사관계를 말한다.

제759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민사법, 국제조약, 외국법과 국제관습의 적용
1.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민사법의 규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적용된다. 단,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약국인 국제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이 법,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기타 법률문서 또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약국인 국제조약에서 외국법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 또는 적용의 효과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 외국법이 적용된다. 그 국가의 법이 다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을 적용한다.
당사자 쌍방이 계약에서 외국법의 적용을 합의하고, 그 합의가 이 법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기타 법에 위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이 적용된다.
4.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가 이 법,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기타 법률문서 또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약국인 국제조약 또는 당사자 간 민사계약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 또는 적용의 효과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국제관습을 적용한다.

제760조 무국적자 및 복수의 외국국적 보유 외국인에 대한 법률적용의 근거
1. 이 법 또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기타 법률문서가 외국인이 공민인 국가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무국적자에 대한 적용법은 그 자의 거주지국(nước nơi cư trú)의 법이다. 만약 무국적자에게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법을 적용한다.
2. 이 법 또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기타 법률문서가, 외국인이 공민인 국가의 법 적용을 규정하는 경우, 복수의 외국국적 보유자에 대한 적용 법률은 그 자가 민

사관계발생시점에 국적과 거주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법이다. 만약 그 자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1국에 거주하지 않으면 국적과 공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한다.

제761조 외국인인 개인의 민사권리능력(năng lực pháp luật dân sự)
1. 외국인인 개인의 민사권리능력은 그 자의 국적국의 법에 따라 확정된다.
2.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베트남 공민과 동등한 민사권리능력을 향유한다. 다만,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2조 외국인인 개인(cá nhân)의 민사행위능력(năng lực hành vi dân sự)
1. 외국인인 개인의 민사행위능력은 그 자가 공민인 국가의 법에 따라 확정된다. 단,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민사법률행위(giao dịch dân sự)를 성립 및 이행한 경우 외국인의 민사행위능력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에 따라 확정된다.

제763조 민사행위무능력자・민사행위능력 상실자 또는 제한민사행위능력자의 확정
1. 민사행위무능력자・민사행위능력상실자 또는 제한민사행위능력자의 확정은 그 자의 국적국법에 따른다.
2. 외국인이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의 민사행위무능력, 민사행위능력 상실, 민사행위능력 제한의 확정은 베트남법에 따른다.

제764조 실종 또는 사망(người mất tích)의 확정
1. 실종 또는 사망의 확정은 실종 또는 사망에 관한 최후소식(tin tức cuối cùng)時의 그 자의 국적국법에 따라야 한다.
2. 외국인이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의 실종 또는 사망의 확정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에 따라야 한다.

제765조 외국법인(pháp nhân nước ngoài)의 민사권리능력
1. 외국법인의 민사권리능력은 그 법인이 설립지국법에 따라 확정된다. 단, 제2항 규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국법인이 베트남에서 민사거래를 성립, 이행하는 경우 법인의 민사권리능력은 베트남법에 따라 확정된다.

제766조 재산소유권(Quyền sở hữu tài sản)
1. 재산소유권의 성립・이행・변경・소멸 및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내용은 그 재산의 소재지국의 법에 따라 확정된다. 단, 제2항과 제4항 규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동중인 동산(động sản)에 대한 소유권은 다른 합의가 없는 한, 동산의 이동 목적지국의 법에 따라 확정된다.
3. 재산이 동산인지 부동산(bất động sản)인지의 구별은 재산 소재지국의 법에 따라 확정된다.
4. 민용항공기(tàu bay dân dụng)와 선박(tàu biển)에 대한 소유권의 확정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민용항공에 관한 법과 해사에 관한 법(luật về hàng hải)에 따라야 한다.

제767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정상속(thừa kế theo pháp luật)
1. 법정상속은 피상속인(người để lại di sản thừa kế)의 사망시 국적국의 법에 따른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권은 그 부동산 소재지국의 법에 따른다.
3.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di sản)이 부동산인 경우 그 부동산 소재지국에 속한다.
4.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이 동산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 국적국에 속한다.

제768조 유언상속(thừa kế theo di chúc)
1. 유언능력(năng lực lập di chúc), 유언의 대체(thay đổi)와 취소(hủy bỏ)는 유언자가 공민인 국가의 법에 따른다.
2. 유언의 형식은 유언지국의 법에 따른다.

제769조 민사계약(hợp đồng dân sự)
1.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의 이행지국의 법에 따라 확정된다.
베트남에서 체결되고 베트남에서 전부가 이행되는 계약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에 따른다.
계약에 이행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이행지 확정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에 따른다.
2. 베트남 소재 부동산에 관련된 계약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에 따른다.

제770조 민사계약의 형식
1. 계약의 형식은 계약의 체결지국법에 따른다. 외국에서 체결된 계약이 그 국가의 법에 따른 계약의 형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에 따른 계약의 형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그 외국에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은 베트남에서 승인(công nhận)된다.
2. 베트남 영토상의 공작물·주택과 기타 부동산 소유권의 성립 또는 이전에 관련된 계약의 형식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에 따른다.

제771조 격지자간의 민사계약(Hợp đồng dân sự vắng mặt)의 체결
계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지의 확정은 계약청약자(bên đề nghị giao kết hợp đồng)인, 개인의 거주지국 또는 법인의 주된 주소지국(nước nơi có trụ sở chính)의 법에 따른다.
격지자간의 민사계약의 체결시점은 계약청약자가, 계약체결의 청약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경우 계약청약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확정된다.

제772조 단독행위(giao dịch dân sự đơn phương)
일방적 거래관계에서 自願(tự nguyện)하여 일방적인 거래관계를 이행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거주지국 또는 그 당사자의 주된 활동지(nơi có hoạt động chính)국의 법에 따라 확정된다.

제773조 계약외 손해배상(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ngoài hợp đồng)
1. 계약외 손해배상은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지국 또는 가해행위의 실제 효과(hậu quá thực tế)의 발생지국법에 따라 확정된다.
2. 항공기 및 선박에 의해 국제공역 또는 국제해역에서 가해진 손해의 배상은 항공기 및 선박의 국적국의 법에 따라 확정된다. 단,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민간항공과 항해에 관한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영토 외에서 발생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베트남 공민 또는 베트남 법인인 경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을 적용한다.

제774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저작권(quyền tác giả)
맨 처음 베트남에서 공표되었거나 또는 베트남에서 일정한 형식하에 창작 및 표현된 작품에 대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저작권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약국인 조약의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

제775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공업소유권(quyền sở hữu công nghiệp)과 種苗에 관한 권리(quyền đối với giống cây trồng)
베트남국으로부터 보호 또는 공인증서를 발급받은, 공업소유권의 대상 및 종묘에 관한 권리의 대상에 대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공업소유권 및 종묘에 관한 권리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약국인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

제776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기술이전(chuyển giao công nghệ)
베트남 개인 및 법인과 외국인 및 외국법인 간의 기술이전 및 외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의 기술이전과 베트남으로부터 외국으로의 기술이전은, 적용 또는 그 적용의

효과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이 법, 기술이전에 관한 베트남의 기타 법률문서, 베트남이 체약국인 국제조약 또는 외국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77조 제소시효(thời hiệu khởi kiện)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대한 제소시효는 당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국가의 법에 따라 확정된다.

2. 베트남 2006년 민법 시행령 [국제사법편] 국역문

2006년 11월 15일자 138/2006/NĐ-CP호 의정(정부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

제1조 적용범위
이 의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대한 베트남법, 외국법, 국제조약과 국제관습의 적용에 관한 민법의 각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정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의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참가하는 베트남의 기관·단체와 개인 및 외국의 기관·단체와 개인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해석
이 의정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Quan hệ dân sự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a) 각 참여 당사자 중 최소 일방이 외국의 기관·단체·개인, 외국에 정주한 베트남인인 각 민사관계, 혼인과 가족관계, 경영관계, 상거래관계와 노동관계
b) 각 참여 당사자가 베트남 공민·단체일지라도 그 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근거가 외국법에 따르거나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그 관계에 관련된 재산이 외국에 소재하는 각 민사관계, 혼인과 가족관계, 경영관계, 상거래관계와 노동관계

2. 외국인(Người nước ngoài)은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니한 자로, 외국국적자와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3. 외국정주 베트남인(Người Việt Nam định cư ở nước ngoài)은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며, 생활하는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계 사람이다.

4. 외국기관 및 단체(Cơ quan, tổ chức nước ngoài)란 베트남 기관 및 단체가 아닌 기관 및 단체로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며, 국제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관 및 국제단체를 포함한다.

5. 외국법인(Pháp nhân nước ngoài)이란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6. 격지자간의 민사계약의 체결(Giao kết hợp đồng dân sự vắng mặt)은 각 계약체결당사자가 계약의 서명을 위하여 일정한 지점에 함께 대면할 필요가 없는 전자적 수단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한 민사계약의 체결이다.

제4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 국제조약, 외국법과 국제관습의 적용
1.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 국제조약, 외국법과 국제관습의 적용은 민법 제759조 규정에 따른다.
2.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민법 제7편의 규정과 기타 전문영역의 법 규정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전문영역의 법규정을 적용한다.
3. 서로 다른 복수의 법률체계가 존재하는 국가의 법적용을 선택 또는 원용한 경우 당사자는 공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체계의 적용요구권을 갖는다.

제5조 법적용요구에 대한 당사자의 증명의무
민법 제760조 규정에 따라 무국적자, 복수의 외국국적을 갖는 외국인에 대한 법적용의 경우 또는 이 의정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서로 다른 복수의 법체계가 존재하는 국가의 법적용의 경우에 당사자는 적용이 요구되는 법체계와 공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자신의 가장 밀접한 관계에 관하여 베트남의 관할 기관에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당사자가 요구되는 법체계에 대한 자신의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가장 밀접한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베트남법이 적용된다.

제2장 구체적인 규정

제6조 외국인인 개인의 민사권리능력
1. 외국인인 개인의 민사권리능력 확정을 위한 준거법은 민법 제761조에 따라 확정된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그 개인의 민사권리능력은 민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2. 무국적자 또는 복수의 국적을 보유하는 외국인의 경우 그 자의 민사권리능력의 확정을 위한 준거법은 민법 제760조 및 이 의정 제5조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외국인인 개인의 민사행위능력
1. 외국인인 개인의 민사행위능력 확정을 위한 법적용은 민법 제762조에 따른다.
외국인인 개인이 베트남에서 민사거래를 성립, 이행하는 경우 그 외국인인 개인의 민사행위능력은 민법 제17조 내지 제23조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2. 무국적자 또는 복수의 국적을 보유하는 외국인의 경우 그 자의 민사행위능력의 확정을 위한 법적용은 민법 제760조 및 이 의정 제5조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능력상실자 또는 제한민사행위능력자의 확정
1.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능력상실자 또는 제한민사행위능력자의 확정을 위한 법적용은 민법 제763조 규정에 따른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그 자의 민사행위무능력, 민사행위능력상실 또는 제한민사행위능력의 확정은 민법 제21조 내지 제23조 규정에 따른다.
2. 무국적자 또는 복수의 국적을 보유하는 외국인의 경우 그 자의 민사행위무능력, 민사행위능력상실 또는 민사행위능력제한의 확정을 위한 법적용은 민법 제760조 및 이 의정 제5조와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실종 또는 사망의 확정
1. 실종 또는 사망의 확정을 위한 법적용은 민법 제764조 규정에 따른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그 자의 실종 또는 사망의 확정은 민법 제78조 내지 제83조 규정에 따른다.
2. 실종 또는 사망으로 간주되는 자가 국적이 없거나 또는 복수의 외국국적을 갖는 경우에 그 자의 실종 또는 사망의 확정을 위한 법적용은 민법 제760조, 이 의정 제5조와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외국법인의 민사권리능력
1. 외국법인의 민사권리능력 확정을 위한 법적용은 민법 제765조 규정에 따른다.
2. 외국법인이 베트남에서 민사거래를 성립, 이행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의 민사권리능력은 민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11조 재산소유권
1. 재산소유권에 관한 법적용은 민법 제766조 규정에 따른다.
2. 재산소유권의 성립・이행・변경・소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내용이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민법 제2편과 기타 관련 법률문서의 각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정상속
1. 법정상속에 관한 법적용은 민법 제767조 규정에 따른다.
2. 상속재산에 속하는 재산이 부동산인지 동산인지의 확정은 그 상속재산 소재지국법에 따라 확정된다.
3. 피상속인이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복수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정상속에 관한 적용법의 확정은 민법 제760조, 이 의정 제5조와 제12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유언상속
1. 유언능력, 유언의 개정・보충・대체・취소는 유언자 국적국법에 따라 확정된다. 유언자가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복수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유언상속에 관한 적용법의 확정은 민법 제760조와 이 의정에 따른다.
2. 유언의 형식은 유언을 한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한다. 외국에서 한 베트남인의 유언이 유언의 형식에 관한 베트남법의 규정에 따른다면 베트남에서 적합한 것으로 승인된다.

제14조 격지자간의 민사계약체결의 장소와 시점
1. 격지자간의 민사계약체결의 장소와 시점에 관한 법의 적용은 민법 제771조 규정에 따른다.
2. 청약자가 베트남 기관・단체・개인인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계약체결의 장소와 시점은 베트남의 전자거래법(Luật Giao dịch điện tử)과 기타 관련 법률문서에 따라 확정된다.

제15조 민사계약
1. 민사계약의 내용에 관한 법의 적용은 민법 제769조 규정에 따른다.
2. 민사계약의 형식에 관한 법의 적용은 민법 제770조 규정에 따른다.
3. 민사계약의 내용과 형식에 관하여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민법 제3편 제17장 제7절과 제18장과 기타 관련 법률문서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단독행위
단독행위의 내용과 형식은 확정된다. 그 일방적 민사거래관계를 자원하여 이행하는 당사자의 거주지국 또는 그 당사자의 주된 경영활동지(nơi có hoạt động kinh doanh chính)국의 법에 따라 확정된다.

제17조 계약외 손해배상
1. 계약외 손해배상에 관한 법의 적용은 민법 제773조 규정에 따른다.
2. 계약외 손해배상에 관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민법 제3편 제21장과 기타 관련 법률문서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1. 외국인인 개인 및 외국단체의 저작권은 민법 제736조 내지 제743조 규정, 지식소유권법(Luật Sở hữu trí tuệ), 기타 관련 법률문서와 베트남이 체약국인 국제조약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보호된다.

2. 외국개인 및 단체의 저작인접권은 민법 제744조 내지 제749조 규정, 지식소유권

법(Luật Sở hữu trí tuệ), 기타 관련 법률문서와 베트남이 체약국인 국제조약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보호된다.

제19조 공업소유권과 種苗에 관한 권리(quyền đối với giống cây trồng)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공업소유권과 種苗에 관한 권리(quyền đối với giống cây trồng)의 보호는 민법 제750조 내지 제753조 규정, 지식소유권법(Luật Sở hữu trí tuệ), 기타 관련 법률문서와 베트남이 체약국인 국제조약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기술이전(chuyển giao công nghệ)
당사자가 외국법적용에 관하여 계약 내에서 합의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베트남이 체약국인 국제조약에 이술이전의 규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베트남 개인・법인과 외국 개인・법인간의 기술이전, 외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의 기술이전과 베트남에서 외국으로의 기술이전은 민법 제754조 내지 757조의 규정, 기술이전법(Luật Chuyển giao công nghệ)과 베트남의 기타 관련 법률문서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제소시효(thời hiệu khởi kiện)
제소시효(thời hiệu khởi kiện)에 관한 준거법은 민법 제777조 규정에 따른다.

3. 베트남 2015년 혼인 및 가족법[국제사법관련] 국역문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 소정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과 가족관계 관련 규정

제3조 용어의 해석
25.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과 가족관계'(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란 참가 당사자의 최소 일방이 외국인 및 외국에 정주한 베트남인인 '혼인과 가족관계'와 참가 당사자가 베트남 공민일지라도 그 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의 근거가 외국법이거나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그 관계에 관련된 재산이 외국에 소재하는 '혼인과 가족관계'를 말한다.

제8장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과 가족관계

제121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과 가족관계'에 있어서 각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의 보호
1.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과 가족관계'는 베트남법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약국인 국제조약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존중 및 보호된다.
2. 베트남 공민과의 '혼인 및 가족 관계'에서 베트남 내 외국인은 베트남 공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베트남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있어서 외국에 있는 베트남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을 베트남법・소재국법・국제법과 국제관습에 부합하도록 보호한다.
4. 정부(chính phủ)는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과 이 법 제5조 제2항 규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과 가족관계'의 해결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한다.

제122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법적용
1.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혼인과 가족법'의 각 규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과 가족관계'에 적용된다. 단,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약국인 국제조약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본법 및 베트남의 기타 법률문서가 외국법의 적용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그 적용이 본법 제2조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외국법이 적용된다.
외국법이 다시 베트남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혼인과 가족에 관한 법'을 적

용한다.
3.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약국인 국제조약이 외국법의 적용을 규정하는 경우 외국법이 적용된다.

제123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과 가족 사건(vụ việc hôn nhân và gia đình)' 해결의 관할권(thám quyền)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련된 호적등기(đăng ký hộ tịch)의 관할권은 호적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2. 법원에서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과 가족 사건' 해결을 위한 관할권은 민사소송법(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3. 베트남 공민의 거주지 소재 縣級 인민법원(tòa án nhân dân)은 국경지역(khu vực biên giới)에 거주하는 베트남 공민과 베트남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최인접국(nước láng giềng cùng) 공민 사이의 법에 위반된 결혼의 취소, 이혼 및 부부·부모와 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과 부·모·子의 인지(nhận), 입양(nuôi con nuôi)과 후견(giám hộ)에 관한 분쟁을 해결한다.

제124조 '혼인과 가족'에 관한 서류(giấy tờ) 및 자료의 領事(lãnh sự)에 의한 합법화(hợp pháp hoá)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작성·발급 또는 확인된 서류(giấy tờ)가 '혼인과 가족 사건'의 해결에 사용되기 위하여는 영사에 의해 합법화되어야 한다. 단,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약국인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주의 원칙(nguyên tắc có đi có lại)에 따라 영사에 의한 합법화가 면제될 수 있다.

제125조 '혼인과 가족'에 관한 외국 법원·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의 판결(bản án)·결정(quyết định)의 승인(công nhận) 및 附記(ghi chú)
1. 베트남에서의 집행을 요구하는 외국 법원의 혼인과 가족에 관한 판결 및 결정의 승인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2. 정부는 베트남에서의 집행신청이 없거나 또는 베트남에서의 불승인신청(đơn yêu cầu không công nhận)이 없는, 외국법원의 판결·결정 및 기타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의 '혼인과 가족에 관한 결정'에 따라 '혼인과 가족에 관한 사실'의 호적부(sổ hộ tịch) 기재를 규정한다.

제126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결혼(kết hôn)
1. 베트남 공민과 외국인 사이의 결혼에서 각 당사자는 결혼의 요건에 관하여 자신의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한다. 결혼이 베트남의 권한있는 국가기관에서 진행된다면 외국인은 결혼의 요건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베트남의 권한있는 기관에서의 베트남에 상주(thường trú)하는 외국인들 사이의

결혼은 결혼의 요건에 관하여 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27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ly hôn)
1. 베트남 공민과 외국인 사이의, 베트남에 상주하는 외국인들 사이의 이혼은 본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해결된다.
2. 베트남 공민인 당사자가 이혼 요구시점에 베트남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 이혼은 부부의 동일한 상주지국(nước nơi thường trú chung)의 법에 따라 해결된다. 만약 동일한 상주지가 없다면 베트남법에 따라 해결한다.
3. 이혼시에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인 재산의 해결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국의 법에 따른다.

제128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父・母・子의 확정
1. 베트남 호적등기기관은 호적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공민과 외국인 사이, 최소 일방 당사자가 외국에 정주한 베트남 공민들 사이, 최소 일방 당사자가 베트남에 상주하는 외국인들 사이의, 분쟁이 없는 父・母・子의 확정을 해결하는 관할권을 가진다.
2. 베트남의 관할권 있는 법원은 본법 제88조 제2항, 제89조, 제90조, 제97조 제1항 및 제5항, 제98조 제3항 및 제5항과 제99조 규정의 경우 및 기타 분쟁이 있는 경우에 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父・母・子의 확정을 해결한다.

제129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부양(cấp dưỡng) 의무
1. 부양의무는 부양권리자(người yêu cầu cấp dưỡng)의 거주지국의 법에 따른다. 부양권리자가 베트남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부양권리자가 공민인 국가의 법을 적용한다.
2.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자의 부양요구를 해결하는 관할 기관은 부양권리자의 거주지국의 기관이다.

제130조 합의에 의한 부부재산제도의 적용,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실혼의 효과 결정
합의에 의한 부부재산제도의 적용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실혼 관계의 해결 요구가 있는 경우 베트남의 관할기관은 그 해결을 위하여 본법과 베트남의 기타 관련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4. 베트남 2011년 민사소송법[국제민사소송법관련] 국역문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장, 제26장 내지 제29장 및 제33장 내지 제36장**

민사소송법(2004년 6월 15일자 24/2004/QH11호) 및 개정 민사소송법(2011년 3월 29일 65/2011/QH12호)

제2조 민사소송법의 효력
1. 민사소송법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영토 전역에서의 모든 민사소송활동에 대해서 적용된다.
2. 민사소송법은 외국 소재 베트남 영사기관에 의해 진행된 모든 민사소송활동에 적용된다.
3. 민사소송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의 해결에 적용된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서명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외국 개인・기관 및 단체가 베트남법 또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서명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의하여 외교특권 및 면책 또는 영사특권 및 면책을 향유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하는 경우 그 개인・기관・단체에 관련된 민사사건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3장 법원의 관할권(Thẩm quyền)

제1절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민사사건(vụ việc dân sự)

제25조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민사분쟁
1. 개인간의 베트남 국적에 관한 분쟁
2. 재산 소유권에 관한 분쟁
3. 민사계약에 관한 분쟁
4. 지식소유권・기술이전에 관한 분쟁(이 법률 제29조 제2항이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5. 재산상속에 관한 분쟁
6. 계약외의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
7. 토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및 토지정착재산에 관한 분쟁
8. 법률 규정에 따른 언론업무의 활동에 관한 분쟁
9. 공증문서의 무효선언신청에 관련된 분쟁
10. 민사판결집행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판결집행을 위하여 강제되는 재산에 관련

된 분쟁
11. 민사판결집행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재산경매의 결과 및 경매재산의 매수등기에 관한 지출비용의 정산에 관한 분쟁
12. 법률에 규정이 있는 그 밖의 민사에 관한 분쟁

제26조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민사에 관한 신청
1. 사람의 민사행위능력상실 및 제한민사행위능력선고의 신청, 민사행위능력상실선고결정 및 제한민사행위능력선고결정의 취소신청
2. 거주지에서의 부재자의 수색 및 재산관리의 통보신청
3. 사람의 실종선고의 신청 또는 실종선고결정의 취소신청
4. 사람의 사망선고의 신청 또는 사망선고결정의 취소신청
5. 외국법원의 민사에 관한 판결·결정, 형사 및 행정 판결·결정에서 재산에 관한 결정의 베트남에서의 승인 및 집행신청 또는 베트남에서의 집행신청이 없는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 및 형사 및 행정 판결·결정에서 재산에 관한 결정의 불승인 신청
6. 공증문서의 무효선언신청
7. 민사판결집행에 관한 법규정에 따른 판결집행을 위한 소유권, 재산사용권, 공동재산분할 확정신청
8. 법률에 규정이 있는 그 밖의 민사에 관한 신청

제27조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혼인과 가족에 관한 분쟁
1. 이혼 및 이혼시 자의 양육과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
2. 혼인계속 중의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에 관한 분쟁
3. 이혼 후 자를 직접 양육하는 자의 변경에 관한 분쟁
4. 친자관계의 확정에 관한 분쟁
5. 부양에 관한 분쟁
6. 법률에 규정이 있는 그 밖의 혼인과 가족에 관한 분쟁

제28조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혼인과 가족에 관한 신청
1. 위법한 결혼의 취소신청
2. 이혼시 이혼합의, 자의 양육, 재산분할의 승인신청
3. 이혼 후 자를 직접 양육하는 자의 변경에 관한 합의의 승인신청
4. 미성년인 자에 대한 부 또는 모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이혼 후의 부 또는 모의 자에 대한 면접권의 제한신청
5. 양자관계 해소신청
6. 외국법원의 혼인과 가족에 관한 판결·결정의 베트남에서의 승인 및 집행신청 또는 베트남에서의 집행신청이 없는 외국법원의 혼인과 가족에 관한 판결·결정의

불승인 신청
7. 법률에 규정이 있는 그 밖의 혼인과 가족에 관한 신청

제29조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경영 및 상거래에 관한 분쟁
1. 경영등기를 한 개인・단체 사이의 다음의 이윤목적의 경영・상거래 활동에서 발생한 분쟁
a) 상품의 매매
b) 서비스의 제공
c) 유통
d) 대표(Đại diện)・대리업(Đại lý)
đ) 위탁판매(Ký gửi)
e) 임차, 임대, 임차 후 매수
g) 건설
h) 상담, 기술
i) 철도, 육로, 내수로를 통한 화물・승객운송
k) 항공, 해로를 통한 화물・승객운송
l) 주식,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매매
m) 투자, 금융, 은행업무
n) 보험
o) 조사・개발(Khai thác)
2. 개인 또는 단체 사이의 이윤목적의 지식소유권・기술이전에 관한 분쟁
3. 회사의 설립, 경영, 해산, 합병, 통합, 분할, 분리, 조직변경에 관련된 회사와 그 구성원 사이의 또는 회사의 구성원 사이의 분쟁
4. 법률에 규정이 있는 그 밖의 경영・상거래에 관한 분쟁

제30조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경영 및 상거래에 관한 신청
1. 상사중재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베트남 상사중재사건에 관련된 신청
2. 외국 법원의 경영・상거래에 관한 판결・결정의 베트남에서의 승인과 집행신청 또는 베트남에서의 집행신청이 없는 외국법원의 경영・상거래에 관한 판결・결정의 불승인 신청
3. 외국중재의 경영・상거래에 관한 판정의 베트남에서의 승인과 집행신청
4. 법률에 규정이 있는 그 밖의 경영・상거래에 관한 신청

제31조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노동에 관한 분쟁
1. 기초 노동화해회의(Hội đồng hòa giải lao động cơ sở) 및 구・현・시・省직속시의 노동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의 노동화해원(Hòa giải viên lao động)에서 화해가 성

립되었으나 각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이행은 하였지만 정확하지 않은 경우, 화해가 성립하지 않거나 법률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화해하지 않은 경우의 노동자 및 노동사용자 사이의 개인적 노동분쟁. 다만, 기초 단계의 화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다음의 분쟁은 제외한다.
a) 해고형식에 따른 노동규율처리에 관한 분쟁 또는 노동계약의 일방적인 해소에 관한 분쟁
b) 노동자와 노동사용자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 노동계약해소시의 지원금에 관한 분쟁
c) 가사도우미와 노동사용자 사이의 분쟁
d) 노동에 관한 법 규정에 따른 사회보험에 관한 분쟁
đ) 노동자와 노동자의 해외파견 기업・단체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
2. 구・현・시・省직속시의 인민위원회 주석에 의해 해결되었으나 노동단체 또는 노동사용자가 구・현・시・省직속시의 인민위원회 주석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한이 지났으나 구・현・시・省직속시의 인민위원회 주석이 해결하지 않은 노동에 관한 법규정에 따른, 노동단체와 노동사용자 사이의 권리에 관한 집단 노동분쟁
3. 법률에 규정이 있는 그 밖의 노동에 관한 분쟁

제32조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노동에 관한 신청
1. 외국법원의 노동에 관한 판결・결정의 베트남에서의 승인 및 집행신청 또는 베트남에서의 집행신청이 없는 외국법원의 노동에 관한 판결・결정의 불승인 신청
2. 외국중재인의 노동중재판정의 베트남에서의 승인 및 집행신청
3. 법률에 규정이 있는 그 밖의 노동에 관한 신청

제32조 a. 기관・단체의 개별결정에 관한 법원의 관할권
1. 민사사건 해결 시에 법원은 법원에 해결임무가 있는 민사사건에서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기관・단체・그 기관 및 단체의 권한있는 자의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개별결정에 대한 취소권을 가진다. 이 경우에 기관・단체・그 기관 및 단체의 권한있는 자는 소송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민사사건이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취소가 요구된 개별결정에 관련된 경우, 그 개별결정은 법원에 의해 민사사건과 동시에 검토된다. 그 민사사건을 해결하는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9조와 제30조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3.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검찰원 및 법무부과 협력하여 본조의 시행을 지도한다.

제2절 각급 법원의 관할권

제33조 현, 구, 시, 성직속시의 인민법원의 관할권
1. 현, 구, 시, 성직속시의 인민법원(이하 모두 '현급 인민법원'이라 한다.)은 다음의

분쟁을 제1심 절차에 따라 해결할 관할권을 가진다.
a) 이 법 제25조와 제27조 소정의 민사・혼인과 가족에 관한 분쟁
b) 이 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경영・상거래에 관한 분쟁
c) 이 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노동에 관한 분쟁
2. 현급 인민법원은 다음의 신청을 해결할 관할권을 가진다.
a) 이 법 제26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과 제7항 소정의 민사에 관한 신청
b) 이 법 제28조 제1항 내지 제5항 소정의 혼인과 가족에 관한 신청
3. 당사자 또는 재산이 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대표기관 또는 외국법원에 사법촉탁할 필요가 있는, 이 조 제1항과 제2항 소정의 분쟁 및 신청은 현급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성 또는 중앙직할시의 인민법원의 관할권
1. 성 또는 중앙직할시의 인민법원(이하 "성급 인민법원"이라 한다)은 다음의 사건을 제1심 절차에 따라 해결할 관할권을 가진다.
a) 이 법 제25조, 제27조, 제29조와 제31조 소정의 민사, 혼인과 가족, 경영, 상거래, 노동에 관한 분쟁, 단, 이 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현급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분쟁은 제외한다.
b) 이 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와 제32조 소정의 민사, 혼인과 가족, 경영, 상거래, 노동에 관한 신청, 단, 이 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현급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신청은 제외한다.
c) 이 법 제33조 제3항 소정의 분쟁 및 신청
2. 성급 인민법원은 이 법 제33조 소정의 현급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나 성급 인민법원이 해결을 위하여 받아들인 민사사건의 제1심 절차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다.

제35조 법원의 토지관할(Thẩm quyền của Tòa án theo lãnh thổ)
1. 법원의 민사소송사건의 토지관할은 다음과 같이 확정된다.
a) 피고가 개인인 경우 피고의 거주지・근무지 법원 또는 피고가 기관・단체인 경우 피고의 주소지 법원은 이 법 제25조, 제27조, 제29조와 제31조 소정의 민사, 혼인 및 가족, 경영, 상거래, 노동에 관한 분쟁을 제1심 절차에 따라 해결할 관할권을 가진다.
b) 각 당사자는, 원고가 개인인 경우 원고의 거주지・근무지 법원 또는 원고가 기관・단체인 경우 원고의 주소지 법원에 이 법 제25조, 제27조, 제29조와 제31조 소정의 민사, 혼인 및 가족, 경영, 상거래, 노동에 관한 분쟁해결의 요구를 서면으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c) 부동산 소재지 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분쟁해결의 관할권을 가진다.
2. 법원의 민사비송사건의 토지관할은 다음과 같이 확정된다.

a) 민사행위능력상실선고의 피신청자 또는 제한민사행위능력자의 거주지・근무지 법원은 민사행위능력상실선고신청 또는 제한민사행위능력 신청의 관할권을 가진다.
b) 거주지에서의 부재수색통보의 피신청자, 실종선고 또는 사망선고의 피신청자의 최후의 거주지 법원은 거주지에서의 부재수색통보와 그 자의 재산관리의 신청, 실종선고 또는 사망선고의 신청해결의 관할권을 가진다.
c) 실종 또는 사망선고를 한 법원은 실종 또는 사망선고결정의 취소신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d) 외국법원의 민사, 혼인 및 가족, 경영, 상거래, 노동에 관한 판결・결정의 집행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거주지・근무지 법원, 판결의 집행채무자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주소지 법원 또는 외국법원의 판결・결정집행에 관련된 재산소재지 법원은 외국 법원의 민사, 혼인 및 가족, 경영, 상거래, 노동에 관한 판결・결정의 베트남에서의 승인과 집행신청 해결의 관할권을 가진다.
đ) 신청인(người gửi đơn)이 개인인 경우 신청인의 거주지법원, 신청인이 기관・단체인 경우 신청인의 주소지 법원은 베트남에서의 집행신청이 없는 외국법원의 민사, 혼인과 가족, 경영, 상거래, 노동의 판결・결정의 불승인 신청의 관할권을 가진다.
e)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거주지・근무지 법원 또는 집행채무자가 기관・단체인 경우 집행채무자의 주소지 법원 또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련된 재산소재지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베트남에서의 승인과 집행신청의 관할권을 가진다.
g) 법률에 위반한 결혼등기가 이행된 곳의 법원은 위법한 결혼의 취소신청의 관할권을 가진다.
h) 이혼・자의 양육・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의 각 당사자 중 일방 당사자의 이혼시 거주지 법원은 이혼시 이혼・자의 양육・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의 승인신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i) 이혼 후 자를 직접 양육하는 자의 변경에 관한 합의의 각 당사자 중 일방 당사자의 거주지 법원은 이혼 후 자를 직접 양육하는 자의 변경에 관한 합의의 승인신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k)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가 거주지・근무지 법원은 이혼 후의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부모의 권리 또는 자에 대한 면접권의 제한 신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l) 양부모 또는 양자의 거주지・근무지 법원은 입양의 해소신청의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m) 공증을 이행한 공증실・공증사무소의 주소지 법원은 공증문서의 무효선언 신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n) 판결집행관할권을 가지는 판결집행기관의 주소지 법원 또는 판결집행에 관련된 재산소재지 법원은 법률규정에 따라 판결집행을 위한 소유권・재산사용권・공동재산분할의 확정신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o) 베트남 상사중재의 분쟁해결에 관련된 신청에 대한 법원의 토지관할은 상사중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현된다.

제36조 원고・신청인의 선택에 따른 법원의 관할권
1. 원고는 다음의 경우에서 민사, 혼인과 가족, 경영, 상거래, 노동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a) 피고의 거주지・근무지・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원고는 피고의 최후의 거주지・근무지・주소지 법원 또는 피고의 재산 소재지 법원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b) 분쟁이 단체의 분사무소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원고는 단체의 주소지 법원 또는 단체의 분사무소 소재지 법원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c) 피고가 베트남에 거주지・근무지・주소지가 없거나 또는 부양에 대한 분쟁에 관한 민사소송사건의 경우에 원고는 자신의 거주지・근무지 법원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d) 계약외의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의 경우에 원고는 자신의 거주지・근무지・주소지 또는 손해발생지 법원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đ) 노동계약 해소 후의 손해배상, 지원금, 사회보험, 근로에 관련된 권리와 이익, 임금, 수입과 기타 노동자에 관련된 노동조건에 관한 분쟁의 경우, 노동자인 원고는 자신의 거주지・근무지 법원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e) 분쟁이 수급인 또는 중개인의 노동사용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원고는 노동사용주의 실제 거주지・근무지・주소지 또는 수급인・중개인의 거주지・근무지 법원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g) 분쟁이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원고는 계약의 이행지 법원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h) 각 피고의 거주지・근무지・주소지가 서로 다른 복수의 장소인 경우 원고는 각 피고의 거주지・근무지・주소지 중 한 곳의 법원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i) 서로 다른 복수의 지방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분쟁의 경우, 원고는 각 부동산 가운데 하나의 소재지 법원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다음의 각 경우에 민사・혼인과 가족에 관하여 신청을 해결하는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a) 이 법 제26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과 제7항 소정의 민사에 관한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은 자신의 거주지・근무지・주소지 또는 피고의 재산소재지 법원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b) 이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결혼의 취소요구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법한 결혼등기의 각 당사자 중 1인의 거주지 법원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c) 이혼 후의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부모의 권리 또는 자에 대한 면접권 제한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은 자의 거주지 법원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 민사사건의 타 법원으로의 이송, 관할권에 관한 분쟁의 해결
1. 민사사건이 수리되었으나 수리된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은 경우 그 법원은 민사사건 서류를 관할권 있는 법원에 송부하는 결정을 하고 受理簿(Sổ thụ lý)에서 그 소송사건 명을 삭제한다. 이 결정은 즉시 동급의 검찰원, 당사자, 관련된 개인・기관・단체에 송부되어야 한다.
결정의 수령일로부터 3 영업일의 기한 내에 이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및 관련 개인・기관・단체는 불복권(Quyền khiếu nại)을 가지고, 검찰원은 이의권(Quyền kiến nghị)을 가진다. 불복・이의의 수령일로부터 3 영업일의 기한 내에 민사사건의 이송을 결정한 법원의 장(Chánh án Tòa án)은 불복・이의를 해결하여야 한다. 법원의 장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다.
2. 동일한 성・중앙직할시 내의 현급 인민법원 사이의 관할권에 관한 분쟁은 성급 인민법원의 장이 해결한다.
3. 서로 다른 성・중앙직할시에 속하는 현급 인민법원 사이 또는 성급 인민법원 사이의 관할권에 관한 분쟁은 최고인민법원의 장이 해결한다.
4. 최고인민법원은 본조의 시행을 지도한다.

제38조 소송사건의 병합 및 분리
1. 법원은 하나의 소송사건으로의 병합과 해결이 법준수를 담보하는 경우 그 해결을 위하여 그 법원이 개별적으로 수리한 둘 이상의 소송사건을 하나의 소송사건으로 병합할 수 있다.
2. 법원은 각 소송사건으로의 분리가 법준수를 담보하는 경우 서로 다른 요소가 있는 하나의 소송사건을 둘 이상의 소송사건으로 분리할 수 있다.
3. 본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소송사건의 병합 또는 분리시, 소송사건을 수리한 법원은 결정 즉시 각 당사자와 동급 검찰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장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 및 외국중재판정의 베트남에서의 승인과 집행 절차에 관한 일반규정

제342조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 및 외국중재판정
1.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은 외국법원의 민사, 혼인과 가족, 경영, 상거래, 노동에 관한 판결・결정, 외국법원의 형사 및 행정 판결・결정 내의 재산에 관한 결정과 베트남에 법에 따라 민사판결・결정으로 간주되는 외국법원의 기타 판결・결정이다.
2. 외국중재판정은 경영, 상거래, 노동법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각 당사자의 합의로 선택된 외국중재인에 의해 베트남 영토 내・외에서 선고된 판정이다.

제343조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원칙
1. 베트남의 법원은 다음의 각 경우에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의 베트남에서의 승인과 집행을 검토한다.
a) 베트남과 이 문제에 관한 국제조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국가 법원의 민사판결·결정
b) 베트남 법에 의해 승인·집행이 규정된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
2. 베트남의 법원은 베트남과 이 문제에 관한 국제조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국가에서 판정이 선고되거나 또는 그 국가의 중재인의 판정인 경우에 외국중재판정의 베트남에서의 승인과 집행을 검토한다.
3.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 및 외국중재판정은 베트남과 그 국가가 이 문제에 관한 국제 조약에 서명 또는 가입하지 않아도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베트남법원에 의해 베트남에서의 승인과 집행이 검토될 수 있다.
4.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 또는 외국중재판정은 베트남법원에 의해 승인과 집행이 허가된 후에만 베트남에서 집행된다.
5.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에 베트남에서의 집행요구가 없고 불승인 요구신청이 없는 경우 베트남이 서명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자동적으로 승인된다.
6. 베트남 법원은 베트남에서의 집행요구가 없는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의 불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의 불승인을 검토한다.

제344조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신청권
1. 집행채권자(Người được thi hành) 또는 그 자의 합법적인 대리인은, 개인인 집행채무자가 베트남에 거주·근무하거나 또는 기관·단체인 집행채무자가 베트남에 주된 주소가 있거나 또는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 및 외국중재판정에 관련된 재산이 신청제출시에 베트남에 소재하는 경우에, 베트남 법원에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 및 외국중재판정의 베트남에서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권리를 가진다.
2. 당사자, 관련된 합법적인 권리·이익을 갖는 자 또는 그 자의 합법적인 대리인은 베트남 법원에 베트남에서의 집행신청이 없는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의 불승인을 신청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345조 항고권(Quyền kháng cáo) 및 항의권(Quyền kháng nghị)의 보장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직접 상급법원에 재심사를 신청하기 위하여 베트남 법원의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 및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항고권을 가지고, 검찰원은 항의권을 갖는다.

제346조 베트남 법원의 외국법원 민사판결·결정 및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의 효력 보장

1. 베트남 법원에 의하여 베트남에서의 승인・집행된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은, 법적 효력이 있고 민사판결집행절차에 따라 집행될 수 있는 베트남 법원의 민사판결・결정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베트남 법원에 의하여 승인되지 않은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은 베트남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
2. 베트남 법원에 의하여 베트남에서의 승인・집행되는 외국중재판정은, 법적 효력이 있고 민사판결집행절차에 따라 집행될 수 있는 베트남 법원의 결정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제347조 신청서 검토 결과의 통보
결정일로부터 15일 내에 베트남 법원은 법무부(Bộ Tư pháp)를 통하여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의 베트남에서의 승인과 집행허가 신청서의 검토 결과를 그 판결・결정을 한 외국법원, 각 당사자, 그 결정에 관련된 개인・기관・단체에 통보하고 외국 중재판정의 베트남에서의 승인과 집행허가 신청서의 검토 결과를 신청서를 제출한 개인・기관・단체와 베트남 법원의 그 결정에 관련된 기타 개인・기관・단체에 통보한다.

제348조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 및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금전・재산의 이전권 보장
베트남국은 베트남 법원에 의하여 승인과 집행되는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 및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금전 및 재산을 베트남으로부터 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보장한다.
이 금전・재산의 이전은 베트남의 법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제349조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비용
베트남 법원에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 및 외국중재판정의 베트남에서의 승인 및 집행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베트남 법규정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장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의 베트남에서의 승인과 집행신청의 검토절차

제350조 승인과 집행신청서
1.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의 베트남에서의 승인과 집행신청서는 베트남 법무부에 제출되어야 하고 다음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집행채권자・그 자의 합법적인 대리인의 성명, 거주지 또는 근무지, 집행채권자가 기관・단체인 경우 그 기관・단체의 명칭과 주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b) 집행채무자의 성명, 거주지 또는 근무지, 집행채무자가 기관・단체인 경우 그 기관・단체의 명칭과 주된 주소를 기재한다. 집행채무자가 베트남에 거소지 또는 근무자가 없는 개인인 경우, 집행채무자가 베트남에 주된 주소가 없는 기관・단체인

경우 신청서상 베트남에서의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의 집행에 관련된 재산의 소재지와 재산의 종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c) 집행채권자의 신청. 일부 집행된 외국법원의 판결・결정의 경우 집행채권자는 기 집행된 부분과 베트남에서 계속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잔존 부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3. 외국어로 작성된 신청서는 합법적으로 공증・인증된 베트남어 번역본을 동봉해야 한다.

제351조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자료
1. 신청서에는 베트남이 서명・가입한 국제 조약에 규정된 서류・자료를 첨부한다.
국제 조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관련된 국제 조약이 없는 경우에 신청서에는 외국법원의 판결・결정의 합법적인 謄本(Bản sao), 그 판결・결정이 법적 효력이 있고, 집행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으며 베트남에서 집행될 필요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단, 그 판결・결정이 이 점을 명확히 한 경우를 제외), 집행채무자에게 그 판결・결정의 등본을 송부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집행채무자 또는 그 자의 합법적인 대리인이 외국법원의 심리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자가 정당하게 소환된 것을 확인하는 서면이 있어야 한다.

2. 외국어로 작성된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자료는 베트남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하고, 합법적으로 공증・인증되어야 한다.

제352조 법원에의 기록서류 송부
신청서, 첨부 서류・자료 수령일로부터 7일 내에 법무부는 기록 서류를 이 법 제34조와 제35조에 따른 관할권 있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53조 기록서류의 수리와 해석의 요구
1. 법무부에 의해 송부된 기록 서류의 수령일로부터 3 영업일 내에 관할권 있는 법원은 수리하고 동급 검찰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신청서 검토 준비 기간 내에 법원은 신청인 및 판결・결정을 한 외국법원에 기록서류의 불명확한 점에 대한 해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해석 요구문서와 답변문서는 베트남 법무부를 통하여 송부된다.
3. 베트남 법원이 해석을 요구하는 문서의 수령일로부터 7일 내에 법무부는 신청인 또는 외국법원에 그 해석요구문서를 송부한다.
4. 해석요구의 답변문서 수령일로부터 7일 내에 법무부는 그 답변문서를 요구한 베트남 법원에 송부한다.

제354조 신청서의 검토 준비

1. 수리일로부터 4개월 내에 법원에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다음의 결정 가운데 하나를 행한다.
a)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 또는 집행채무자가 임의로 집행한 경우 또는 개인인 집행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자의 권리・의무가 상속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기관・단체인 집행채무자가 해산・파산하여 그 기관・단체의 권리・의무가 베트남 법규정에 따라 해결된 경우에는 신청서의 검토가 정지된다.
b) 관할권이 없거나 집행채무자의 주소 또는 집행에 관련된 재산소재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검토가 정지되고 기록서류는 법무부에 반환된다.
c) 신청서 검토 기일을 연다.
법원이 이 법 제353조 제2항 소정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검토 준비기간은 2개월 연장된다.
2. 법원은 요구서 검토 기일을 여는 결정을 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기일을 열어야 한다.
법원은 기일 개시일 전 15일 내에 동급 검찰원에 기록서류를 송부한다. 이 기한 만료시 검찰원은 요구서 검토 기일을 열기 위하여 법원에 기록서류를 반환한다.

제355조 신청서 검토 기일
1. 신청서 검토는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되고 그 중 한 명의 법관이 법원장의 분담에 따라 주관하는 신청서검토회의(Hội đồng xét đơn yêu cầu)에 의해 기일에 진행된다.
2. 동급 검찰원의 검찰관은 기일에 참여해야 한다. 검찰관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기일을 연기하여야 한다.
3. 기일은 집행채무자 또는 그 자의 적법한 대리인의 출석으로 진행된다. 그 자가 정당한 이유로 첫 번째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기일을 연기하여야 한다.
신청서 검토는 집행채무자 또는 그 자의 합법적인 대리인이 법원에 궐석상태에서의 신청서 검토를 신청하거나 또는 두 번째 기일까지 정당하게 소환되었음에도 불출석한 경우에 진행된다.
4. 회의는 소송사건을 재심리하지 않고 외국법원의 판결・결정,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자료와 이 법의 규정, 해결을 위해 관련 있는 베트남법과 베트남이 서명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의 기타 규정을 조사・대조할 뿐이다.
5. 신청서・첨부된 서류 및 자료의 검토, 소환된 자 및 검찰원의 의견청취 후에 회의는 토론하고 다수결에 따라 결정한다.
회의는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의 베트남에서의 승인・집행결정 또는 불승인의 결정을 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356조 베트남에서 승인과 집행될 수 없는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
1. 그 판결・결정을 한 법원의 국가의 법규정에 따라 아직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

는 민사판결・결정
2. 집행채무자 또는 그 자의 합법적인 대리인이 정당하게 소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법원의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3. 소송사건이 베트남의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경우
4. 동일 소송사건에 관하여 베트남법원의 법적 효력 있는 민사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베트남법원에 의해 기승인된 외국법원의 법적 효력있는 민사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외국의 심판기관이 소송사건을 수리하기 전에 베트남 법원이 이미 수리하고 그 해결 중인 경우
5. 그 민사판결・결정을 한 법원소재국법 또는 베트남 법에 따라 판결집행시효가 만료한 경우
6. 베트남에서의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의 승인 및 집행이 베트남 법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제357조 법원 결정의 송부
이 법 제354조와 제355조 소정의 결정 후 즉시 법원은 각 당사자와 동급 검찰원에 그 결정을 송부한다. 당사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결정은 법무부를 통하여 송부한다.

제358조 항고 및 항의
1. 법원의 본법 제354조와 제355조 소정의 결정일로부터 15일 내에 당사자・그 자의 합법적인 대리인은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권리를 가진다. 당사자・그 자의 합법적인 대리인이 신청서 검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항고기한은 그 결정 수령일로부터 기산한다. 항고장에는 이유와 항고요구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불가항력 또는 객관적인 장애에 의하여 당사자・그 자의 합법적인 대리인이 상기의 기한 내에 항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 또는 객관적인 장애가 존재한 기간을 항소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2. 동급 검찰원 또는 최고 인민 검찰원은 이 법 제354조와 제355조 소정의 법원의 결정에 항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동급 검찰원의 항의기한은 법원의 결정일로부터 15일이며, 최고 인민 검찰원의 항의기한은 법원의 결정일로부터 30일이다.

제359조 항고 및 항의의 검토
1. 최고 인민 법원은, 기록 서류의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고 및 항의된 성급 인민 법원의 결정을 검토한다. 이 법 제353조 소정의 해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이 시한은 연장되지만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항고 및 항의된 결정을 검토하는 회의는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되고, 그 가운데 한 명의 법관이 최고 인민 법원 항소심 법원의 장(Chánh tòa Tòa phúc thẩm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의 분담으로 주관한다.
항고 및 항의된 결정의 재검토 기일은 이 법 제355조 소정의 신청서 검토기일과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3. 회의는 성급 인민법원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지・수정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항고취하, 검찰원의 항의취하 또는 이 법 제354조 제1항 제a호 소정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항고 및 항의의 검토를 중단할 권리가 있다.
최고 인민 법원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고 집행력을 가진다.

제28장 베트남에서의 집행신청이 없는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의 불승인 신청서의 검토 절차

제360조 불승인 신청의 기한
1. 베트남에서의 집행신청이 없는 외국법원 민사판결・결정의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당사자, 관련된 합법적인 권리・이익을 가진 자 또는 그 자의 합법적인 대리인은 그 판결・결정의 불승인을 법원에 요구하는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권한이 있다.
2. 신청인이 불가항력 또는 객관적인 장애 때문에 본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불가항력 또는 객관적인 장애가 존재한 기간은 신청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한의 회복은 신청서를 수리한 법원의 장에 의해 검토되고 결정된다.

제361조 불승인 신청서
1.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의 불승인 신청서에는 다음의 주요 내용이 있어야 한다.
a) 신청인의 성명, 거주지 또는 근무지. 신청인이 기관・단체인 경우, 그 기관・단체의 명칭과 주된 주소를 기재한다.
b) 신청인의 요구
2. 신청서에는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의 합법적인 등본과 불승인 신청에 근거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외국어 작성된 신청서와 첨부서류・자료에는 합법적으로 공증・인증된 베트남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4.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관할 법원으로의 송부는 이 법 제352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제362조 불승인 신청서의 검토
1.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의 불승인 신청서의 검토 준비와 신청서의 검토는 본 법 제354조와 제355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2. 신청서를 검토하는 회의는 다음의 결정 가운데 하나를 할 권한이 있다.
a) 외국법원의 민사 판결・결정의 불승인
b) 불승인 신청서의 기각
3. 베트남에서의 집행신청이 없는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은 본법 제356조 소정의 경우에는 승인될 수 없다.

제363조 법원의 결정의 송부, 항고 및 항의
법원의 결정의 송부, 항고 및 항의와 항고 및 항의의 검토는 이 법 제357조, 제358조 및 제359조 규정에 따른다.

제29장 외국중재판정의 베트남에서의 승인 및 집행 신청서 검토 절차

제364조 외국중재판정의 베트남에서의 승인 및 집행 신청
1. 외국중재판정의 베트남에서의 승인 및 집행의 신청서는 베트남 법무부에 송부되어야 하고 다음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집행채권자・그 자의 베트남 내 합법적인 대리인의 성명, 거주지 또는 근무지.
집행채권자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단체의 명칭과 주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b) 집행채무자의 성명, 거주지 또는 근무지. 집행채무자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단체의 명칭과 주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집행채무자가 베트남 내 거주지 또는 근무지가 없는 개인인 경우 및 집행채무자가 베트남 내 주된 주소가 없는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베트남에서의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련된 재산의 소재지 주소와 재산의 종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c) 집행채권자의 요구
2. 외국어로 작성된 신청서에는 합법적으로 공증・인증된 베트남어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65조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 및 자료
1. 신청서에는 베트남이 서명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한다. 국제조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관련 국제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외국중재판정의 합법적인 등본 및 유관국의 법이 중재실현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그 중재실현에 따라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한 분쟁해결에 관한 각 당사자의 중재합의의 합법적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중재합의는, 계약에 미리 기재된 중재 조항 또는 분쟁발생 후에 각 당사자에 의해 체결된 중재에 관한 별개의 합의가 될 수 있다.
2.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및 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베트남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하고 합법적으로 공증・인증되어야 한다.

제366조 기록서류의 법원에의 송부
1. 신청서, 첨부서류 및 자료의 수령일로부터 7일 내에 법무부는 본법 제34조와 제35조 소정의 관할권 있는 법원에 기록서류를 송부한다.
2. 법무부가 이미 기록서류를 관할권 있는 법원에 송부한 후에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외국중재판정집행의 취소를 검토하고 있거나 이미 취소 및 정지했다는 통보를 다시 받은 경우에 법무부는 즉시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한다.

제367조 기록서류의 수리
1. 법무부로부터의 기록서류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관할권 있는 법원은 수리하고 개인・기관・단체인 집행채무자 및 동급의 검찰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법원은 신청서를 제출한 개인・기관・단체에 그 신청서의 불명확한 점을 해석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이 있다.

제368조 신청서의 검토 준비
1. 신청서 수리일로부터 2개월 내에 법원은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서 다음의 결정 가운데 하나를 한다.
a)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외국중재판정을 검토하고 있음에 관한 법무부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의 검토를 잠정 중지한다.
b) 집행채권자인 개인・기관・단체가 신청서를 취하한 경우 또는 집행채무자인 개인・기관・단체가 자원하여 집행한 경우, 집행채무자인 기관・단체가 해산・파산하였으나 그 기관・단체의 권리・의무가 베트남 법규정에 따라 해결된 경우 또는 집행채무자인 개인이 사망하였으나 그 자의 권리・의무가 상속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검토를 정지한다.
c)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외국중재판정을 취소 또는 집행을 정지했음에 관한 서면통보를 법무부로부터 받은 경우에 신청서의 검토를 정지한다.
d) 관할권이 없는 경우 또는 집행채무자인 기관・단체가 베트남 내에 주된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집행채무자인 개인이 베트남 내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경우 또는 베트남 내 집행에 관련된 재산의 소재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검토를 정지하고 법무부에 기록서류를 반환한다.
đ) 신청서 검토 기일을 연다.
법원이 본법 제3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에 신청서 검토 준비 기한은 2개월 연장된다.
2. 법원은 신청서 검토기일을 여는 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신청서 검토기일을 열어야 한다. 법원은 기일 전 10일 내에 동급의 검찰원에게 기록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기한이 만료된 때에 검찰원은 신청서 검토 기일을 열기 위해 법원에 기록서류를 반환해야 한다.

제369조 신청서 검토 기일

1. 신청서의 검토는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되고, 그 중 한 명의 법관이 법원장의 분담에 따라 주관하는 신청서검토회의(Hội đồng xét đơn yêu cầu)에 의해 기일에 진행된다.

2. 동급 검찰원의 검찰관은 기일에 참여해야 한다. 검찰관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기일을 연기하여야 한다.

3. 기일은 집행채무자 또는 그 자의 적법한 대리인의 출석으로 진행된다. 정당한 이유로 첫 번째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기일을 연기하여야 한다.

신청서 검토는 집행채무자 또는 그 자의 합법적인 대리인이 법원에 궐석상태에서의 신청서 검토를 신청하거나 또는 두 번째 기일까지 정당하게 소환되었음에도 불출석한 경우에 진행된다.

4. 회의는 외국중재에 의해 해결된 분쟁을 재심리하지 않고 외국중재판정,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자료와 이 법의 규정, 판정을 위하여 관련 있는 베트남법과 베트남이 서명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의 기타 규정을 조사・대조할 뿐이다.

5. 신청서・첨부된 서류 및 자료의 검토, 소환된 자 및 검찰원의 의견청취 후 회의는 토론하고 다수결에 따라 결정한다.

회의는 외국중재판정의 베트남에서의 승인・집행결정 또는 외국중재판정의 불승인 결정을 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370조 불승인의 경우

1. 외국중재판정은 다음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승인과 집행될 수 없다.

a)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각 당사자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그 합의를 체결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

b) 각 당사자가 적용을 위하여 선택한 나라의 법에 따라 중재합의에 법적 가치가 없는 경우 또는 각 당사자가 그 합의에 적용할 법을 선택하지 않은 때에 기선고된 중재판정지국의 법에 따라 중재합의에 법적 가치가 없는 경우

c) 집행채무자인 개인・기관・단체가 중재인 지정 및 외국중재에서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 적시에 적절한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기타 정당한 원인으로 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

d) 외국중재판정이 각 당사자가 해결을 요구하지 않은 분쟁에 대하여 선고되거나 또는 각 당사자가 체결한 중재합의의 요구를 넘은 경우. 중재판정을, 외국중재에 의한 해결이 요구된 문제에 관한 판정부분과 해결이 요구되지 않은 문제에 관한 판정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에 해결을 요구된 문제에 관한 판정부분은 베트남에서 승인과 집행될 수 있다.

đ) 외국중재인, 외국중재의 분쟁해결 절차가, 중재합의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재합의에 그 문제에 관한 규정이 없는 때에 외국중재판정이 선고된 국가의 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e) 외국중재판정이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경우.
g) 외국중재판정이, 선고된 국가 또는 적용된 법의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또는 집행이 정지된 경우
2. 베트남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 외국중재판정은 베트남에서 승인·집행될 수 없다.
a) 베트남법에 따르면 분쟁이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b) 외국중재판정의 베트남에서의 승인과 집행이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경우

제371조 법원 결정의 송부
본법 제368조와 제369조 소정의 결정 직후, 법원은 각 당사자와 동급 검찰원에 그 결정을 송부한다. 당사자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결정은 법무부를 통하여 송부된다.

제372조 항고 및 항의
1. 법원이 이 법 제368조와 제369조 소정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당사자·그 자의 합법적인 대리인은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권리를 가진다. 당사자가 신청서 검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항고기한은 그 결정 수령일로부터 기산한다. 항고장에는 이유와 항고요구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불가항력 또는 객관적인 장애에 의하여 당사자·그 자의 합법적인 대리인이 상기의 기한 내에 항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 또는 객관적인 장애가 존재한 기간을 항고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2. 동급 검찰원 또는 최고 인민 검찰원은 이 법 제368조와 제369조 소정의 법원의 결정에 항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동급 검찰원의 항의기한은 법원이 결정을 한 날로부터 15일이며, 최고 인민 검찰원의 항의기한은 법원이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이다.

제373조 항고 및 항의의 검토
1. 최고 인민 법원은, 기록 서류의 수령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항고 및 항의된 성급 인민 법원의 결정을 검토한다. 본법 제367조 제2항 소정의 해석요구가 필요한 경우에 이 기한은 연장되지만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항고 및 항의된 결정을 검토하는 회의의 구성은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되고, 그 가운데 한명의 법관이 최고 인민 법원 항소심 법원의 장(Chánh tòa Tòa phúc thẩm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의 분담으로 주관한다.
항고 및 항의된 결정의 재검토 기일은 이 법 제369조 소정의 신청서검토기일과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3. 회의는 성급 인민법원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지・수정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항고취하, 검찰원의 항의취하의 경우에 또는 이 법 제368조 제1항 제a호, 제b호, 제c호 소정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항고 및 항의의 검토를 잠정적 정지 또는 정지할 권리가 있다.
최고 인민 법원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고 집행력을 가진다.

제374조 승인 및 집행 결정의 취소
1.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베트남에서 집행결정을 이미 받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취소 또는 정지를 심리하고 있음에 관하여 법무부의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민사판결집행기관의 장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잠정정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외국중재판정의 베트남 내에서의 승인과 집행을 결정한 법원에 송부한다.
민사판결집행기관의 장은 집행채권자인 개인・기관・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중재판정의 계속 집행에 필요한 담보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
2.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취소 또는 정지했음에 관한 법무부의 서면통보를 받은 직후에, 외국중재판정의 베트남에서의 승인・집행을 결정한 법원은 그 결정의 취소결정을 하고 그 취소결정을 판결집행기관에 송부한다.
법원의 결정을 받은 직후에, 민사판결집행기관의 장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정지결정을 한다.

제9편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의 해결절차와 민사소송에서의 사법공조

제34장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의 해결절차에 관한 일반규정

제405조 적용원칙
1. 법원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법 제34장과 제35장의 각 규정을 적용한다. 이 장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해결을 위하여 이 법의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은 당사자 중 최소 일방이 외국인, 외국에 정주한 베트남인 민사사건 또는 베트남 공민・기관・단체가 당사자인 민사관계이지만 그 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의 근거가 외국법을 따르거나,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그 관계에 관련된 재산이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민사사건을 말한다.

제406조 외국의 개인・기관・조직의 소송상 권리・의무
1. 외국공민, 무국적자, 외국의 기관・단체 및 국제기구(이하 모두 “외국개인, 기관 및 단체”라 한다.)는 침해당하거나 분쟁이 있는 때에는 자신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의 보호하기 위하여 베트남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민사소송 참가시 외국개인・기관・단체는 베트남 공민・기관・단체와 같은 소송

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베트남국은 외국 법원이 베트남 공민・기관・단체에 대하여 소송상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이 이에 상응하여 그 국가의 공민・기관・단체에 대해 민사소송상 권리를 제한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407조 외국 공민 및 무국적자의 민사소송권리능력 및 민사소송행위능력
1. 외국 공민 또는 무국적자의 민사소송권리능력 및 민사소송행위능력은 다음과 같이 확정된다.
a) 그 공민의 국적국 법률에 따르고, 공민이 베트남국적과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베트남법에 따르며, 공민이 서로 다른 복수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민의 생활지국법에 따른다. 단, 베트남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외국 공민이 베트남에 장기로 거주하고, 근무하며, 생활하는 경우 베트남법에 따른다.
c) 무국적자는 장기로 거주하고, 근무하며, 생활하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d) 민사소송행위는 베트남 영토에서 이행되는 경우에 베트남법에 따른다.
2. 외국 공민, 무국적자가 외국법 규정에 따르는 경우 민사소송행위능력이 없더라도 베트남법 규정에 따르면 민사소송행위능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베트남 영토에서 민사소송행위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승인될 수 있다.

제408조 민사소송에 있어서 외국기관・단체, 국제지구의 민사소송권리능력
1. 외국기관 및 단체의 민사소송권리능력은 그 기관・단체의 설립지국의 법에 따라 확정된다. 단, 베트남 법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제기구의 민사소송권리능력은 그 기구의 설립 및 국제기구의 활동규제의 근거가 되는 국제조약 또는 베트남의 권한 있는 기관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기초하여 확정된다.

제409조 외국의 개인・기관・단체인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의 보호
베트남 법원의 소송에 참가한 외국 개인・기관・단체인 당사자는 베트남법의 규정에 따라 그 합법적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는 변호사의 조력권을 가진다.

제35장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을 해결하는 베트남 법원의 관할권

제410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을 해결하는 베트남 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원칙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을 해결하는 베트남 법원의 관할권은 본법 제3장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다만, 본장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베트남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을 해결한다.
a) 피고가 베트남에 주된 주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 기관 및 외국단체인 경우 또는 피고가 베트남에 관리기관, 지점, 대표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b) 피고가 베트남에 장기간 거주하고, 근무하며 생활하는 외국공민 및 무국적자인 경우 또는 베트남 영토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c) 원고가 베트남에 장기간 거주하고, 근무하며, 생활하는 외국공민 및 무국적자인 경우의 부양료청구 및 부모확정에 관한 민사사건
d) 민사관계를 성립, 변경, 소멸시는 근거가 베트남법이거나 베트남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에 그 민사관계에 관한 민사사건. 그러나 당사자의 최소 일인 이상이 외국 개인, 기관, 단체이어야 한다.
đ) 민사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의 근거가 외국법이거나 외국에서 발생하였지만 모든 당사자가 베트남 공민・기관・단체이고 원고 또는 피고가 베트남에 거주하는 경우의 그 민사관계에 관한 민사사건
e)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베트남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분쟁
g) 원고 또는 피고가 베트남 공민인 이혼사건

제411조 베트남 법원의 전속관할권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다음의 민사사건은 베트남 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
a) 베트남 영토에 소재하는 부동산인 재산권에 관련된 민사소송사건
b) 운송인이 베트남에 주된 주소나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운송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분쟁
c) 베트남 공민과 외국공민 또는 무국적자 사이의 이혼소송사건으로 부부가 베트남에 거주하고, 근무하며 생활하는 경우
2. 다음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비송사건은 베트남 법원의 전속관할권에 속한다.
a) 법적 사건이 베트남 영토에서 발생한 때의 그 사건의 확정
b) 외국공민 및 무국적자에 대한 제한민사행위능력선고 및 민사행위능력상실선고로서 외국공민 및 무국적자가 베트남에 거주하고, 근무하며, 생활하고 그 선고가 베트남 영토상 그 자의 권리 및 의무의 성립에 관련된 경우
c) 외국공민 및 무국적자에 대한 실종선고 및 사망선고로서 그가 베트남에서 실종선고 및 사망선고의 근거가 되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베트남에서 있었던 경우와 그 선고가 베트남 영토상 그의 권리와 의무의 성립에 관련된 경우
d) 베트남 법원에 대한 베트남 공민의 실종・사망선고의 신청으로서 그 선고가 베트남 영토상 그의 권리・의무의 성립에 관련된 경우
đ) 베트남 영토에 소재하는 재산이 무주임을 승인하는 것 또는 베트남 영토상의 무주의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의 관리자의 소유권을 승인하는 것

제412조 법원의 관할권의 불변경
본법에 의해 규정된 관할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베트남 법원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수리된 민사사건은 해결과정에서 당사자의 국적・거주지・장소의 변경이 있거나 그 민사사건이 베트남의 다른 법원 또는 외국의 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는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법원에 의하여 계속 해결되어야 한다.

제413조 외국법원이 이미 해결한 경우에 있어서 소장 또는 신청서의 반환 또는 민사사건 해결의 중지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을 해결한 외국법원의 판결・결정이 이미 존재하고 그 민사판결・결정을 한 국가와 베트남이 민사판결・결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는 국제조약의 체약국인 경우 베트남 법원은 그 민사사건의 소장・신청서를 반환하거나 해결을 중지한다.
2. 외국법원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을 이미 수리하고 그 민사사건에 관한 외국법원의 판결・결정이 베트남에서 승인・집행된 경우에 베트남 법원은 그 민사사건의 소장・신청서를 반환하거나 그 민사사건의 해결을 중지한다.

제36장 민사소송에서의 사법공조

제414조 민사소송에서의 사법공조의 원칙
1. 베트남법원과 외국법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의 사법공조는 독립・주권・국가의 영토보존・상호내부업무불간섭・호혜평등 존중의 원칙에 따라 베트남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과 베트남법에 부합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2. 베트남과 외국이 민사소송에서의 사법공조를 규정하는 국제조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았거나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소송에서의 사법공조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베트남 법원에 의해 승인될 수 있으나 베트남법・국제법과 국제관습에 위반할 수는 없다.

제415조 사법촉탁의 이행
1. 베트남법원은 베트남이 체결하였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민사소송의 일부 활동의 진행에 관하여 외국법원에 사법촉탁을 하거나 외국법원의 사법위탁을 이행할 수 있다.
2. 베트남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외국법원의 사법촉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a) 사법촉탁의 이행이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베트남의 안녕을 위협하는 경우
b) 사법촉탁의 이행이 베트남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은 경우

제416조 사법촉탁이행의 절차
1. 외국법원에 대한 베트남법원의 사법촉탁 또는 베트남법원에 대한 외국법원의 사

법촉탁은 베트남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 또는 베트남법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베트남의 관할기관에 송부되어야 한다.
2. 사법촉탁의 문서를 수령한 베트남의 관할기관은 베트남법원 또는 베트남법원의 촉탁문서를 수령한 외국의 관할기관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417조 사법촉탁문서
1. 사법촉탁문서에는 다음의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a) 사법촉탁문서 작성의 연・월・일
b) 사법촉탁 법원의 명칭 및 주소
c) 사법촉탁을 이행하는 법원의 명칭 및 주소
d) 사법촉탁에 관련된 개인의 성명과 주소, 기관・단체의 명칭과 주소
đ) 촉탁업무의 내용
e) 법원의 촉탁신청
2. 촉탁이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촉탁문서에 첨부한다.

제418조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작성・발행 또는 확인된 서류 및 자료의 승인
1. 외국법 규정에 따라 또는 베트남 영토 외에서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작성・발행 또는 확인된 서류 및 자료는 그 서류 및 자료가 영사에 의해 합법화된 경우에 베트남법원에 의해 승인된다. 단, 베트남이 체약국인 국제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및 자료는 합법적으로 공증・인증된 베트남어 번역본이 첨부되어 베트남법원에 송부되어야 한다.

5. 베트남 2011년 중재법 영역본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Pursuant to 1992 Constitution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which was amended and supplemented under Resolution No. 51/2001/QH10;

The National Assembly promulgates the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Scope of regulation

This Law provides for the jurisdiction of commercial arbitration, forms of arbitration, arbitration institutions and arbitrators; arbitration order and procedures; right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parties in arbitral proceedings; courts' jurisdiction over arbitral activities;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foreign arbitrations in Vietnam,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rticle 2. Arbitration's jurisdiction to settle disputes

1. Disputes among parties which arise from commercial activities.

2. Disputes among parties at least one of whom conducts commercial activities.

3. Other disputes among parties which are stipulated by law to be settled by arbitration.

Article 3. Interpretation of terms

In this Law, the terms below are construed as follows:

1. *Commercial arbitration* means a mode of dispute settlement agreed by the parties and to be conducted under this Law.

2. *Arbitration agreement* means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settle by arbitration a dispute which may arise or has arisen.

3. *Disputing parties* means Vietnamese and foreign individuals, agencies or organizations that participate in arbitral proceedings in the capacity as plaintiffs and defendants.

4. *Dispute involving foreign elements* means a dispute arising in commercial relationships or other legal relationships involving foreign elements as defined in the Civil Code.

5. *Arbitrator* means a person selected by the parties or designated by an arbitration center or a court to settle a dispute under this Law.

6. *Institutional arbitration* means a form of dispute settlement at an arbitration center under this Law and rules of proceedings of such arbitration center.

7. *Ad hoc arbitration* means a form of dispute settlement under this Law and the order and procedures agreed by the parties.

8. *Venue for dispute settlement* means a place in which an arbitration council settles disputes which is selected as agreed by the parties or as decided by the arbitration council if the parties have no such agreement. If a venue for dispute settlement is within the Vietnamese territory, the award must be regarded as having been pronounced in Vietnam regardless of the place in which the arbitration council holds a meeting to issue such award.

9. *Arbitral decision* means a decision of the arbitration council issued during the process of dispute settlement.

10. *Arbitral award* means a decision of the arbitration council settling the entire dispute and terminating the arbitral proceedings.

11. *Foreign arbitration* means an arbitration formed under a foreign law on arbitration and selected as agreed by the parties to settle a dispute outside or within the Vietnamese territory.

12. *Foreign arbitral* award means an award pronounced by a foreign arbitration outside or within the Vietnamese territory which is selected as agreed by the parties to settle their disputes.

Article 4. Principles of dispute settlement by arbitration

1. Arbitrators must respect the parties agreement if such agreement neither breaches prohibitions nor contravenes social ethics.

2. Arbitrators must be independent, objective and impartial and shall observe law.

3. Disputing parties are equal in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The arbitration council shall create conditions for disputing parties to exercise their rights and fulfill their obligations.

4. Dispute settlement by arbitration shall be conducted in privat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5. Arbitral awards are final.

Article 5. Conditions for dispute settlement by arbitration

1. A dispute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f the parties have an arbitration agreement. An arbitration agreement may be made either before or after a dispute arises.

2. When one of the parties being an individual to an arbitration agreement dies or loses his/her act capacity, such arbitration agreement remains valid for his/her heir or representative at law.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3. When one of the parties being an institution to an arbitration agreement has to terminate its operation, goes bankrupt, or is dissolved, consolidated, merged, divided, split up or reorganized, such arbitration agreement remains valid for an institution that takes over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institution to such arbitration agre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6. Courts' refusal to accept cases in which there is an arbitration agreement

In case the disputing parties have reached an arbitration agreement but one party initiates a lawsuit at a court, the court shall refuse to accept the case, unless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invalid or unrealizable.

Article 7. Identification of courts which have competence over arbitral activities

1. In case the parties have agreed to select a specific court, the competent court is the selected court.

2. In case the parties have no agreement to select a court, the court's competence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For the designation of arbitrators to form an ad hoc arbitration council, the competent court is the court in the place in which the defendant resides if the defendant is an individual or the place in which the defendant has its head office if the defendant is an institution. If there arc many defendants, the competent court is the court in the place in which one of these defendants resides or has its head office.

If the defendant resides or has its head office in a foreign country, the competent court is the court in the place in which the plaintiff resides or has its head office;

b/ For the change of an arbitrator of an ad hoc arbitration council, the competent court is the court in the place in which the arbitration council settles the dispute:

c/ For a request to settle a complaint about the arbitration council's decision that the arbitration agreement was invalid or unrealizable or about the arbitration council's jurisdiction, the competent court is the court in the place in which the arbitration council issued such decision;

d/ For a request for the court to collect evidence, the competent court is the court in the place in which exists evidence to be collected;

e/ For a request for the court to apply interim urgent measures, the competent court is the court in the place in which such measures need to be applied;

f/ For summoning a witness, the competent court is the court in the place in which the witness resides;

g/ For a request to cancel an arbitral award or register an ad hoc arbitral award, the competent court is the court in the place in which the arbitration council pronounced such arbitral award.

3. Courts with competence over arbitral activities specified in Clauses 1 and 2 of this Article are people's courts of provinces or centrally run cities.

Article 8. Identification of judgment enforcement agencies competent to enforce arbitral awards or decisions of arbitration councils on the application of interim urgent measures

1. Civil judgment enforcement agencies competent to enforce arbitral awards are civil judgment enforcement agencies of provinces or centrally run cities in which arbitration councils issue the awards.

2. Civil judgment enforcement agencies competent to enforce decisions of arbitration councils on the application of interim urgent measures are civil judgment enforcement agencies of provinces or centrally run cities in which the interim urgent measures need to be applied.

Article 9. Negotiation and conciliation during arbitral proceedings

During arbitral proceedings, the parties may freely negotiate and agree with each other on the settlement of their dispute or request an arbitration council to

conduct conciliation for the parties to reach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their dispute.

Article 10. Language

1. For disputes involving no foreign element, the language to be used in arbitral proceedings is Vietnamese, except disputes to which at least one party is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When a disputing party cannot use Vietnamese, it may use an interpreter.

2. For disputes involving foreign elements or disputes to which at least one party is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the parties shall reach agreement on the language to be used in arbitral proceedings. If they have no such agreement, the arbitration council shall decide on the language to be used in arbitral proceedings.

Article 11. Venues for dispute settlement by arbitration

1. The parties may reach agreement on venues for dispute settlement. If no agreement is made, the arbitration council shall decide on such venue. A venue for dispute settlement may be within or outside the Vietnamese territory.

2.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arbitration council may hold a meeting at a venue regarded as appropriate for its members to exchange opinions, for taking witnesses' statements, consulting experts or for assessing goods, assets or other documents.

Article 12. Sending of notices and order of sending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or provided by the arbitration center's rules of proceedings, the mode and order of sending notices in arbitral proceedings arc specified as follows:

1. Each party's written explanations, correspondence papers and other documents shall be sent to the arbitration center or arbitration council in sufficient copies so that every member of the arbitration council and the other party has one copy, and one copy is preserved at the arbitration center;

2. Notices and documents to be sent by the arbitration center or arbitration council to the parties shall be sent to the addresses or to their representatives at the correct addresses notified by the parties;

3. Notices and documents may be sent by the arbitration center or arbitration council directly, in registered or ordinary mails, by fax. telex, telegram, email, or other modes which acknowledge such sending;

4. Notices and documents sent by the arbitration center or arbitration council will be regarded as having been received on the date the parties or their

representatives receive them or if such notices and documents have been sent under Clause 2 of this Article:

5. The time limit for receiving notices and documents shall be counted from the date following the date such notices and documents are regarded as having been received. If the following date falls on a holiday or day off under regulations of the country or territory in which the notices and documents have been received. this time limit shall be counted from the subsequent first working day. If the last day of this time limit falls on a holiday or day off under regulations of such country or territory, the time of expiration is the end of the subsequent first working day.

Article 13. Loss of the right to protest

A party that detects to have a violation of this Law or the arbitration agreement but continues to conduct arbitral proceedings and does not protest the violation within the time limit set by this Law will lose its right to protest at the arbitration or court.

Article 14. Applicable laws for dispute settlement

1. For a dispute involving no foreign element, the arbitration council shall apply Vietnamese law for settling the dispute.

2. For a dispute involving foreign elements. the arbitration council shall apply the law selected by the parties. If the parties have no agreement on the applicable law, the arbitration council shall decide to apply a law it sees the most appropriate.

3. When the Vietnamese law or law selected by the parties contains no specific provisions concerning the dispute, the arbitration council may apply international practices for settling the dispute, provided such application or consequence of such application does not contravene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Vietnamese law.

Article 15. State management of arbitration

1. State management of arbitration covers:

a/ Promulgating, and guiding the implementation of, legal documents on arbitration;

b/ Granting and revoking establishment licenses and operation registration papers of arbitration centers; or branches and representative offices of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s in Vietnam;

c/ Announcing lists of arbitrators of arbitration institutions operating in Vietnam;

d/ Propagating and disseminating the arbitration law; entering into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arbitration; and guiding the training and retraining of arbitrators:

c/ Examining, inspecting, and handling violations of the arbitration law;

f/ Settling complaints and denunciations related to the activities specified at Points b, c. d and e of this Clause.

2. The Government shall perform the unified state management of arbitration.

3. The Ministry of Justice shall take responsibility before the Government for performing the state management of arbitration.

4. Provincial-level Justice Departments shall assist the Ministry of Justice in performing several tasks under the Government's regulations and this Law.

Chapter II

ARBITRATION AGREEMENTS

Article 16. Forms of arbitration agreement

1. An arbitration agreement may be made in the form of an arbitral clause in a contract or in the form of a separate agreement.

2. An arbitration agreement must be in writing. The following forms of agreement may also be regarded as written form:

a/ Agreement made through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by telegram, fax, telex, email or other forms provided for by law;

b/ Agreement made through exchange of written information between the parties;

c/ Agreement recorded in writing by a lawyer, notary public or competent institution at the request of the parties:

d/ In their transactions, the parties make reference to a document such as a contract, document, company charter or other similar documents which contains an arbitration agreement;

e/ Agreement made through exchange of petitions and self-defense statements which reflect the existence of an agreement proposed by a party and not denied by the other party.

Article 17. Consumer right to select dispute settlement modes

For disputes between goods or service providers and customers, though an arbitral clause has been included in general conditions on goods and service provision drafted by goods or service providers, consumers may select arbitration or a court to settle these disputes. Goods or service providers may initiate lawsuits at arbitration only if so consented by consumers.

Article 18. Invalid arbitration agreements

1. Disputes arise in the domains falling beyond the arbitration's jurisdiction defined in Article 2 of this Law.

2. The arbitration agreement maker has no competence defined by law.

3. The arbitration agreement maker has no civil act capacity under the Civil Code.

4. The form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incompliant with Article 16 of this Law.

5. A party is deceived, intimidated or compelled in the course of making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requests a declaration that such arbitration agreement is invalid.

6. The arbitration agreement breaches prohibitions specified by law.

Article 19. Independence of arbitration agreement

An arbitration agreement is entirely independent from the contract. Any modification, extension, cancellation, invalidation or nonperformance of the contract will not invalidate the arbitration agreement.

Chapter III

ARBITRATORS

Article 20. Criteria of arbitrators

1. A person who satisfies all the following criteria may act as arbitrator:

a/ Having the full civil act capacity under the Civil Code;

b/ Possessing a university degree and having at least 5 years* work experience in the trained discipline:

c/ In special cases, an expert who has high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nd much practical experience, though not satisfying the requirement specified at Point b of this Clause, may also be selected as arbitrator.

2. Persons who satisfy all the conditions specifi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but fall into either of the following cases may not act as arbitrators:

a/ Incumbent judges, procurators, investigators, enforcement officers or civil servants of peoples courts, peoples procuracies, investigative agencies or judgment enforcement agencies:

b/ The accused, defendants, persons serving criminal sentences or having served the sentences but having their criminal records not yet remitted.

3. Arbitration centers may set criteria for their arbitrators which are higher than those specifi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Article 21. Rights and obligations of arbitrators

1. To accept or refuse to settle disputes.

2. To be independent in dispute settlement.

3. To refuse to provide dispute-related information.

4. To enjoy remuneration.

5. To keep secret the circumstances of disputes they settle, unless they have to provide information to competent state agencies under law.

6. To ensure impartial, fast and prompt settlement of disputes.

7. To adhere to the rules of professional ethics.

Article 22. The arbitration association

The arbitration association is a socio-professional organization of arbitrators and arbitration centers nationwid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rbitration association comply with the law on professional associations.

Chapter IV

ARBITRATION CENTERS

Article 23. Functions of arbitration centers Arbitration centers have the function to organize and coordinate the settlement of disputes by institutional arbitration and assist arbitrators in administrative, office and other affairs during arbitral proceedings.

Article 24. Conditions and proced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arbitration centers

1. An arbitration center may be established when at least 5 founding members being Vietnamese citizens who satisfy all the criteria of arbitrators specified in Article 20 of this Law request such establishment and this center is granted an establishment license by the Minister of Justice.

2. A dossier of request for establishment of an arbitration center comprises:

a/ A written request;

b/ Draft charter of the arbitration center, made according to a form issu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c/ List of founding members and enclosed papers evidencing their eligibility under Article 20 of this Law.

3. Within 30 days after receiving a complete and valid dossier,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grant an arbitration center establishment license and approve the arbitration center's charter. In case of refusal, he/she shall issue a written reply clearly stating the reason.

Article 25. Registration of the operation of arbitration centers

Within 30 days after receiving its establishment license, an arbitration center shall register its operation at the provincial-level Justice Department of the locality in which it has its head office. Past this time limit, if the arbitration center fails to register its operation, its license will no longer be valid.

The provincial-level Justice Department shall grant an operation registration paper for an arbitration center within 15 days after receiving a written request for registration.

Article 26. Announcement of the establishment of arbitration centers

1. Within 30 days after obtaining its operation registration paper, an arbitration center shall publish in 3 consecutive issues of a central daily or a local daily of the locality in which it registers its operation the following principal details:

a/ Name and address of its head office;

b/ Its operations;

c/ Serial number of the operation registration paper, issuer and date of issuance;

d/ Time of commencing its operation.

2. An arbitration center shall post up at its head office the details specifi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and the list of its arbitrators.

Article 27. Legal entity status and structure of arbitration centers

1. Arbitration centers have the legal entity status and their own seals and bank accounts.

2. Arbitration centers operate for not-for-profit purposes.

3. Arbitration centers may set up their branches and representative offices at home and abroad.

4. An arbitration center has the Executive Board and Secretariat. The structure and apparatus of an arbitration center shall be prescribed in its charter.

The Executive Board of an arbitration center is composed of the chairman, vice chairman (chairmen) and may also include a secretary general appointed by the chairman. The chairman is an arbitrator.

5. An arbitration center has a list of arbitrators.

Article 28. Rights and obligations of arbitration centers

1. To draft their charter and rules of proceedings which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is Law.

2. To set out criteria for arbitrators and processes of selection and listing arbitrators and deleting names of arbitrators from their lists of arbitrators.

3. To send their lists of arbitrators and modifications to these lists to the Ministry of Justice for announcement.

4. To designate arbitrators for forming arbitration councils in the cases specified in this Law.

5. To provide arbitration services, conduct conciliation and apply other modes of settling commercial disputes under law.

6. To provide administrative, office and other services for dispute settlement.

7. To collect arbitration charges and other lawful amounts related to arbitral operations.

8. To pay remuneration and other expenses to arbitrators.

9. To train arbitrators for raising their dispute settlement qualifications and skills.

10. To annually report on their operation to provincial-level Justice Departments of localities in which they register their operation.

11. To preserve dossiers and provide copies of arbitral decisions at the request of disputing parties or competent state agencies.

Article 29. Termination of the operation of arbitration centers

1. An arbitration center shall terminate its operation:

a/ In the cases specified in its charter;

b/ Upon revocation of its establishment license or operation registration paper.

2. The Government shall detail cases subject to revocation of establishment licenses or operation registration papers and the order and procedures for terminating the operation of arbitration centers.

Chapter V

INITIATION OF LAWSUITS

Article 30. Petitions and enclosed documents

1. When a dispute is settled at an arbitration center, the plaintiff shall file a petition with the arbitration center. When a dispute is settled by ad hoc arbitration, the plaintiff shall make a petition and send it to the defendant.

2. A petition contains:

a/ Date of its making;

b/ Names and addresses of the parties; names and addresses of witnesses, if any;

c/ Summary of the circumstances of the dispute:

d/ Grounds and evidence for initiating the lawsuit, if any:

e/ Specific requirements of the plaintiff and the value of the dispute:

f/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whom the plaintiff selects as arbitrator or requests to be designated as arbitrator.

3. Enclosed with the petition shall be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originals or copies of relevant documents.

Article 31. Time of commencing arbitral proceedings

1. When a dispute is settled by an arbitration center,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time of commencing arbitral proceedings is the time the arbitration center receives the plaintiff's petition.

2. When a dispute is settled by ad hoc arbitration,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time of commencing arbitral proceedings is the time the defendant receives the plaintiff's petition.

Article 32. Notification of petition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or provided by the rules of proceedings of an arbitration center, within 10 days after receiving the plaintiff's petition, enclosed documents and arbitration charge receipt, the arbitration center shall send to the defendant copies of the petition and documents specified in Clause 3. Article 30 of this Law.

Article 33. Statute of limitations for initiating a lawsuit for dispute settlement by arbitration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discrete laws, the statute of limitations according to arbitral procedures is 2 years from the time of infringement of lawful rights and interests.

Article 34. Arbitration charge

1. Arbitration charge is a revenue from the provision of services for dispute settlement by arbitration. The arbitration charge covers:

a/ Remuneration and travel and other expenses for arbitrators:

b/ Charge for expert consultation and other assistance at the request of the arbitration council: c/Administrative charge;

d/ Charge for designation of the arbitration centers ad hoc arbitrators at the request of the disputing parties:

e/ Charge for use of other services provided by the arbitration center.

2. The arbitration charge shall be set by the arbitration center. When a dispute is settled by ad hoc arbitration, the arbitration charge shall be set by the arbitration council.

3. The losing party shall bear the arbitration charg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or provided by the rules of arbitral proceedings or allocated by the arbitration council.

Article 35. Self-defense statements and the sending thereof

1. A self-defense statement contains:

a/ Date of making;

b/ Name and address of the defendant;

c/ Grounds and evidence, if any. for self-defense;

d/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whom the defendant selects as arbitrator or requests for designation as arbitrator.

2. For a dispute to be settled at an arbitration center,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or provided by the arbitration center's rules of proceedings, within 30 days after receiving a petition and enclosed documents, the defendant shall send to the arbitration center a self-defense statement. At the request of

one party or all parties, this time limit may be extended by the arbitration center based on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he case.

3. For a dispute to be settled by ad hoc arbitration,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within 30 days after receiving the plaintiff's petition and enclosed documents, the defendant shall send to the plaintiff and arbitrator the self-defense statement and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whom the defendant selects as arbitrator.

4. When the defendant assumes that the dispute falls beyond the jurisdiction of arbitration, or there is no arbitration agreement, or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invalid or unrealizable, the defendant shall clearly indicate such in the self-defense statement.

5. If the defendant fails to submit the self-defense statement under Clauses 2 and 3 of this Article, the dispute settlement will still proceed.

Article 36. Defendants' counter-claims

1. The defendant may counter-claim the plaintiff on matters related to their dispute.

2. The defendant's counter-claim shall be sent to the arbitration center. When a dispute is settled by ad hoc arbitration, such counter-claim shall be sent to the arbitration council and plaintiff. The counter-claim shall be submitted simultaneously with a self-defense statement.

3. Within 30 days after receiving a counter claim, the plaintiff shall send the self-defense statement to the arbitration center. When a dispute is settled by ad hoc arbitration, the plaintiff shall send the self-defense statement to the arbitration council and defendant.

4. The arbitration council that settles the plaintiff's petition shall settle a counter-claim according to the order and procedures for settling plaintiffs' petitions under this Law.

Article 37. Withdrawal of petitions or counter-claims;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of petitions, counter-claims or self-defense statements

1. Before the arbitration council makes an arbitral award, the parties may withdraw their petition or counter-claim.

2. In the course of arbitral proceedings, the parties may modify and supplement their petition, counter-claim or self-defense statement. The arbitration council has the right to reject such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if seeing that it may be abused to obstruct or delay the making of an arbitral award or falls beyond the scop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pplicable to the dispute.

Article 38. Negotiation in arbitral proceedings

From the lime of commencing arbitral proceedings, the parties may themselves negotiate and agree to terminate the dispute settlement.

When the parties agree to terminate the dispute settlement, they may request chairman of the arbitration center to issue a decision suspending the dispute settlement.

Chapter VI

ARBITRATION COUNCIL

Article 39. Composition of an arbitration council

1. An arbitration council may be composed of one or more arbitrators as agreed by the parties.

2. When the parties fail to reach agreement on the number of arbitrators, an arbitration council shall be composed of three arbitrators.

Article 40. Formation of an arbitration council at an arbitration center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or provided by the arbitration center's rules of proceedings, the formation of an arbitration council is specified as follows:

1. Within 30 days after receiving a petition and request for selecting an arbitrator sent by the arbitration center, the defendant shall select an arbitrator and notify such to the arbitration center or request the arbitration center's chairman to designate an arbitrator; otherwise, within 7 day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ime limit specified in this Clause, the arbitration center's chairman shall designate an arbitrator for the defendant;

2. For a dispute involving many defendants, within 30 days after receiving a petition sent by the arbitration center, the defendants shall agree to select an arbitrator or to request designation of an arbitrator. If the defendants cannot select an arbitrator, within 7 day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ime limit specified in this Clause, the arbitration center's chairman shall designate an arbitrator for the defendants;

3. Within 15 days after being selected by the parties or designated by the arbitration center's chairman, the arbitrators shall elect another arbitrator as the chairman of the arbitration council. Past this time limit, if this election cannot take place, within 7 days the arbitration center's chairman shall designate the chairman of the arbitration council:

4. When the parties agree that their dispute shall be settled by a sole arbitrator but fail to select such arbitrator within 30 days after the defendant receives a petition, the arbitration center's chairman shall, at the request of one party or all parties and within 15 days after receiving such request, designate a sole arbitrator.

Article 41. Formation of ad hoc arbitration council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formation of an ad hoc arbitration council is specified as follows:

1. Within 30 days after receiving the plaintiff's petition, the defendant shall select an arbitrator and notify the selection to the plaintiff. Past this lime limit, if the defendant fails to notify the plaintiff of the name of the selected arbitrator and the parties do not otherwise agree on designation of an arbitrator, the plaintiff may request a competent court to designate an arbitrator for the defendant;

2. For a dispute involving many defendants, these defendants shall agree to select an arbitrator within 30 days after receiving the plaintiff's petition and enclosed documents. Past this time limit, if the defendants cannot select an arbitrator and the parties do not otherwise agree on designation of an arbitrator, one party or all parties may request a competent court to designate an arbitrator for the defendants;

3. Within 15 days after being selected by the parties or designated by the court, the arbitrators shall elect another arbitrator as the chairman of the arbitration council. When the arbitration council's chairman cannot be elected and the parties do not otherwise agree, they may request a competent court to designate the chairman of the arbitration council;

4. When the parties agree that their dispute shall be settled by a sole arbitrator but fail to select such arbitrator within 30 days after the defendant receives a petition, if the parties do not agree to request an arbitration center to designate an arbitrator, the competent court shall, at the request of one party or all parties, designate a sole arbitrator.

5. Within 7 days after receiving the parties' request under Clause 1, 2, 3 or 4 of this Article, the president of the competent court shall assign a judge to designate an arbitrator and notify such to the parties.

Article 42. Change of arbitrators

1, An arbitrator shall refuse to settle a dispute and the parties may request change of an arbitrator to settle the dispute in the following cases:

a/ The arbitrator is a relative or representative of one party:

b/ The arbitrator has an interest related to the dispute;

c/ There is a clear ground to conclude that the arbitrator is neither impartial nor objective;

d/ The arbitrator was a conciliator, representative or lawyer of one party before the dispute is brought to arbitration for settlement. unless such is consented in writing by the parties.

2. After being selected or designated, the arbitrator shall notify in writing the arbitration center or arbitration council and parties of the circumstances which may affect his/her objectivity or impartiality.

3. For a dispute to be settled at an arbitration center, pending the formation of an arbitration council, the arbitration center's chairman shall decide on the change of an arbitrator. If the arbitration council has been formed, such change shall be decided by other members of the arbitration council. When these members cannot make decision or if the arbitrators or the sole arbitrator refuse(s) to settle the dispute, the arbitration center's chairman shall decide on change of the arbitrator.

4. For a dispute to be settled by an ad hoc arbitration council, change of an arbitrator shall be decided by other members of the arbitration council. When these members cannot make decision or if the arbitrators or the sole arbitrator refuse(s) to settle the dispute, within 15 days after receiving a request from the arbitrator(s) and one disputing party or all disputing parties, the president of the competent court shall assign a judge to decide on change of the arbitrator.

5. The decision of the arbitration center's chairman or court in the cases specified in Clauses 3 and 4 of this Article is final.

6. When the arbitrator cannot continue participating in the settlement of a dispute due to force majeure circumstances or objective obstacles or is changed, the selection or designation of a new arbitrator comply with the order and procedures specified in this Law.

7. After consulting the parties, the newly formed arbitration council may re-consider the matters presented at the former arbitration council's previous dispute settlement meetings.

Article 43. Consideration of invalid or unrealizable arbitration agreements, jurisdiction of an arbitration council

1. Before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a dispute, the arbitration council shall consider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whether such agreement can be realized, and consider its jurisdiction. If the dispute falls within its jurisdiction, the arbitration council shall settle it under this Law. If the dispute falls beyond its jurisdiction or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invalid or

unrealizable, the arbitration council shall decide to terminate the dispute settlement and immediately notify the parties thereof.

2. In the course of dispute settlement, if detecting that the arbitration council acts ultra vires, the parties may lodge a complaint with the arbitration council. The arbitration council shall consider and decide on this issue.

3. When the parties agree to have their dispute settled by a specific arbitration center, but such center has terminated its operation without any other arbitration institution succeeding it. the parties may agree to select another arbitration center: otherwise, they may bring their dispute to court for settlement.

4. When the parties agree to select an ad hoc arbitrator but at the time their dispute arises, the arbitrator cannot conduct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due to force majeure circumstances or objectives obstacles, the parties may agree to select another arbitrator in replacement; otherwise, they may bring their dispute to court for settlement.

5. When the parties have an arbitration agreement but fail to indicate the form of arbitration or cannot identify a specific arbitration institution, if a dispute arises, the parties shall agree again on the form of arbitration or a specific arbitration institution to settle the dispute. If no agreement can be reached, the form of arbitration or an arbitration institution to settle the dispute shall be selected at the plaintiff's request.

Article 44. Complaints and settlement of complaints about an arbitration council's decision on the non-existence, invalidation or unrealizableness of an arbitration agreement, and jurisdiction of the arbitration council

1. If disagreeing with any decision of the arbitration council specified in Article 43 of this Law. within 5 working days after receiving this decision, the parties may file a request with a competent court to re-consider such decision. The complainant shall concurrently notify such complaint to the arbitration council.

2. A complaint must contain:

a/ Date of making;

b/ Name and address of the complainant;

c/ Details of the request.

3. A complaint shall be enclosed with copies of the petition, arbitration agreement and arbitration council's decision. Enclosed papers in a foreign language shall be translated into Vietnamese and their translations be legally certified.

4. Within 5 working days after receiving a complaint, the president of the competent court shall assign a judge to consider and settle the complaint. Within 10 working days after being assigned, such judge shall consider the complaint and make a decision. The court's decision is final.

5. While the court is processing the complaint, the arbitration council may continue the dispute settlement.

6. When the court decides that the dispute falls beyond the arbitration council's jurisdiction, or there is no arbitration agreement or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invalid or unrealizable, the arbitration council shall decide to terminate the dispute settl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y may bring the dispute to a court within the statute of limitations specified by law. The period from the date the plaintiff initiates a lawsuit at arbitration to the date the court decides to accept the dispute is not included in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initiating a lawsuit.

Article 45. The arbitration council's jurisdiction to verify matters

In the course of dispute settlement, an arbitration council may meet or exchange with one party in the presence of the other party in appropriate forms to clarify matters related to the dispute. The arbitration council may itself or at the request of one party or all parties study a matter from a third person in the presence of the parties or after notifying such to the parties.

Article 46. The arbitration council's jurisdiction to collect evidence

1. The parties have the right and obligation to provide evidence to the arbitration council to prove matters related to their dispute.

2. At the request of one party or all parties, the arbitration council may request witnesses to provide information and documents relating to the dispute settlement.

3. The arbitration council may itself or at the request of one party or all parties request an appraisal and valuation of assets in the dispute as a basis for settling the dispute. Appraisal and valuation expenses shall be advanced by the appraisal and valuation requester or allocated by the arbitration council.

4. The arbitration council may itself or at the request of one party or all parties consult experts. Expert expenses shall be advanced by the consultation requester or allocated by the arbitration council.

5. If the arbitration council, one party or all parties have applied necessary measures to collect evidence but cannot itself/themselves collect evidence, they may propose in writing the competent court to request agencie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o provide legible, audible or visible documents or other objects related to the dispute. Such a proposal must clearly indicate the circumstances of the dispute, evidence to be collected, reasons for the failure to collect evidence,

names and addresses of agencie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hat manage and preserve such evidence.

6. Within 7 working days after receiving a proposal for evidence collection, the president of the competent court shall assign a judge to consider and deal with this proposal. Within 5 working days after being assigned, such judge shall request in writing agencie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hat are managing and preserving evidence to provide it for the court and send such proposal to the same-level procuracy for the latter to perform its functions and tasks under law.

Agencie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hat are managing and preserving the evidence shall fully and promptly provide such evidence at the court's request within 15 days after receiving the request.

Within 5 working days after receiving the evidence provided by agencie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he court shall notify such to the arbitration council and requester for delivery and receipt of evidence.

Past this time limit, if agencie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fail to provide the evidence as requested, the court shall immediately notify such to the arbitration council and requester and. at the same time, request in writing competent agencies or organizations to handle the failure under law.

Article 47. The arbitration council's jurisdiction to summon witnesses

1. At the request of one party or all parties and when necessary, the arbitration council may request witnesses to appear at meetings to settle the dispute. Witness expenses shall be borne by the requester for such summon or allocated by the arbitration council.

2. If a witness, though having been properly summoned by the arbitration council, fails to attend the meeting without a plausible reason and his/her absence obstructs the dispute settlement, the arbitration council shall request in writing the competent court to decide to summon the witness to attend the arbitration council's meeting. Such request must clearly indicate the circumstances of the dispute; name and address of the witness; reason for summoning; and time and place for the witness to attend the meeting.

3. Within 7 working days after receiving the arbitration council's written request to summon the witness, the president of the competent court shall assign a judge to consider and deal with such request. Within 5 working days after being assigned, such judge shall issue a decision to summon the witness.

A witness-summoning decision must clearly indicate the name of the arbitration council requesting such summoning; circumstances of the dispute; name and address of the witness; and time and place for the witness lo attend the meeting.

The court shall immediately send this decision to the arbitration council, the witness, and concurrently lo the same-level procuracy for the latter to perform its functions and tasks under law.

The witness shall strictly observe the court's decision.

Witness expenses comply with Clause 1 of this Article.

Chapter VII

INTERIM URGENT MEASURES

Article 48. Right to request application of interim urgent measures

1. The disputing parties may request the arbitration council or a court to apply interim urgent measures under this Law and relevant law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2. A request for a court to apply interim urgent measures shall not be regarded as rejection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waiver of the right to dispute settlement by arbitration.

Article 49. The arbitration council's competence to apply interim urgent measures

1. At the request of one of the parties, the arbitration council may apply one or more interim urgent measures to the disputing parties.

2. Interim urgent measures include:

a/ Prohibiting any change in the status of assets under dispute;

b/ Prohibiting or forcing any disputing party to commit one or more certain acts to prevent acts which adversely affect the process of arbitral proceedings;

c/ Distraining assets under dispute;

d/ Requesting preservation, storage, sale or disposal of any asset of one disputing party or all disputing parties;

e/ Requesting temporary money payment between the parties;

f/ Prohibiting transfer of the rights to assets under dispute.

3. During the dispute settlement, if one party has requested a court to apply one or more interim urgent measures specified in Clause 2 of this Article but later requests the arbitration council to apply such measures, the arbitration council shall refuse such application.

4. Before applying interim urgent measures, the arbitration council may force the party that requests such application to perform the financial security obligation.

5. The arbitration council which applies other interim urgent measures or those in excess of the requester's request for application of interim urgent measures, thus causing damage to the requester, the party to which these measures are applied or a third person, the damage sufferer may sue for compensation under the civil procedure law.

Article 50. Procedures for the arbitration council to apply interim urgent measures

1. The requester for application of interim urgent measures shall send a written request to the arbitration council.

2. A written request for application of interim urgent measures must contain:

a/ Date of making:

b/ Name and address of the requester;

c/ Name and address of the party to whom/ which interim urgent measures are to be applied:

d/ Summary of the circumstances of the dispute;

e/ Reason for the application of interim urgent measures;

f/ Interim urgent measures to be applied and specific requirements.

In addition to the request, the requester shall provide the arbitration council with evidence to prove the necessity to apply such interim urgent measures.

3. As decided by the arbitration council, the requester shall deposit a sum of money, precious metal, gemstone or valuable papers of a value set by the arbitration council equivalent to the amount of the loss which could be caused by improper application of interim urgent measures in order to protect the requester's interests. Such a sum of money, precious metal, gemstone or valuable papers shall be deposited in a blocked account at a bank decided by the arbitration council.

4. Within 3 working days after receiving a request, immediately after the requester has provided the security specified in Clause 3 of this Article, the arbitration council shall consider and decide to apply interim urgent measures. In case of refusal, the arbitration council shall issue a written notice clearly stating the reason to the requester.

5. The enforcement of the arbitration council's decision to apply interim urgent measures complies with the law on enforcement of civil judgments.

Article 51. The arbitration council's jurisdiction and procedures for changing. supplementing or canceling interim urgent measures

1. At the request of one party, the arbitration council may change, supplement or cancel interim urgent measures at any lime during the dispute settlement.

2. Procedures for changing or supplementing interim urgent measures comply with Article 50 of this Law.

3. The arbitration council may cancel the applied interim urgent measures in the following cases:

a/ The requester for application of interim urgent measures requests cancellation of such measures;

b/ The party subject to the enforcement of the decision to apply interim urgent measures has handed over its assets or another person has implemented the obligation security measure towards the requester;

c/ The obligation of the obliged party terminates under law.

4. Procedures for canceling interim urgent measures are specified as follows:

a/ The requester files a request for such cancellation with the arbitration council;

b/ The arbitration council considers and decides to cancel interim urgent measures and considers and decides to allow the requester to receive back the security assets specified in Clause 3, Article 50 of this Law. unless the requester has to compensate for a wrongful request causing damage to the party to which interim urgent measures are applied, or to a third person.

A decision to cancel interim urgent measures shall immediately be sent to the disputing parties and the civil judgment enforcement agency.

Article 52. Responsibilities of requesters for application of interim urgent measures

A requester for application of interim urgent measures shall take responsibility for his/her request. He/she shall compensate for his/her wrongful request causing damage to the other party or a third person.

Article 53. The court's jurisdiction, order and procedures for applying, changing or canceling interim urgent measures

1. After filing a petition, if its lawful rights and interests arc infringed or in a direct danger of infringement, the filing party may file a request with a competent court to apply one or more interim urgent measures.

2. Within 3 working days after receiving such request, the president of the competent court shall assign a judge to consider and deal with the request. Within 3 working days after being assigned, such judge shall consider and decide to apply or not to apply interim urgent measures. The judge shall decide to apply interim urgent measures immediately after the requester takes the security measure. In case of refusal, the judge shall issue a written notice clearly stating the reason to the requester.

3. A party may request a court to change, supplement or cancel interim urgent measures. The assignment of a judge to consider and deal with such request complies with Clause 2 of this Article.

4. The order and procedures for applying, changing, adding or canceling a court's interim urgent measures and inspecting law observance during the application of these measures comply with the Civil Procedure Code.

5. During the dispute settlement, if one party has requested the arbitration council to apply one or several interim urgent measures but later requests in writing a court to apply these measures, the court shall refuse such request and return the request. unless such request falls beyond the arbitration council's jurisdiction.

Chapter VIII

DISPUTE SETTLEMENT MEETINGS

Article 54. Preparation for dispute settlement meetings

1.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or provided by the arbitration center's rules of proceedings, the arbitration council shall decide on the time and venue for holding dispute settlement meetings.

2.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or provided by the arbitration center's rules of proceedings, summons to a meeting shall be sent to the parties at least 30 days before the meeting starts.

Article 55. Composition and procedures of a dispute settlement meeting

1. A dispute settlement meeting shall be held in privat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2. The parties may personally, or authorize their representatives to. attend dispute settlement meetings and may invite witnesses and persons to protect their lawful rights and interests.

3. When agreed by the parties, the arbitration council may allow others to attend dispute settlement meetings.

4. The order and procedures for holding dispute settlement meetings shall be specified in the arbitration center's rules of arbitral proceedings or agreed by the parties in case of ad hoc arbitration.

Article 56. Absence of the parties

1. The plaintiff who has properly been summoned to attend a dispute settlement meeting but is absent without a plausible reason or leaves the meeting without the arbitration council's approval will be regarded as having withdrawn his/her petition. In this case, the arbitration council shall proceed with the dispute settlement if the plaintiff so requests or files a counter-claim.

2. In case the defendant who has properly been summoned to attend a dispute settlement meeting but is absent without a plausible reason or leaves the meeting without the arbitration councils approval, the arbitration council shall still proceed with the dispute settlement based on available documents and evidence.

3. At the request of the parties, the arbitration council may base itself on the dossiers to hold a dispute settlement meeting without the parties' presence.

Article 57. Postponement of a dispute settlement meeting

When having a plausible reason, one party or all parties may request the arbitration council to postpone a dispute settlement meeting. Such a request must be made in writing clearly stating the reason and enclosed with evidence and shall be sent to the arbitration council at least 7 working days before a meeting starts. If the arbitration council receives no request within this time limit, the postponement requester shall bear all expenses, if any. The arbitration council shall consider and decide to accept or not to accept a meeting postponement request and promptly notify such to the parties.

The arbitration council shall decide on the postponement duration.

Article 58. Conciliation and recognition of successful conciliation

At the request of the parties, the arbitration council shall conduct conciliation for the parties to reach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their dispute. If such an agreement can be reached, the arbitration council shall make a record of successful conciliation and have it signed by the parties and certified by the arbitrators. The arbitration council shall issue a decision recognizing the parties" agreement. This decision is final and as valid as an arbitral award.

Article 59. Termination of dispute settlement

1. Settlement of a dispute shall be terminated in the following cases:

a/ The individual plaintiff or defendant is dead without any heir of his/her rights and obligations:

b/ The institutional plaintiff or defendant has terminated its operation, gone bankrupt, or has been dissolved, consolidated, merged, divided, split up or reorganized without any agency or institution taking over its rights and obligations;

c/ The plaintiff withdraws his/her petition or is regarded as having withdrawn his/her petition under Clause 1. Article 56 of this Law. unless the defendant requests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to be continued;

d/ The parties agree to terminate the dispute settlement:

e/ A court has decided that the dispute falls beyond the arbitration council's jurisdiction, or there is no arbitration agreement, or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invalid or unrealizable under Clause 6, Article 44 of this Law.

2. The arbitration council shall issue a decision terminating the dispute settlement. If the arbitration council has not yet been formed, the arbitration center's chairman shall issue such decision.

3. When receiving a decision terminating the dispute settlement, the parties may not sue to request the arbitration to re-settle the dispute if there is no change in the plaintiff, defendant and legal relationships related to the dispute, except the cases specified at Point c and e. Clause 1 of this Article.

Chapter IX

ARBITRAL AWARDS

Article 60. Principles of issuance of awards

1. The arbitration council shall issue an arbitral award on the basis of majority vote.

2. In case a majority vote cannot be obtained, an arbitral award shall be issued based on the opinion of the arbitration council's chairman.

Article 61. Contents, form and validity of an arbitral award

1. An arbitral award must be in writing and contain the following principal details:

a/ Date and place of issuance;

b/ Names and addresses of the plaintiff and defendant;

c/ Name and address of the arbitrator;

d/ Summary of the circumstances of the petition and matters under dispute;

e/ Grounds for issuing the award, unless the parties agree that it is unnecessary to indicate these grounds;

f/ Results of the dispute settlement;

g/ Time limit for enforcement of the award;

h/ Allocation of arbitration and other relevant expenses;

i/ The arbitrator's signature.

2. When the arbitrator fails to sign the arbitral award, the arbitration council's chairman shall indicate such failure in the arbitral award and clearly state the reason. In this case, the arbitral award remains effective.

3. An arbitral award shall be issued right at a meeting or within 30 days after the end of the last meeting.

4. An arbitral award shall be sent to the parties immediately after the date of its issuance. The parties may request the arbitration center or ad hoc arbitration council to issue copies of the arbitral award.

5. An arbitral award is final and takes effect on the date of its signing.

Article 62. Registration of ad hoc arbitration's awards

1. At the request of one disputing party or all disputing parties, an award of ad hoc arbitration shall be registered at the court in the place in which the arbitration council issued the award before requesting a competent civil judgment enforcement agency to organize enforcement of such award. Registration or non-registration of an arbitral award does not affect the contents and legal validity of the award.

2. Within 1 year after an arbitral award is issued, the party requesting registration of an award of ad hoc arbitration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such registration to the competent court defin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enclosed with originals or true copies of the following documents:

a/ Arbitral award issued by the ad hoc arbitration council:

b/ Minutes of the ad hoc arbitration council's dispute settlement meeting, if any;

c/ Original or certified cop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requester shall take responsibility for the truthfulness of the documents sent to the court.

3. Within 5 working days after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award registration, the court president shall assign a judge to consider such application. Within 10 days after being assigned, such judge shall examine the truthfulness of the documents enclosed with the application and make registration. If identifying that the arbitral award is untrue, the judge shall refuse to make registration, return the application and enclosed documents and immediately notify such to the requester clearly slating the reason. Within 3 working days after receiving the court's notice, the requester may lodge a complaint with the court president about the refusal to make registration. Within 3 working days after receiving the complaint, the court president shall consider and issue a decision settling the complaint. The court president's dispute settlement decision is final.

4. Contents of registration of an arbitral award:

a/ Time and place of registration;

b/ Name of the court making registration;

c/ Name and address of the requester for registration;

d/ The registered award; e/ Signature of the competent person and seal of the court.

Article 63. Correction and explanation of awards; additional awards

1. Within 30 days after receiving an award,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 party may request the arbitration council to correct obvious spelling errors or erroneous or incorrectly calculated data in the award but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other party thereof. If the arbitration council considers this request reasonable, it shall correct the errors within 30 days after receiving the request.

2. Within 30 days after receiving an award,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 party may request the arbitration council to explain details of the award but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other party thereof. If the arbitration council considers this request reasonable, it shall give an explanation within 30 days after receiving the request. Such explanation constitutes part of the award.

3. Within 30 days after issuing an award, the arbitration council may on its own initiative correct errors specifi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and shall immediately notify such to the parties.

4.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within 30 days after receiving an award, a party may request the arbitration council to issue an additional award for the requirements presented in the course of proceedings but not recorded in the award and shall immediately notify such to the other party. If the arbitration council considers such request reasonable, it shall issue an additional award within 45 days after receiving the request.

5. When necessary, the arbitration council may extend the time limits for correction or explanation of awards or issuance of additional awards specified in Clauses I. 2 and 4 of this Article.

Article 64. Preservation of dossiers

1. An arbitration center shall preserve dossiers of disputes it has accepted. Dossiers of disputes settled by ad hoc arbitration shall be preserved by the parties or arbitrators.

2. Arbitration dossiers shall be preserved for 5 years after the issuance of the arbitral award or decision terminating the dispute settlement by arbitration.

Chapter X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rticle 65. Voluntary compliance with arbitral awards

The State encourages the parties to voluntarily comply with arbitral awards.

Article 66. Right to request compliance with arbitral awards

1. Past the lime limit for complying with an arbitral award, if the party to comply with the award fails to voluntarily comply with it and docs not request cancellation of the award under Article 69 of this Law. the party in favor of whom/which the arbitral award is issued may request in writing the competent civil judgment enforcement agency to enforce the award.

2. For ad hoc arbitration's awards, the creditor may request in writing the competent civil judgment enforcement agency to enforce the award after it is registered under Article 62 of this Law.

Article 67.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rbitral awards shall be enforced under the law on enforcement of civil judgments.

Chapter XI

CANCELLATION OF ARBITRAL AWARDS

Article 68. Grounds for cancellation of arbitral awards

1. The court shall consider the cancellation of an arbitral award at the request of one of the parties.

2. An arbitral award shall be cancell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There is no arbitration agreement or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invalid;

b/ The arbitration council's composition or procedures of arbitral proceedings is/arc incompliant with the parties' agreement or this Law:

c/ The dispute falls beyond the arbitration council's jurisdiction: when an arbitral award contains the details falling beyond the arbitration council's jurisdiction, such details shall be cancelled:

d/ The evidence provided by the parties on which the arbitration council bases to issue the award is counterfeit: an arbitrator receives money, assets or other material benefits from one disputing party, thus affecting the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of the award;

e/ The award contravenes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Vietnamese law.

3. When the court considers request for cancellation of an arbitral award, the burden of proof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The requester for cancellation of an arbitral award in any of the cases specified at Points a, b. c and d. Clause 2 of this Article has the burden lo prove that the arbitration council has issued the award falling into any of these cases;

b/ For a request to cancel an arbitral award on the ground specified at Point e. Clause 2 of this Article, the court shall itself collect and verify evidence in order to decide to cancel or not to cancel the arbitral award.

Article 69. Right to request cancellation of arbitral awards

1. Within 30 days after receiving an arbitral award, if a party has sufficient grounds for evidencing that the arbitration council has issued the award falling into any of the cases specified in Clause 2, Article 68 of this Law. it may file a request with the competent court for cancellation of such award. Such request must be enclosed with documents and evidence proving that such request is grounded and lawful.

2. When a request is lodged beyond the set time limit due to force majeure circumstances, the period in which such circumstances exist will not be included in the time limit for requesting cancellation of an arbitral award.

Article 70. Written requests for cancellation of arbitral awards

1. A written request for cancellation of an arbitral award must contain:

a/ Dale of making;

b/ Name and address of the requester:

c/ Request and grounds for cancellation of the award.

2. A written request must be enclosed with the following papers:

a/ Original or certified copy of the arbitral award;

b/ Original or certified cop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Enclosed papers in a foreign language shall be translated into Vietnamese and such translations shall be legally certified.

Article 71. Examination by courts of written requests for cancellation of arbitral awards

1. After accepting a written request for cancellation of an arbitral award, the competent court shall immediately notify such to the arbitration center or arbitrators of the ad hoc arbitration council, the disputing parties and the procuracy of the same level.

2. Within 7 working days after accepting a written request, the court president shall designate an examination council which is composed of three judges, including one to act as the chair as assigned by the court president.

Within 30 days after being designated, the examination council shall hold a meeting to examine the written request for cancellation of an arbitral award. The court shall, within 7 working days before opening the meeting, transfer the dossier to the procuracy of the same level for study before attending this meeting. Upon the expiration of this lime limit, the procuracy shall return the dossier to the court for opening a meeting to examine the written request.

3. A meeting shall be conducted in the presence of the disputing parties and their lawyers, if any. and a procurator of the procuracy of the same level. If one of the parties is absent or has been properly summoned but is absent without a plausible reason or leaves the meeting without the council's consent, the council shall still examine the written request.

4. When examining the written request, the council shall base itself on Article 68 of this Law and enclosed documents to consider and make decision: it will not review the dispute already settled by the arbitration council. After examining the written request and enclosed documents and hearing opinions of the summoned persons, if any. and after the procurator presents the procuracy's opinions, the council shall discuss and make decision by majority vote.

5. The examination council may decide to cancel or not to cancel an arbitral award. When the requester withdraws the request or has been properly summoned but is absent without a plausible reason or leaves the meeting without the council's consent, the council shall decide to terminate the examination of such request.

6. Within 5 working days after issuing a decision, the court shall send it to the parties, the arbitration center or ad hoc arbitrator and the procuracy of the same level.

7. At the request of one of the parties and when appropriate, the examination council may suspend the examination and processing of a request for not more than 60 days in order to facilitate the arbitration council in correcting errors of the arbitral proceedings in its viewpoint in order to remove the grounds for canceling the arbitral award. The arbitration council shall notify the court of such correction. If the arbitration council fails to correct errors in the proceedings, the examination council shall continue examining the written request.

8. If the examination council issues a decision canceling the arbitral award, the parties may reach new agreement to bring their dispute to arbitration or any of

them may initiate a lawsuit at court. If the examination council does not cancel the arbitral award, such award shall be enforced.

9. In all cases, the time for dispute settlement at arbitration and for carrying out procedures to cancel an arbitral award at court will not be included in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initiating a lawsuit.

10. The courts decision is final and effective for enforcement.

Article 72. Court fees related to arbitration

Fees for requesting a court to designate an arbitrator or apply interim urgent measures, requesting cancellation of arbitral awards or registering arbitral awards, and other fees comply with the law on legal costs and court fees.

Chapter XII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FOREIGN ARBITRATIONS IN VIETNAM

Article 73. Conditions for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s to operate in Vietnam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s which are lawfully established and operating overseas and respect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may operate in Vietnam under this Law.

Article 74. Forms of operation of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s in Vietnam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s may operate in Vietnam as:

1. Branch of the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 (below referred to as branch): or.

2. Representative office of the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 (below referred to as representative office).

Article 75. Branches

1. Branch is a dependent unit of a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 and may be established and carry out arbitration activities in Vietnam under this Law.

2.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s and their branches shall take responsibility before Vietnamese law for the operation of these branches.

3. A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 shall appoint an arbitrator to act as head of its branch. This head is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 in Vietnam.

Article 76. Rights and obligations of branches

1. To rent working offices, hire and purchase facilities and tool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branches.

2. To recruit Vietnamese and foreign employees under Vietnamese law.

3. To open Vietnam-dong and foreign-currency accounts at banks licensed to operate in Vietnam for their operation.

4. To remit their incomes abroad under Vietnamese law.

5. To have a seal bearing the name of the branch under Vietnamese law.

6. To designate arbitrators for forming arbitration councils as authorized by the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

7. To provide arbitration services, conduct conciliation and apply other modes of settling commercial disputes under law.

8. To provide administrative, clerical and other services for dispute settlement of foreign arbitration councils.

9. To collect arbitration charges and other lawful amounts.

10. To pay remuneration to arbitrators.

11. To organize retraining courses for arbitrators to raise their dispute settlement qualifications and skills.

12. To preserve dossiers and provide copies of arbitral decisions at the request of the disputing parties or competent Vietnamese state agencies.

13. To operate in the domains stated in their establishment licenses or operation registration papers.

14. To observe Vietnamese law concerning their operation.

15. To annually report on their operation to provincial-level Justice Departments of localities in which they are registered for operation.

Article 77. Representative offices

1. Representative office is a dependent unit of a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 and may be established and seek and promote arbitration operation opportunities in Vietnam under this Law.

2.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s shall take responsibility before Vietnamese law for the operation of their representative offices.

Article 78. Rights and obligations of representative offices

1. To seek and promote arbitration operation opportunities of their arbitration institutions in Vietnam.

2. To rent working offices and hire and purchase facilities and tools necessary for their operation.

3. To recruit Vietnamese and foreign employees under Vietnamese law.

4. To open foreign-currency and Vietnam-dong accounts at banks licensed to operate in Vietnam and use these accounts only for their operation.

5. To have a seal bearing the name of the representative office under Vietnamese law.

6. To operate for the purposes, scope and duration stated in their establishment licenses.

7. To refrain from carrying out arbitration operations in Vietnam.

8. To conduct only arbitration operation promotion and advertising activities under Vietnamese law.

9. To observe Vietnamese laws concerning their operation.

10. To annually report on their operation to provincial-level Justice Departments of localities in which they are registered for operation.

Article 79. Operation of branches and representative offices

The establishment, registration, operation, and termination of the operation of branches and representative offices comply with Vietnamese law and treaties to which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s a contracting party. The Government shall detail procedures for the establishment, registration, and termination of operation of branches and representative offices.

Chapter XIII

IMPLEMENTATION PROVISIONS

Article 80. Application of the Law to arbitration centers established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Law

Arbitration centers established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Law are not required to carry out procedures for re-establishment. Arbitration centers shall modify their charters and rules of arbitral proceedings to comply with this Law within 12 months after it takes effect. Past this time limit, arbitration centers that fail to modify their charters or rules will have their establishment licenses revoked and shall terminate their operation.

Article 81. Effect

1. This Law takes effect on January 1, 2011.

2. Ordinance No. 03/2003/PL-UBTVQH11 on Commercial Arbitration ceases to be effective on the effective date of this Law.

3. Arbitration agreements concluded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Law shall be implemented under regulations effective at the time of their conclusion.

Article 82. Implementation detailing and guidance

The Government, the Supreme People's Court and the Supreme People's Procuracy shall, within the ambit of their tasks and powers, detail and guide the Law's articles and clauses assigned to them; and guide other necessary contents of this Law to meet state management requirements.

This Law was passed on June 17, 2010, by the XIIth National Assembly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t its 7th session

6. 베트남 2014년 상사중재법 가이드라인 영역본

RESOLUTION
GUIDELINES FOR THE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COUNCIL OF JUDGES OF THE PEOPLE'S SUPREME COURT

Số: 01/2014/NQ-HDTP, *Hanoi, March 20, 2014*

Pursuant to the Law on organization of People's Courts;

For the purpose of adherence to the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which i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June 17, 2010 and takes effect on January 01, 2011 (hereinafter referred to as LCA);

After obtaining opinions from the Chief Procurator of the Supreme People's Procuracy and the Minister of Justice,

RESOLVES:

Article 1. Scope of regulation

This Resolution provides guidelines for some regulations of LCA on the entitlements and proceedings of Courts applied to arbitration; registration of arbitral awards.

Article 2. Determination of entitlements to resolve cases between arbitral tribunals and courts according to LCA

1. Arbitral tribunals are entitled to resolve the disputes mentioned in Article 2 of LCA if the parties concerned have an arbitration agreement prescribed in Article 5 and Article 16 of LCA, except for the cases mentioned in Clause 3 of this Article.

2. When the court is requested to resolve one of the disputes mentioned in Article 2 of LCA, the court shall request either party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whether such dispute is under an arbitration agreement. The court shall examine documents enclosed with the petition to determine whether such dispute is one of the cases mentioned in Clause 3 of this Article as follows:

a) If the dispute is not under an arbitration agreement, or an effective judgment or decision has been given by a court, or an effective tribunal award determines that the dispute is not under an arbitration agreement, the court shall consider undertaking and handling the case within its competence.

b) If the dispute is under an arbitration agreement and such arbitration agreement is not any of the cases mentioned in Clause 3 of this Article, the court shall return the petition and documents enclosed therewith to the plaintiff pursuant to Point d Clause 1 Article 168 of the Civil Procedure Code 2014,

which is amended in the Law on amendments to the Civil Procedure Cod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ivil Procedure Code).

If the court finds that the dispute is under an arbitration agreement and such arbitration agreement is not any of the cases mentioned in Clause 3 of this Article after the case is undertaken by the court, the court shall issue a decision to terminate the adjudication, return the petition and documents enclosed therewith to the plaintiff pursuant to Point i Clause 1 Article 192 of the Civil Procedure Code.

c) If the court is requested to resolve a dispute that is being handled by an arbitral tribunal, the court shall terminate the adjudication and return the petition to the plaintiff even if the court finds that the dispute is not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arbitral tribunal, not under an arbitration agreement, or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not any of the cases mentioned in Clause 3 of this Article, unless the court undertakes the case before the arbitral tribunal is requested to handle it. If the plaintiff requests the court to handle the case after a decision or award is issued by the arbitral tribunal as prescribed in Articles 43, 58, 59, and 61 of LCA, the court shall consider undertaking and handling the case under common procedures.

3. In one of the following cases, the dispute shall be handled by the court though it is under an arbitration agre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concerned or prescribed by law:

a) The court issues a decision to annul the arbitral award or the decision made by the arbitral tribunal to certify the parties' agreement made;

b) There is a decision to suspend the arbitral tribunal or arbitration center from resolving disputes as prescribed in Clause 1 Article 43, Points a, b, d, and dd Clause 1 Article 59 of LCA;

c) The dispute is one of the cases mentioned in Clauses 1, 2, 3, and 5 Article 4 of this Resolution.

4. In case the parties have an agreement to have the dispute resolved both by an arbitral tribunal and a court, such agreement is not changed and not any of the cases in Clause 3 of this Article, the dispute that arises shall be handled as follows:

a) If the plaintiff requests an arbitral tribunal to resolve the dispute before requesting the court to do so or before the case is undertaken by the court as prescribed in Point b Clause 4 of this Article, the court shall refuse to undertake the case pursuant to Article 6 of LCA. In this case, the court shall return the petition. If the case has been received, the court shall issue a decision to terminate the adjudication because it is beyond the competence of the court, return the petition and documents enclosed therewith to the plaintiff pursuant to Point i Clause 1 Article 192 of the Civil Procedure Code.

b) In case the plaintiff requests the court to resolve the dispute: right after receiving the petition, the court must determine whether an arbitral tribunal is requested by either party to handle the case.

Within 05 working days from the receipt of the petition, if the court finds that the dependant or the plaintiff has requested an arbitral tribunal to resolve the dispute, the court shall return the petition to the plaintiff. If no arbitral tribunal is requested by the dependant or the plaintiff to resolve the case, the court shall undertake the case and handle it under common procedures.

If the court has undertaken the case and then finds that an arbitral tribunal is requested to resolve such case before it is undertaken by the court, the court shall, pursuant to Point i Clause 1 Article 192 of the Civil Procedure Code, issue a decision to terminate the adjudication because it is beyond the competence of the court, return the petition and documents enclosed therewith.

Article 3. Void arbitration agreement prescribed in Article 6 and Article 18 of LCA

An arbitration agreement is void if it is one of the cases mentioned in Article 18 of LCA. After declaring an arbitration agreement void, the cases below should be considered:

1. "The dispute that arises is related to the fields beyond the competence of arbitral tribunals" prescribed in Clause 1 Article 18 LCA means the case in which an arbitration agreement is negotiated to resolve the disputes related to the fields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Article 2 of LCA.

2.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negotiated by incompetent persons as prescribed by law" in Clause 2 Article 18 means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negotiated by persons other than legal representatives or authorized persons, or authorized persons that act beyond his/her authorized entitlements.

If arbitration agreement principles are established by incompetent persons, such arbitration agreement is void. If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negotiated by incompetent persons but the persons competent to negotiate arbitration agreements accept it or do not object to it during the negotiation or arbitral proceedings, such arbitration agreement is not void.

3.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negotiated by persons in capable of civil acts as prescribed by law*" prescribed in Clause 3 Article 18 means the minors or the persons incapable of civil acts. In this case, the court must collect evidence that the person that negotiates the arbitration agreement are not capable of civil acts, including papers bearing his/her date of birth, a conclusion by a competent authority or declaration by a court that such per person is not capable of civil acts.

4. "*Forma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not conformable with Article 16 of LCA*" prescribed in Clause 4 Article 18 of LCA means the case in which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not negotiated using the methods mentioned in Article 16 of LCA and the guidance in Article 7 of this Resolution.

5. “Either party is cheated, threatened, or forced to reach the arbitration agreement” prescribed in Clause 5 Article 18 of LCA means the case in which either party is cheated, threatened, or forced according to Article 4 and Article 132 of the Civil Code.

6. “The arbitration agreement contravenes the law” prescribed in Clause 6 Article 18 of LCA means any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cases prescribed in Article 128 of the Civil Code.

Article 4.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not viable as prescribed in Article 6 of LCA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not viable” as prescribed in Clause 6 Article 18 of LCA means any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cases below:

1. The parties concerned have an agreement to resolve their disputes at a specific arbitration center which has now shut down without any arbitration center that inherit its cases, and the parties concerned fail to reach an agreement on another arbitration center to resolve their disputes.

2. Bother parties have an agreement on appointment of a specific arbitrator to resolve disputes, but when the dispute arises, because of force majeure events or objective difficulties, such arbitrator cannot resolve the case, or the arbitration center or court cannot find a substitute arbitrator as agreed by the parties concerned, and the parties concerned also fail to reach an agreement to select a substitute arbitrator.

3. Bother parties have an agreement on appointment of a specific arbitrator to resolve disputes, but when the dispute arises, such arbitrator refuses the appointment or the arbitration center refuses the arbitrator appointment, and the parties concerned also fail to reach an agreement to select a substitute arbitrator.

4. The parties concerned have an agreement to resolve their disputes at a specific arbitration center but a set of arbitration rules of another arbitration center, which is different from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agreed arbitration center, is applied, the charter of the arbitration selected by both party does not allow the application of arbitration rules of other arbitration centers, and the parties concerned fail to reach an agreement on substitute set of arbitration rules.

5. The goods/service seller and consumers have an overall agreement on provision of goods/services that contain arbitration terms drafted by the seller as prescribed in Article 17 of LCA, but the consumers refuse to have the dispute that arises resolved by an arbitral tribunal.

Article 5. Determination of courts having authority over arbitration as prescribed in Article 7 of LCA.

1. The parties concerned may reach an agreement to select one of the provincial courts of Vietnam to handle cases related to arbitration in Vietnam. The agreement on selection of the court must be made into three copies, specifying

the cases to be handled by the court, name of the court selected by the parties concerned.

If the agreement is not conformable with regulations Clause 3 Article 7 of LCA, the authority of the court over arbitration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Clause 2 Article 7 of LCA on entitlements and territory of courts, regulations in Clause 3 Article 7 of LCA on authority of various levels of courts.

Example: The parties concerned have an agreement to select the court of district X to summon witnesses. Such agreement contravenes the regulations in Clause 3 Article 7 of LCA. The court shall refuse this agreement and the authority of the court over arbitration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Clause 2 Article 7 of LCA.

2. The parties may reach an agreement on selection of a court having authority over arbitration before or after a dispute arises. The agreement on selection of a court must ensure that there is only one court that has authority over a specific arbitral activity or all arbitral activities.

3. Determination of courts having authority over appointment of arbitrators to establish an arbitral tribunal.

a) If there are multiple defendants involved in a request for appointment of arbitrators, the plaintiff may send the request to one of the courts of the administrative divisions where the residences or headquarters of such defendants are located1. If one or some defendants have there residences or headquarters overseas, the plaintiff may select the court of the administrative division where the residence or headquarter of the plaintiff is located.

b) When receiving the written request for appointment of arbitrators, the court must explain to the applicant that there is only one of the courts mentioned in Point a Clause 2 Article 7 of LCA may be selected. The court selected shall request the applicant to make a written commitment in the written request that the request is not submitted to any other court.

c) In case the plaintiff submits the requests to various courts, the first one that undertakes the request shall handle the case. The court that undertakes the request shall:

c) Return the written request, documents, evidence enclosed thereto and fees to the applicant if the case is not undertaken pursuant to Point dd Clause 1 Article 168 and Article 311 of the Civil Procedure Code.

c) Issue a decision to terminate the consideration, remove the case from the book, return the request, documents and evidence enclosed thereto to the applicant if the case has been undertaken pursuant to Point dd Clause 1 Article 168, Point i Clause 1 Article 192, and Article 311 of the Civil Procedure Code The advanced fee shall be returned to the applicant by the court.

c3) If multiple courts have issue their own decisions on arbitrator appointment, the decision issued by the court that is first selected by the plaintiff shall apply.

In this case, pursuant to Clause 2 Article 39 of the Ordinance on legal costs, the plaintiff shall still incur the fees for request for arbitrator appointments under the decisions on arbitrator appointment of all the courts that received the request from the plaintiff.

4. The courts having authority over arbitrator replacement, settlement of appeals against decisions of arbitral tribunals, annulments of arbitral awards, registration of arbitral awards mentioned in Points b, c and g Clause 2 Article 7 of LCA are identified as follows:

a) "The place where the dispute is settled by the arbitral tribunal" prescribed in Point b Clause 2 Article 7 of LCA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Clause 8 Article 3 of LCA; In case the parties fail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place for dispute settlement and the arbitral tribunal fails to indicate or fails to indicate clearly the place for dispute settlement, the applicant shall submit supporting documents and evidence. If the applicant fails to prove it, the court shall instruct the applicant to request the arbitral tribunal to verify. According to the place for dispute settlement determined by arbitral tribunal, the court shall consider undertaking the cases in accordance with law.

b) "The place where the decision is made by the arbitral tribunal" and "the place the arbitral award is given by the arbitral tribunal" prescribed in Point c and Point g Clause 2 Article 7 of LCA shall be determined under the decision or arbitral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In case the decision or arbitral award given by the arbitral tribunal fails to indicate or fails to indicate clearly the place for where the arbitral tribunal issues the decision or arbitral awards, the applicant shall submit documents and evidence to prove it. If the applicant fail to prove it, the court shall instruct the applicant to request the arbitral tribunal to determine. According to the result given by the arbitral tribunal, the court shall consider undertaking the case in accordance with law.

c) In case the place where the arbitral tribunal issues the decision or arbitral award prescribed in Point c and Point g Clause 2 Article 7 of LCA is located overseas, the competent court is the local court of the administrative division where the residence or headquarter in Vietnam of the defendant is located. In case the residence or headquarter of the defendant is located overseas, the competent court is the local court of the administrative division where the residence or headquarter of the plaintiff is located.

5. Determination of entitlements of courts to activities of foreign arbitrators in Vietnam.

a) When foreign arbitrators settle disputes and request support from a Vietnamese court, the Vietnamese court shall have authority over operation of foreign arbitrators in accordance with Points a, b, c, d, dd, and e Clause 2 Article 7 of LCA.

b) The Vietnamese court does not have authority over annulment of arbitral awards, registration of arbitral awards given by foreign arbitrators as prescribed in Point g Clause 2 Article 7 of LCA. Arbitral awards given by foreign

arbitrators shall be recognized and applied in Vietnam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of the Civil Procedure Code on procedures for recognition and implementation of decisions of foreign arbitrators in Vietnam.

Article 6. Loss or right to protest prescribed in Article 13 of LCA

1. When a party is found violating regulations of LCA or the arbitration agreement, if arbitral proceedings are still carried on without any protest against to such violations submitted to the arbitral tribunal or arbitration center by the deadline imposed in LCA, the right to protest against such violations shall be lost. In the cases where LCA does not specify the deadline, the deadline shall be agreed by the parties or arbitration rules. If the parties do not have an agreement or the arbitration rules do not specify, the objection shall be made by the time the arbitral tribunal gives an arbitral award.

2. When considering a report from either party on violations against regulations of LCA or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court shall examine the docs, evidence, and arbitration rules to determine whether either party loses its right to protest or not.

In case the court determines that the right to protest is lost as prescribed in Article 13 of LCA and Clause 1 of this Article, the party that loses such right may not appeal against the decision from the arbitral tribunal and may not request annulment of the arbitral award with regard to the violations against which the right to protest is lost. The court shall not accep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according to the violations against which the right to protest of either party is lost.

3. When considering a request for annulment of the arbitral award, the court shall consult to Point dd Clause 2 and Point b Clause 3 Article 68 of LCA. The court is entitled to decide whether to accept the request or not if there is sufficient basis, even when either party has lost its rights to protest.

Article 7. Arbitration agreements prescribed in Article 16 of LCA

1. In case multiple arbitration agreements are reached on the same dispute, the latest lawful agreement shall apply.

2. If the contents of an arbitration agreement are not clear or could be understood in more than one way, regulations of the Civil Code shall apply.

3. When there is a handover of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a transaction or contract which contains a lawful arbitration agreement, such agreement is still applicable to the transferee and the transferor,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concerned.

4. Multiple legal relationships to resolve the same case shall be combined in one of the cases below:

a) The parties agree to combine multiple legal relationships to resolve the same case;

b) The arbitration rules allow for combination of multiple legal relationships to resolve the same case.

Article 8.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 prescribed in Article 41 of LCA

1. If the parties concerned do not agree otherwise, the court shall appoint arbitrators on request in the following cases:

a) If the defendant fails to notify the plaintiff of the names of the arbitrators the defendant selects within 30 days from the day on which the defendant receives the petition from the plaintiff, the court shall appoint arbitrators on request of the plaintiff.

b) In case the dispute involves multiple defendants: after the 30-day period from the day on which the last defendant receives the petition from the plaintiff together with documents and evidence enclosed thereto, if the defendants fail to reach a consensus on the arbitrator or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the court shall appoint arbitrators;

c) If the appointed arbitrators fail to elect a chairperson of the arbitral tribunal after 15 days from the day they are selected by the parties or appointed by the court, the court shall appoint a chairperson of the arbitral tribunal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d) If the parties concerned agree that the dispute shall be resolved by only one arbitrator, but fail to select such sole arbitrator after 30 days from the day on which the last defendant receives the petition from the plaintiff, the court shall appoint the sole arbitrator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2. Within 07 working days from the receipt of the petition, the executive judge of the provincial court shall assign a judge to appoint arbitrators. The competent court shall notify the parties concerned and arbitrators of the arbitral tribunal of the undertaking of the case and the judge assigned to handle the case.

3. Within 07 working days from the assignment date, the judge shall consider the request for appointment of arbitrators without holding a meeting or summoning the parties concerned.

4. When considering the request, the judge shall consult Article 21 and Article 21 of LCA, the lists of arbitrators of arbitral institutions in Vietnam prescribed in Point c Clause 1 Article 15 of LCA, Clause 4 Article 2 and Article 19 of the Government's Decree No. 63/2011/ND-CP dated July 28, 2011 on guidelines for the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and enclosed documents. The court's decision on appointment of arbitrators shall be made using form No. 1 enclosed to this Resolution.

5. Within 03 working days from the decision date, the court shall send the decision to the parties concerned, the arbitral tribunal, and arbitrators.

Article 9. Replacement of arbitrators prescribed in Clause 4 Article 42 of LCA

1. The court shall only consider the replacement of arbitrators in the cases mentioned in Clause 4 Article 42 of LCA. The person that requests replacement

of arbitrators shall make a written request, specifying the case and the reasons for making such request.

2. Within 15 working days from the receipt of the written request, the executive judge of the provincial court shall assign a judge to decide the replacement of arbitrators. The competent court shall notify the arbitral tribunal, arbitrators thereof, and the parties concerned of the undertaking of the case and the judge appointed to handle the case.

3. Within 07 working days from the assignment date, the judge shall consider the request for replacement of arbitrators without holding a meeting or summoning the parties concerned.

4. When considering the request, the judge shall consult Article 20, Article 21, Clause 6 Article 42 of LCA, the lists of arbitrators of arbitral institutions in Vietnam prescribed in Point c Clause 1 Article 15 of LCA, Clause 4 Article 2 and Article 19 of the Government's Decree No. 63/2011/ND-CP dated July 28, 2011 on guidelines for the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and enclosed documents to decide whether the decision on appointment of arbitrators can be adjusted.

If the request for replacement of arbitrator is legitimate, the judge shall decide the replacement on a case-by-case basis in accordance with corresponding regulations. If the request for replacement of arbitrators is rejected, the judge shall issue a written decision specifying the reasons for rejection. The decision on replacement of arbitrators shall be made using form No. 2 enclosed to this Resolution.

5. Within 03 working days from the decision date, the court shall send the decision to the parties concerned, the arbitral tribunal, the arbitrators, and the People's Procuracy at the same level.

Article 10. Appeals, settlement of appeals against decision by an arbitral tribunal on absence of arbitration agreement, void arbitration agreement, unviable arbitration agreement, and entitlements of arbitral tribunal prescribed in Article 44 of LCA

1. The party that does not concur with a decision by an arbitral tribunal on absence of arbitration agreement, void arbitration agreement, unviable arbitration agreement, or entitlements of arbitral tribunal shall file an appeal. The appeal shall contain the information prescribed in Clause 2 Article 44 of LCA and enclosed with the documents, evidence mentioned in Clause 3 Article 44 of LCA. In case the arbitral tribunal does not issue a separate decision on the entitlements of the arbitral tribunal, the applicant must provide documents and evidence proving that the arbitral tribunal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resolve such dispute.

2. Within 05 working days from receipt of the appeal, documents and evidence enclosed, the court shall notify the arbitral tribunal of the processing of the appeal.

3. According to the appeal, documents and evidence enclosed thereto, and regulations in Articles 5, 6, and 18 of LCA, the judge shall determine whether the decision on absence of arbitration agreement by arbitral tribunal, void arbitration agreement, unviable arbitration agreement, or entitlements is justifiable or not. If necessary, the judge may request the arbitral tribunal to provide their explanation for the appeal.

4. The judge must settle the appeal by the deadline mentioned in Clause 4 Article 44 of LCA. The decision on appeal settlement shall be issued using the form No. 3 enclosed to this Resolution. Within 05 working days from the day on which the decision on appeal settlement is issued, the court shall send the decision to the parties concerned, the arbitral tribunal, the arbitrators, and the People's Procuracy at the same level.

5. Pursuant to regulations of law, the judge shall accept or reject the appeal. The court must specify the reasons for the acceptance or rejection of the appeal as follows:

a) In case the court determines that the dispute is beyond the competence of the arbitral tribunal, there is no arbitration agreement,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void, or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unviable:

a1) If the arbitral tribunal has issued a decision to terminate the adjudication, the parties concerned shall reach an agreement on the method for dispute settlement.

a2) If the case is being handled by the arbitral tribunal, the arbitral tribunal must issue a decision to suspend the adjudication within 15 days from the receipt of the decision on appeal settlement from the court in accordance with Clause 6 Article 44 of LCA.

a3) If the arbitral tribunal has given an arbitral award, either party is entitled to request the court to annul such arbitral award.

b) In case the court determines that the dispute is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arbitral tribunal, there is an arbitration agreement,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not void, or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viable:

b1) If the arbitral tribunal has issued a decision to suspend the adjudication, the arbitral tribunal shall resume the adjudication within 15 days from the receipt of the decision on appeal settlement from the court.

b2) If the arbitral tribunal has given an arbitral award, either party is entitled to request the enforcement of such arbitral award, apply for registration of such arbitral award, or request the court to annul such arbitral award.

b3) If the case is being handled by the arbitral tribunal, the arbitral tribunal shall keep handling it.

Article 11. Request for court's collection of evidence or summons of witness prescribed in Article 46 and Article 47 of LCA

1. The court shall only collect evidence in the cases prescribed in Clause 5 and Clause 6 Article 46 of LCA if the arbitral tribunal, either party fails to collect adequate evidence after taking every necessary measures (meaning all methods and resources have been used to request the entities having evidence to provide such evidence but such entities refuse to do so). The request for court's collection of evidence must contain sufficient information prescribed in Clause 5 Article 46 of LCA, enclosed with the arbitration agreement, petition, relevant documents, documents and evidence proving the unsuccessful attempt to collect evidence.

2. The procedures for collecting, preserving, and transferring evidence by the court shall comply with Clause 5 Article 46 of LCA and regulations of the Civil Procedure Code.

3. The Court shall only summon witnesses when there is evidence that the witnesses have been legitimately summoned by the arbitral tribunal but then fail to attend the meeting without justifiable reasons, and their absence obstruct the dispute settlement. The summons must contain sufficient information prescribed in Clause 2 Article 47 of LCA, enclosed with the arbitration agreement, petition, relevant documents, documents and evidence proving that the witnesses were summoned legitimately but failed to attend the meeting, and that their absence obstruct the dispute settlement.

4. The procedures for issuing decisions, summoning witnesses, and notifying the result shall comply with Clause 3 Article 47 of LCA and regulations of the Civil Procedure Code.

5. Together with the submission of documents and evidence on request, the party that makes the request for collection of evidence or summons of witnesses must pay fees and costs thereof. In case the arbitral tribunal requests the court to collect evidence or summon witnesses, the fees and costs shall be paid by the party that makes the request via the arbitral tribunal.

Article 12. Entitlements of the court to apply, adjust, and cancel temporary emergency measures prescribed in Article 53 of LCA

1. Either party is entitled to send a written request to the competent court for implementation of one or some temporary emergency measures right after submitting the petition to the arbitrators (when the arbitral proceedings have been initiated), whether or not the arbitral tribunal has been established or the dispute has been settled by the arbitral tribunal.

2. Either party is entitled to request the competent court to compel the implementation of one or some temporary emergency measures prescribed in Clause 2 Article 49 of LCA,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concerned.

3. Together with the submission of documents and evidence on request, any party that requests the implementation, adjustment, or cancellation of temporary emergency measures shall pay fees and implement the measures as prescribed.

4. Procedures for implementation, adjustment, cancellation of temporary emergency measures, and supervision of adherence to law during implementation of temporary emergency measures introduced by the court shall comply with Articles 48, 49, 52, 53 of LCA and regulations of the Civil Procedure Code.

5. When either party requests the court to take one or some temporary emergency measures, the court shall request such party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whether they have requested the arbitral tribunal to implement one or some temporary emergency measures. If they have made such, the court shall request them to make a commitment in the petition that they shall not send such request to any other court or at the arbitral tribunal. The court must also examine the documents enclosed to the peti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parties concerned have requested a court or arbitral tribunal to implement one or some temporary emergency measures for the dispute.

a) If there is evidence that one of the parties concerned has requested the arbitral tribunal or a court to take one or some temporary emergency measures, the court shall return the written request the parties pursuant to Clause 5 Article 53 of LCA, unless the request for implementation of temporary emergency measures made by the parties is beyond the competence of the arbitral tribunal.

b) If the court finds that the parties concerned have requested the arbitral tribunal or a court to implement one or some temporary emergency measures after a decision on implementation of temporary emergency measures is made, the court shall issue a decision to cancel the temporary emergency measures they introduce, return the written request and documents enclosed thereto to the parties.

Article 13. Registration of arbitral awards prescribed in Article 62 of LCA

1. According to Clause 2 Article 62 of LCA, if either party submits the written request to the court for registration of the arbitral award after 01 year from the issuance of such arbitral award, the court shall not consider such request.

In case there is evidence that the cancellation or the arbitral award is being considered at a competent court, when receiving the request for registration of the arbitral award, the court shall delay undertaking the request pending the decision on arbitral award cancellation.

2. The party that applies for registration of the arbitral award shall make and send a written request enclosed the documents mentioned in Clause 2 Article 62 of LCA to a competent court.

3. After considering the request for registration of arbitral award, the judge is not required to hold a meeting to consider the request. If necessary, the judge may convene one or all parties concerned and the arbitral tribunal for them to offer their opinions about the registration of arbitral award. In consideration of

LCA and enclosed document, the judge shall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e enclosed documents to consider and decide the registration.

4. If the arbitral award and documents are deemed authentic, the judge shall carry out the registration. The decision on registration of arbitral award shall be made using form No. 04 enclosed to this Resolution.

5. If the arbitral award is found to be fictitious, the judge shall reject the registration, return the written request and enclosed documents, notify the applicant, and provide explanation. The notification of rejection of arbitral award registration shall be made using form No. 05 enclosed to this Resolution.

Article 14. Bases for annulment of arbitral awards prescribed in Article 68 of LCA

1. Arbitral awards prescribed in Clause 10 Article 3 and Article 68 of LCA include decisions on recognition of agreements among the parties concerned made by arbitral tribunals according to Article 58 of LCA and arbitral awards given by arbitral tribunals according to Article 61 of LCA.

2. The court shall annul the arbitral awards prescribed in Article 58 and Article 61 of LCA in one of the cases below:

a) "There is no arbitration agreement or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void", meaning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one of the cases in Article 6 and Article 18 of LCA, or Articles 2, 3, and 4 of this Resolution.

b)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or the arbitral proceedings are not conformable with agreement of the parties concerned or regulations of LCA", meaning the case in which the arbitral tribunal fails to comply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on composi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or arbitration rules, or the arbitral tribunal fails to adhere to regulations of LCA, and such violation is considered serious by the court if the arbitral tribunal fails to make rectification at the request of the court as prescribed in Clause 7 Article 71 of LCA.

Example 1: A party is not promptly and legitimately notified of the petition as prescribed in Article 32 of LCA. This infringes upon the right to establish an arbitral tribunal and is considered a serious violation against arbitration rules as prescribed in Point b Clause 2 Article 68 of LCA.

Example 2: The parties agree that the dispute shall be resolved by an arbitral tribunal composed of three arbitrators and shall apply Vietnam's law. However, in fact, the case is handled by an arbitral tribunal composed at only one arbitrator, and the law applied is Singapore's law. This situation is protested against by a party but such protest is not accepted by the arbitral tribunal. This is a serious violation against arbitration rules prescribed in Point b Clause 2 Article 68 of LCA.

c) "The dispute is beyond the competence of the arbitral tribunal", meaning the case handled by the arbitral tribunal is related to the fields beyond its

competence as prescribed in Article 2 of LCA, or the arbitral tribunal handles the dispute without being requested by the parties concerned, or the arbitral tribunal acts beyond the scope of the agreement on settling the dispute by arbitration.

On principle, the court shall only annul the contents beyond the competence of the arbitral tribunal, not the whole arbitral award. If the decision of the arbitral tribunal on the issues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arbitral tribunal can be separated from that beyond the competence of the arbitral tribunal, the decision on the issued requested to be settled by arbitration shall not be annulled.

If the decision of the arbitral tribunal on the issues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arbitral tribunal cannot be separated from that beyond the competence of the arbitral tribunal, the court shall annul the whole arbitral award.

d) "Evidence that is provided by the parties and based on by the arbitral tribunal to give the arbitral award is false; arbitrators have received undue pecuniary or other advantage of any kind offered by a party and thus threaten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the arbitral tribunal"

The court shall consider the request for identification of false evidence if such claim can be proven and the evidence must affect the issuance of the arbitral award,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the arbitral tribunal. The court shall consult the regulations of LCA, arbitration rules, agreement among the parties, the rules for considering and assessing evidence applied by the arbitral tribunal when handling the case to identify false evidence.

dd) "The arbitral award contravenes the basic principles of Vietnam's Law", meaning the arbitral award violates the effective basic rules for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Vietnam's Law.

When considering a request for cancellation of an arbitral award, the court must determine whether the arbitral award violates any basic rule of law, how such rule affect the dispute settlement by arbitration.

The court shall only cancel an arbitral award after proving that it contravenes one or some basic rules of Vietnam's law, which are not adhered to by arbitral tribunal when issuing the arbitral award, and the arbitral award seriously infringe upon the interest of the State, the lawful rights and interests of either party or some third person.

Example 1: The parties concerned have an agreement on dispute settlement and such agreement does not contravene the law or social ethics, but the arbitral tribunal does not recognize such agreement in the arbitral award. In this case, the arbitral award violates the right to free and voluntary business agreements prescribed in Article 11 of the Law on Commerce and Article 4 of the Civil Code. The court shall consider canceling this arbitral award because it contravenes a basic rule of Vietnam's law which is prescribed in the Law on Commerce and the Civil Code.

Example 2: A party under the dispute provides evidence that the arbitral award involves coercion, fraud, threats, or bribery. In this case, the arbitral award violates the rule "arbitrators must be independent, objective, and impartial" prescribed in Clause 2 Article 4 of LCA.

Article 15. Court's consideration of request for annulment of arbitral awards prescribed in Article 71 of LCA

1. The executive judge of the court must not appoint the judge that decides the appointment or replacement of arbitrators or the judge that settle the appeal against the decision of the arbitral tribunal to participate in the Council that considers the request for annulment of an arbitral awar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uncil).

2. When considering the request, the Council shall not consider the contents of the dispute and shall only examine the arbitral award to determine whether it is one of the cases mentioned in Clause 2 Article 68 of LCA. If the arbitral award is found to be one of the cases mentioned in Clause 2 Article 68 of LCA and the arbitral tribunal fails to make rectification at the request of the court as prescribed in Clause 7 Article 71 of LCA, the Council shall issue a decision to annul the arbitral award pursuant to Clause 2 Article 68 of LCA. If the arbitral awards is found to not be one of the cases mentioned in Clause 2 Article 68 of LCA, the Council shall issue a decision not to annul the arbitral award. The decision on annulment of an arbitral award shall be made using form No. 08 enclosed to this Resolution.

3. If necessary, the Council shall consider suspending the consideration of the request for annulment of the arbitral award until a request is made by a party in the case mentioned in Clause 7 Article 71 of LCA. The decision to suspend consideration of the request for annulment of an arbitral award shall be made using form No. 06 enclosed to this Resolution.

4. The Council is entitled to terminate the consideration of the request for annulment of the arbitral award in the cases mentioned in Clause 5 Article 71 of LCA. The decision on termination of consideration of request for annulment of an arbitral award shall be made using form No. 07 enclosed to this Resolution.

Article 16. Court fees related to arbitration prescribed in Article 72 of LCA

The person that requests a court to handle perform the tasks related to arbitration shall pay fees at the court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nce on legal costs and guidelines in the Resolution No. 01/2012/NQ-HDTP dated June 13, 2012 of the Council of Judges of the People's Supreme Court on application of law to legal costs. When a request for evidence collection, witness summoning, cancellation of an arbitral award, or registration of an arbitral award is sent to a court, the court shall not request the applicant to pay fees and shall undertake the case under common procedures.

Article 17. Templates of some proceeding documents

Templates of some proceeding documents enclosed to this Resolution include:

1. Decision on appointment of arbitrators (Form No. 01);

2. Decision on replacement of arbitrators (Form No. 02);

3. The decision on appeal settlement (Form No. 03);

4. Decision on registration of arbitral award (Form No. 04);

5. Refusal of registration of arbitral award (Form No. 05);

6. Decision to suspend consideration of request for cancellation of arbitral award (Form No. 06);

7. Decision to terminate consideration of request for cancellation of arbitral award (Form No. 07);

8. Decision on cancellation of arbitral award (Form No. 08).

Article 18. Effect of Clause 3 Article 81 of LCA

From the effective date of LCA, (January 01, 2011, every dispute shall be settled in accordance with LCA whether the dispute arises before or after the effective date of LCA, and whether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reached before of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LCA.

In case an arbitration agreement is reached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LCA but the dispute arises afterwards, the legitimacy and effect of such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regulations of law at the time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reached.

Example: Company A and company B signed a contract on June 01, 2008, which allows dispute settlement by arbitration. On August 18, 2013, company A submit a petition to arbitration before the parties concerned do not have a new agreement on another dispute-settling agency. In this case, the dispute shall be handl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LCA, and the effec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Ordinance on Commercial arbitration. The effect of an arbitration agreement is determined according to applicable regulations of law at the time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reached. The Ordinance on Commercial arbitration was effective from June 01, 2003 until December 31, 2010.

Article 19. Effect

1. This Resolution is passed by the Council of Judges of the People's Supreme Court on March 20, 2014 and takes effect on July 02, 2014. Instructions provided by the People's Supreme Court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Resolution are annulled from July 02, 2014.

2. Difficulties that arise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Circular should be reported to the People's Supreme Court for timely explanation and instructions.

7. 참고문헌목록

[한국문헌]

권오승・김대인・이상현,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김선정, 상사중재법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제23권 제4호, 2013. 12.
김연・박정기・김인규, 국제사법(제3판 보정판), 법문사, 2014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박영사, 2012
석광현, 국제사법해설, 박영사, 2013
신창선・윤남순, 신국제사법, 피데스, 2014
신창섭, 국제사법 제3판, 세창출판사, 2015
신충일, 베트남 신구중재법 비교, 국제거래법연구 제22집 제1호, 2013.
이재열, 베트남 민법의 성립과 구조, 아시아법제연구, 2005. 3.
이재열, 베트남 민법상의 계약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13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2.
이재열, 베트남 법규규범문서 법제에 관한 소고, 2012년도 통합 법제연구보고서, 법제처, 2012.
이재열, 베트남 상속법에 관한 개관, 홍익법학 제10권 제2호, 2009. 6.

[영어문헌]

Allen & Overy, Publications: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Vietnam, 21 November, 2013, http://www.allenovery.com/publications/en-gb/Pages/Enforcement-of-foreign-arbitral-awards-in-Vietnam.aspx

BANH Quoc Tuan,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Vietnamese Court, Paper submitted to 2015 KOPILA Annual Conference on May 15, 2015

Bui Thi Bich Lien, Arbitration in Vietnam, Shahla F. Ali&Tom Ginsburg e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Asia, 3rd ed., JURIS, 2013

Corinne Nguyen & Anh Duong Vu, Arbitration in Vietnam, 31 J. Int. Arb.5., 2014.

Council of Judges of the People's Supreme Court, Resolution Guidelines for the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01/2014/NQ-HDTP), March 20, 2014.

Do Van Dai - Mai Hong Quy, Vietnam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Ho Chi Minh City National University Publing House, 2006

Dong Thi Kim Thoa, Mechanism of dispute resolution in Vietnam's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 doctorial dissertation, Vietnam National University, 2006

Dong Thi Kim Thoa, Some issues on definition of the court's jurisdiction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Journal of State and Law Review (6), pp.79-83. 2006

Dong Thi Kim Thoa, Mechanism of dispute resolution in the international space law, The Journal of Legislative Review (5), pp.55-62, 2011

Dong Thi Kim Thoa, The right of choosing court in mechanism of civil dispute containing foreign elements resolution, The Journal of Legal Profession (6), pp.38-43, 2012

Dong Thi Kim Thoa, Some issues on application Vietnamese law from the approach of practical in dispute resolution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Journal of Legal Profession (3), pp.22-26, 2013

Hanoi Law University, Textbook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Judicial Publishing House, Hanoi, 2007

HccH, QUESTIONNAIRE ADDRESSED TO STATES PARTICIPATING IN THE ASIA PACIFIC REGIONAL EVENT ON INTERNATIONAL LITIGATION, 2013

Hanh, Le Hong, How international arbitration should be understand in Vietnamese law?, http://www.aseanlawassociation.org/9GAdocs/w4_Vietnam.pdf

Hogan Lovells, Arbitration in Vietnam, October 2013.

Hop Dang, Commercial Arbitration in Vietnam- A realistic choice for investors in

resolving infrastructure/energy disputes?, 12, May 2015(Seoul IDRC)

Ngo Huy Cuong, International Contracts and Vietnam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Paper presented at 2015 KOPILA Annual Conference on May 15, 2015

Ngo Thanh Tung, Pham Si Hai Quynh and Nguyen Duy Linh, Commercial Arbitation,

Nguyen Binh Minh,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Vietnam and the question of Choice of Law, Paper presented at 2015 KOPILA Annual Conference on May 15, 2015

Nguyen, Quan Hien, Cross-Border Transactions in Vietnam and the Vietnam-US Bilateral Trade Agreement, 8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Review 159, 2003.

Nguyen Tien Vinh, Changes in Vietnam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through Modification of the Civil Code 2005, Paper presented at 2015 KOPILA Annual Conference on May 15, 2015

Nguyen Tien Vinh, International Marriage under Vietnam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Paper presented at 2015 KOPILA Annual Conference on May 15, 2015

Pham Diem,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under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Vietnam, State and Law Institute of Vietnam, 2013

Pham Diem,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Vietnam, State and Law Institute of Vietnam, 2013,
http://vietnamlawmagazine.vn/news/private-international-law-in-vietnam/672e2316-40a3-47ed-999c-2179f64c5904.html

School of Law, Hanoi National University of Vietnam, Textbook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anoi National University Publing House, Hanoi, 2013

Symeonides, Symeon C., Codifying Choice of Law Around the World: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Thuy Le Tran, Vietnam: Can an effective arbitration system exist? Loyola L.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Journal, Vol.20, 1998

Trinh Quoc Toan, Mutual Judicial Assistance Agreements of Vietnam, Paper presented at 2015 KOPILA Annual Conference on May 15, 2015

Lawyervn.net, About dispute resolution in Vietnam, 2013
http://www.lawyervn.net/en/about-vietnam/about-dispute-resolution-in-vietnam.html

[베트남어 문헌]

Bành Quốc Tuấn, Tư pháp Quốc tế, NXB Lao động-Xã hội, 2013
Bùi thị Thu, Giáo trình Tư pháp Quốc tế, NXB Giáo dục Việt Nam, 2012
Đỗ Văn Đại・Mai Hồng Quỳ, Tư pháp Quốc tế Việt Nam, NXB Chính trị Quốc gia, 2010
Đoàn Tấn Minh・Nguyễn Ngọc Điệp, Bình luận Khoa học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NXB Lao động, 2011
Hoàng Thế Liên, Bình luận Khoa học Bộ Luật Dân sự năm 2005(tập Ⅲ), NXB Chính trị Quốc gia, 2013
Nguyễn Bá Diến, Giáo trình Tư pháp Quốc tế, NXB ĐHQG Hà Nội, 2013
Nguyễn Minh Tuấn, Bình luận Khoa học Bộ Luật Dân của nươc Công hòa xã hôi chủ nghĩa Việt Nam, NXB Tư pháp, 2014

[일본어 문헌]

栗田哲郎, アジアにおける外國仲裁判斷の承認・執行に關する調査研究(法務省・法務總合研究所國際協力部), 2012.

8. 베트남 국제사법 관련 법률용어 한·베트남 대역집

거주지 nơi cư trú
거주지국 nước nơi cư trú
검찰원 Viện kiểm sát
결정 quyết định
결혼 kết hôn
결혼등기 Đăng ký kết hôn
계약청약자 bên đề nghị giao kết hợp đồng
公共秩序留保 bảo lưu trật tự công cộng
공동해손 tổn thất chung
공업소유권 quyền sở hữu công nghiệp
공증문서 văn bản công chứng
관할권 thẩm quyền
국민(공민) công dân
국제관습 tập quán quốc tế
국제사법 tư pháp quốc tế
국제상거래관습 tập quán thương mại quốc tế
국제조약 điều ước quốc tế
기술이전 chuyển giao công nghệ
노동법 Bộ luật Lao động
단독행위(일방적 민사거래) giao dịch dân sự đơn phương
당사자 đương sự
동산 động sản
謄本 Bản sao
무국적자 người không có quốc tịch
민법 Bộ luật dân sự
민사계약 hợp đồng dân sự
민사계약의 형식 hình thức của hợp đồng dân sự
민사권리능력 năng lực pháp luật dân sự
민사분쟁 tranh chấp về dân sự
민사비송사건 việc dân sự
민사사건 vụ việc dân sự
민사소송권리능력 năng lực pháp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민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민사소송사건 vụ án dân sự
민사소송행위능력 năng lực hành vi tố tụng dân sự
민사판결집행 thi hành án dân sự
민사행위능력 năng lực hành vi dân sự
민사행위능력상실선고 tuyên bố một người mất năng lực hành vi dân sự
민용항공기 tàu bay dân dụng
법 luật
법관 thẩm phán
법률행위(민사거래) giao dịch dân sự
법무부(사법부) Bộ Tư pháp
법원 Tòa án
법원의 토지관할 Thẩm quyền của Tòa án theo lãnh thổ
법정상속 thừa kế theo pháp luật
법정지법 Luật tòa án
베트남 국적법 Luật quốc tịch Việt Nam
베트남법의 기본원칙 nguyên tắc cơ bản của pháp luật Việt Nam
베트남상사중재 Trọng tài thương mại Việt Nam
부당이득 hưởng lợi không có căn cứ pháp luật
부동산 bất động sản
父母 cha mẹ
夫婦 vợ chồng
부부재산 tài sản của vợ chồng
부양 cấp dưỡng
부양권리자 người yêu cầu cấp dưỡng
불법행위(계약외 손해배상)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ngoài hợp đồng
사무관리 thực hiện công việc không có ủy quyền
사법공조 tương trợ tư pháp
사법촉탁(위탁) uỷ thác tư pháp
사법협조협약 Hiệp định tương trợ tư pháp
상거래법 Luật Thương mại
常住地 nơi thường trú
상호주의 원칙 nguyên tắc có đi có lại
선박 tàu biển
손해배상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외국법원 Tòa án nước ngoài
외국법원의 판결・집행의 승인과 집행 công nhận và cho thi hành bản án, quyết định dân sự của Toà án nước ngoài

외국법인 pháp nhân nước ngoài
외국인 Người nước ngoài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 Quan hệ dân sự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과 가족관계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외국정주 베트남인 Người Việt Nam định cư ở nước ngoài
원고 nguyên đơn
유언능력 năng lực lập di chúc
유언상속 thừa kế theo di chúc
의정 Nghị định
이의권 Quyền kiến nghị
이혼 Ly hôn
인민법원 tòa án nhân dân
자연인(개인) cá nhân
暫住地 nơi tạm trú
재산소유권 Quyền sở hữu tài sản
저작권 quyền tác giả
전속관할권 thẩm quyền riêng biệt
전자거래법 Luật Giao dịch điện tử
전정 dẫn chiếu đến pháp luật của nước thứ ba
제소시효 thời hiệu khởi kiện
제한민사행위능력자 hạn chế năng lực hành vi dân sự
仲裁 trọng tài
중재판정 quyết định của Trọng tài
직접반정 dẫn chiếu ngược
최고인민법원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최후소식 tin tức cuối cùng
토지사용권 quyền sử dụng đất
판결 bản án
피고 bị đơn
피상속인 người để lại di sản thừa kế
항고권 Quyền kháng cáo
항의권 Quyền kháng nghị
호적등기 đăng ký hộ tịch
호적법 Luật Hộ tịch
혼인 Hôn nhân
혼인과 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